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에는 협상, 조정, 재판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이 제도들은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이나 조정이 좀 더 쉽고, 빠르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재판은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영역에서도 재판은 개별 사건을 넘어 언론분쟁 일반에 적용될 만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분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언론 관련 판결을 모아 보고서로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언론분쟁에 적용되고 있는 법리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언론 관련 판결의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215건을 모아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다소 누락한 판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수에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들에 대해 소제기 현황에서부터 소송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롭게 소송기간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언론분쟁은 소송의 승패만큼이나 소송 진행의 신속성도 중요합니다. 소송기간 분석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위원회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의 승패와 배상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도 실었습니다. 종전에는 전체 손해배상사건의 법원 인용액과 위원회 조정액을 단순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사건을 대상으로 한 비교였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법원의 인용액이 위원회의 조정액보다 몇 배가 높다는 식의 평가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위원회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한 분석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비교이기에 그 분석의 결과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판결들을 살펴다 보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배상 판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액의 배상 판결이 어떤 새로운 법리나 이론을 적용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널리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충분한 취재와 사실 검증이 누락됨으로써 위법성이 커졌다고 할 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언론법 혹은 언론분쟁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16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 3
2. 자료수집 방법 / 3
3. 분석 대상 / 4
4. 분석 내용 / 5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 6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건수 / 9
2. 상소율 / 9
3. 청구별 소송건수 / 1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 11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 12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 13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 14
8. 직위별 피고 분류 / 15

제3장 소송 결과

1. 심급별 결과 / 17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 17
3. 청구별 결과 / 18
4. 침해유형별 결과 / 19
5. 원고유형별 결과 / 20
6. 매체유형별 결과 / 21
7. 보도유형별 결과 / 22
8. 소송기간 / 23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결과 / 25
2. 청구액 / 26
3. 인용액 / 26
4. 인용액 분포 / 27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27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28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30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 31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 31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 33
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 33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 34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 34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 등의 형식 / 35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 38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 38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 39

표 목차

〈표 1- 1〉 심급별 건수	9
〈표 1- 2〉 상소율	10
〈표 1- 3〉 청구별 건수	10
〈표 1- 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11
〈표 1- 5〉 침해유형별 건수	11
〈표 1- 6〉 원고유형별 건수	12
〈표 1- 7〉 매체유형별 건수	13
〈표 1- 8〉 일간지 유형별 건수	13
〈표 1- 9〉 방송 유형별 건수	14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건수	14
〈표 1-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14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15
〈표 1-13〉 직위별 피고 구성	15
〈표 1-14〉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16
〈표 2- 1〉 심급별 결과	17
〈표 2-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18
〈표 2- 3〉 청구별 결과	18
〈표 2- 4〉 침해유형별 결과	19
〈표 2- 5〉 원고유형별 결과	20
〈표 2- 6〉 공적 인물의 결과	20
〈표 2- 7〉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21
〈표 2- 8〉 일간지 유형별 소송결과	21
〈표 2- 9〉 방송 유형별 소송결과	22
〈표 2-10〉 인터넷매체 유형별 소송결과	22
〈표 2-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결과	23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결과	23
〈표 2-13〉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24
〈표 2-14〉 보도계재 청구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24
〈표 3-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결과	26
〈표 3- 2〉 손해배상 청구액	26
〈표 3- 3〉 손해배상 인용액	27
〈표 3- 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27
〈표 3-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28
〈표 3-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29
〈표 3- 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29
〈표 3- 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30
〈표 3-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31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32
〈표 4-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33
〈표 4- 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34
〈표 4- 3〉 반론보도청구 소송결과	34
〈표 4-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35
〈표 4- 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35
〈표 4- 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36
〈표 4- 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36
〈표 4- 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37
〈표 4- 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37
〈표 5- 1〉 조정경유 비율	38
〈표 5-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39
〈표 5- 3〉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39
〈표 5- 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40
〈표 5- 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사건 비교	40
〈표 5- 6〉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40
〈표 5- 7〉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결과 전체 목록	41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215건)	4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1. 기사에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부 잘못 제시했더라도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허위보도가 아니다
A vs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7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329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나6168 판결(확정) 55
2.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람은 그 부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A vs B
수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624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30. 선고 2015나2035964 판결(확정) 67
3. 계좌추적 등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보도를 넘어 단정보도 할 수는 없다
정중해 외 1명 vs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외 1명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10343 판결 76
4. 원고의 주도적 변론으로 이끌어 낸 소송 결과를 피고의 업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다
A vs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외 2명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2444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47716 판결(확정) 85
5. ‘앵커가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은 넓은 의미의 인과관계를 의미할 뿐, 원고 조합원들이 직접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95

6.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언론사가 소명하지 못한다면 반론보도의무는 발생한다
A 외 2명 vs 재단법인 씨비에스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카합181 판결 99
7. 당사자 간 협의가 없었더라도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적절한 후속보도가 이루어졌다면 추후보도로서 효력이 있다
A vs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합61499 판결 105

제2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1. '중복'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이 아니며 당사자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다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vs 주식회사 채널에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5225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8030 판결 112
2. 감독기관 등에 확인 없이 원고의 음식점이 폐기용 닭으로 칼국수 고명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것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A vs 주식회사 채널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합456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09002 판결 161
3. 집단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얻은 수익의 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기재된 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니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A vs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가단50310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나12795 판결(확정) 185

4. 당사자 특정 여부는 당사자의 주변 사람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 vs 주식회사 강남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629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12972 판결 193
5.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오래 전 입수한 녹음파일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성남시 외 1명 vs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 외 1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205057 판결 204
6. 상해치사를 살인으로 잘못 보도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A vs 주식회사 헤럴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59391 판결(확정) 217
7.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 외 1명 vs 주식회사 채널에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합586479 판결(확정) 224
8.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소환 여부는 지엽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지만원 vs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4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1231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2945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827 판결(확정) 234
9. 피고 신문사의 질의에 적절한 회신을 하였음에도 제3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의혹을 단정적으로 반복 보도했다면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
최대호 vs 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100325 판결(확정) 243

10. 범죄혐의 보도 시 언론사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단정적 표현을 피하여야 한다
A vs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가단5118768 판결 253

11.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회사는 비판 기사에 스스로 반박할 수 있어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주식회사 솔본 vs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외 1명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296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나15780 판결(확정) 263

1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그와 상반된 내용의 기사를 동시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
A vs B 외 1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소1136 판결 276

13. 직접적 표현이 없었더라도 구체적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였다면 의견 표명을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A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가합2295 판결 279

14. 생방송이라 하더라도 게스트의 발언이 프로그램 진행자에 의하여 더 구체화되고 반복적으로 방송되었다면 방송사도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한다
A vs 주식회사 조선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45626 판결 293

15. 병원 상호 및 간판 일부,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명 등이 노출됨으로써 당사자가 특정되었다
A vs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가합102966 판결(확정) 300

16.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방송에 방송 노출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심재환 외 1명 vs 이봉규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합586127 판결 308

17.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 반복보도, 악의적 편집 등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A vs 주식회사 매일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가합9115 판결 317

초상권 침해 사례

18. 공인이 아닌 원고의 체포·압송 장면을 생방송으로 장시간 보도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A vs 주식회사 조선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합51744 판결 329
19. 이미 보도되고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는 범인의 출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이 인정된다
 A vs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5682 판결 335

사생활 침해 사례

20. 공적 존재로 보기 어려운 ‘법공노’ 실무 직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 과거 전력을 밝힌 보도는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 외 3명 vs 주식회사 문화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가단50590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7939 판결 342
21. 종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을 공개한 보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언론사가 증명해야 한다
 A vs 주식회사 조선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577116 판결 361

재산권 침해 사례

22. 기사형 광고를 낸 언론사는 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조사 및 확인의무를 부담한다
A 외 35명 vs 주식회사 한경닷컴 외 3명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369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1.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사라도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른 금지 가처분을 저지할 수는 없다
한국석유공사 vs 주식회사 코리아타임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8. 선고 2015카합50147 결정(확정) 382
2. 범죄자의 유치장 탈주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
A vs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4089 판결 390
3. 대학 교수가 사회적 이슈에 관해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한 발언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다
A vs 주식회사 조선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합37038 판결 395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 소송제기 현황

제3장 — 소송 결과

제4장 —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제6장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 관련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데이터는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소송의 판결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을 유목화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언론분쟁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의 근거 내지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¹⁾한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 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판결 검색 시에 ① 정정보도 ② 반론보도 ③ 추후보도 ④ 보도&명예훼손 ⑤ 보도&초상 ⑥ 보도&음성 ⑦ 보도&사생활 ⑧ 보도&성명 등을 검색어로 사용했다. 검색어 입력 결과, 판결 선고가 아닌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가. 2015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215건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215건이 수집되었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어

분석은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된 모든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선고일을 기준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²⁾도 포함되어 있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70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판결 분석에서 이 점을 감안했다. 그 결과, 소송건수 자체가 기준이 되는 분석도 있지만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매체별로 나누어 실시한 분석의 경우, 비록 소송 건으로는 하나이나 통계분석의 목적상 여러 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70건이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617건

한편, 분석 대상 판결들 대부분이 하나의 청구가 아닌,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나 기사삭제청구+정정보도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가 병합된 것들이었다. 이에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총 건수 370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후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의 청구권별 총 건수는 617건이다.

2) 2015년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6년 현재 상소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하거나 2015년 이전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의미한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15년도 언론 관련 판결의 소송 제기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소송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 제기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결과, 침해유형별 소송결과, 원고유형별 소송결과,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보도유형별 소송결과, 소송기간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분석 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구 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접수일자 및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 분류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체분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4. 손해배상
	17-2. 반론보도	17-5. 기사삭제
	17-3. 추후보도	17-6. 해명광고 게재
원 · 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3. 3심
	18-2. 2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 결정액
손해배상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정보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제목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6. 보도본문 길이
	34. 보도위치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하였다.
-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고위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³⁾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 ④ 공인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였다면 2개의 매체에 대해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3)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5) 방송 분류

- ①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⁴⁾를 포함하였다.
-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 ④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하였다.
예) 「SBS 스페셜」, 「생방송 오늘아침」 등

6) 청구별 처리결과

-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 일부승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또는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
-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8)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하였다.
- ② 매체별로 별도 법인이 있거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예) 조선일보 - 조선닷컴 연대하여 2,000만원 → 조선일보 : 2,000만원 / 조선닷컴 : 2,000만원
- ③ 피고가 단일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분류상 2개로 나누어진 경우는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반액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하였다.
예) 경향신문 - 경향닷컴 경향신문에 2,000만원 → 경향신문 : 1,000만원 / 경향닷컴 : 1,000만원
- ④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하였다.
- ⑤ 항소심과 상고심도 하급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상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4) 예) KBS전주방송총국, 대구MBC 등

제2장

소송제기 현황

2015년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52.6%, 2심 35.3%, 3심 12.1%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13건(52.6%), 2심이 76건(35.3%), 3심이 26건(12.1%)이다.

〈표 1-1〉 심급별 건수

심 급	건 수	비율(%)
1 심	113	52.6
2 심	76	35.3
3 심	26	12.1
합 계	215	100.0

2. 상소율

항소율 70.8%, 상고율 48.7%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2심 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113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80건으로 항소율은 70.8%로 나타났다. 2심 판결 76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37건으로 상고율이 48.7%였다.

〈표 1-2〉 상소율

심 급	건 수	상소건수	상소율(%)
1 심	113	80	70.8%
2 심	76	37	48.7%

3.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분석해 선호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53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한 경우가 117건(31.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1-3〉 청구별 건수

청 구 명	건 수	비율(%)
정 정	18	4.9
정정/반론	5	1.4
정정/반론/손해배상	33	8.9
정정/손해배상	117	31.6
정정/손해배상/기사삭제	11	3.0
정정/손해배상/기사삭제/해명광고 게재	4	1.1
정정/손해배상/보도금지	2	0.5
반 론	5	1.4
추후/손해배상	2	0.5
손해배상	153	41.2
손해배상/기사삭제	16	4.3
손해배상/기사삭제/보도금지	1	0.3
기사삭제	1	0.3
기사삭제/보도금지	1	0.3
보도금지	1	0.3
합 계	370	100.0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339건(54.9%), 정정보도청구는 190건(30.8%), 반론보도청구는 43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다.

〈표 1-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건 수	비율(%)
정정보도	190	30.8
반론보도	43	7.0
추후보도	2	0.3
손해배상	339	54.9
기사삭제	34	5.5
보도금지	5	0.8
해명광고 게재	4	0.7
합 계	617	100.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152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명예훼손 및 모욕이 24건(11.2%), 명예 및 신용훼손이 10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 수	비율(%)
명 예	152	70.7
명예/신용	10	4.6
명예/모욕	24	11.2
명예/모욕/초상	4	1.8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1	0.5
명예/초상	1	0.5
명예/초상/사생활	3	1.4
명예/초상/음성/사생활	1	0.5

침해유형	건 수	비율(%)
명예/성명	1	0.5
명예/사생활	4	1.8
명예/사생활/재산	1	0.5
명예/재산	3	1.4
신 용	1	0.5
모 욕	2	0.9
초 상	6	2.7
재 산	1	0.5
합 계	215	100.0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원고유형은 일반인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59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적인물 38건(17.7%), 고위공직자 25건(11.6%), 기업 22건(10.2%), 일반단체 20건(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6〉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 수	비율(%)
개인	고위공직자	25	11.6
	공적인물	38	17.7
	일반 공무원	4	1.9
	일 반 인	59	27.4
단체	언 론 사	9	4.2
	국가기관	6	2.8
	지 자 체	6	2.8
	기 업	22	10.2
	공공단체	2	0.9
	종교단체	14	6.5
	시민단체	7	3.3
	교육기관	2	0.9

원고유형		건 수	비율(%)
	일반단체	20	9.3
	정 당	1	0.5
합 계		215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매체유형은 언론사닷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유형별 건수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매체가 207건(5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 62건(16.8%), 일간신문 50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매체유형별 건수

매체유형	건 수	비율(%)
일간신문	50	13.5
주간신문	25	6.8
월 간 지	4	1.1
방 송	62	16.8
뉴스통신	22	5.9
인터넷매체	207	55.9
합 계	370	100.0

일간신문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5건(70.0%), 방송 중에는 케이블방송이 34건(54.8%)으로 각 매체유형별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매체의 경우, 언론사닷컴이 142건(68.6%), 인터넷신문 64건(30.9%) 등이었다.

〈표 1-8〉 일간지 유형별 건수

일간신문 유형	건 수	비율(%)
중앙종합	35	70.0
지역종합	12	24.0
경제일간	2	4.0
스 포 츠	1	2.0
합 계	50	100.0

〈표 1-9〉 방송 유형별 건수

방송 유형	건 수	비율(%)
지상파방송	28	45.2
케 이 블	34	54.8
합 계	62	100.0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건수

인터넷매체 유형	건 수	비율(%)
인터넷신문	64	30.9
언론사닷컴	142	68.6
포 텔	1	0.5
합 계	207	100.0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가장 많이 문제된 보도유형은 뉴스(방송)와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 매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문제가 된 보도유형을 살펴봤다. 그 결과,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60건(8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1-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 수	비율(%)
스트레이트	260	84.4
스트레이트/사설	7	2.3
스트레이트/사진	1	0.3
스트레이트/칼럼	3	1.0
사 설	11	3.6
칼 럼	3	1.0
인 터 뷰	2	0.6
사 진	18	5.9
광 고	2	0.6

보도유형	건 수	비율(%)
독자투고	1	0.3
합 계	308	100.0

한편, 방송 관련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뉴스 35건(56.5%), 시사·고발프로그램 13건(21.0%), 토론 10건(16.1%)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 수	비율(%)
뉴 스	35	56.5
뉴스/토론	1	1.6
고 발	13	21.0
교 양	3	4.8
토 론	10	16.1
합 계	62	100.0

8. 직위별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 건수 370건의 피고들을 해당 직위별로 분류한 결과,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63건(44.0%), 언론사와 더불어 담당 기자까지 피소된 건이 76건(2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직위별 피고 구성

직위별 피고 구성	건 수	비율(%)
언 론 사	163	44.0
언론사/대표	5	1.4
언론사/대표/국장	2	0.5
언론사/대표/국장/담당	3	0.8
언론사/대표/담당	5	1.4
언론사/국장	1	0.3

직위별 피고 구성	건 수	비율(%)
언론사/국장/담당	4	1.0
언론사/국장/비언론	1	0.3
언론사/부장/담당	3	0.8
언론사/담당	76	20.5
언론사/담당/비언론	10	2.7
언론사/담당/기타	1	0.3
언론사/비언론	37	10.0
대 표	17	4.6
대표/담당	6	1.6
국장/부장/담당	1	0.3
논설/비언론	1	0.3
담 당	31	8.4
담당/비언론	3	0.8
합 계	370	100.0

직위별 피고 분류를 다시 각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가 311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 기자 또는 PD 143건(25.4%), 대표이사 38건(6.8%) 등이었다.

〈표 1-14〉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 수	비율(%)
언 론 사	311	55.3
대표이사	38	6.8
국 장	12	2.1
논 설	1	0.2
부 장	4	0.7
담당기자 (또는 담당 PD)	143	25.4
기 타	1	0.2
비 언 론	52	9.3
합 계	562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 소송기간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언론소송 중 절반이 넘는 사건에서 원고 승소

2015년도 전체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승소율은 56.3%이다. 심급별로 원고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승소율 54.9%, 2심 59.2%, 3심 53.9%로 나타났다.

〈표 2-1〉 심급별 결과

심 급	원고승	원고패	계
1 심	62 (54.9)	51 (45.1)	113 (100.0)
2 심	45 (59.2)	31 (40.8)	76 (100.0)
3 심	14 (53.9)	12 (46.1)	26 (100.0)
합 계	121 (56.3)	94 (43.7)	215 (10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높지 않아

분석 대상 판결 215건 중 2심 74건(환송후심 2건 제외)과 3심 26건을 합산한 100건을 대상으로 원심

판결 유지여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86건 (86.0%)로 나타났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3.8%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92.3%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 분	건 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2 심	74 (100.0)	34 (46.0)	28 (37.8)	1 (1.3)	11 (14.9)
3 심	26 (100.0)	14 (53.8)	10 (38.5)	2 (7.7)	0 (0.0)
합 계	100(100.0)	48 (48.0)	38 (38.0)	3 (3.0)	11 (11.0)
		86 (86.0)		14 (14.0)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원고 승소율 49.5%로 비교적 높아

215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소송 결과를 살펴본다. 그 결과, 청구별 원고승소율은 정정보도청구 49.5%, 반론보도청구 37.2%, 손해배상청구 46.9% 등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이 다른 청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추후보도청구(2건)는 1건 인용, 1건 기각되었고, 해명광고 게재청구(4건)는 모두 기각되었다.

〈표 2-3〉 청구별 결과

청 구 명	원고승	원고패	계
정정보도	94 (49.5)	96 (50.5)	190 (100.0)
반론보도	16 (37.2)	27 (62.8)	43 (100.0)
추후보도	1 (50.0)	1 (50.0)	2 (100.0)
손해배상	159 (46.9)	180 (53.1)	339 (100.0)
기사삭제	16 (47.1)	18 (52.9)	34 (100.0)
보도금지	4 (80.0)	1 (20.0)	5 (100.0)
해명광고 게재	0 (0.0)	4 (100.0)	4 (100.0)
합 계	290 (47.0)	327 (53.0)	617 (100.0)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승소율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에서의 원고 승소율이 60.5%로 높게 나타났다. 명예·초상·성명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초상·음성·사생활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 다양한 침해유형에서의 원고승소율이 100%로 나타났다지만 해당 건수가 1~3건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 예	92 (60.5)	60 (39.5)	152 (100.0)
명예/신용	5 (50.0)	5 (50.0)	10 (100.0)
명예/모욕	8 (33.3)	16 (66.7)	24 (100.0)
명예/모욕/초상	2 (50.0)	2 (50.0)	4 (100.0)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0 (0.0)	1 (100.0)	1 (100.0)
명예/초상	0 (0.0)	1 (100.0)	1 (100.0)
명예/초상/사생활	3 (100.0)	0 (0.0)	3 (100.0)
명예/초상/음성/사생활	1 (100.0)	0 (0.0)	1 (100.0)
명예/성명	1 (100.0)	0 (0.0)	1 (100.0)
명예/사생활	3 (75.0)	1 (25.0)	4 (100.0)
명예/사생활/재산	1 (100.0)	0 (0.0)	1 (100.0)
명예/재산	1 (33.3)	2 (66.7)	3 (100.0)
신 용	0 (0.0)	1 (100.0)	1 (100.0)
모 욕	2 (100.0)	0 (0.0)	2 (100.0)
초 상	1 (16.7)	5 (83.3)	6 (100.0)
재 산	1 (100.0)	0 (0.0)	1 (100.0)
합 계	121 (56.3)	94 (43.7)	215 (100.0)

※ ()안의 숫자는 %

5. 원고유형별 결과

공적 인물 승소율 57.9%에 이르러, 고위공직자는 40.0%에 그쳐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고위공직자 40.0%, 공적 인물 57.9%, 일반인 54.2% 등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에는 언론사 77.8%, 기업 54.5%, 종교단체 35.7% 등의 수치를 보였다.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개인	고위공직자	10 (40.0)	15 (60.0)	25 (100.0)
	공적인물	22 (57.9)	16 (42.1)	38 (100.0)
	일반 공무원	3 (75.0)	1 (25.0)	4 (100.0)
	일 반 인	32 (54.2)	27 (45.8)	59 (100.0)
단체	언 론 사	7 (77.8)	2 (22.2)	9 (100.0)
	국가기관	4 (66.7)	2 (33.3)	6 (100.0)
	지 자 체	4 (66.7)	2 (33.3)	6 (100.0)
	기 업	12 (54.5)	10 (45.5)	22 (100.0)
	공공단체	1 (50.0)	1 (50.0)	2 (100.0)
	종교단체	5 (35.7)	9 (64.3)	14 (100.0)
	시민단체	6 (85.7)	1 (14.3)	7 (100.0)
	교육기관	2 (100.0)	0 (0.0)	2 (100.0)
	일반단체	13 (65.0)	7 (35.0)	20 (100.0)
	정 당	0 (0.0)	1 (100.0)	1 (100.0)
합 계		121 (56.3)	94 (43.7)	215 (100.0)

※ ()안의 숫자는 %

〈표 2-6〉 공적 인물의 결과

공적인물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정 치 인	2 (66.7)	1 (33.3)	3 (100.0)
전 문 인	8 (53.3)	7 (46.7)	15 (100.0)
언 론 인	0 (0.0)	6 (100.0)	6 (100.0)
연 예 인	3 (75.0)	1 (25.0)	4 (100.0)
예체능인	3 (100.0)	0 (0.0)	3 (100.0)
기타 유명인	6 (85.7)	1 (14.3)	7 (100.0)

공적인물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합 계	22 (57.9)	16 (42.1)	38 (100.0)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결과

지역일간지 상대 원고승소율 비교적 높게 나타나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건수를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간신문 60.0%, 인터넷매체 50.2%, 월간지 50.0%, 방송 4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매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일간신문	34 (68.0)	16 (32.0)	50 (100.0)
주간신문	15 (60.0)	10 (40.0)	25 (100.0)
월 간 지	2 (50.0)	2 (50.0)	4 (100.0)
방 송	30 (48.4)	32 (51.6)	62 (100.0)
뉴스통신	9 (41.0)	13 (59.0)	22 (100.0)
인터넷매체	104 (50.2)	103 (49.8)	207 (100.0)
합 계	194 (52.4)	176 (47.6)	370 (100.0)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유형별 소송결과

일간신문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20 (57.1)	15 (42.9)	35 (100.0)
지역종합	11 (91.7)	1 (8.3)	12 (100.0)
경제일간	2 (100.0)	0 (0.0)	2 (100.0)
스 포 츠	1 (100.0)	0 (0.0)	1 (100.0)
합 계	34 (68.0)	16 (32.0)	50 (100.0)

※ ()안의 숫자는 %

일간신문에 대한 원고승소율을 세부 유형별로 다시 살펴봤다. 중앙종합일간지의 원고승소율이

57.1%인데 비해 지역종합일간지가 91.7%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한 원고 승소율은 39.3%, 케이블이 55.9%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56.3%, 언론사닷컴은 47.9%로 분석됐다.

〈표 2-9〉 방송 유형별 소송결과

방송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방송	11 (39.3)	17 (60.7)	28 (100.0)
케 이 블	19 (55.9)	15 (44.1)	34 (100.0)
합 계	30 (48.4)	32 (51.6)	62 (100.0)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유형별 소송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36 (56.3)	28 (43.7)	64 (100.0)
언론사닷컴	68 (47.9)	74 (52.1)	142 (100.0)
포털	0 (0.0)	1 (100.0)	1 (100.0)
합 계	104 (50.2)	103 (49.8)	207 (10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와 뉴스(방송) 상대 원고승소율 비교적 높아

분석 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370건을 방송 외 매체 308건, 방송 매체 62건으로 나눈 후, 각 매체에 따른 보도유형별 소송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 외 매체의 경우, 칼럼을 상대로 한 원고승소율이 100%, 스트레이트 및 사설 71.4%, 스트레이트 및 칼럼 66.7%, 스트레이트 기사 58.5%로 스트레이트 관련 보도유형의 승소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스트레이트 기사는 언론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보도유형이기도 하다. 방송매체의 경우에는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원고 승소율이 60.0%로 가장 높았고 뉴스에서의 원고 승소율이 57.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152 (58.5)	108 (51.5)	260 (100.0)
스트레이트/사설	5 (71.4)	2 (28.6)	7 (100.0)
스트레이트/사진	0 (0.0)	1 (100.0)	1 (100.0)
스트레이트/칼럼	2 (66.7)	1 (33.3)	3 (100.0)
사 설	1 (9.1)	10 (90.9)	11 (100.0)
칼 럼	3 (100.0)	0 (0.0)	3 (100.0)
인 터 뷰	0 (0.0)	2 (100.0)	2 (100.0)
사 진	0 (0.0)	18 (100.0)	18 (100.0)
광 고	1 (50.0)	1 (50.0)	2 (100.0)
독자투고	0 (0.0)	1 (100.0)	1 (100.0)
합 계	164 (53.3)	144 (46.7)	308 (100.0)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 스	20 (57.1)	15 (42.9)	35 (100.0)
뉴스/토론	0 (0.0)	1 (100.0)	1 (100.0)
고 발	3 (23.1)	10 (76.9)	13 (100.0)
교 양	1 (33.3)	2 (66.7)	3 (100.0)
토 론	6 (60.0)	4 (40.0)	10 (100.0)
합 계	30 (48.4)	32 (51.6)	62 (100.0)

※ ()안의 숫자는 %

8. 소송기간

3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보도게재 청구사건 비율 8.7%에 불과

언론소송에서는 결과에 있어서의 승패 외에도 소송 진행의 신속함 역시 중요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소송 개시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즉 소송기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의 상당수의 사건들이 6개월을 초과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 심	7 (6.2%)	18 (15.9%)	50 (44.2%)	31 (27.4%)	7 (6.2%)	113 (100.0%)
2 심	1 (1.3%)	17 (22.4%)	42 (55.3%)	16 (21.1%)	0 (0.0%)	76 (100.0%)
3 심	11 (42.3%)	9 (34.6%)	1 (3.8%)	2 (7.7%)	3 (11.5%)	26 (100.0%)
합 계	19 (8.8%)	44 (20.5%)	93 (43.3%)	49 (22.8%)	10 (4.7%)	215 (100.0%)

특히, 법률에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보도계재 청구 사건의 1심에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보도계재 청구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 심	6 (8.7%)	14 (20.3%)	29 (42.0%)	18 (26.1%)	2 (2.9%)	69 (100.0%)
2 심	0 (0.0%)	9 (24.3%)	23 (62.2%)	5 (13.5%)	0 (0.0%)	37 (100.0%)
3 심	5 (31.3%)	5 (31.3%)	1 (6.3%)	2 (12.5%)	3 (18.8%)	16 (100.0%)
합 계	11 (9.0%)	28 (23.0%)	53 (43.4%)	25 (20.5%)	5 (4.1%)	122 (100.0%)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분석 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합산한 건수가 617건이라는 점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 사건들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336건⁵⁾이다. 이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석 유목 중에서 손해배상사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경우,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적인 평균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칫 왜곡된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평균 외에 손해배상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중앙값⁶⁾과 최빈액⁷⁾을 함께 조사하였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승소율 47.3%

분석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336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59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7.3%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청구권을 포함한, 전체 언론소송에서의 원고승소율(56.3%)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5) 손해배상 청구 사건 339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코딩하기 부적절한 3건을 제외하였다.

6)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7)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336 (100.0)	159 (47.3)	177 (52.7)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1억 2,244만 원

중앙값 8천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이상 사건 비중 46.7%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고액, 최빈액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2,244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8천만 원, 최빈액은 1억 원이었다.

한편, 전체 손해배상청구 336건 중 1억 원 이상인 고액 청구 사건이 157건(46.7%)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15억 원, 최저액은 2백만 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건수	청구액(원)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336		122,446,925	80,000,000	100,000,000	2,000,000	1,5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1,073만원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언론사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159건이다. 이들 사건의 평균 인용액은 약 1,073만 원, 중앙값은 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3백만 원이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약 4억 2,730만 원으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손해 중 40% 정도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었다.⁸⁾

한편,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 중 2심 판결은 72건, 3심 판결은 13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85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법원이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했는지를 살펴보았다. 2심

8)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법원이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가 52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가 27건, 감액한 경우가 11건으로 나타났다. 3심의 경우, 대법원은 13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건수 \ 인용액(원)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59	10,730,226	5,000,000	3,000,000	300,000	427,306,000

4. 인용액 분포

절반 넘는 사건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 원 이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159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32건(20.2%),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28건(17.6%),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6건(4.0%), 5천만 원 초과가 3건(2.0%)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건수 \ 인용액(원)	5백만 이하	5백만 초과~1천만	1천만 초과~2천만	2천만 초과~5천만	5천만~
159 (100.0)	89 (56.2)	32 (20.2)	28 (17.6)	6 (4.0)	3 (2.0)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모욕과 함께 명예훼손이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상대적으로 낮아

손해배상청구 사건 336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했다. 침해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50.6%로 나타났으며, 인용액 중앙값은 425만원이었다. 명예와 신용이 함께 침해된 경우, 원고승소율은 63.6%, 인용액 중앙값은 5백만 원이었다.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이 문제된 경우, 원고승소율은 37.1%로 떨어졌으며 인용액 중앙값은 5백만 원이었다.

〈표 3-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 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인용액 중앙값
명 예	233	118	50.6	7,828,814	4,250,000
명예/신용	11	7	63.6	9,285,714	5,000,000
명예/모욕	35	13	37.1	5,153,846	5,000,000
명예/모욕/초상	5	2	40.0	10,000,000	10,000,000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1	0	0.0	—	—
명예/초상	1	0	0.0	—	—
명예/초상/사생활	5	5	100.0	15,000,000	15,000,000
명예/초상/음성/사생활	1	1	100.0	7,000,000	7,000,000
명예/성명	2	2	100.0	11,500,000	11,500,000
명예/사생활	4	3	75.0	16,000,000	14,000,000
명예/사생활/재산	1	1	100.0	8,000,000	8,000,000
명예/재산	4	1	25.0	20,000,000	20,000,000
신 용	2	0	0.0	—	—
모 욕	3	3	100.0	5,000,000	6,000,000
초 상	26	2	7.7	3,500,000	3,500,000
재 산	2	1	50.0	427,306,000	427,306,000
합 계	336	159	47.3	10,730,226	5,0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손해배상 원고승소율 일반 언론소송과 유사하게 시민단체, 언론사, 공적인물 등에서 높게 나타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일반 언론소송에서의 승소율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83.3%), 언론사(77.8%), 공적인물(50.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손해배상의 원고유형별 인용액 중앙값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공적인물이 5백만 원, 고위공직자는 650만 원이었다. 단체의 경우, 시민단체가 5백만 원, 언론사가 45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3-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 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인용액 중앙값
개 인	고위공직자	36	13	36.1	7,000,000	6,500,000
	공직인물	55	28	50.9	6,857,143	5,000,000
	일반 공무원	7	3	42.9	26,666,667	6,000,000
	일 반 인	120	53	44.2	28,000,000	5,000,000
단 체	언 론 사	9	7	77.8	10,928,571	4,500,000
	국가기관	1	0	0.0	—	—
	지 자 체	4	2	50.0	7,500,000	7,500,000
	기 업	31	19	61.3	11,000,000	5,000,000
	공공단체	1	0	0.0	—	—
	종교단체	24	4	16.7	1,000,000	1,000,000
	시민단체	12	10	83.3	5,700,000	5,000,000
	교육기관	3	2	66.7	6,000,000	6,000,000
	일반단체	30	18	60.0	7,222,222	3,000,000
	정 당	3	0	0.0	—	—
	합 계	336	159	47.3	10,730,226	5,000,000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건 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인용액 중앙값
	정 치 인	3	2	66.7	17,500,000	17,500,000
	전 문 인	24	11	45.8	4,181,818	2,500,000
	언 론 인	10	0	0.0	—	—
	연 예 인	8	6	75.0	7,666,667	6,500,000
	예체능인	3	3	100.0	3,666,667	3,000,000
	기타 유명인	7	6	85.7	9,000,000	9,000,000
	합 계	55	28	50.9	6,857,143	5,000,000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인용액 중앙값 방송이 일간신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56.7%, 지상파방송이 40.7%, 언론사닷컴이 42.3% 등으로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인용액 중앙값은 일간신문 5백만 원, 방송이 1,175만 원, 인터넷매체 450만 원 등이다.

〈표 3-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인용액의 중앙값
일간	중앙종합	30	17	56.7	7,382,353	5,000,000
	지역종합	11	9	81.8	8,250,000	10,000,000
	경제일간	2	2	100.0	1,500,000	1,500,000
	스 포 츠	1	1	100.0	5,000,000	5,000,000
	소 계	44	29	65.9	7,163,793	5,000,000
방송	지상파방송	27	11	40.7	12,545,455	8,000,000
	케 이 블	31	17	54.8	16,911,765	12,000,000
	소 계	58	28	48.3	15,196,429	11,750,000
주간신문		22	12	54.6	5,333,333	4,500,000
월 간 지		4	2	50.0	3,000,000	3,000,000
뉴스통신		22	7	31.8	10,214,286	5,000,000
인터넷	인터넷신문	55	26	47.3	6,307,692	4,000,000
	언론사닷컴	130	55	42.3	13,951,927	5,000,000
	포 털	1	0	0.0	—	—
	소 계	186	81	43.6	11,498,222	4,500,000
합 계		336	159	47.3	10,730,226	5,000,000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두 건 중 한 건에서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손해배상청구 336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66건(49.4%)이었다. 이 중 피고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83건(50.0%)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승소율 52.7%보다 2.7% 낮은 수치이다.

〈표 3-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건수	언론인 피고 사건	언론인 승	언론인 패
336	166 (100.0)	83 (50.0)	83 (50.0)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 승소 원인의 상당수는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손해배상청구 336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77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보았다. 명예훼손의 경우, 보도의 공익성 및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45건(25.4%)으로 나타났다. 사실의 적시가 없어 기각한 사례도 15건(8.5%)이나 되었고,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가 6건(3.4%)이었다. 그 밖에 특징적인 사건으로는 발언한 당사자(패널)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생방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⁹⁾가 1건 있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24건 중 6건은 당사자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18건은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의 주관사 측이 제공한 보도자료의 초상권 침해 여부까지 언론사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언론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¹⁰⁾이다.

9) 종합편성채널의 생방송을 통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만 방송사의 경우는 고의 및 과실이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2014가합586479).

1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기사에서 거기에 포함된 사진이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인지 여부까지 언론사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2013가단5096557).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명예훼손	불 특 정	6	3.4
	불특정/공익/진실성/상당성	1	0.6
	사실적시 없음	15	8.5
	사실적시 없음/공익/진실성	1	0.6
	사실적시 없음/공익/진실성/상당성	1	0.6
	평가저하 아님	2	1.1
	평가저하 아님/공익	2	1.1
	평가저하 아님/공익/진실성	1	0.6
	공 익	7	4.0
	공익/진실성	45	25.4
	공익/진실성/상당성	17	9.6
	공익/상당성	29	16.2
	진 실 성	17	9.6
	진실성/상당성	4	2.3
	기 타	2	1.1
신용훼손	공익/진실성/상당성	2	1.1
초 상 권	동 의	6	3.4
	기 타	18	10.2
재 산 권	기 타	1	0.6
합계		177	100.0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절반에서 원고 승소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617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90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96건으로 원고승소율은 50.5%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청구건수	원고일부승	원고패
190 (100.0)	96 (50.5)	94 (49.5)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 승패의 관건은 보도의 진실성 증명 여부에 있어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한 사건(94건)에서 기간도과로 각하한 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92건)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실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51건(55.4%)이었고, 사실적 주장이 부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11건(12.0%)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13건의 경우, 대부분 민법상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한 정정보도청구¹¹⁾였고 이 경우에는 보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11) 정정보도청구 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기반으로 한 것과 언론중재법(귀책 사유 불요)을 기반으로 한 것 두 종류가 있다.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 수	비율(%)
개별연관 부정	4	4.4
개별연관 부정/사실주장 아님/진실성 인정	2	2.2
사실주장 아님	11	12.0
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진실성 인정	4	4.4
사실주장 아님/진실성 인정	6	6.5
지엽말단/진실성 인정	1	1.1
진실성 인정	51	55.4
기 타	13	14.0
합 계	92	10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2/3에서 원고 패소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43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이 16건, 원고승소율은 37.2%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5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소송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43 (100.0)	16 (37.2)	27 (62.8)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명백히 진실에 반하거나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대한 반론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사건 43건 중 기각된 사건은 27건이었다. 기각 사유는 반론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8건,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경우가 6건,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이어서 기각된 경우가 5건이었다.

〈표 4-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 수	비율(%)
사실주장 아님	6	22.2
지엽말단	5	18.5
기 반론행사	2	7.4
사실에 반함	8	29.7
광고 목적	3	11.1
기 타	3	11.1
합 계	27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 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105건이다. 이 중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게재하도록 판결한 건은 6건으로서 보도 게재를 명한 총 건수는 111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20건, 주간지 8건, 월간지 2건, 방송 18건, 뉴스통신 3건, 인터넷매체 60건으로 나타났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별로는 정정보도가 94건, 반론보도 16건, 추후보도가 1건이었다.

〈표 4-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 후	계
일간신문	18	2	—	20
주간신문	8	—	—	8
월 간 지	2	—	—	2
방 송	16	2	—	18
뉴스통신	—	2	1	3
인터넷매체	50	10	—	60
합 계	94	16	1	111

한편, 법원이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제2항).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위치

원보도와 동일한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한 비율 84.8%,

1면 혹은 방송 첫머리 게재 비율도 높아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 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89건(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6건(5.7%)에 불과했다.

〈표 4-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건 수	비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89	84.8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6	5.7
명시하지 않음	1	1.0
알 수 없음	9	8.5
합 계	105	100.0

매체별로 구체적인 보도위치를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14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12건,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게시되도록 한 사례가 45건으로 나타났다.

〈표 4-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구분	보도위치	건 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14	50.0
	1면 외	13	46.4
	명시하지 않음	1	3.6
합 계		28	100.0
방송	첫머리	12	66.7
	후반	2	11.1
	끝	1	5.6
	명시하지 않음	3	16.6
합 계		18	100.0
인터넷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45	76.3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없음	14	23.7
합 계		59	10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정정보도문의 형식 대체로 정형적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하였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59건(56.2%)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건 수	비율(%)
정정보도문	31	29.5
반론보도문	6	5.7
추후보도문	1	1.0
…에 대한 정정보도문	55	52.4
…에 대한 반론보도문	4	3.8
바로잡습니다	4	3.8
일반기사	3	2.8
기 타 ¹²⁾	1	1.0
합 계	105	100.0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500자 초과가 36건(3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이하가 33건(31.4%),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18건(17.1%),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7건(16.2%)으로 나타났다.

〈표 4-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건 수	비율(%)
300자 이하	33	31.4
301~400자	17	16.2
401~500자	18	17.1
500자 초과	36	34.3
알 수 없음 ¹³⁾	1	1.0
합계	105	100.0

12) 주문 :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2014가단201764)

13) 주문 :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2014가단201764)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전체 언론분쟁 사건 중 법원에서 처리되는 비율 약 13%

2015년 판결의 매체별 건수 370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617건 중에서 기사삭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반론·추후·손배 네 가지 청구권 관련 사건(총 574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약 13%의 사건만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조정경유 비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전체 언론분쟁 건수 (A+B)	2,717 (100.0%)	3,285 (100.0%)	3,789 (100.0%)	9,791 (100.0%)
조정 건수(A)	2,433 (89.5%)	2,931 (89.2%)	3,319 (87.6%)	8,683 (88.7%)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판결 건수 (B)	284 (10.5%)	354 (10.8%)	470 (12.4%)	1,108 (11.3%)
조정을 거친 판결 건수 (C)	64 (2.4%)	80 (2.4%)	104 (2.7%)	248 (2.5%)
법원 판결 건수 (B+C)	348 (12.8%)	434 (13.2%)	574 (15.1%)	1,356 (13.8%)

* 건수 산정 : 정정·반론·추후·손배 청구권별 산정 (기사삭제, 게재금지 등 제외)

* 2014년 조정신청 건수의 경우, 총 19,048건 중 대량 사건 제외

* 2015년 조정신청 건수의 경우, 총 5,227건 중 대량 사건 제외

* 전체 언론분쟁 건수 : 판결 수집 건수를 전수조사로 전제한 경우임

* 법원 판결 건수는 기사삭제, 게재금지 청구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위원회 평균 조정액, 법원 평균 인용액 대비 15% 수준에 그쳐

2015년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

액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160만 원, 중앙값은 1백만 원으로 나타난 반면,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1,073만 원, 중앙값은 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¹⁴⁾

〈표 5-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 분	건 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100	1,602,000	1,000,000	500,000	4,000,000
인용액	159	10,730,226	5,000,000	300,000	427,306,000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2015년 언론 관련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104건¹⁵⁾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를 원고승소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6.0%

우선, 위원회에서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47건으로 이 사건들에 있어서의 원고 승소율은 66.0%(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건들 중 피신청인 측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승소율은 8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판결 결과	계	원고승	원고패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7	2	5
	피신청인 이의신청		32	27	5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8	2	6
조정불성립결정			48	37	11
기 각			2	0	2
취 하			7	6	1
합 계			104	74	30

14)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정도로만 의미 부여를 하기 바란다.

15) 위원회에서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비롯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나 기각, 각하 결정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최고 인용액 1,400만 원으로 위원회 2천만 원 보다 적어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분쟁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소가 자동으로 제기된 사건(총 6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한 평균액을 살펴보면 위원회와 법원이 5백만 원선으로 유사한 액수를 보였다.

최고액 측면에서는 위원회에서 2천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법원에서 1,400만 원만 인용되는 등 위원회가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구 분	건 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6	5,083,333	2,500,000	1,000,000	20,000,000
인용액	6(2)	5,000,000	4,500,000	0	14,000,000

* 괄호는 위원회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

한편,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2건을 제외하고 인용된 사건의 평균액만 분석하면 법원이 750만 원으로 약 508만 원인 위원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또,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서 인용된 동일 사건 4건에 대한 조정액 및 인용액을 분석하면 위원회 평균액이 675만 원으로 법원 인용액과의 격차가 좁혀진다. 최저액은 위원회가 1백만 원, 법원이 3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5-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사건 비교

구 분	건 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6	5,083,333	2,500,000	1,000,000	20,000,000
인용액	4	7,500,000	6,500,000	3,000,000	14,000,000

〈표 5-6〉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구 분	건 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4	6,750,000	3,000,000	1,000,000	20,000,000
인용액	4	7,500,000	6,500,000	3,000,000	14,000,000

〈표 5-7〉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결과 전체 목록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1	2014서울조정 1056, 1057 (각 손해)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명	수도권 광역버스 임석운행 금 지 첫날 동정을 보도하면서 불 만을 토로하는 승객인 신청인 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해 피 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기사수정 150만 원	기각 (성남지원 2014가소 31113, 31120)	기각 (수원지법 2015나 4440, 4457)	기각 (대법 2015다 231481, 231498)
2	2014서울조정 1021 (정정)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 업소가 칼국수 고명으 로 폐가용 닭을 쓰는 것처럼 보 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정정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5640)	인용 정정 5천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009002)	계류 (대법 2015다 256374)
3	2014서울조정 500 (손배)	A	주식회사 뉴스한국	신청인이 아내의 종교를 증오 해 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 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100만 원	인용 3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6863)	인용 3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4346)	인용 300만 원 (대법 2015다 33489)
4	2013서울조정 531 · 532 (정정 · 손해)	학교법인 A학원 외 2명	뉴데일리 주식회사	신청인 대학이 개혁을 요구하 는 교직원 30여명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보도했으나, 그 징 계는 적법한 것이었다.	직권결정 - 반론	인용 반론 (서울중법 2013가합 54890)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4나 6796)	-
5	2013서울조정 410 (손배)	A	한국방송 공사	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불법 사행업소인 것처럼 보도해 피 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 1,000만 원 (서울남법 2013가단 33175)	인용 800만 원 (서울남법 2014나 5918)	인용 800만 원 (대법 2014다 82859)
6	2013서울조정 1253 · 1254 (정정 · 손해)	A 외 1명	주식회사 크리스천 투데이	목사인 신청인이 천주교인 이 혼녀와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왜곡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3가합 71345)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4나 21665)	인용 반론 (대법 2015다 21639)
7	2013서울조정 1599 (정정)	문화체육관광 부	한국탐사 저널리즘 센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복지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 하고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 비를 문제 삼아 무리한 감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 정정 · 반론	인용 정정 (서울서법 2013가합 12105)	인용 정정 (서울고법 2014나 2038713)	-
8	2014서울조정 4543 · 4544 (정정 · 손해)	A	주식회사 강남신문	신청인이 성형수술한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진료기록부 를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 반론 500만 원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62928)	인용 정정 2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12972)	인용 정정 200만 원 (대법 2015다 66298)
9	2014서울조정 1121, 1122 (각 정정)	금융 위원회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신청인 기관이 ‘천송이 코트’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서울중법 2014가합 577604)	-	-
10	2013경기조정 175 · 176 (정정 · 손해)	성남시 외 1명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의회 의정연수에 참석해 발렌 타인 21년산 21병을 선물하고 건배제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1500만 원 (성남지원 2013가합 205057)	인용 15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020764)	인용 1500만 원 (대법 2016다 206925)

16)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서울고법 2014나43368)

17)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반론보도를 선고 (서울고법 2015나21846)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11	2013서울조정 918 (정정)	A 외 179명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들이 꿀비를 해풍에 자연 건조하지 않고 소금을 쳐서 냉동하는 방식으로 가공해 보통 찹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 반론 (서울중법 2013가합 51136)	기각 (서울고법 2014나 9481)	기각 (대법 2014다 89089)
12	2013서울조정 1621~1626 (각 정정· 손배)	A	B	지역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부친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이를 실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800만 원 (서울중법 2013가합 90803)	인용 정정 800만 원 (서울고법 2014나 43085)	—
13	2014서울조정 914~917 (각 정정· 손배)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과 학생의 친부인 신청인이 오래 전 이혼한 뒤 자식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오다가 참사 후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2467, 42481)	—	—
14	2013서울조정 1192·1193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외 1명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또는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억 원대를 지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정정 2,000만 원	인용 정정 700만 원 (서울중법 2013가합 74399)	인용 정정 700만 원 (서울고법 2014나 26493)	—
15	2013전북조정 35 (손배)	재단법인 A	주식회사 국제뉴스	신청인 장학재단의 기숙사 부지 매입 과정에 의혹이 있으며, 과도한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반론 500만 원 (서울중법 2013가합 879)	인용 반론 (광주고법 2014나 2674)	인용 반론 (대법 2015다 31469)
16	2009서울조정 150 (정정·손배)	김상희 (국회의원)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이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반론 200만 원	기각 (서울중법 2009가합 68328)	인용 1,000만 원 (서울고법 2011나 36512)	기각(파기) ¹⁶⁾ (대법 2012다 19734)
17	2013서울조정 203 (정정)	주식회사 뉴스 투데이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목포투데이를 발행하는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예술전시회 사업이 자체자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시행됐고 특허 시비와 실효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정정·반론	인용 정정 (서울북법 2013가합 1734)	인용 정정 (서울고법 2014나 23005)	—
18	2014서울조정 1035·1036 (정정·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 업체가 닭을 비위생적으로 해동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작권결정 - 정정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5602, 45619)	기각 (서울고법 2015나 2028423, 2028430)	기각 (대법 2016다 206529, 206536)
19	2014서울조정 776~779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에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정정 기사삭제	인용 정정 8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34343, 34367)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20	2014서울조정 103·104 (정정·반론)	A	주식회사 노컷뉴스	모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남법 2014가합 4294)	-	-
21	2014서울조정 1050 (정정)	권은희	한국탐사 저널리즘 센터	국회의원 보결선거 출마자인 신청인이 후보등록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수십억 대 재산에 대해 축소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4가합 7209)	-	-
22	2014서울조정 882~887 (각 정정· 반론·손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국민일보 주식회사 외 1명	신청인 교단이 이단, 사이비 단체이며, 대학가에 종말론을 유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반론 1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8784)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032736)	계류 (대법 2016다 215752)
23	2014서울조정 839~884 (각 정정· 반론·손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국민일보 주식회사 외 1명	신청인 교단이 이단, 사이비 단체이며, 대학가에 종말론을 유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반론 1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8593)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032729)	계류 (대법 2016다 215745)
24	2014서울조정 1493·1494 (추후·손배)	A	주식회사 연합뉴스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각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61499)	-	-
25	2014서울조정 1226 (손배)	A	주식회사 조선방송	경찰의 금수원 진입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300만 원 기사수정	인용 7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51744)	인용 7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2542)	-
26	2012서울조정 827·828 (정정·손배)	A 외 139명	주식회사 문화방송	권재홍 앵커가 MBC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2,000만 원 (서울남법 2012가합 13294)	인용 정정 2,000만 원 (서울고법 2013나 35049)	기각(파기) ¹⁷⁾ (대법 2014다 28121)
27	2013서울조정 1488 (정정)	황교안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법무부 장관인 신청인이 과거 검사 시절 삼성 관련 수사 후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보도 2,000만 원 (서울중법 2013가합 75361)	인용 정정 보도 2,000만 원 (서울고법 2014나 43078)	-
28	2014서울조정 578·579 (정정·손배)	사단법인 대한치과 의사협회	주식회사 건치신문사	신청인 협회의 기관지인 '치의신보'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왜곡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정정·반론	인용 정정 2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7552)	-	-
29	2015서울조정 1476~1479 (각 정정· 손배)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명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2,0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2295, 2301)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50086, 2050093)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30	2014서울조정 1118 · 1119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조선방송	신청인이 전 구원파 신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방송은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300만 원	인용 정정 6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45626)	조정성립 (서울고법 2015나 25466)	-
31	2014서울조정 11154~ 11161(각 정정 · 반론)	홍문중 (국회의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신청인이 총장으로 있는 ○○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593101)	-	-
32	2013대전조정 41~52 (각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신청인이 지난 2008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 정정 2,000만 원 (대전지법 2013가합 6579)	인용 정정 2,000만 원 (대전고법 2014나 1292)	-
33	2011서울조정 1440, 1442 (각 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전주지법 2012가합 1831)	기각 (광주고법 - 전주 2013나 2578)	-
34	2014서울조정 1630~1635 (각 정정 · 반론 · 손배)	주식회사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 회사가 해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고, 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5,0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585919, 515900, 515917)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60359, 2060366, 2060373)	-
35	2014서울조정 913 (손배)	A	주식회사 이엠디	신청인이 자신을 재림예수라 주장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부천지원 2014가합 9860)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60748)	-
36	2013서울조정 1011 (손배)	한국영화 기자협회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신청인 협회의 부회장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반발해 사퇴했으며, 해당 세미나에서 기업의 후원금으로 수상스키 타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4가단 5313358)	-	-
37	2014서울조정 1383 · 1384 (정정 · 손배)	대한안과 의사회	주식회사 문화방송	라식라섹 수술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일부 안과에서 환자관리에 소홀하다고 보도해 소속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51041)	-	-
38	2014서울조정 9012, 9013 (각 정정)	방위 사업청	주식회사 문화일보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 소총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양산을 강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서울중법 2015가합 2800)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74204)	-
39	2015서울조정 2474 (정정)	보건 복지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맞춰 발표한 의약품 수출계약 등의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2270)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70097)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40	2012강원조정 3·4 (정정·손배)	주식회사 A 외 2명	주식회사 강원신문사	신청인 회사들이 산림훼손, 폐 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불법행 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기업주 인 신청인은 세금포탈 등 부당 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3,500만 원 (강릉지원 2012가합 1156)	인용 정정 3,500만 원 (서울고법 - 춘천 2014나 2902)	인용 정정 3,500만 원 (대법 2015다 74381)
41	2014서울조정 1619·1620 (정정·손배)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신청인 방송사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제대로 전 달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인용 정정 기사수정 3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101543)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73621)	-
42	2015서울조정 2340 (정정)	한국 방송공사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KBS 내부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를 막는 세력 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반론 (서울남법 2015가합 3175)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74228)	-
43	2014서울조정 14841·14843 (정정·손배)	서초 경찰서 외 1명	주식회사 매일방송	신청인의 무리한 병원 압수수색 으로 전신마취를 한 상태의 환 자수술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7,000만 원 (서울중법 2015가합 9115)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00002)	-
44	2014서울조정 102 (손배)	A	주식회사 세이프 투데이 외 1명	신청인이 ○○협회장에 출마 할 의사가 있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4가단 5061763)	-	-
45	2015서울조정 2938~2941 (각 정정· 손배)	A	주식회사 덴탈저널	모 협회 회장인 신청인이 운영 하는 치과가 네트워크치과에 인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500만 원 (서울중법 2015가합 17093)	-	-
46	2015서울조정 3189 (정정)	주식회사 문화방송	A 외 1명	신청인 언론사가 성완종 전 경 남기업 비자금 관련 보도를 하 면서 수사 대상을 야권으로 넓 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36372)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04820)	-

* 음영 처리된 사건은 2015년도에 선고된 것임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215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5-01-09	2013가단23894 2013가단29977	창원지법	1심	손배	이○○ 외 1명	기각
2	2015-01-09	2013가단22686 2013가단29984	창원지법	1심	손배	남○○ 외 1명	기각
3	2015-01-12	2014가단5059074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문화일보 외 1명	인용
4	2015-01-14	2014가합3294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7명	기각
5	2015-01-14	2013가합52191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2명	기각
6	2015-01-14	2013가합52258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7	2015-01-14	2014가소31113 2014가소31120	성남지원	1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8	2015-01-16	2014나21283	서울동법	2심	손배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외 2명	기각
9	2015-01-21	2014가합45640 2014가합45657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10	2015-01-22	2014나32001	창원지법	2심	손배	최○○	기각
11	2015-01-22	2014가합6863	서울남법	1심	손배	(주)뉴스한국	인용
12	2015-01-23	2014다76168	대법	3심	정정	(주)한국교회문화사 외 1명	인용
13	2015-01-28	2014나21337	서울동법	2심	손배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외 2명	기각
14	2015-01-29	2012다107129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오마이뉴스 외 1명	인용
15	2015-02-03	2014가단5031014	서울중법	1심	손배	김○○	인용
16	2015-02-06	2014나6796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뉴데일리(주)	인용
17	2015-02-06	2014나2000602	서울고법	2심	손배	(주)한경닷컴 외 3명	인용
18	2015-02-12	2014다231873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서울신문사	기각
19	2015-02-12	2014다82859	대법	3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20	2015-02-13	2014나13374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도시재생신문 외 3명	기각
21	2015-02-13	2013나20304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새누리당 외 4명	인용
22	2015-02-13	2014나2166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크리스천투데이	인용
23	2015-02-13	2014가단34900	수원지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인용
24	2015-02-16	2012가단285157	서울중법	1심	손배	아시아투데이(주)	기각
25	2015-02-16	2013가단5122951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26	2015-03-13	2014나44917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매일방송 외 1명	인용
27	2015-03-18	2015가합501543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28	2015-03-18	2014가합564974	서울중법	1심	손배	한국방송사 외 9명	기각
29	2015-03-18	2014나20471	서울동법	2심	손배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외 3명	기각
30	2015-03-18	2014나21832	서울동법	2심	손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외 2명	기각
31	2015-03-20	2014나2016492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32	2015-03-20	2014나24114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인용
33	2015-03-24	2014나17045	서울중법	2심	손배	김○○ 외 2명	인용
34	2015-03-25	2014나59384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서울신문사	기각
35	2015-03-25	2014나10259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매일신문사 외 2명	기각
36	2015-03-26	2014다84954	대법	3심	손배	(재)씨비에스 외 3명	기각
37	2015-03-26	2014가합23277	안산지원	1심	정정	(주)시흥일보	인용
38	2015-03-27	2014나204500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2명	인용
39	2015-03-27	2014나2038713	서울고법	2심	정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인용
40	2015-04-01	2014가합6292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강남신문	기각
41	2015-04-01	2014가합577604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	(주)경향신문사	인용
42	2015-04-02	2014가합6054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3명	인용
43	2015-04-02	2013가합205057	성남지원	1심	정정/손배	(주)디지털성남일보 외 1명	인용
44	2015-04-02	2013가합20305 2014가합10883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45	2015-04-03	2014나2557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기각
46	2015-04-03	2014나2034698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미디어안성 외 3명	기각
47	2015-04-09	2014다89089	대법	3심	정정	(주)채널에이	기각
48	2015-04-10	2014나4308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장○○	인용
49	2015-04-10	2012가합9005	광주지법	1심	손배	김○○ 외 2명	인용
50	2015-04-10	2014나4544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충청일보재단 외 10명	기각
51	2015-04-15	2014가합42467 2014가합4248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52	2015-04-17	2014나2649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사사저널사	인용
53	2015-04-17	2014가합795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54	2015-04-17	2014나59391	서울중법	2심	손배	(주)헤럴드	인용
55	2015-04-21	2014나18697	서울중법	2심	손배	박○○	인용
56	2015-04-22	2014나47787	서울중법	2심	손배	이○○(선정당사자) 외 2명	인용
57	2015-04-22	2014가합58647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58	2015-04-23	2014나2674	광주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국제뉴스 외 2명	인용
59	2015-04-30	2014나43368	서울고법	2심 (환송 후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60	2015-05-01	2014나23005	서울고법	2심	정정	(주)시민일보사	인용
61	2015-05-08	2013가단5122920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중앙일보 외 1명	인용
62	2015-05-12	2014가단123123	서울중법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4명	기각
63	2015-05-13	2014가합45602 2014가합4561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64	2015-05-13	2014가합34343 2014가합3436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인용
65	2015-05-13	2014가합593576	서울중법	1심	손배	정○○	인용
66	2015-05-14	2014가합4294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노컷뉴스	기각
67	2015-05-14	2013가합53243	고양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보도금지	윤○○	기각
68	2015-05-15	2015나4346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뉴스한국	인용
69	2015-05-15	2014가합7209	서울서법	1심	정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기각
70	2015-05-15	2014가합4012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인용
71	2015-05-20	2013가합80677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7명	기각
72	2015-05-20	2013가합553779	서울중법	1심	손배	이○○ 외 5명	기각
73	2015-05-21	2014가합100325	안양지원	1심	정정/손배	남○○	인용
74	2015-05-22	2015나2005680	서울고법	2심	정정	한겨레신문(주)	기각
75	2015-05-22	2014가합10051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권○○	기각
76	2015-05-26	2014가단5118768	서울중법	1심	손배	이○○ 외 1명	인용
77	2015-05-28	2014가합24829	안산지원	1심	정정	(주)시흥일보	인용
78	2015-05-28	2012다29618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매일경제신문사 외 1명	기각 (파기)
79	2015-05-29	2014나204076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80	2015-06-03	2013가합35005(본소) 2013가합36251	인천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1 외 3명	인용
81	2015-06-05	2014나3238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미디어 협동조합 외 2명	인용
82	2015-06-05	2015나1545	서울고법	2심	손배	황○○	인용
83	2015-06-08	2015카합50147	서울서법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주)코리아타임스	인용
84	2015-06-09	2014나59407	서울중법	2심	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주)	기각
85	2015-06-11	2014가합9183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외 2명	기각
86	2015-06-11	2014가합9084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기각
87	2015-06-11	2014가합8784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88	2015-06-11	2014가합8593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89	2015-06-11	2014가합62421	수원지법	1심	정정	홍○○	기각
90	2015-06-12	2014가합4089	서부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주)제이티비씨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91	2015-06-17	2014가합61499	서울중법	1심	추후/손배	(주)연합뉴스	기각
92	2015-06-18	2014가소1136	진주지원	1심	손배	(주)하동저널 외 1명	인용
93	2015-06-19	2014나4529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김○○ 외 3명	인용
94	2015-06-19	2014나4355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외 1명	인용
95	2015-06-19	2014나205109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96	2015-06-23	2013다216624	대법	3심	정정/손배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주) 외 2명	기각
97	2015-06-24	2013다11850	대법	3심	정정/손배	최○○	인용
98	2015-06-24	2014나31218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충청투데이 외 6명	기각
99	2015-06-24	2014나67637	서울중법	2심	손배	최○○ 외 2명	인용
100	2015-06-26	2014가단41097	서울서법	1심	손배	진○○	인용
101	2015-06-26	2013가합23634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주)수도권일보사	인용
102	2015-06-26	2015나616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7명	기각
103	2015-07-01	2013가합34520	서울중법	1심	추후/손배	(주)뉴스시 외 1명	인용
104	2015-07-01	2014가합37038 2014가합37045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조선방송	기각
105	2015-07-03	2014나52543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문화일보	인용
106	2015-07-08	2014가합51744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방송	인용
107	2015-07-08	2015나4440 2015나4457	수원지법	2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108	2015-07-09	2015다211470	대법	3심	손배	(주)매일방송 외 1명	인용
109	2015-07-09	2014가합10343	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주)서울신문사 외 1명	인용
110	2015-07-10	2015다21639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크리스천투데이	인용
111	2015-07-10	2014나2444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법률신문사 외 2명	인용
112	2015-07-15	2014가합57711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조선방송	인용
113	2015-07-16	2015나30309	서울서법	2심	손배	송○○	인용
114	2015-07-17	2014가합874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2명	기각
115	2015-07-23	2014가단519481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선경일보사 외 1명	인용
116	2015-07-23	2014다28121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파기)
117	2015-07-23	2015다24492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기각
118	2015-07-24	2014나4307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인터넷한국일보 외 3명	인용
119	2015-07-24	2014나5386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일요서울신문사 외 4명	인용
120	2015-08-11	2015나12795	서울중법	2심	손배	김○○	인용
121	2015-08-12	2015카합357	서울서법	1심	반론	(재)윤누리선교재단	인용
122	2015-08-12	2014가합52472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천지일보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23	2015-08-12	2014가합39942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24	2015-08-12	2014가합2999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전주문화방송(주)	기각
125	2015-08-12	2014가합10038	서울서법	1심	손배	(주)오마이뉴스 외 5명	기각
126	2015-08-12	2015카합404	서울서법	1심	반론	정○○	인용
127	2015-08-12	2014가단244018	서울서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28	2015-08-13	2014나2038218	서울고법	2심	손배	김○○ 외 6명	인용
129	2015-08-13	2015카합181	서울남법	1심	반론	(재)씨비에스 외 1명	인용
130	2015-08-13	2014가합755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건치신문사	인용
131	2015-08-13	2014가단11492	마산지원	1심	손배	문○○	기각
132	2015-08-13	2015가합200438	성남지원	1심	보도금지	(주)디지털성남일보	인용
133	2015-08-13	2014나203569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보도금지	고○○	인용
134	2015-08-13	2015가합2295 2015가합2301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인용
135	2015-08-19	2014가합54618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해명광고 게재	(유)광주전남타임즈 외 2명	인용
136	2015-08-19	2014가합4562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방송	인용
137	2015-08-19	2015다217232	대법	3심	손배	박○○	인용
138	2015-08-19	2014가합593101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한국일보사	기각
139	2015-08-19	2015나29458	서울중법	2심	손배	대한민국 외 4명	기각
140	2015-08-20	2014나1292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주)금강일보사	인용
141	2015-08-20	2014가합12158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142	2015-08-20	2014나2627	전주지법	2심	손배	황○○	기각
143	2015-08-21	2014나203210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뉴스시스	기각
144	2015-08-26	2015가합3070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안○○ 외 2명	기각
145	2015-08-26	2015가합134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46	2015-08-27	2015가합22196	안산지원	1심	정정	(주)시흥일보	인용
147	2015-08-27	2013나2578	광주고법	2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148	2015-08-27	2013나2554	광주고법	2심	정정/손배	전주문화방송(주)	인용
149	2015-08-28	2014나205080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청주방송 외 3명	인용
150	2015-08-28	2014가단82814	창원지법	1심	손배	김○○ 외 1명	인용
151	2015-09-03	2015가합102966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인용
152	2015-09-04	2015가합100806	서울동법	1심	정정/손배	권○○	기각
153	2015-09-09	2015가합829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엔에스파워스통신사	기각
154	2015-09-09	2015가합2224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오○○ 외 1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55	2015-09-09	2013가합518301	서울중법	1심	손배	이○○ 외 3명	인용
156	2015-09-10	2015다39913	대법	3심	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주)	기각
157	2015-09-11	2015나201082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세계닷컴 외 7명	인용
158	2015-09-11	2014나44878	부산지법	2심	손배	국민일보(주) 외 9명	인용
159	2015-09-23	2014가합585919 2015가합515900 2015가합515917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4명	인용
160	2015-09-23	2014가단186032	서울중법	1심	손배	김○○ 외 2명	기각
161	2015-09-25	2015다227185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62	2015-09-25	2014가합9860	부천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주)이엠디 외 1명	인용
163	2015-09-25	2015나1297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강남신문	인용
164	2015-10-14	2014가합58772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헬코미디어 외 4명	기각
165	2015-10-15	2015다31513	대법	3심	손배	(주)미디어실크에이치 외 1명	인용
166	2015-10-16	2014가단5313358	서울중법	1심	손배	신○○ 외 3명	기각
167	2015-10-21	2014가합5104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68	2015-10-22	2014가단20176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중앙일보	인용
169	2015-10-28	2015가합51728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방송	인용
170	2015-10-28	2014나65662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법보신문사 외 1명	기각
171	2015-10-28	2014가합40909	서울서법	1심	손배	(주)시사매거진	인용
172	2015-10-29	2015다228508	대법	3심	손배	송○○	인용
173	2015-10-29	2015다225899	대법	3심	손배	최○○	인용
174	2015-10-29	2015다222999	대법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175	2015-11-03	2013가단59911	서울중법	1심	손배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외 2명	인용
176	2015-11-04	2014나3770	광주고법	2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2명	기각
177	2015-11-11	2015가합2800	서울중법	1심	정정	(주)문화일보	인용
178	2015-11-11	2015가합2270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	한겨레신문(주)	기각
179	2015-11-11	2014가합58612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180	2015-11-12	2015가합10803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인용
181	2015-11-12	2015다231481 2015다231498	대법	3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182	2015-11-12	2015나15780	서울고법	2심 (환송 후심)	정정/손배	(주)매일경제신문사 외 1명	기각
183	2015-11-12	2014가합1994	안산지원	1심	손배	(주)광명저널 외 2명	인용
184	2015-11-18	2014나29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강원신문사 외 1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85	2015-11-19	2015가합73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송○○ 외 1명	기각
186	2015-11-19	2015가합101543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6명	인용
187	2015-11-20	2015나2009002 2015나200901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188	2015-11-20	2015나203076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89	2015-11-20	2014나70169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와이티엔 외 1명	인용
190	2015-11-24	2015가단5682	홍성지원	1심	손배	(주)와이미디어	기각
191	2015-11-24	2014나60421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뉴스 외 1명	기각
192	2015-11-25	2014가단446	의성지원	1심	손배	국민일보(주) 외 1명	기각
193	2015-11-25	2013가합7812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주)전주방송	인용
194	2015-11-26	2015가합3175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	(주)미디어오늘	인용
195	2015-11-26	2015다233746	대법	3심	정정/손배/보도금지	고○○	인용
196	2015-11-27	2015나2020986 2015나202099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197	2015-11-27	2015다47716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법률신문사 외 2명	인용
198	2015-12-02	2015가합911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매일방송	인용
199	2015-12-08	2014가단506176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세이프투데이 외 1명	기각
200	2015-12-09	2015나7939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문화일보 외 1명	인용
201	2015-12-10	2015다235780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뉴스	기각
202	2015-12-10	2015다235827	대법	3심	손배	대한민국 외 4명	기각
203	2015-12-16	2013가단193514	서울중법	1심	손배	권○○ 외 1명	인용
204	2015-12-16	2015가합17093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텐탈저널	인용
205	2015-12-17	2015가합100162	안양지원	1심	정정/손배	안○○ 외 1명	인용
206	2015-12-17	2015나3642	서울서법	2심	손배	진○○	인용
207	2015-12-18	2015나200802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2명	기각
208	2015-12-18	2015나200803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209	2015-12-23	2015가합36372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안○○ 외 1명	기각
210	2015-12-23	2014가합58680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211	2015-12-23	2015다31469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국제뉴스 외 2명	인용
212	2015-12-24	2015가합11183	순천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일크에이치제이 외 1명	인용
213	2015-12-30	2015나2032521 2015나2032545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1 외 3명	인용
214	2015-12-30	2015나2035964	서울고법	2심	정정	홍○○	기각
215	2015-12-30	2015나2028423 2015나202843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제2장 — 손해배상청구

1. 명예훼손 사례
2. 초상권 침해 사례
3. 사생활 침해 사례
4. 재산권 침해 사례

제3장 — 기사삭제청구 등

제1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329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나6168 판결(확정)

기사에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부 잘못 제시했더라도 범죄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허위보도가 아니다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7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4년 3월 22일자 <조선일보> 「부하 女 장교 자살 부른 성추행 소령에게 집행유예라니」 제하의 기사 등에서 육군 모 부대 부관참모였던 원고가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여군 대위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여군 대위는 원고로부터 받은 괴로움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원고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사실이 피해자 유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메모, 일기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포함되어 있어 기사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이후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기사에 잘못 표시한 것이 허위보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망인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또 다른 유류품인 일기장의 내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들을 탓하는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고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합32941 정정보도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중앙일보 3. B 4. 주식회사 채널에이 5.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6. C 7. 주식회사 뉴스1 8. D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에 발행되는 조선일보 A31면의 좌측 상단에 별지 2-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사설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해당 면 전체의 1/6 크기의 상자기사 형태로 게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에 발행되는 중앙일보 14면 좌측 중단에 별지 2-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해당 면 전체의 1/8 크기의 상자기사 형태로 게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부터 7일 동안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http://www.ichannela.com/>)의 초기화면과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 2-3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활자체 및 활자크기의 별지 2-3 기재 정정보도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부터 7일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http://www.mt.co.kr/>)의 초기화면과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 2-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활자체 및 활자크기의 별지 2-4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게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부터 7일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http://nesw1.kr/>)의 초기화면과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 2-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활자체 및 활자크기의 별지 2-5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서 2012. 3.경부터 육군 제00보병사단 00참모부에서 00참모로 근무하고 있다.
-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신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이하 ‘피고 중앙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 피고 B는 피고 중앙일보 소속 기자,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를 운영하는 방송사, 피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이하 ‘피고 머니투데이’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머니투데이’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피고 C는 피고 머니투데이 소속 기자,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하 ‘피고 뉴스1’이라 한다)은 뉴스통신사, 피고 D는 피고 뉴스1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의 부하 여군 자살 사건 발생 및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와 같은 사단에서 2012. 12.경부터 원고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여군 대위인 소외 오00은 2013. 10. 16. 상관인 원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이하 오00을 ‘망인’이라 한다). 이에 군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제0군단 보통군사법원 2013고0호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¹⁸⁾

다. 피고들의 기사 보도

- 1) 피고 조선일보는 2014. 3. 22. 조선일보 A31면 사설란에 「부하 女 장교 자살 부른 성추행 소령에게 집행유예라니」라는 제목하에, [오 대위는 유서에서 “(노 소령이) 10개월간 언어폭력, 성추행은 물론 ‘하룻밤만 자면 해결되는데’라며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약혼자가 있는 여 장교는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또 “성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부적절한 관계 요구를 받았다. 영원히 저주하겠다.”고 썼대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1 기재 사실을 게재하였다.
- 2) 피고 중앙일보는 2014. 4. 2. 중앙일보 사회 14면에 「상관 성추행에 자살한 여군 순직 인정」이라는 제목하에, [경기도 파주 육군 00사단에서 근무하던 A 대위는 ‘직속상관인 B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대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B 작성의 별지 1-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3) 피고 채널에이는 2014. 3. 20. 위 피고의 홈페이지(www.ichannela.com)에 「여군대위 자살사

18) 이에 원고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군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4. 12.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건 가해자 집행유예(2보)」라는 제목하에,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00사단에서 근무하던 오 대위는 ‘상관인 노 모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0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 뉴스1이 같은 날 게재한 기사를 출처를 밝혀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 4) 피고 머니투데이는 2014. 4. 14. 위 피고의 홈페이지(www.mt.co.kr)에 「‘성추행’ 여군 자살사건 판결 어땠길래, “가해자 무죄처럼...”」이라는 제목하에, [한편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육군 00사단에서 근무하던 오 대위는 ‘상관인 노 모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0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C 작성의 별지 1-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5) 피고 뉴스1은 2014. 3. 20. 위 피고의 홈페이지(news1.kr)에 「여군대위 자살사건 가해자 집행유예(2보)」라는 제목하에,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00사단에서 근무하던 오 대위는 ‘상관인 노 모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0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D 작성의 별지 1-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위 5건의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도 ‘원고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가혹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선일보사, 중앙일보, 채널에이, 머니투데이, 뉴스1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별지 2의 각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별로 각자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 2275 판결 등 참조).

나. 적시된 사실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 전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장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는 망인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망인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망인은 원고의 그와 같은 성관계 요구 등을 못 이겨 자살하였으며, 망인이 남긴 유서에도 원고의 성관계 요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여군 비하 발언 듣기 싫고 거북했습니다. ... 영원히 저주할 겁니다. 저를 이렇게 몰고 간 당신을, 이렇게 만든 당신을. ... 이 억울함 제발 좀 풀어주세요, 누구라도. ... 짓밟힌 제 명예로서 저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유서 전체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을가 1호증의 1부터 4, 6부터 8, 을나 1호증부터 4호증, 을나 6호증부터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마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직권남용 가혹행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 외에도, 망인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여군인 망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과 태도를 보여 왔는바, 이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의 언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난 가능성을 가진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부과하는

과도한 업무량, 모욕, 폭행 등의 가혹행위에 위와 같은 원고의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태도들까지 더하여짐에 따라서 망인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유서 내용 또한 비록 원고의 지속적인 성적 언행 및 태도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하더라도 망인의 또 다른 유류품인 일기장의 내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들을 탓하는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고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 ① 원고는 2013. 6. 내지 7.경 망인의 엑스(X) 반도 착용을 도와주겠다면서 망인의 뒤편에 서서 망인의 어깨를 만지고 등 부위를 쓰다듬었고, 2013. 10. 중순경 망인의 등 뒤에 다가가 어깨를 약 10~15초간 주무르는 등으로 망인을 강제추행하였다.
- ② 원고는 망인에게 “(2013. 여름경) 사람은 욕구를 잘 참아야 한다. 나는 보좌관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어도 나는 성욕을 잘 참고 있지 않느냐”, “(2013. 8. 16.경) 일요일에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할 때 내가 전화하면 안 좋을 것 아니냐”, “(2013. 9. 25.경, 망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 사병에게) 봉은 뭐하러 가져왔느냐? 자위하려고 가져왔느냐? 아 너는 구멍이 없어서 못하지?”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였다.
-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성희롱적 발언 외에도 평소 성적 발언을 서슴없이 해 왔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고 부적절해 보임에도 별다른 조심성 없이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 ④ 특히 원고는 2013. 7. 12.경 망인에게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그 의도도 모르냐? 같이 자야지 아냐? 같이 잘까?”라고 하여 성관계를 권유하는 듯한 표현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남긴 메모의 내용

위와 같은 원고의 성희롱적 발언 외에도, 망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남긴 메모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에게 “(2013. 여름경, 다른 여군 하사를 가리키며) 문란하다”, “(2013. 여름경, 다른 여군 하사를 가리키며) 성관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자궁에 병이 생기지, 더러운 것”, “(2013. 8. 16.경, 망인이 춘천에 남자친구가 놀러 온다고 하니까 다른 남자 하사에게) 춘천에 좋은 모텔 있으면 추천해줘라. 리스트 뽑아주라고.”, “(2013. 여름경) 내가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널 안아버리면 내가 이 사단을 떠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안자.”, “(2013. 7. 16.경, 다른 여군 하사를 가리키며) 절대 내가 개한테 맘 있어서 그러는 건 아냐. 개는 내 스타일 아냐.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개처럼 몸 막 굴리는 애는 내 스타일 아냐.”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망인이 남긴 일기장의 내용

또한, 망인이 남긴 일기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性 드립(성적인 이야기를 가리킴)을 좋

아함 ... 변태 (2013. 3. 24.자 일기)”, “수치스런 이야기를 들었다.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 이걸 심하지 않은가. ... 치욕적이다. 저 사람은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저질 B급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일까. 맘 같아선 확 찌르고 싶지만, 완전히 끝낼 수 없다면 소용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말하지 못하겠다. 정도가 넘어서고 있다. (2013. 7. 12.자 일기)”, “참모님(원고)은 성과 관계된 농담을 지나치게 좋아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는 ‘남자친구와 관계할 때 내가 전화하면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런 거나 ○하사한테 ‘성관계를 문란하게 하면 저런 병 생기지’나 ‘여자는 자고로 몸 관리 잘해야 해’나 ‘술집에서 한창때 XX만 쓰고 ... 여기는 그런 곳이 없어서’ 이런(것들). 불쾌하지만 대놓고 그러진 못한다. 그러시면서 본인(원고)은 여군을 4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성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시는데 솔직히 조금 울컥.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뭐죠? 우리가 참아서인데 (2013. 8. 18.자 일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망인은 원고의 지속적인 성적 발언에 대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원고가 망인에게 “나랑 잘래?”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망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 ① 원고는 망인과 하루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평균적으로 10여 건에서 많게는 20여 건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거의 매일 주고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원고가 주도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중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다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야기를 거는 등의 내용도 상당수 있는바, 유부남인 원고가 미혼의 젊은 여성인 망인에게 이와 같이 사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은 SNS의 범용성(汎用性)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 ② 특히 원고가 망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2013. 4. 6.) 오늘은 누구와 만나는가?? ○○이가 너 남자랑 약속 있다고 하네”, “(2013. 4. 7.) 아직 안 왔네. 약속 없으면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2013. 4. 14.) 보고 싶구나”, “(2013. 4. 17.) 오늘 밤 뭐하니?”, “(2013. 4. 19.) 잘 나온 사진 한 장 보내봐라”, “(2013. 4. 21.) 남자친구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해.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거라. ... 늦게 와도 되니까 열심히 알지”, “(2013. 4. 25.) 보좌관 중위 때 무척 예뻐구나. 페이스북 하다가 보좌관 사진을 봤는데”, “(2013. 10. 9.) 사무실이야. 보좌관 보고 싶어서”라고 하거나, 나아가 망인에게 저녁에 약속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거나(2013. 3. 3., 2013. 3. 16., 2013. 4. 15., 2013. 4. 29., 2013. 10. 12.), 망인에게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나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였는바(2013. 4. 7., 2013. 6. 14., 2013. 7. 31., 2013. 9. 11., 2013. 9. 18., 2013. 10. 10., 2013. 10. 14.),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비록 직접적인 성적 발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망인으로서 원고로부터 받는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임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나. 명예훼손의 성립 및 위법성의 조각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망인은 이를 못 이겨 자살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는 육군 고위직 장교인 원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 여군인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지적함으로써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보도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실이 전체적으로 그 진실성이 인정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작성·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작성·보도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1-5〉 대상기사 생략

〈별지 2-1~2-5〉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유서 전문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6168 정정보도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중앙일보
3. B
4. 주식회사 채널에이
5.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6. C
7. 주식회사 뉴스1
8. D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32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7.

판 결 선 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에 발행되는 조선일보 A31면의 좌측 상단에 [별지] 2-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사설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해당 면 전체의 1/6 크기의 상자기사 형태로 게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에 발행되는 중앙일보 14면 좌측 중단에 [별지] 2-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해당 면 전체의 1/8 크기의 상자기사 형태로 게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부터 7일 동안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http://www.ichannela.com/>)의 초기화면과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 2-3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활자체 및 활자크기의 [별지] 2-3 기재 정정보도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부터 7일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http://www.mt.co.kr/>)의 초기화면과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 2-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활자체 및 활자크기의 [별지] 2-4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게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가장 가까운 월요일부터 7일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http://news1.kr/>)의 초기화면과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 2-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활자체 및 활자크기의 [별지] 2-5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게재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9쪽 10째 줄 처음부터 11째 줄의 “각 기재에”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그러나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4, 7, 8, 을나제1 내지 4호증, 을나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 제1심 판결문 12쪽 6째 줄부터 13쪽 6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1-5〉 대상기사 생략

〈별지 2-1~2-5〉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유서 전문 생략

수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624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30. 선고 2015나2035964 판결(확정)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람은 그 부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B

[사실관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오산인터넷뉴스>에서는 2013년 12월 23일자 「웃음거리 된 ‘노동자 죽음’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당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가 강연회에서 “죽어도 꼭 여기에 와서 죽어. 다른 곳에서 죽지 않고 꼭 여기 와서 죽어”라고 말하여 터널작업 도중에 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의 죽음을 희화한 것처럼 보도했다. 또 원고가 강연이 끝난 후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외제 승용차가 아닌, 국산 관용차량을 타고 갔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가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다는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부분으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1) 정정보도청구 시 부존재 사실의 증명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다.

(2) 정정보도청구의 대상 사실이 지엽말단적인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웃음거리 된 노동자 죽음”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지 못할망정 웃음거리로 발언한 지역의 노동정책 주관자인 원고와 이에 웃음소리로 반응한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이 사건 기사의 중요 부분이고, “원고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부분은 기자와 원고가 헤어지는 경위를 설명하는데 불과하면서, 고위

공직자인 원고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탔다는 점에 대한 추가 비판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합62421	정정보도청구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오산인터넷뉴스(www.osinews.co.kr)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3. 4. 29.부터 2014. 2. 26.까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인 오산인터넷뉴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13. 12. 18. 오산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송년만찬회(이하 '이 사건 행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주제로 강연(이하 '이 사건 강연')을 하였다.
- 다. 이 사건 강연에 참석한 오산인터넷뉴스 소속 기자 이00는 2013.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12. 23. 이를 오산인터넷뉴스 인터넷 사이트

(www.osinews.co.kr)에 게재하였다.

“죽어도 꼭~ 여기에 와서 죽어. 다른 곳에서 죽지 않고 꼭 여기 와서 죽어.”

순간 객석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비집고 나왔다.

(중략)

12월 18일 오후 6시 오산웨딩의 전당에서 오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송년 만찬회.

내빈으로 참석한 원고가 2013년 여름 수서~평택 간 철도공사와 관련, 터널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부들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중략)

원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00명(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요청에 따라 정확한 사망자 수치는 밝히지 않는다).

2013년 들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원고는 위 발언에 앞서 00명 수치를 거론하며 “저 공사는 우리 것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죽었다”고 말했다.

(중략)

내심 추가 취재를 계획하고 행사장을 나오는데 원고가 앞서 걷고 있었다.

그는 “지청장님”하고 부르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었는지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이하 생략)

라. 한편 원고는 이00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4. 8. 22. 이00가 이 사건 기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9.경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 8~10, 12, 16, 19, 21~24호증, 을 1, 2,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정00, 이00의 증언, 고용노동부에 대한 2014. 11. 6.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초 오산인터넷뉴스를 피고로 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가 피고경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오산인터넷뉴스에서 B로 피고경정 또는 피고표시정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산인터넷뉴스라는 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자인 B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피고경정이나

당사자표시정정은 적법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건의 피고는 오산인터넷뉴스이다.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을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오산인터넷뉴스는 피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의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오산인터넷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오산인터넷뉴스에 대해 피고가 게재한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으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오산인터넷뉴스가 피고 적격이 없다는 지적을 하자 곧바로 피고정정신청을 통해 오산인터넷뉴스에서 현 피고인 B로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오산인터넷뉴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오산인터넷뉴스를 운영하는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올바른 피고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강연에서 피고가 게재한 기사와 같이 “죽어도 꼭 여기에 와서 죽어. 다른 곳에서 죽지 않고 꼭 여기 와서 죽어.”, “저 공사는 우리 것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죽었다.”라는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강연을 마치고 나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진실하지 않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을 구한다.

나. 판단

-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 갑 1~5, 6, 8~11, 19, 20, 23호증의 기재, 증인 정00의 일부 증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대한 2014. 6. 1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강연에 대한 아시아 투데이와 수원일보의 기사는 원고의 강의로 기업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사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강연 당일 이 사건 강연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기사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르고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강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게재된 점, ③ 이 사건 강연에 참석한 55명(원고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인 유00 제외) 중 53명이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점, ④ 원고가 유00와 함께 이△△이 운전하는 아반떼 00두0000호 공용차량을 타고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강연에 참석한 김00가 이 사건 강연 당시에 원고의 강연 내용을 메모(갑9호증)하였는데 그 메모에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메모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오산상공회의소 직원인 이□□이 원고가 이 사건 강연을 마치고 유00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확인서(갑10호증)를 작성해 준 점, ⑦ 000 정육식당 대표 최00이 이 사건 행사 당일 저녁 7시경 원고를 포함한 노동청 직원 3명이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6, 17호증)를 작성해 준 점, ⑧ 박00이 000 정육식당 주차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강연을 마치고 타고 갔다고 주장하는 은색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해 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갑11호증의 2)를 작성해 준 점, ⑨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정00와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적이 없고, 원고가 직원과 함께 은색 또는 재색 아반떼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와 갑 24호증, 을 2, 5, 7, 8호증의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 증인 정00의 일부 증언, 고용노동부에 대한 2014. 11. 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강연에 참석한 오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은 이 사건 강연의 내용이 기

억이 잘나지 않지만 당시 산업재해에 대해 안전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강연 당시 수서-평택간 KTX 철도 공사의 여러 공구 가운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 지청 관할 구역에서만 2명이 사망하였다는 발언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강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한 발언을 한 점, ③ 이 사건 강연에 참석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이00는 원고가 이 사건 강연 도중에 수서-평택간 KTX 철도 공사 작업 과정에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실을 두고 “저 공사는 우리 것도 아닌데 여기 와서 죽었다.”, “죽어도 꼭 여기에 와서 죽어. 다른 곳에서 죽지 않고 꼭 여기 와서 죽어.”라고 말하자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이 사건 강연을 마친 후 원고가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다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물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그 전후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00는, 기사는 일반기사(스트레이트 기사), 집중 취재 후 작성되는 르포, 취재 후 기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관점을 부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는 기자수첩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 강연 당일 작성된 기사는 일반기사이고 이 사건 기사는 기자수첩으로 게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박00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긴 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 조사 결과 사고 일시가 2013. 12. 10.경이었고, 박00은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을 보지도 못한 상태로 원고가 불러준 대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고용노동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강연 참석자 대부분인 41명이 강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참석자 중 5명이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참석자 중 1명은 원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폄하하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유사한 발언을 하였다고 답변한 점, ⑦ 이 사건 강연 참석자들 대부분이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4호증의 2, 8호증)는 모두 원고가 미리 작성한 양식에 단순히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일자도 이 사건 강연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며, 참석자들은 대체로 오산시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상공인들로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었던 원고의 요청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점, ⑧ 이 사건 강연에 참석한 이00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19호증)도 2014. 8. 26. 작성되어 이 사건 강연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 ⑨ 증인 정00도 원고가 이 사건 강연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했으며, 원고의 이 사건 강연에서의 모든 발언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⑩ 원고도 스스로 외국인 노동자 사망과 산업재해에 대하여 강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김00의 메모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김00가 원고의 이 사건 강연 내용을 모두 메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⑪ 이00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이00이 이00를 말린 부분은 증인 이00의 증언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어떤 차량에 탑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⑫ 원고와 유00, 이△△이 2013. 12. 18. 저녁 7시경 000

정육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최00의 사실확인서(갑17호증)도 이 사건 강연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4) 위와 같은 원고가 내세우는 자료들의 작성자, 작성 시기, 작성 경위 및 내용과 기사 작성자인 이00의 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연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강연을 마친 후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다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방식 및 위치, 기간 등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2035964 정정보도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6242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
판 결 선 고	2015. 12.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오산인터넷뉴스(www.osinews.co.kr)에 별지1 기재 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의 “있는 점” 다음에 “(당시 피고가 ‘꼬오옥’으로 발음하여 ‘꼭~’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기사 제목이 “웃음거리 된 노동자 죽음”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지 못할망정 웃음거리로 발언한 지역의 노동정책 주관자인 원고와 이에 웃음소리로 반응한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이 사건 기사의 중요 부분이고, “원고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부분은 기자와 원고가 헤어지는 경위를 설명하는데 불과하면서, 고위공직자인 원고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탔다는 점에 대한 추가 비판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위와 같은 원고가 내세우는 자료들의 작성자, 작성 시기, 작성 경위 및 내용과 기사 작성자인 이00의 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연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엽말단적인 부분으로서 이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방식 및 위치, 기간 등 생략

계좌추적 등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보도를 넘어 단정보도 할 수는 없다

- 원고 : 정종해 외 1명
- 피고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신문사는 2013년 10월 18일 <서울신문>과 그 홈페이지에 「임기 막판 굶아 터진 단체장 전횡」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관매직·상납비리가 봇물치고 있으며 검찰이 보성군수와 그 부인인 원고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고,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검찰은 원고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제보자의 주장을 단순 풍문으로 판단하여 2014년 1월경 무혐의 종결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신문사는 검찰에 투서가 접수되어 원고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사실을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추측성 투서에서 비롯된 내사 소식을 전하며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며 기사의 진실성 및 상당성을 부인하여 피고 신문사에 정정보도 및 피고들이 공동으로 총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나12917).

[판결요지]

(1) 기사의 허위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매관매직·상납비리 봇물’ 등 제목 및 ‘민선 5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자치단체장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는 본문과 함께 원고 정종해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치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이 원고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한 이유는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또는 정황을 발견하기 위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내사가 진행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내사사실을 ‘금품을 받은 정황’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처럼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2) 상당성 인정 여부

- ① 검찰은 ‘검찰에 투서가 접수되어 원고들, 해당 사무관 승진자 및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의 인사 비리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제보자의 주장은 단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하며 원고들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투서는 추측성 투서에 불과하고, 위 투서에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특별한 정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②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공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넘어서 검찰에 접수된 투서의 내용이나 그때까지의 내사 결과에 관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고, 원고 정종해의 비서실장 안00에게 전화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밖에 듣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 B가 원고들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10343 정정보도 등
원	고	1. 정종해 2. A
피	고	1.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2. B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에 대한 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서울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의 좌측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 3 기재 기사의 ‘임기 막판 굶아 터진 단체장 전횡’이라는 제목과 동일한 활자로, 본문은 별지 3 기재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로 게재하고,
 - 나.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co.kr) 사회란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 제목 및 본문을 별지 4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로 게재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가 제2항 기재 각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정종해에게 10,000,000원,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0. 1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의 좌측 상단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3 기재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제1항과 동시에 인터넷 신문 ‘www.seoul.co.kr’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4 기재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시하라.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가 위 기간 안에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 정종해는 2006.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제42, 43대 전라남도 보성군 군수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 A는 원고 정종해의 아내이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지 ‘서울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B는 피고 신문사 소속 기자이다.
- 나. 피고 신문사는 2013. 10. 18. 서울신문 제1면에 피고 B가 작성한 ‘임기 막판 끌어 터진 단체장 전횡’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고, 같은 날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co.kr, 이하 같다)에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는 아래와 같은 제목과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제목]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매관매직·상납비리 봇물
임기 막판 끓아 터진 단체장 전횡
기초단체장 비리 대해부

[본문]

민선 5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자치단체장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정종해(66) 전남 보성군수와 부인, 중간 브로커 등 모두 40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에 나섰다. 사무관 승진(대상)자 20여 명 가운데 몇몇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정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시청 안에 검찰 수사와 관련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직원들이 쉬쉬하면서 눈치만 보고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어수선했다. 이번 내사는 사무관 승진에서 떨어진 군 직원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순천지청으로 이송되면서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피고 신문사는 2013. 10. 19.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자체 매관매직, 민주주의 뿌리가 썩고 있다’는 제목의 별지 5 기재 사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사실은 아래와 같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

검찰이 최근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종해 전남 보성군수와 부인 등 40여 명에 대해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고 하나 각 지역사회에선 매관매직이 비단 이곳만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신문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피해자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00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정종해는 2013. 10. 18. 비서실장 안00로부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보고받고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정종해는 2013. 10. 18.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있음을 알았고, 원고 정종해의 아내인 원고 A도 같은 날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되며, 이에 어긋나는 원고 A의 본인신문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이 위 2013. 10. 1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소 중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제소 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¹⁹⁾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사의 허위 여부

- 1) 위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매관매직·상납비리 봇물’, ‘임기 막판 굶아 터진 단체장 전횡’, ‘기초단체장 비리 대해부’라는 제목 및 ‘민선 5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자치단체장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는 본문과 함께 원고 정종해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치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검찰은 2014. 1. 3. ‘검찰에 투서가 접수되어 원고들, 해당 사무관 승진자 및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의 인사 비리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제보자의 주장은 단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하며 원고들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 2) 피고 신문사는 검찰에 투서가 접수되어 원고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사실을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찰에 접수된 투서에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나, 검찰이 ‘제보자의 주장은 단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하며 원고들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투서는 추측성 투서에 불과하고, 위 투서에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특별한 정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원고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한 이유는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또는 정황을 발견하기 위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내사가 진행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

19) 원고들은 피고 신문사에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내사사실을 '금품을 받은 정황'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처럼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신문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피고 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1) 위법성 조각의 요건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2) 공익성 인정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선출직 공무원인 원고 정종해의 인사 업무 비리 여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기사의 공익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진실성 인정 여부

피고 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에 관한 피고 신문사의 입증 역시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았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신문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당성 인정 여부

피고 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00의 일부 증언,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13. 10. 18. 무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대검찰청

에 접수된 투서를 이유로 원고들, 해당 사무관 승진자 및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 B는 2013. 10. 16. 및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공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여 원고들에 대한 계좌추적이 진행되었는지 질문하고, 2013. 10. 16. 원고 정종해의 비서실장 안00에게 전화하여 원고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는지 질문한 사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하루 전인 2013. 10. 17. ‘검찰이 전남 모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 승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00의 일부 증언,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신문사가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검찰은 2014. 1. 3. ‘검찰에 투서가 접수되어 원고들, 해당 사무관 승진자 및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의 인사 비리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제보자의 주장은 단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하며 원고들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투서는 추측성 투서에 불과하고, 위 투서에 원고들이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특별한 정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② 피고 B는 2013. 10. 16. 및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공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넘어서 검찰에 접수된 투서의 내용이나 그때까지의 내사 결과에 관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고, 2013. 10. 16. 원고 정종해의 비서실장 안00에게 전화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밖에 듣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 B가 원고들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 ③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2013. 10. 17. 보도한 인터넷 기사는 이 사건 기사와 달리 ‘혐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원고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것처럼 의심의 수준에 있는 단계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다.

5) 소결

피고 신문사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피고 신문사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신문사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라.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피고 신문사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신문사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기사를 정정하여 보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신문사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글자 크기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분량, 게재 위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신문과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정하고, 글자 크기나 게재 위치 등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한편 피고 신문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한 간접강제금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문사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를 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및 보도하는 방법으로 피고 신문사의 위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적시 내용, 보도 방법(내사 중인데도 원고 정종해의 실명을 거론하여 원고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국지인 서울신문 1면에 머리기사로 게재함), 유포 범위, 보도 후 정황, 이 판결에서 명예회복의 조치로서 정정보도를 명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정종해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정종해에게 10,000,000원,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기사 게재일인 2013. 10.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들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소 중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1. 제목 : 정정보도문
2. 본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2013. 10. 18. 서울신문 제1면 좌측 상단과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기 막판 굶아 터진 단체장 전횡’이라는 제목하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정종해(66) 보성군수와 부인, 중간 브로커 등 모두 40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에 나섰다. 사무관 승진(대상)자 20여 명 가운데 몇몇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라고 게재하여 마치 정종해 (전)보성군수와 그 부인이 승진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가 내사한 결과 정종해 (전)보성군수와 부인은 승진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어 2014. 1. 3.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되었는바, 이에 정정보도 합니다.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4〉 대상기사 생략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2444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47716 판결(확정)

원고의 주도적 변론으로 이끌어 낸 소송 결과를 피고의 업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다

- 원고(상고인) : A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외 2명

[사실관계]

변호사인 원고는 00병원 세금 추징 관련 항소심 소송대리를 맡아 네 차례의 변론을 수행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2012년 11월 2일로 고지되었는데 00병원은 변론종결 직후 피고 B가 속한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고, 피고 B는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보충 및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7일 00병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 언론사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B를 인터뷰한 뒤 「“패색 짙은 소송 뒤집은 병원계 구세주”」 제하의 기사 등에서 00병원이 1심 패소 후 피고 B가 속한 새로운 로펌을 선임해 판결을 뒤집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원고는 자신이 항소심 변론을 주도했음에도, 피고 언론사들이 마치 피고 B가 승소를 이끈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언론사들이 피고 B의 역할을 부각하여 보도한 것은 취재·편집의 자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464). 이에 원고가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의 기사 내용은 허위로 보고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와 피고 B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

(1) 원고가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에서 원고가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00병원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한00 변호사였음이 명백함에도 마치 피고 B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것처럼 보도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이 피고 B의 업적으로 허위 보도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허위보도 여부

피고 데일리메디는,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함께 여러 차례 참고서면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다소간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 변론종결 후에 소송위임장과 함께 변론재개신청서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참고서면 형식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항소심판결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 관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데일리메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4나24442 정정보도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2.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3.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7346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3.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피고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데일리메디 홈페이지(www.dailymedi.com) 초기화면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은 초기화면 우측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 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B와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B가 각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와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는 이 판결 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법률신문 제2면 중간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인터넷 법률신문 초기화면 상단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는 이 판결 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인터넷 데일리메디 초기화면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와 연대하여 2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와 주식회사 데일리메디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중 정정보도문([별지2] 내지 [별지4])의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돈 지급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2쪽 16째 줄부터 6쪽 2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13째 줄의 “별지3”을 “별지5”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14째 줄의 “2013. 8. 2.”을 “2013. 7. 26. 및 2013. 8. 2.”이라고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2째 줄의 “별지4”를 “별지6”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6쪽 첫째 줄의 “갑 제1, 2, 10호증(가번호 포함)의”를 “갑 제1, 2, 5, 10호증(가번호 포함)의”로 다시 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법률신문사, 데일리메디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릴 문제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1) 00학원은 이 사건 관련 1심사건에서 패소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이 사건 관련 1심사건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반면, 피고 B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비로소 이 사건 관련 사건에 관여하였고, 참고서면만 몇 차례 제출하였을 뿐, 실제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률신문사는 마치 피고 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관련 사건의 변론에 참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데일리메디 또한 ① 마치 피고 B가 패소한 이 사건 관련 1심사건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승소하도록 하였으며, ② 00학원이 수차례 천거 끝에 피고 B를 낙점하여 선임하였으며, ③ 법정에서 필요한 멘트도 수십 번 수정했고 그의 논리에 재판부도 공감을 표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실제로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00학원에 유리한 판결을 이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법률신문사는 [별지2], [별지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피고 데일리메디는 [별지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할 의무가 있다.

- 2) 또한 피고 B는 피고 법률신문사, 데일리메디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담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고, 피고 법률신문사, 데일리메디는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법률신문사 및 피고 데일리메디와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 1) 이 사건 각 기사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피고 B가 그 재판과정에서 했던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원고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
- 2)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에 다소간 수사적 과장이 있긴 하나, 피고 B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법무법인 00의 소속 변호사로서 00학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판부에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관련 상고심사건에서도 00학원을 대리하여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승소한 항소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확정 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다.

4. 정정보도 청구

가. 피고 법률신문사

-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 2) 먼저,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는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를 소개하며, 그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피고 B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 나) 위 기사는 “승소판결을 이끈 B 변호사”라는 제목을 사용하긴 했으나 위 제목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00학원을 대리하여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의 승소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표현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 중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이 사건 관련 상고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의 아래에 연이어 게재되었는바, 이와 같은 기사의 위치나 편집 형태, 위 기사에는 피고 B를 소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위 기사의 제목은 이 사건 관련 상고심사건에서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결론을 유지하는데 관여한 피고 B의 역할을 부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다)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 중 “변론 준비과정 중 특히 역점을 뒀던 점은?”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본다.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변론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위 기사는 “변론 준비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위 표현이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피고 B가 변론을 참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오인하게 하는 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피고 B에게 포괄적으로 재판 준비과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용어를 혼동하거나 오인하여 “변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 B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선고기일도 한 차례 연기되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변론이 재개되면 준비서면으로 진술할 목적으로 전통 상례에 관한 책들 및 관련 법령들을 정리하여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B가 변론을 준비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법률신문사에 대한 정보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데일리메디

- 1)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 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 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에는 원고를 지목하여 비판 또는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원고가 특정되어 언급된 바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의 주된 내용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함과 아울러 “패색 짙은 소송 뒤집은 병원계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00병원은 이 사건 관련 1심사건에서 패소하였으나 법무법인 00 소속의 피고 B가 00병원을 대리하여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을 수행한 결과 위 항소심사건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인 원고와 한00 변호사인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변론종결 후에야 법무법인 00 소속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에 관여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에서 원고가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00병원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한00 변호사였음이 명백함에도 마치 피고 B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것처럼 보도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이 피고 B의 업적으로 허위 보도됨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직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허위 보도 여부

가) ① 부분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 내용 중 “패색 짙은 소송 뒤집은 병원계 구세주”라는 제목과 함께 이 사건 관련 1심사건에서 패소한 사건을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00병원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인 원고와 한00 변호사인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변론종결 후에야 법무법인 00 소속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변론에 관여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 중 위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데일리메디는,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함께 여러 차례 참고서면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다소간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 변론종결 후에 소송위임장과 함께 변론재개신청서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참고서면 형식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항소심판결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 관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데일리메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데일리메디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부분 기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②, ③ 부분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 중 “제1심에서 패소한 00학원이 수차례 천거를 받은 끝에 법무법인 00의 B 변호사를 낙점하였다.”는 부분과 “법정에서 필요한 멘트로 수 십번을 수정했다. 산고 끝에 개발된 그 논리에 재판부도 공감을 표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변론종결 이전에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데일리메디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부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3)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보도 방법은, 이 사건 기사 중 피고 데일리메디가 허위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분량, 전체 기사의 내용 및 표현 방법, 게재 위치, 위 가)항과 나)항은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변론종결 이전에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의 내용이 공통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가 구하는 [별지4] 정정보도 요구문을 [별지1] 정정보도문의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되, 제목, 본문의 글자 크기, 활자체, 간접 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손해배상금 청구

가.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와 관련한 청구

원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법률신문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와 관련한 청구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는 피고 데일리메디의 기자 박00이 피고 B와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위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고 데일리메디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 데일리메디 역시 위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데일리메디, B는 위 기사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게재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데일리메디,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데일리메디,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법률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등에 따른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목

2013. 7. 26. 및 2013. 8. 2.자 “패색 짙은 소송 뒤집은 병원계 구세주, 00병원 장례식장 부가세 승소 B 변호사”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2. 내용

데일리메디는 위 기사에서 장례식장 음식물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법무법인 00 소속의 B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측 대리인으로 수임하여 승소하였

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000의 A 변호사와 학교법인 00학원의 한00 변호사가 수임하여 변론하였고, 법무법인 00 소속의 B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후 위임장과 참고서면만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4〉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5, 6〉 대상기사 생략

3심 판결문

사	건	2015다47716 정정보도 등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2.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3.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24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 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앵커가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은 넓은 의미의 인과관계를 의미할 뿐, 원고 조합원들이 직접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원고(피상고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5월 17일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피고 소속 권재홍 앵커가 원고 소속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당시 권재홍 앵커와 노조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에 당황한 권재홍 앵커가 발을 헛디뎈 충격을 입었음에도 마치 노조원들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2,000만 원을 명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이에 양 측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서울고등법원 2013나35049) 이후 피고가 상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었다.

심리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을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권재홍 앵커의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법원은 2016년 2월 18일 반론보도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1846) 이후 양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과정에서’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도에 원고의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폭행하였다는 등 원고의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권재홍의 신체에 직접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표현은 없는 점, ‘과정에서’라는 표현은 통상 넓은 의미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점, 배현진 앵커의 보도 중에 방영된 영상은 다수인이 이 떠밀려 이동하거나 원고의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그것이 원고의 조합원들이 극히 폭력적이거나 과격하다는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4다28121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35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에게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와 구별되고,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한편 텔레비전 방송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판단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파업 중이던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2. 5. 16. 22:00경 피고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피고 회사의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권재홍의 퇴근을 저지하면서 ‘권재홍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권재홍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 나.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2. 5. 17. 방송된 〈9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 배현진 앵커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이 방영되었다.

〈보도 내용〉

- 정연국 앵커 :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배현진 앵커 :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움쭉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 권재홍은 2012. 5. 18.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가 2012. 5. 1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권재홍은 ‘2012. 5. 정신적 충격 후 두통, 어지럼증, 요통, 불안, 불면이 발생하여 2012. 5. 18.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후 2012. 5. 19. 퇴원하였고, 임상적 추정에 의한 그의 질병명은 ‘(주상병) 긴장성 두통, (부상병) 옆구리통증, 상세불명부위, 현기증, 불안장애’였다.

라. 권재홍이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퇴근 저지를 받을 당시 권재홍은 피고 회사 본사 건물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할 때까지 십여 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이 사건 보도 당시 방영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은 권재홍이 승용차에 탑승한 후에 원고의 조합원들과 청원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이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보도에 원고의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폭행하였다는 등 원고의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권재홍의 신체에 직접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표현은 없는 점, ‘과정에서’라는 표현은 통상 넓은 의미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점, 배현진 앵커의 보도 중에 방영된 영상은 다수인이 떠밀려 이동하거나 원고의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그것이 원고의 조합원들이 극히 폭력적이거나 과격하다는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

력을 행사하였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은 ‘원고의 조합원 수십 명이 권재홍의 퇴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외중에 권재홍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보도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 일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고의 조합원 수십 명이 권재홍의 퇴근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권재홍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보도에 실제로는 원고의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그들 사이에 작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나 배해진 앵커가 ‘차량 탑승 도중’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에게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재홍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하여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의 세부적 경위에 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그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와 대립되는 원고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여 줄 것, 즉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을 넘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을 ‘원고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보고, 이를 허위의 보도라고 판단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이나 언론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의 확정, 언론보도의 진실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카합181 판결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언론사가 소명하지 못한 다면 반론보도의무는 발생한다

- 채권자 : A 외 2명
- 채무자 : 재단법인 씨비에스 외 1명

[사실관계]

2015년 2월 23일 <CBS> 뉴스 프로그램 「어느 가정의 죽음..이단 갈등 탓?」 제목의 방송과 <노컷뉴스> 「설 연휴 문정동 남매父 극단적 선택...이단 종교 갈등 때문?」 제목의 기사에서는 채권자들의 남편 혹은 아버지였던 망인이 이단에 빠진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고민과 걱정 끝에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망인의 자살 이유가 보도 내용과 다르며 자신들은 평소 망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 등의 반론 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반론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²⁰⁾

[판결요지]

□ 반론보도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채권자들이 이미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채권자들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하피모 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2015. 2. 16. 하피모의 회원이자 친구인 김00과 사이에 ‘망인이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힘들다.’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한 점, 망인이 2015. 2. 16. 하피모와 관련된 00000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사망의 원인 내지 동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고 나아가 명백해졌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이에 채무자들이 항고했는데 2심 법원에서 2015년 10월 12일 기타 사유로 판결이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2015라1357). 해당 판결문은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수록하지 못했다.

판결문

사 건	2015카합181 반론보도 청구
채 권 자	1. A 2. B 3. C
채 무 자	1. 재단법인 씨비에스 2.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채무자 재단법인 씨비에스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씨비에스 뉴스(CBS News)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1-1] 반론보도문(인용)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씨비에스아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 게재되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적당한 위치에 [별지1-2] 반론보도문(인용) 기재 내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원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그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그 이후로는 원보도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원보도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3. 만일 채무자들이 제1, 2항 기재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채무자는 그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채권자들에게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채권자들이 청구한 반론보도문은 [별지2-1, 2-2] 기재 각 반론보도문(청구)이고, 반론보도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채권자 A는 망 이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내이고, 채권자 B, C는 미성년자로서 채권자 A와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 2) 채무자 재단법인 씨비에스(이하 ‘채무자 씨비에스’라고 한다)는 CBS TV라는 방송매체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채무자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2. 21.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2015. 2. 19.경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채무자들의 보도

- 1) 채무자 씨비에스는 2015. 2. 23. CBS TV의 씨비에스 뉴스 프로그램에서 『어느 가장의 죽음.. 이단 갈등 탓?』라는 제목 하에 방송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
- 2) 채무자 씨비에스아이는 2015. 2. 23. 노컷뉴스에 『설 연휴 문정동 남매父 극단적 선택...이단 종교 갈등 때문?』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3]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이 사건 방송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도 함께 게재하였다.

라. 보도 내용

이 사건 방송 및 기사는 망인이 이단에 빠진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이로 인해 고민과 걱정 끝에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는 취지인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느 가장의 죽음..이단 갈등 탓?』내지 『설 연휴 문정동 남매父 극단적 선택...이단 종교 갈등 때문?』
- ② 이단에 빠진 며느리(채권자 A)가 아들(망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이혼까지 요구했었다.
- ③ 취재결과 이씨(망인)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모단체에서 9년 정도 활동해온 아내(채권자 A)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2. 반론보도청구권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법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언론사 등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나. 반론보도의무의 발생

- 1)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이 사건 방송 및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망인이 자살하게 된 원인은 이 사건 방송 및 기사와 같이 이단적인 종교에 심취한 아내가 하나님의교회를 반대하는 망인을 아이들로부터 소외시켜 망인이 설 명절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일 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망인이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일명 하피모)의 전(前) 대표인 이00 목사가 운영하는 00000교회 겸 이단상담소에서 발생한 회원 간의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전혀 아니어서, 채권자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채권자들이 이미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채권자들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하피모 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2015. 2. 16. 하피모의 회원이자 친구인 김00과 사이에 ‘망인이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힘들다.’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한 점(다만 채무자들은 이 법원에 ‘실제 성폭행당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망인이 2015. 2. 16. 하피모와 관련된 00000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사망의 원인 내지 동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고 나아가 명백해졌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의 방법 및 간접강제

- 1)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5항, 제6항, 제27조에 의하면, 언론사 등이 하는 반론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반론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하며, 언론사 등이 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법원은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적힌 반론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및 기사의 내용, 분량, 표현방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 씨비에스에 대하여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별지 1-1] 기재와 같이, 채무자 씨비에스아이에 대하여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별지 1-2] 기재와 같이 각 수정하여 방송 내지 게재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활자 크기와 게재 방법 및 간접강제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채권자들은 채무자 씨비에스아이에 대해 반론보도문이 원보도가 노출됐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하라는 청구도 하나, 원보도가 위 포털사이트에 노출되었다고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채권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 반론보도문 (인용)

본 방송은 지난 2015. 2. 23. ‘CBS News’ 프로그램에서 “어느 가장의 죽음..이단 갈등 탓?”이라는 제목으로, 사망한 고(故) 이모씨가 이단에 빠진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이로 인해 고민과 걱정 끝에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1. 이모씨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다.

2. 이모씨와 그 아내가 앞서 방송된 내용과 같이 9년 간에 걸쳐 갈등을 겪은 사실은 없고, 그 아내가 이모씨를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이모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이모씨가 2014년경 인터넷 카페 모임에 가입한 후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3. 이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모씨를 전혀 따돌린 사실이 없고 설 연휴에도 이모씨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다정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 단란한 일상을 보냈다.
- 이상은 이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의 반론 내용이었습니다. 끝.

〈별지 1-2〉 반론보도문 (인용)

본 언론은 지난 2015. 2. 23. “설 연휴 문정동 남애父 극단적 선택 ... 이단 종파 갈등 탓?”이라는 제목으로, 사망한 고(故) 이모씨가 이단에 빠진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이로 인해 고민과 걱정 끝에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1. 이모씨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다.
 2. 이모씨와 그 아내가 앞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9년간에 걸쳐 갈등을 겪은 사실은 없고, 그 아내가 이모씨를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이모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이모씨가 2014년경 인터넷 카페 모임에 가입한 후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3. 이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모씨를 전혀 따돌린 사실이 없고 설 연휴에도 이모씨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다정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 단란한 일상을 보냈다.
- 이상은 이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의 반론 내용이었습니다. 끝.

〈별지 2-1, 2-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3〉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합61499 판결

당사자 간 협의가 없었더라도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적절한 후속보도가 이루어졌다면 추후보도로써 효력이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연합뉴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10월 28일 <연합뉴스>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간 큰 원고」 제하의 기사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원고가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법원에 의해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혐의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이 사건 기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미 추후보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작성·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도중 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8505).

[판결요지]

(1) 당사자 협의 없이 이루어진 충분한 후속보도가 추후보도로써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후속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 경위와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언론중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원고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등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후속기사는 추후보도로써의 형식 또한 적절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그 기사가 보도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추후보도가 이루어져서 추후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후속기사가 추후보도로써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 위조된 판결문을 제출하였다가 위 소송이 각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과 아울러 실제로 원고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작성·배포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점,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그 진위여부를 원고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61499 추후보도문 게재 및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연합뉴스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목을 ‘추후보도문’이라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이를 클릭하면 별지1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1 추후보도문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고, 방송에 1회 보도하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관련 행정소송 등

- 1)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호로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11.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하고, 위 소송에서 선고,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10. 27. 서울행정법원 2011재구합55호로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재심사유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재판장

이 2009. 2. 11. 법정에서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그 다음날 서울행정법원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행정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2009. 2. 20.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은 위 원고측 소송대리인, 동대문세무서장 및 법원이 공모하여 재판장의 선고취지와 명백하게 달리 위조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재심소송’이라 한다).

- 3) 이 사건 재심소송 담당재판부는 심리 도중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판결문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이하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이라 한다)이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주문과 이유 부분에 내용상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에도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는 등 그 내용 및 형식상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4) 이 사건 재심소송 담당재판부는 2012. 10. 26.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5)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2. 10. 26. 이 사건 행정소송 및 재심소송의 경위,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의 오류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고를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의 위조, 행사 혐의로 직무상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나. 피고의 관련 기사 보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의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12. 10. 28.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사회면에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간 큰 원고’라는 제목으로, 법원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A씨(원고)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 1) 서울행정법원은 2012. 10. 31.경 원고를 공문서인 판결문의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62호로 ‘원고가 2009. 7.경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문의 내용을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과 같이 변경, 작성함으로써 공문서인 판결문을 위조하고, 2011. 10.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서울행정법원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로 기소되어 2013. 12.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2) 그런데 원고의 항소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0호 항소심에서는 2014. 6.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는 바,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의 말미에 ‘견본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의 판결정보도 함께 제출한 점,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 이 사건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과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판결문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의사, 즉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위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방송에 별지1 추후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고, 극심한 정신상 고통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이후 후속기사로 그 취지를 보도함으로써 이미 추후보도를 하였고, 이 사건 기사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추후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판결문을 위조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판사를 속이려 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당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후 원고가 위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일응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7조에서 정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런데 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 7. 31.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에 ‘판결문 함부로 고쳤다가 홍역 치른 60대’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경위, 위 혐의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위 및 무죄의 이유 등을 상세하게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보도를 ‘이 사건 후속기사’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후속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 경위와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언론중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추후보도의 내용으로 요구되는 원고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등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언론중재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6항에서는 언론사 등이 하는 추후보도는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후속기사는 추후보도로서의 형식 또한 적절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그 기사가 보도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추후보도가 이루어져서 추후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언론중재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3항에 따르면 언론사 등은 청구인과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후속 기사를 보도할 때 원고와 협의를 한 바 없고, 위 보도내용은 추후보도로써 적절하지 아니하며, 추후보도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일간신문, 방송에도 게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언론중재법 조항은 언론사 등이 청구인의 추후보도청구 등을 받아들여 추후보도를 하는 경우 그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로부터 언론사 등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 그대로의 추후보도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후속기사에는 원고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와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후속기사가 추후보도로서 적법하지 않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을 뿐 피고에 의하여 기타 일간신문이나 TV 방송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추후보도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재판과정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므로, 일응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2) 우선,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심소송 중에 허위의 판결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판과정 및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의 판결 내용, 이 사건 재심소송의 경위,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의 허위성, 서울행정법원의 원고에 대한 고발경위 등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비록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판결문을 ‘위조’하였다는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실 기재라기보다는 판결문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있는 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 위조된 판결문을 제출하였다가 위 소송이 각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과 아울러 실제로 원고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작성·배포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점,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그 진위여부를 원고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서울행정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도자료에는 원고의 성(姓)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원고제출 판결문이 판사가 작성한 진정한 판결문이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고, 다만 원고에게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기사 보도 시점으로부터 1년 반 이상 경과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생략

〈별지 2〉 대상기사 생략

〈별지 3〉 이 사건 후속기사 생략

제2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5225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8030 판결

‘중복’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이 아니며 당사자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다

- 원고(항소인) :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외 1명

[사실관계]

2013년 5월 6일 생방송으로 방영된 채널A 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는 사회자와 출연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원고가 친북인사들을 비호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북세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중북세력’이라 지칭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방송프로그램 원본의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사실이며 중북세력이라는 표현 또한 이념논쟁의 일환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의 항소로 개시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중복’이라는 표현은 당사자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이며 원고가 중북세력이라는 피고 측 방송 내용에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있고 친북인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왜곡시켰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원본 삭제와 함께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6다206949).

[판결요지]

(1) ‘중복’이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중복’이라는 표현을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2)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의견을 진술하면서 그 근거(base)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그 근거 사실이 부정확(incorrect) 또는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assessment)에 오류가 있다면(erroneous), 그러한 의견 진술은 허위사실의 주장(false assertion of fact)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의 정치투쟁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 등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과격하고 불법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였거나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 ‘중복’이라는 표현이 단지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의 중복세력이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확 또는 불안정한 근거사실을 들면서 원고를 중복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3가합522584 정정보도 등
원	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피	고	1. 주식회사 채널에이 2. 조영환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 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하는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 시작 첫 화면 상단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8급 크기의 명조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 나.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일 이내에 채널에이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와 ‘김광현의 탕탕평평’ 홈페이지(<http://tv.ichannela.com/program/sisa/tangtang/concept.htm>)의 각 첫 화면 상단에 위 가항 기재 크기 및 종류의 활자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시하며,
 - 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2013. 5. 6.자 ‘김광현의 탕탕평평’의 원본 방송프로그램 중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에서 허위보도로 인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원본방송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전 제3자에게 위 방송프로그램이 계약상 배포되었을 경우 그 제3자에게 정정보도사실을 통지하고, 정정보도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라.
3. 만일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가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제2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언론민주화를 목표로 1984. 12. 19.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에이’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2. 12. 24.부터 2013. 10. 8.까지 채널에이를 통해 방송하였다.
- 3) 피고 조영환은 ‘중북좌익척결단’이란 단체의 공동대표이다.

나. 피고 채널에이의 2013. 5. 6.자 방송

- 1) 피고 조영환은 2013. 5. 6.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하여 사회자 김광현의 진행 하에 강길모와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고, 피고 채널에이는 방송화면 좌측 상단에 '긴급 진단, 종북세력 5인방'이란 문구를 띄우고, 배경화면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사진을 띄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과정을 생방송으로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 2) 이 사건 방송은 사회자 김광현의 질문에 대해 출연자인 피고 조영환과 강길모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사회자와 출연자들의 발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2 방송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고, 그 중 중요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김광현

- ① 종북이란, 북한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외교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이러한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② 종북좌익적결단의 조영환 공동대표와 선진화시민행동 강길모 공동대표와 함께 종북의 실체와 종북세력의 구체적 위협성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다.

나) 피고 조영환

- ① 종북좌익 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론이라는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 ② 민연련(원고)을 상징하는 사람이 최민희씨라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최민희가 약 20년 정도 원고를 이끌어왔다.
- ③ 원고는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김일성 정신으로 투쟁하자'는 글을 썼던 동국대 교수 강정구,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 받은 송두울을 비판하는 사람 언론을 비판하였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였다. 처음에 우리가 종북세력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전·선동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선전·선동을 원고가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원고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④ 우리가 종북세력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 때, 원고는 그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국정원장이나 검찰이라면 원고가 왜 줄기차게 송두울을 보호하고 강정구를 보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지 수사를 하겠다.
- ⑤ 전교조에도 한국진보연대, 원고와 같이 '세뇌'를 하는 사람이 있다.
- ⑥ 우리민족끼리에 지령이 떨어지면 남한 종북단체나 종북 선전선동 수단들이 짝 변형시켜서 사회운동으로 성명도 나오고 사회운동까지 딱 나오니까. 우리는 저 우리민족끼리를 통제하고 있는 북한 통전부 225국이 바로 남한 종북세력의 청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다) 강길모

- ① 종북은 보편적으로 ‘북의 김씨 권력에 추종하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② 지금 종북세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당장 현실적으로 안보상의 위협도 있고 또 종북 인사들에 의해서 우리 국가기밀이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 ③ 양식있고 양심적인 동종의 어떤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직군에 맞춰진 여러 가지 단체와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중조직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프락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그 대중조직에서 해계모니를 장악하거나 그 대중조직의 핵심적인 노선과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원고를 종북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고, 다만 원고 내부에 종북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대한민국 종북세력들을 하나로 묶는 비밀지하 지도부나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남한의 모든 적화를 위한 움직임과 조직들은 궁극적으로 북한 권력의 통제를 받고 있다.
- 3) 피고 조영환과 강길모가 원고에 대하여 발언하는 동안 이 사건 방송의 화면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5인방>,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자막이 띄워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① 원고가 강정구, 송두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전·선동하였다는 허위사실, ② 원고 내부에 주체사상과 혹은 김일성주의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핵심 종북인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각각 적시하였고, ③ 위와 같은 허위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종북세력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 2) 피고 채널에이도 이 사건 방송의 배경화면에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문구를 띄우고 북한 지도부의 사진을 게시하며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자막을 띄운 상태에서 피고 조영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사실들을 적시하게 하였다.
- 3)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

으므로,²¹⁾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의 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또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채널에이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삭제를 구한다.

나. 피고 채널에이의 주장

- 1)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자신 또는 중복좌익척결단의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고 채널에이의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막도 피고 조영환의 발언 내용을 요약게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채널에이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가 ‘중복세력’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공적 단체인 원고의 이념과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표현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 조영환의 주장

- 1)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과거 행적에 근거하여 원고가 중복성향의 단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을 뿐, 원고를 중복단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 2) 원고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중복성향인지에 관한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안으로서 피고 조영환이 원고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중복성향이라고 비판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표현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21) 피고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택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 3)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 4)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 5)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방송에서 사용된 ‘종북’이라는 표현의 의미

- 1) 이 사건 방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핵심적인 표현은 ‘종북(從北)’인바, ‘종북’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중 어떠한 범주의 성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떤 방송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 출연자들이 한 발언의 연결방법, 그 방송보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이 사건 방송에서 사용된 ‘종북’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방송의 사회자인 김광현은 이 사건 방송 초반에 ‘종북’이란 표현의 의미에 대해 ‘북한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외교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이러한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북의 실체와 종북세력의 구체적 위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발언하였다.

② 강길모도 ‘종북’의 의미를 묻는 김광현의 질문에 대하여 ‘종북’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게 된 계기를 설명한 후 ‘종북은 말 그대로 북의 김씨 권력에 추종하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가장 보편적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종북’의 의미를 정리하였고, 그 후 ‘남한의 모든 적화를 위한 움직임과 조직들은 궁극적으로 북한 권력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도 발언하였다. 또한 피고 조영환은 ‘종북단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 수 있는 선동구호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의 노선을 추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방송 말미에 ‘빨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③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운동권 진영이 1980년대 사회주의이론을 수용하면서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약칭 NL, ‘자주파’라고도 불린다)계열과 민주민주(People's Democracy, 약칭 PD, ‘평등파’라고도 불린다)계열로 분화되었고, 자주파 중 일부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였으며, 이들이 이른바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강길모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자주파와 평등파가 공존하던 민주노동당에서 평등파가 탈당하면서 남아 있던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여기에서 ‘종북’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내에 남아 있던 주사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방송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북한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세력을 추종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 내지 그러한 성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시청자들에게도 그러한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1)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① ‘원고는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김일성 정신으로 투쟁하자”라고 하였던 동국대 교수 강정구와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받은 송

두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였다’, ② ‘원고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였다’, ③ ‘원고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으므로 중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었다고 의심된다’, ④ ‘전교조나 원고나 한국진보연대도 마찬가지로 99%는 끌려가고, 그 99%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2)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① 원고가 강정구, 송두율을 비호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여 왔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제1사실’이라 한다)과 ② 원고 내부에 중북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고, 그들이 원고를 자신들의 중북활동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중북’이라는 용어가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세력을 추종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 내지 그러한 성향’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한반도에서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1, 2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중북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에 의하여 중북활동의 선전·선동 수단이 되었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 3)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조영환과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 직전에 주제를 이미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중북세력 5인방’으로 정하였고, 그 중 하나로 원고를 선정해 두었던 점, ②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 전에 이미 출연자들이 원고를 ‘중북 선동매체’라고 발언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다음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떤 보도나 기사들이 중북을 선동하는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준비해 두었던 점, ③ 이 사건 방송은 대립되는 입장을 가진 양측 출연자들이 상호 토론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예상된 질문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 사건 방송 제작진으로서 출연자들의 일방적 발언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방송화면 좌측 상단에 ‘긴급 진단, 중북세력 5인방’이란 문구를 띄우고, 배경화면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사진을 띄운 상태에서 피고 조영환이 원고에 대하여 발언하는 동안 <중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자막을 방송화면에 띄움으로써 피고 조영환의 발언이 더 자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채널에이 소속의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은 피고 조영환과 함께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이 사건 제1, 2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로서 가지는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 4) 나아가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중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에서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자막이 사용되어 그 자막만을 놓고

보면 마치 ‘원고가 중복세력이다’라는 사실이 적시된 것처럼 비취질 여지도 있으나, 통상 방송 자막은 방송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방송내용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막만을 따로 떼어 다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방송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강길모의 ‘광의의 중복단체들은 핵심 한 두 사람이 주사파 또는 김일성주의류의 소신을 갖고 있는 확실히되고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아주 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원고를 중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발언이나 피고 조영환의 ‘전교조나 원고나 한국진보연대도 마찬가지로 99%는 끌려가고 그 99%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보아 피고 조영환은 원고 내부에 중복 성향의 핵심인사가 소수 존재한다는 정도를 의도하였던 것이지, 원고라는 단체 자체 내지 그 구성원 다수가 중복성향이 라는 사실의 적시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1)항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중복세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제1, 2사실의 허위 여부

1) 이 사건 제1사실

원고가 강정구, 송두율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다시 비판하는 취지의 논평을 하였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됨은 아래 마.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들에 대하여 강정구·송두율을 ‘보호’한 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전·선동’한다는 다소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사실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아래 마.의 1)항에서 보는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 14, 15, 16, 18 내지 30호중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사실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①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구체적 정황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 ②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제2사실을 적시한 근거는 원고나 그 소속 인사들이 기존에 해온 아래 마.의 1)항 기재와 같은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 사건 방송에서는 그 중 이 사건 제1사실만을 이야기하였다), 원고가 아래 마.의 1)항 기재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모두 객관적 사실이고, 다만 그러한 활동이 원고 내부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중복성향의 핵심인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뿐이다.

- ③ 원고가 아래 마.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활동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표현된 '중복'적 활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그러한 활동들 가운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에 되거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한다.

마. 위법성 조각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 19, 24, 29, 30호증, 을가 제3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16, 18, 22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2003. 5. 9. 경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²²⁾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3. 8. 12. '한총련이 2003. 8. 7. 포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에 들어가 장갑차 점거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한총련의 폭력성만을 부각하고 정작 한총련이 그러한 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 미군의 군사훈련과 그것이 몰고 올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하였다.
- ②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았던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²³⁾와 관련하여, ㉠ 2003. 9. 22.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송 교수의 친북혐의를 부각해 정부를 압박했다. 이미 송 교수가 여러 차례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다고 발언해 왔음에도 국정원이 체포영장 발부라는 과도한 조치를 내린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세력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송 교수를 비롯한 해외민주인사 귀국이 우리사회의 통일과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하였고, ㉡ 2004. 7. 22.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수구언론의 마녀사냥을 극복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송 교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송 교수를 거물급 간첩, 대남공작원, 거짓말하는 파렴치한 학자 등으로 매도하는 데 급급했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매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언론들에게 시대착오적 광풍이 더 이상 한국사회

22) 한총련은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3. 4.경 전국의 각 대학 총학생회를 기본단위로 하여 결성된 대학생들의 자치조직이다. 대법원이 1998. 5.경 '제5기 한총련'이 남한 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정한 이적단체라고 판단(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 참조)한 이후 그 이적단체성이 문제되고 있다.

23) 한국계 독일인 학자로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내재적 접근론을 내세웠다. 1973년경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2003. 9. 22. 대한민국에 귀국하였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04. 3. 30. 징역 7년에 처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4. 7. 21.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3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에 통하지 않음을 보여 준 판결이라 평가한다. 우리는 송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보다 더 진일보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사상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㉔ 2004. 7. 23.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송두율 교수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송 교수 입국 때부터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는 교묘하게 탄축을 걸며 이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방해해도 역사는 전진한다. 조선일보가 탄축건다고 국보법 폐지라는 대세가 되돌려지는 일은 없음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하였다.

- ③ 원고는 2004. 8.경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찬성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하였고,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언론사들에 대하여 비판적 논평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 ④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주성영은 2004. 12. 8.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²⁴⁾ 그 직후 원고는 ‘위와 같은 주성영의 발언은 증거 없는 음해요, 모략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이 근거 없는 폭로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치권 공방으로 몰아본질을 흐렸고, 한나라당의 “이철우 간첩암약설”을 확대재생산하였다’고 비판하는 취지의 논평을 하였다.
- ⑤ 원고 소속 언론인들과 한총련 소속 학생들 60여 명은 2004. 12. 24. ‘국가보안법 폐지 가로막는 수구언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원고의 사무총장이었던 최민희는 ‘국가보안법 폐지 끝장 범국민단식농성단’에 합류하였다.
- ⑥ 동국대 교수 강정구는 2001. 8.경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강정구가 2005. 7.경 인터넷에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자 내전이였다. 곧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이 같은 성격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에 외세인 미국이 사흘 만에 개입해 전쟁주체가 된 셈이다.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 물론 우리가 실제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하여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강정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법무부장관이 검찰독립을 훼손하였다고 비판

24) 이철우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이 되고, 당번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아 활동지시를 받고서 국가 기밀수집탐지방조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유죄로 확정되었다.

하자, 이에 대해 원고가 2005. 10. 경 법무부장관의 위 수사지휘를 ‘검찰청법 제8조에 보장된 합법적 권한의 행사’라고 옹호하며 보수언론들의 태도를 ‘이념공세,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고, 나아가 강정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학자의 소신에 따른 학문적 연구결과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 유물에 의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확실히 짚어야 한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그의 말처럼 역사적 사실관계를 두고 논쟁할 사안이지 이념의 틀에서 감정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논평하였다.

- ⑦ 2005. 5. 경 ‘광주민중항쟁25돌에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선언문에는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미군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평화의 파괴자일 뿐이며, 미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일 뿐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구조조정과 재배치 작업,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상시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대북핵선제공격 계획 등 한반도 전쟁계획의 즉각 폐기와 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 추진해야 할 것은 전쟁계획이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이며, 북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진실한 노력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파멸로 몰아갈 한반도 전쟁 계획을 전면폐기하고 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미군 주둔 60년인 올해를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전쟁의 불씨요,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선언자 명단에는 당시 원고의 사무총장이던 최민희와 원고의 대표자인 신태섭 등 원고 소속 5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05. 8. 1. 광복 60주년을 맞아 각계 인사 65인이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 선언문에는 “맹목적 대미추종이 야기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최민희도 당시 원고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위 선언에 참가하였다.
- ⑧ 원고는 2006. 2. 경 미국과 대한민국이 2006. 1. 경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²⁵⁾에 관한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물고 올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본질 및 그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미칠 파

25)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6. 1. 경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다.

- ⑨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는 2006. 4. 26. “평택의 평화가 서울의 평화! 미군은 이제 이 땅을 떠나라! 국방부는 평택을 80년 광주로 만들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불법과 폭력 조장하는 국방부장관 사퇴하라!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포기하고 한반도를 떠나라!”라는 구호가 포함된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원고도 그 선언에 동참하였다.²⁶⁾
- ⑩ 원고는 2006. 4.경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 반미감정을 선동한다고 매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맹목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하였고, 2007년경 ‘정부가 광우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에 대하여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인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아랑곳없이 미국의 요구만 들어주면 된다는 태도이다’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다.
- ⑪ 원고는 2007. 9.경 보수 언론들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인 영해개념에 해당하는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포기 내지 수정하려 한다는 취지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NLL은 정전협정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하였다.
- ⑫ 원고는 2010. 3.경 이른바 ‘천안함 사건’²⁷⁾과 관련하여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 선부론 추측보도라는 취지의 비판적 논평을 하였다.

2) 공익성 유무

먼저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1, 2사실을 적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84. 12. 19. 설립된 이래로 언론민주화라는 목표 아래 언론감시활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벌여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이념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대한 쟁점인 점, 이 사건 방송에서는 주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해온 행적들을 토대로 그 정치적 성향을 추론해내는 발언들이 이루어졌고, 시민단체인 원고의 정치적 성향은 충분히 공공의 관심사안이 될 수 있는 점

26)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 제2사단 등 전국의 미군기지를 재배치할 것에 합의하였고, 2004. 12. 국회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협정 비준안이 가결되었다.

27) 2010. 3. 26.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5개국 20여명의 전문가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파악한 후 2010. 5. 20.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1, 2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진실성 유무

가) 먼저 이 사건 제1사실이 진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강정구, 송두울을 비판하는 언론을 다시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던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이 사건 제1사실은 ‘보호’ 또는 ‘선전·선동’이라는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사실이 진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9 내지 23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1,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1)항에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2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 내부에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김일성주의의 소신을 가진 핵심인물이 잠입하여 북한 지도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북성향의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② 원고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확인하여야지, 선불리 추측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적 논평을 하거나, 강정구, 송두울 사건, NLL,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보수언론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원고 내부에서 이 사건 방송을 통해 표현된 의미의 ‘중북’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중북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논평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③ 피고 조영환은, 원고의 공동대표 박석운이 한국진보연대의 대표이기도 한데, 한국진보연대는 그 강령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한총련 등 이적규정 철폐 등을 담고 있고, 2008년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반미반정부시위를 선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석운이 한국진보연대 소속으로서 한 활동을 원고 소속으로서 한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한국진보연대를 동일시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박석운이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④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일견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 8. 24.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고,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의 의견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고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 사건 방송에서 표현된 의미의 ‘중북’성향을 드러

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⑤ 피고 조영환은, 1989. 3.경 북한을 무단방북해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님’을 외치고 김일성을 껴안았던 문성근은 ‘죽창과 횃불을 휘두르며 백만민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선동하였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차례나 구속되었던 윤민석은 문성근의 백만민란선동을 위한 민란가를 작사작곡하였으며, 민란가의 녹음 과정에 원고의 전 대표인 최민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핵심인사였던 최민희의 중복성향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백만민란’, ‘민란가’가 가진 구체적 내용 및 취지를 알 수 없고, 최민희가 원고 소속으로서 ‘민란가’ 녹음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4) 상당성 유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제2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제2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4. 12. 19. 설립된 이래로 언론민주화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여 온 시민단체로서 공적인 존재이다. 또한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 나아가 이 사건 방송에서 의도된 ‘중복’성향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여부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공적 관심사안이다.

한편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원고가 기존에 강정구, 송두율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왔다는 이 사건 제1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 내부에서 활동하는 중복성향의 핵심 인사가 있다는 이 사건 제2사실을 추론하는 방식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 중에는 위와 같은 추론과정에 동의하며 피고 조영환이 적시한 이 사건 제2사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추론과정을 논리비약 내지 억지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 피고 조영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이 사건 방송의 주제나 배경화면, 피고 조영환이 소속된 단체명인 중복좌익적결단이 이 사건 방송 초반에 소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방송 초반부터 피고 조영환이 이른바 ‘보수’나 ‘우파’라고 지칭되는 단체들이 ‘진보’나 ‘좌익’이라고 지칭되는 단체나 인물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공격적이고 편향된 표현이나 주장을 하리라는 점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이 사건 제1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전제사실을 근거로 추론된 이 사건 제2사실의 경우 ‘사실’적 측면과 아울러 주관적인 ‘의혹제기’ 내지 ‘의견’으로서의 측면도 존재하는바, 원고와 관련하여 이른바 ‘중복성’ 유무

를 논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사건 제2사실에 대하여 피고 조영환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 즉 원고가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통해 미루어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 ② 원고는 기본적으로 송두율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러한 송두율이 1973년경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고, 그 후 오랜 기간 북한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이나 인사들이 송두율을 단순한 친북인사를 넘어 이른바 ‘간첩’으로까지 의심하였을 수도 있으며, 보수단체들이 송두율에 대하여 우호적인 논평을 하였던 원고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념에 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 ③ 원고는 강정구와 관련하여 그가 2005. 7.경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평을 하였는데, 그 후 강정구는, 2001. 8.경 만경대에 방문하여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고 기재한 사실 및 2005. 7.경 인터넷에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였다’라는 등의 글을 올린 사실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처럼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강정구를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보수단체들로서는 그 정치적 이념의 성향에 관하여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 ④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경우 인권침해 및 정치적 악용의 우려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에도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한반도가 아시아 분쟁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 존재하므로,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그 주장자가 중북성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국가안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로 우리나라의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우려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중북성향의 사람들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제로 북한의 지도부를 추종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각종 활동을 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⑤ 피고 조영환은 단순히 원고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사실을 추론해 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방송에서 언급된 강정구, 송두율에 관한 원고의 과거 입장을 포함하여 원고 또는 원고 소속 인사들과 관련된 위 1)항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제2사실을 추론해 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사실을 추론해 낸 근거가 된 사실들은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 그러한 구체적 정황들을 근거로 어떠한

평가 내지 추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근거들이 진실하고 그 추론 과정에 지나치게 논리성을 결여한 바가 없다면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 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⑥ 원고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인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로서 꾸준히 원고 명의의 논평 및 성명 발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누려왔고,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서도 피고 채널에 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나 스스로의 논평 및 성명 발표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비판의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사실의 전제사실인 이 사건 제1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피고 조영환이 이념논쟁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제2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와 관련한 이념적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만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의 인격권 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표현행위의 직접적인 형식 및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영환이 원고를 지칭하여 ‘중복세력’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제1사실을 근거로 한 추론과정에서 적시된 이 사건 제2사실이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1, 2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정정보도청구권의 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중복세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된 이 사건 제1, 2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프로그램삭제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는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6조에 따라 피고 채널에이에게 청구취지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 채널에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원본 중 허위사실이 방영된 부분의 삭제와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이 제3자에게 계약상 배포된 경우 그 제3자에게 허위사실 방영부분의 삭제를 요청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4조와 제26조는 정정보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원본의 삭제를 구할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를 언론중재법 제30조 제4항 내지 제31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내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서 삭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채널에이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방송내용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2008030 정정보도 등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채널에이 2. 조영환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52258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00경 방송하는 프로그램 시작 첫 화면 상단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8급 명조 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 2)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채널에이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의 첫 화면 상단 및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tv.ichannela.com/program/sisa/tangtang/concept.htm>)의 첫 화면 상단에 위 1)항 기재 크기 및 종류의 활자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시하고,
- 3)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13. 5. 6.자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 방송내용 중, ‘대한민국의 중복세력 5인방’이란 제목의 게시판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명칭이 보여질 때부터 화면 하단에 ‘전교조의 중복활동은?’이란 자막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채널A가 위 나.항 기간 안에 위 나.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 1)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하는 ‘김광현의 탕탕핑핑’ 프로그램 시작 첫 화면 상단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18급 명조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 2)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일 이내에 채널에이 홈페이지([http:// www.ichannela.com](http://www.ichannela.com))의 첫 화면 상단 및 ‘김광현의 탕탕핑핑’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tv.ichannela.com/program/sisa/tangtang/concept.htm>)의 첫 화면 상단에 위 가항 기재 크기 및 종류의 활자로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시하며,
 - 3)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2013. 5. 6.자 ‘김광현의 탕탕핑핑’의 원본 방송프로그램 중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에서 허위보도로 인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원본 방송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전 제3자에게 위 방송프로그램이 계약상 배포되었을 경우 그 제3자에게 정정보도사실을 통지하고, 정정보도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라.
- 다. 만일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가 위 나.항 기재 기간 안에 위 나.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5호증,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1984. 12. 19. ‘민주언론운동협의회’로 창립되었다가 1998. 1. 6.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로 설립되었고, 1998. 3. 27.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개칭하였다가 2006. 3. 24. 현재와 같은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개칭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활동목표를,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 상호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원고는 자신의 활동성과를,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개, △올바른 언론의 위상 확립을 위한 언론감시활동 강화, △시민언론운동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조직활동력 강화, △수용자운동 조직화를 통한 시민의 참여의식 함양으로 밝히고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연대활동을, △조·중·동 방송저지 네트워크,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해체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토지구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로 밝히고 있다.

[2]

-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A’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로서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2. 12. 24.부터 방송하였다.
- 피고 채널A는 2013. 5. 6. ‘긴급진단 중복세력 5인방’이라는 문구를 화면에 나타내면서 김광현의 사회로 강길모와 피고 조영환이 발언하는 형식으로 위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 피고 조영환은 ‘중복좌의척결단’의 공동대표이고, 강길모는 ‘선진화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이다.

[3]

- 위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은 2013. 10. 8. 종영되었다. 피고 채널A는 위 프로그램을 16:50부터 방송하였는데, 현재 피고 채널A는 ‘쾌도난마’ 프로그램을 16:00부터, ‘김승련의 뉴스 TOP 10’ 프로그램을 17:00부터 방송하고 있다.
-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현재 피고 채널A의 홈페이지와 위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에 제시되어 있다.

[4]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위 권고 이유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 또는 ‘종북세력’ 등으로 지칭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청자가 전체적인 방송내용을 보고 특정 국회의원이 해당 단체에서 종북활동의 핵심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였고, 특히 공공성을 지닌 방송에서 해당 내용과 같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단순 활동만을 열거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종북’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추측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이었다는 점과 전체적인 발언수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것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원고의 핵심인사를 종북인사라고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 채널A는 피고 조영환의 위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종북단체가 아니고, 원고 내부에 특수한 목적으로 가지고 조직의 해계모니를 장악한 종북인사는 없다.

따라서 피고 조영환과 피고 채널A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 채널A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와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삭제, 제3자에게의 정정보도 사실 및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 조영환의 주장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과거 행적에 근거하여 원고가 종북성향의 단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을 뿐, 원고를 종북단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원고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종북성향인지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서 피고 조영환이 원고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종북성향이라고 비판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 채널A의 주장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자신 또는 종북좌익척결단의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고 채널A의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방송의 자막도

피고 조영환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채널A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가 중북세력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공적 단체인 원고의 이념과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사실 적시 및 사실적 주장

가. 사실 및 의견

-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8다60971 판결).

- (2) 텔레비전 방송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하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에 근거하여 청구하든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다86782 판결).

나. 이 사건 방송 내용

갑 제2 내지 1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김광현의 사회로 강길모와 피고 조영환이 발언하는 형식으로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그 방송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러한 방송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A] 내지 [G]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순차 살펴본다.

[A 부분]

(1) 위 부분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방송이 시작되면서 김광현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종북세력, 종북정당, 종북연예인, 종북영화감독. 요즘 종인지 북인지 하얏튼 종북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종북이란, 북한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외교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이러한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탕탕평평에서는 종북좌익척결단, 줄여서 읽으면 종결단이 되는군요. 종결단의 조영환 공동대표와 선진화시민행동 강길모 공동대표와 함께 종북의 실체와 종북세력의 구체적인 위험성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결단 어떠십니까?

- 이에 대하여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다원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관용되고 포용되고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하는데, 척결이라는 단어를 21세기에 다원주의를 종교처럼 배운 사람이 척결이라는 단어를 써야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비극적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극단적인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그래서 종북좌익척결단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2000년대가 되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좌익척결이라는 종북척결이라는 극단적으로 오는데, 한국사회가 그만큼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하나의 민주화도 과격하게 한번해보고, 이제 그 민주팔이들의 악, 민주주의 이름으로 종북좌익을 했던 그 악을 우리가 또 과격하게 빨리 극복해서 (중략)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도 좋고 다 좋지만 종북세력은 안된다고 하는 정반합의 지점에 도달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아마 종북척결을 통해서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 이어서 김광현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우선 개념이 ‘종북’, 종치는 종과 때리는 북은 아니고요. 종북인데, 따를 종자 북한 북자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좌파, 어떤 경우에는 친북, 종북, 친북, 좌파 개념이, 어떤 경우에는 보수, 진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 이에 대하여 강길모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종북이란 말은 저희들이 옛날에 북한민주화포럼에서 처음 썼던 말인데. 그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시다시피 민노당 내부에서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면서 PD계열의 나오시던 분들이 안에 계신 분들을 종북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처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 친북이다, 좌파다, 종북이다 좀 혼탁스럽습니다만 원래 친북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다보니 무슨 오해가 생기냐면 친북인사를 나쁘다고 하면 저 김씨 왕조의 압제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가진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찾던 용어 중에 종북이 좋겠다. 왜냐면 종북은 말 그대로 북의 김씨 권력에 추종하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는 자들. 이런 의미로 이제 요즘은 종북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 (2)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김광현이 “종북이란 북한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외교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고, 강길모가 “종북은 북의 김씨 권력에 추종하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조영환이 별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방송에서는 ‘종북’이라는 표현을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B 부분]

- (1) 위 부분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광현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오늘 제목을, 종북세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강 종북세력, 약 종북세력이 있을 텐데,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너무 썩니까?

- 이에 대하여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매우 적당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광현이 앉아 있는 자리 옆에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이 기재되고 5개 단체의 명칭이 종지로 가려진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었다.

- 김광현이 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한국진보연대’ 명칭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한국진보연대가. 이것 순위는 아니죠. 1, 2, 3, 4, 5라는 게 다섯 개 분야별로 있는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에 대하여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정렬을 저렇게 했지만 시민영역에 있는 종북좌익세력 그렇게 상징으로서 (중략) 한국의 시민영역에 있는 종북세력 그 상징으로서 한국진보연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어서 김광현이 ‘한국진보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북한이 남한을, 반드시 실패하겠지만,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간첩을 보내지 않아도 남한에 자

기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좀 정신이 이상하고 양심이 비뚤어진 세력을 계속 만들어서 (중략)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중략) 대한민국의 진보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민주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끄는 세력이 바로 저는 한국전국연합이라든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중북좌익단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저게 부상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형성되게 된거죠.

(중략) 저 중북단체들은. 뭐냐하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 수 있는 그 선동구호나 전략과 노선과 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사람들 ‘자주, 민주, 통일, 평화’ 이런 아주 좋은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미군을 철수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로 (중략)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시민영역에 있는 중북좌익 단체들이 반란 폭동을 일으킬 때에 그 사상을 기반으로 아까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반역과 반란의 주체세력이 되버리는 거죠.

- (2)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김광현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이 기재되고 5개 단체의 명칭이 종이로 가려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한국진보연대’ 명칭을 보여주면서 ‘한국진보연대’가 그 제목과 같이 중북세력이라고 한 것이고, △‘중북’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 조영환의 발언은, △김광현의 위 발언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판에 기재된 ‘한국진보연대’가 그 제목과 같이 중북세력이라고 한 것이고, △북한이 자기들에게 아부하는 중북세력을 만들어 그러한 중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 수 있는 전략과 노선을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반역과 반란의 주체세력이 된다고 한 것이며, △‘중북’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C 부분]

- (1) 위 부분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광현이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민주언론시민연합’(원고) 명칭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줄여서 민언련이라고 부르나요. 왜 이 중북단체로 보십니까?

- 이에 대하여 강길모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저는 오늘 저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요. 왜냐면 광의의 중북단체를 꼽으라고 하면 수백 수천개가 됩니다. 그런데 광의의 중북단체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그 단체의 코어, 핵심, 한 두 사람이 다시 말하면 과거 주체사상과 혹은 김일성주의류의 소신을 갖고 있는 확신범들이고 그 대중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아주 양식있고 양심적인 대한민국 시민이요, 국민인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있고 양심적인 동종의 어떤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직군에 맞춰진 여러 가지 단체와 조직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대중조직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핵심들이 과거 용어로는 ‘프락션’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그 대중조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거나 그 대중조직의 핵심적인 노선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들 ‘코어’들이 그것들을 장악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저렇게 민언련을 이것을 종북단체야, 이러면 이걸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언론에 종사하는 또 그와 유관단체에 종사하는 많은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적인 성향과 취지에 따라서...

■ 그러자 김광현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언련을 종북단체라고 하지 말고 ‘이 단체에 종북성향을 가진 핵심 인사들이 좀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군요.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종북성향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조 대표님 말씀해주시죠.

■ 이에 대하여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략) 이 단체가 이제 주로 언론계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강정구를 비판하는 언론, (중략) 동국대 교수,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김일성 정신으로 투쟁하자’ 뭐 이런 식의. 네, 그 글을 썼던 사람. 그 다음에 송두율.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받은 송두율. 이 송두율을 비판하는 사람 언론을 또 민언련에서 비판하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또 공격을 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종북세력이란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 선동을 민언련이라는 단체에서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언련이라는 단체를 볼 때에 국민으로서 그 안에 누가 종북자인지 (중략) 그 행태가 일관적으로 우리가 종북세력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때에 거기에 맞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단국가에서 미국 같은 나라도 저 정도로 민언련처럼 일관적으로 종북성향의 선언이나 행동이나 또 집회시위를 계속한다면 틀림없이 국가보안을 해치는 집단으로, 미국 같으면 단체가 벌써 철폐됐다고 믿기 때문에. 우린 자유도 넘치고, 민주도 넘치고, 얼마 없으면 너무 넘쳐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 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 이에 대하여 김광현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견해다 이 말씀이죠.

■ 그러자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종북좌익척결단의 견해다.

- (2)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김광현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이 기재되고 5개 단체의 명칭이 종이로 가려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원고 명칭을 보여주

면서 원고가 위 제목과 같이 중복세력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며, △강길모의 발언을 일부 수용하여 원고를 중복단체라고는 하지 말고 원고 내부에 중복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어떠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복성향의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하였던 것과 기본적인 의미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중복’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 조영환의 발언은, △김광현의 위 발언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중복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판에 기재된 원고가 그 제목과 같이 중복세력이라고 한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원고가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김일성 정신으로 투쟁하자는 글을 쓴 강정구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한 것, ㉡원고가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받은 송두울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한 것, ㉢원고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한 것, ㉣원고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선동한 것, ㉤원고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선전·선동을 지속한 것을 제시한 것이며, △‘중복’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 (3) 피고 조영환은 “민언련(원고)은 중복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김광현이 “견해다, 이 말씀이죠”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조영환이 “중복좌익척결단의 견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중복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에 기재된 단체가 그 제목과 같이 중복세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발언하였던 점과 ‘중복좌익척결단’의 공동대표인 피고 조영환이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강정구, 송두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견해다”라고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조영환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는 볼 수 없다.

[D 부분]

- (1) 위 부분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광현이 ‘대한민국의 중복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다음은 그 유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명 전교조인데요. 말씀 조심하여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전교조를 중복세력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나요?

- 이에 대하여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고소당해서 벌금 5,000만 원 나온 단체가 반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고 출범할 때 출범선언문을 쓴 사람이 접니다. (중략) 저는 판사와 검사가 잘못되었지 전교조를 중복단체라고 규정했을

때에 무리 없는 정상적인 판·검사라면 아무런 무리가 없이 종북단체라고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중략) 전교조가 종북집단이 되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그런 종북자들을 자기들이 색출해 가지고 ‘우리 이 사람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 척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훌륭한 교육단체가 될 수 있죠.

(중략) 여기에도 99%는 끌려가고, 통일이라는, 또 자주, 민족. 얼마나 용어가 좋아요, 평화. 나머지 거기에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도덕성을 딱 정반대로 180도 뒤엎어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 (2)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김광현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이 기재되고 5개 단체의 명칭이 종이로 가려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을 보여주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위 제목과 같이 종북세력이라고 한 것이고, △‘종북’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 조영환의 발언은, △김광현의 위 발언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판에 기재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그 제목과 같이 종북세력이라고 한 것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한 것이며, △‘종북’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E 부분]

- (1) 위 부분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광현이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통합진보당’ 명칭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다음은 누군지 한번 볼까요. 통합진보당이네요. 통진당도 종북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대표님 어떻습니까?

- 이에 대하여 강길모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략) 소위 과거 주사파라고 이름하였던 NL파, NL파들이 주역이 되었던 민노당과 PD파들이 합쳐서 통합진보당입니다만, 그들은 어차피 PD든, NL이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같은 편이죠 크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주력이 되는 정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 정당은 굳이 따지면 종북세력 정당이다.

-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략) 오해가 발생될 정도로 통합진보당에서 논평이 나온다는지 행동한다는지 할 때 국민들 눈에 종북당을 넘어서가지고 북한의 남로당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반성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말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종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대한민국이 많이 좌경화가 되어가지고 종북세력이나 종북정당이나 종북인사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할 지경까지 오고

- (2)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김광현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이 기재되고 5개 단체의 명칭이 종이로 가려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통합진보당’ 명칭을 보여주면서 ‘통합진보당’이 그 제목과 같이 중북세력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통합진보당’을 중북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며, △‘중북’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 조영환의 발언은, △김광현의 위 발언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판에 기재된 ‘통합진보당’이 그 제목과 같이 중북세력이라고 한 것이고, △‘통합진보당’은 중북세력을 넘어서 북한의 남로당으로 보일 정도라고 한 것이며, △‘중북’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F 부분]

- (1) 위 부분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광현이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판에서 종이를 1장 떼내어 ‘우리법연구회’ 명칭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우리법연구회도 중북세력으로

- 그러자 피고 조영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북세력이라고 낙인하기는 힘들지만 법조계에 보면 법조계 검찰도 마찬가지이지만 중북세력에 이렇게 노골적인 해악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조계 죽지 않았는가. 그래서 죽은 이유가 중북세력은 아니지만 중북의 귀신에 들린 판·검사들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2)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김광현이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이 기재되고 5개 단체의 명칭이 종이로 가려진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내어 ‘우리법연구회’ 명칭을 보여주었는데, △피고 조영환이 위 게시판에 기재된 ‘우리법연구회’는 중북세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발언하고, △이에 대하여 김광현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은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에 기재된 5개 단체 중 원고를 포함한 4개 단체를 중북세력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1개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는 중북세력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G 부분]

- (1) 위 부분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광현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중북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있을 수 있다. 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북인사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마지막 총 컨트롤타위는 누구니까?

- 이에 대하여 강길모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략) 대한민국 중북세력들이 광의로 따지면 너무 많고, 또 그걸 좀 협소화 시키면 그래도 각기 다른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비밀지지도부나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모든 소위 적화를 위한 움직임과 조직들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북한 권력의 통제를 받습니다.

- 피고 조영환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략) 컨트롤타워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민족끼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략) 우리민족끼리에 지령이 떨어지면 남한 중북단체나 중북 선전선동 수단들이 싹 변형시켜서 사회운동으로 성명도 나오고 사회운동까지 딱 나오니까. 우리는 저 우리민족끼리를 통제하고 있는 북한 통전부 225국이 바로 남한 중북세력의 청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 (2)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피고 조영환의 발언은, △중북세력은 북한정권의 통제를 받는다고 한 것으로서, △‘중북’이라는 표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다. 원고에 대한 표현

-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은 원고를 중북세력이라고 하였고, 그 ‘중북’이라는 표현은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변질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북한은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 12. 10. 선고 2013헌다1 결정).

따라서 ‘중북’이라는 표현을 위와 같이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중북’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원고를 중북세력이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 조영환은 위와 같이 원고를 중북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원고가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김일성 정신으로 투쟁하자는 글을 쓴 강정구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한 것, ㉡원고가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받은 송두율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한 것, ㉢원고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한 것, ㉣원고가 원고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선동한 것, ㉤원고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선전·선동을 지속한 것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다른 언론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였다는 것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므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조영환의 위와 같은 근거제시 역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4. 명예훼손

가. 중복세력

- (1)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1450 판결).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 (2)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 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한국사회의 운동진영은 자주파 계열(NL)과 평등파 계열(PD)이라는 두 개의 주요한 흐름으로 귀결되었다. 자주파 계열은 북한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있고, 다른 정파로서 이른바 ‘비주사 NL’이 있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사파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은 원고가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의 중복세력이라고 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의 사실적시에 의하여 중복세력으로 지목되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세력으로 규정되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2)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

- (3) 정견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 개인들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그 나름의 합리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체제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통념이나 보편적인 시각들과 상충하는 듯 보이는 견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논쟁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충돌하는 견해들 사이에서는 논리와 설득력의 경합을 통해 보다 우월한 견해가 판명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민주주의 원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이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어떤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만약 국가 또는 사회의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 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 (4)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마치 냉전시대처럼 적대관계에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하여 때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함도 불가피하게 된다. 북한집단과 접촉 대화 및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야 할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대한민국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집단과는 적대관계가 지속되어 왔음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에 해가 되는 경우라면 반사적으로 북한집단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하기만 하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동기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을 위험, 북한문제에 관한 한 비난을 빼고는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글, 그리고 학술적 활동이나 예술활동이 금기가 될 소지, 북한의 남침정책이나 대한민국의 체제전복과 관계가 없는 무해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자기 의사의 창달이 힘들게 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의 법익 수호의 목적도 달함 없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위협하고 위축시키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위 헌법재판소 89헌가113 결정 참조)은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 (5) 유해한 의견(opinion)이라도 그것은 다른 사상(idea)과의 경쟁을 통해서 교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의견(opinion)은 논쟁(discussion)에 의하여 교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허위사실

의 진술(false statements of fact)에는 헌법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다. 의견을 진술하면서 그 근거(base)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그 근거 사실이 부정확(incorrect) 또는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assessment)에 오류가 있다면(erroneous), 그러한 의견 진술은 허위사실의 주장(false assertion of fact)을 함축하는 것이다.

일정한 사실만으로는 특정인의 정치투쟁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 등으로 표현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할 만한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이는 특정인이 위와 같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과격하고 불법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였거나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특정인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특정인을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그 부분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부분 사실적시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을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다. 원고의 활동

-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은 원고가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의 중북세력이라고 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 조영환은 위와 같이 원고를 중북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원고가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김일성 정신으로 투쟁하자는 글을 쓴 강정구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한 것, ㉡원고가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받은 송두율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한 것, ㉢원고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한 것, ㉣원고가 원고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선동한 것, ㉤원고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선전선동을 지속한 것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근거제시 역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 (2) 이하 이 사건 방송 내용과 갑 제1, 19 내지 24, 29 내지 34, 37, 42 내지 47호증, 을가 제3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16,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하여 살펴본다.

[㉠ 강정구 관련]

-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동국대학교 교수인 강정구는 2001. 8.경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여 그 곳에 비치된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고 썼다.

○강정구는 2005. 7.경 인터넷에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자 내전이였다. 곧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이 같은 성격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에 외세인 미국이 사흘 만에 개입해 전쟁주체가 된 셈이다.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 물론 우리가 실제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강정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법무부장관이 검찰독립을 훼손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2005. 10.경의 논평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제8조에 보장된 합법적 권한의 행사이고, 보수언론들의 비판은 이념공세, 정치공세라고 하였다. 강정구가 게시한 위 글에 관하여서는, “학자의 소신에 따른 학문적 연구결과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 유물에 의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확실히 짚어야 한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그의 말처럼 역사적 사실관계를 두고 논쟁할 사안이지 이념의 틀에서 감정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강정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일보는 2006. 5. 26.자 사실에서, 위 판결은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틀과 국민 다수의 건전한 판단과 어긋나지 않은 판결로 본다고 하였다.

- (2) 강정구에 관련된 원고의 논평은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는 것이고, △강정구의 주장은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검증해야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아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논평은 강정구의 행위나 주장 자체를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는 의미의 중북세력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원고가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김일성 정신으로 투쟁하자는 글을 쓴 강정구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하였다고 한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근거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㉞ 송두율 관련]

-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인 송두율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내재적 접근론을 내세웠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여 북한을 방문하다가 2003.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송두율은 입국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노동당에서 탈당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논평에서, “정부당국과 송 교수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우를 갖춰 조사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송 교수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내비쳤던 당국이 돌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다. 어렵게

성사된 해외인사 고국방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사려 깊은 대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3. 9. 22.자 논평에서,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송 교수의 친북혐의를 부각해 정부를 압박했다. 이미 송 교수가 여러 차례 국정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발언해 왔음에도 국정원이 체포영장 발부라는 과도한 조치를 내린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세력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송 교수를 비롯한 해외민주인사 귀국이 우리사회의 통일과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송두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04. 3. 30.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08. 7. 24.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8. 8. 1. 확정되었다.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송두울이 1991. 5.경부터 1993. 3.경까지 4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비롯한 대남담당 고위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자신의 친북활동을 공개한 황장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편취를 시도하였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04. 7. 22.자 성명에서, “송두울 교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수구언론의 마녀사냥을 극복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송 교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송 교수를 거물급 간첩, 대남공작원, 거짓말하는 파렴치한 학자 등으로 매도하는 데 급급했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매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언론들에게 시대착오적 광풍이 더 이상 한국사회에 통하지 않음을 보여 준 판결이라 평가한다. 우리는 송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보다 더 진일보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사상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4. 7. 23.자 논평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송두울 교수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송 교수 입국 때부터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는 교묘하게 탄축을 곁들여 이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방해해도 역사는 전진한다. 조선일보가 탄축 건다고 국보법 폐지라는 대세가 되돌려지는 일은 없음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 (2) 송두울에 관련된 원고의 논평 및 성명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송두울의 구속 수사를 반대하고, △송두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하며,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인정된 송두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송두울을 거물급 간첩, 대남공작원 등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언론에 문제가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사상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평과 성명은 송두울의 행위나 주장 자체를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의미의 중북세력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원고가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받은 송두윌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하였다고 한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근거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 국가보안법 관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1998. 5.경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단체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3. 5. 9.자 성명에서, “한총련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 8.경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에서, 「국가보안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수 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으며,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다. 위 권고에서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미국과 유엔 등은 인권침해와 정치적 악용의 우려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 원고는 2004. 8. 26.자 논평에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언론이 내세우는 유일한 존립 근거는 남북관계이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이미 남한은 정치·경제·군사 모든 분야를 통틀어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6·15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 반국가단체 운운하는 국보법의 일부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였다.
- 원고는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평과 그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언론들을 비판하는 논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 원고 소속 언론인들과 한총련 소속 학생들 60여 명이 2004. 12. 24. ‘국가보안법 폐지 가로막는 수구언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원고의 사무총장 최민희가 ‘국가보안법 폐지 끝장 범국민 단식농성단’에 합류하였다.
-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주성영이 2004. 12. 8.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이철우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원고는 위 발언 직후의 논평에서, “주성영의 발언은 증거 없는 음해요, 모략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

론사들이 근거 없는 폭로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치권 공방으로 몰아 본질을 흐렸고, ‘이철우 간첩암약설’을 확대·재생산하였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4. 9. 10.자 논평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북한 찬양행태에 대해 과연 몇 명이나 되는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정도의 행위에 체제가 위협받는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끝장 범국민 단식농성단’에 합류하였던 최민희는 2013. 12. 9. 북한의 장성택 숙청에 관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진짜 북한 끔찍하다. 진짜 일당독재사회는 무섭다.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할 수 있는 힘 그건 민주주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한 팔로워가 “국민을 상대로 종북몰이 하는 박근혜 정부는 더 끔찍함”이란 답글을 게시하자 최민희는 “아이고 북한보다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낫죠. 동의 불가요.”라는 답글을 게시하였다. 최민희는 2013. 12. 3.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화 운동 때도 늘 북 때문에 매도당했다. 야권이 종북? 우린 도무지 종북할 이유가 없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 (2)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원고의 논평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권고에 찬성한다는 취지로서, 죄형법정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여론, 북한과의 관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평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행위나 주장 자체를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원 이철우에 관련된 원고의 논평은 이철우가 조선노동당 입당하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이철우의 행위나 주장 자체를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원고의 논평이나 원고 구성원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국력 우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는 의미의 종북세력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원고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였다고 한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근거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㉔ 주한미군, 한미동맹 관련]

-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한총련이 2003. 8. 7. 포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에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 이에 관련하여 원고가 2003. 8. 12.자 논평에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한총련의 폭력성만을 부각하고 정작 한총련이 그러한 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 미군의 군사훈련과 그것이 몰고 올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05. 5.경 ‘광주민중항쟁 25돌에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위 선언문에는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미군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평화의 파괴자일 뿐이며, 미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일 뿐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구조조정과 재배치 작업,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상시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대북핵 선제공격 계획 등 한반도 전쟁계획의 즉각 폐기와 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 추진해야 할 것은 전쟁계획이 아니라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이며, 북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진실한 노력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파멸로 몰아갈 한반도 전쟁계획을 전면폐기하고 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미군 주둔 60년인 올해를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전쟁의 불씨요,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원고의 사무총장 최민희와 원고의 대표자 신태섭 등 원고 소속 5인이 위 선언에 참여하였다.

○2005. 8. 1. 광복 60주년을 맞아 각계 인사 65인이 ‘광복 60주년 민족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위 선언문에는 “맹목적 대미추종이 야기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원고의 사무총장 최민희가 위 선언에 참여하였다.

○2006. 1.경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하여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원고는 2006. 2.경의 논평에서,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몰고 올 수 있음에도 일부 언론이 위 합의의 본질과 그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미칠 파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가 2006. 4. 26. “평택의 평화가 서울의 평화! 미군은 이제 이 땅을 떠나라! 국방부는 평택을 80년 광주로 만들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위 선언문에는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불법과 폭력 조장하는 국방부장관 사퇴하라!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포기하고 한반도를 떠나라!”라는 구호가 포함되었다.

○원고가 위 선언에 참여하였다.

○원고의 대표 김○○은 평택 미군기지에 관한 2006. 6. 12.자 논평에서, “진보매체들은 평택 범대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시위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범대위의 공식적인 입장의 이면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의 경직된 흐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보매체들은 이를 외면한 채 수구신문들의 과장보도로 치부해버렸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는 매섭게 비판하면서도 시위의 과격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지적도 하지 않았다.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그 결과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등 진보매체들의 편파보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위대의 전위역할을 하는 한총련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직된 자세로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을 고집함으로써 (학생)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역사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2006. 8. 11.자 논평에서, “전작권 환수는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한 사안이 아니다. 이미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년-워너 수정안>에 의해 1990년부터 추진된 주한미군 감축안에 따라 1단계로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2000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한미 정부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하기 위한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반도 위기 발생시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병력을 한반도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중동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 공백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군사강국으로 북한보다 경제력은 약 30배, 군사비 지출은 약 20배 정도 높다. 군사비 지출만 따져도 북한의 GDP보다 높다.”고 하였다.

- (2) 원고 또는 그 구성원이 참여한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정착, 자주국방을 주장하였다.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견해, 이와 달리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반도가 아시아 분쟁의 전초기지가 되며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는 그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한총련의 미군기지 내 시위에 관련된 원고의 논평 역시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원고는 미군기지에 관련하여 한총련이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을 고집하여 역사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자주국방을 위하여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적절한 환수시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적절한 규모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도 논의되고 있다. 원고는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평에서 주한미군 유지, 위기 발생시 미군의 한반도로의 신속한 이동,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력 우위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대표가 평택 미군기지에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의 경직된 흐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나 무력행사에 동조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의미의 중북세력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원고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선동하였다고 한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근거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㉔ 국가안보 관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2. 7. 4.자 성명에서, “지난 6월 29일 터진 서해교전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터지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터졌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또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교전으로 숨진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들에 생각이 미치면 위로의 마음을 전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언론은 현상적인 접근에 머무르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전체에 교전지역의 공동 구역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했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2003. 2. 17.자 논평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KBS 방송 도중 북한의 혁명가로 알려진 ‘적기가’가 배경음악으로 송출된 사고에 관하여 2004. 8. 20.자 논평에서, “KBS가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프로그램 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필요하다면 정연주 사장의 사과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2005. 6. 14.자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정부 일각의 대북 강경론이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2006. 7. 15.자 논평에서, “지난 7월 5일 새벽 북한이 총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이를 위협으로 느낀 북한의 대응이라는 큰 틀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보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한반도 위기 고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6. 10. 12.자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던 1991년 남북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기에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7. 9.경의 논평에서,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0. 3.경의 논평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선부론 추측보도라고 하였다.

(2) 원고의 논평에서는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과의 공조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북한 혁명가의 방송에 대해 그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논평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나 무력행사에 동조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원고는 NLL이 정전협정과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그 선이라고 하고, 천안함의 침몰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부른 추측이라고 한 바가 있으나, 이는 북한이 NLL 이남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의미의 중북세력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원고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선전·선동을 지속하였다고 한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근거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기타]

- 원고 내부에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김일성주의의 소신을 가진 핵심인물이 잠입하여 북한 지도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북성향의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피고 조영환은, 원고의 공동대표 박석운이 한국진보연대의 대표이기도 한데 한국진보연대는 그 강령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폐 등을 담고 있고, 2008년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반미·반정부 시위를 선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석운이 한국진보연대 소속으로서 한 활동을 원고 소속으로서 한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한국진보연대를 동일시할 수도 없다.
- 피고 조영환은, 원고를 상징하는 인물이 최민희로서 약 20년 동안 원고를 이끌어 왔는데 1989. 3.경 북한을 무단 방문해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님’을 외치고 김일성을 껴안았던 문익환의 아들 문성근은 ‘죽창과 횃불을 휘두르며 백만민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선동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차례나 구속되었던 윤민석이 문성근의 백만민란 선동을 위한 민란가를 작사·작곡하였으며, 민란가의 녹음 과정에 최민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핵심인사였던 최민희의 중북성향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문 칼럼에 불과한 을나 제7,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백만민란’이나 ‘민란가’의 구체적 내용 및 취지를 알 수 없고, 최민희가 원고 소속으로서 ‘민란가’ 녹음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민란가를 작곡하거나 노래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최민희를 주사파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최민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언급하고 중북할 이유가 없다는 글을 게시한 바가 있다.
- 원고는 2006. 4.경의 논평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 반미감정을 선동한다고 매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이야 말로 맹목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년경의 논평에서, “정부가 광우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고, “빼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에 대하여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인 일부 언론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아랑곳 없이 미국의 요구만 들어주면 된다는 태도이다.”라고 하였다.

- 피고 조영환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제주해군기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성명이 북한(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의 공개지령에 따른 중북 선전·선동 수단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제주해군기지, 4대강 사업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위와 같은 반대성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북한이 대남전략의 일환으로써 대한민국 내부의 의견대립을 부추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라. 손해배상

-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원고는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의 중북세력이라고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 조영환이 위와 같이 원고를 중북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강정구, 송두율,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안보 관련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근거사실을 제시한 것이며, △원고의 논평이나 주장을 살펴볼 때 원고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행위나 주장 자체를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원고는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의미의 중북세력이라고 한 것은, 제시한 근거 사실로부터 결론에 이르게 있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있거나 결론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 또는 결론을 정당화할 만한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것으로서, 결국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

- (3)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논평이나 성명 등은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이를 검토함으로써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중북세력의 실체와 위험성

에 대해 알아본다는 취지로서, 신속성이 중요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의 중복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에서 원고 명칭을 보여주면서 원고가 그 제목과 같이 중복세력이라고 하였고, 피고 조영환은 원고가 중복세력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일정한 사실로부터 원고가 중복세력이라는 결론을 추론하거나 원고가 중복세력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를 중복세력을 단정하면서 그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 조영환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근거사실을 제시한 것은 원고가 해온 주장과 활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이거나, 원고의 주장 취지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왜곡한 것으로서,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중복세력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체제를 유지·수호하려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존중·유지하는 태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북한정권의 외교방침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한다는 의미의 중복세력이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근거사실을 들면서 원고를 중복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하여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있어서 그 위법성 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4) 이 사건 방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광현의 사회로 강길모와 피고 조영환이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 채널A가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이 사건 방송 내용과 을가 제1,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채널A의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 이전에 강길모와 피고 조영환이 중복성향의 단체로 원고를 포함한 5개 단체를 지목해 주자,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중복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미리 준비하고 이 사건 방송 과정에서 김광현이 위 게시판에서 종이를 1장씩 떼내어 위 5개 단체의 명칭을 보여준 사실, △피고 채널A의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 이전에 김광현이 사회자로서 발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5개 단체를 중복세

력으로 보는 근거를 묻는 내용을 준비하였던 사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화면 좌측 상단에 ‘긴급 진단, 중복세력 5인방’이란 문구를 나타내고, 배경화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 조영환이 원고에 대하여 발언하는 동안 화면 하단에 <중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자막을 나타내었는바, 이러한 자막 등은 강길모와 피고 조영환의 의견을 최대한 잘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관하여, 피고 채널A는 김광현을 사회자로 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한 주체로서, 피고 조영환은 직접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주체로서, 각자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5) 이 사건 방송 내용과 원고의 설립목적 및 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채널A와 피고 조영환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채널A와 피고 조영환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방송 다음날인 2013.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정정보도 및 방송내용 삭제

-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하여 허위 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을 한 피고 채널A는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정정보도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중복세력이라는 방송내용은 진실하지 아니하므로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자막 및 낭독은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은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인데 위 프로그램이 2013. 10. 8. 종영되었으므로, 위 프로그램의 방송시간과 유사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00경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를 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김광현과 피고 조영환이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하여 허위 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현재 피고 채널A의 홈페이지와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채널A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게시

되어 있는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에 관련된 부분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채널A는 위와 같이 게시되어 있는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앞서 본 ‘대한민국의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에 원고 명칭이 보여질 때부터 화면 하단에 ‘전교조의 중북활동은?’이란 자막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 채널A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을 계약상 제3자에게 배포하였을 경우 그 제3자에게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정정보도 부분의 삭제를 요청하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 (3)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채널A의 위와 같은 정정보도 및 방송내용 삭제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채널A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 바로잡습니다.

본문 : 주식회사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방송프로그램은 2013. 5. 6. ‘긴급진단 중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으로 “중북은 북의 김씨 권력을 철저히 지지하는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북한의 공개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중북세력이다”라는 취지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북한의 공개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중북세력이다”는 취지의 방송 내용은 진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방송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합456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09002 판결

감독기관 등에 확인 없이 원고의 음식점이 폐기용 닭으로 칼국수 고명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것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7월 4일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에서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정정보도와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닭 가공 업체에 속아 냉장 닭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당국에 보고 없이 임의로 냉동으로 전환한 제품을 납품받은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공익성 및 상당성을 부정하여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다 256374).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정정보도)이 내려졌으나(2014서울조정1021, 1022)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 된 바 있다.

[판결요지]

(1) 공익성 판단

00푸드는 냉동하여 보관하던 닭을 해동한 뒤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포장지에 담아 냉장 상태로 0000에 납품하였다. 사장 아들이 “버리지도 못하고 난리가 나. 왜 냄새 나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진단 말이야. 물건 안 받는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가공을 한 후 냄새가 나는 등 검수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닭은 납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냉장 닭 값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도 00푸드에서 냉동하였다가 해동한 닭을 납품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0000는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하다가 해동한 닭을 납품받은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0000에 대한 보도가 닭고기 유통의 문제점을 보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닭갈비, 삼계탕, 닭찜, 치킨 등 닭요리 전문점도 아닌 한 손가락 정도의 고명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칼국수 전문점이

닭고기 유통의 문제제기에 적당한 음식점인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이 0000는 피해자 지위에 있고 닭고기 전문 요리점도 아닌 점에 비추어 0000 방송 부분은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상당성 판단

피고는 냉장상태로 납품된 닭을 바로 냉동하여 최장 3개월가량 보관하다가 해동하여 납품한 닭이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고 ‘0000는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 대상인 닭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여 방송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합45640 정정청구 2014가합45657(병합) 정정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약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 중구 0동에서 ‘0000’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로서 ‘먹거리 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4. 7. 4.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에서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약 30분간 방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 사건 방송은 진행자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돼야 할 닭고기, 식중독균 범벅이고 개 사료로 쓰이는 닭이 둔갑해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적인 닭 가공 실태, 저희 먹거리 X파일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라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유명한 칼국수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칼국수 위에 올라온 다져진 형태의 닭고기 고명이 좀 질기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라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하였다.
- 2) 이어서 기자들이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주문한 칼국수의 고명을 먹어본 뒤 ‘모양도 잘게 부서져 있고 먹었을 때도 조금 질긴 돼지고기 같은 맛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그 음식점에서 내놓은 쓰레기더미에서 빨간색 닭고기 포장지를 찾아내는 장면을 방송하였다.
- 3) 그런 다음 해당 포장지에 적힌 닭고기 가공업체를 찾아가는 장면과 해당 업체 내부의 작업 장면을 방송하였는데, 작업장 한쪽에 있는 노란색 통 속의 가득한 물에 담겨 해동되고 있는 냉동된 닭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업체 직원들이 그렇게 해동되는 닭에 관하여 ‘그건 연한 닭인 영계가 아니라 질긴 닭인 노계이다’, ‘유명한 ○○칼국수 집에 나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내보냈다. 그리고는 진행자가 ‘얼려 있다가 녹은 노계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가운데 닭의 겉가죽 부분이 푸르스름한 모습, 닭에서 붉은 핏물이 흘러나오는 모습, 냉동닭을 해동하기 위해 닭은 물에 죽은 파리가 떠다니는 모습과 살아있는 파리가 해동되는 닭 위를 기어 다니는 모습을 차례로 보여 주었다.
- 4) 뒤이어 ‘원래 얼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는데 후레쉬로 계속 놔두면 냄새가 난다. 오래 써야 하니까 얼렸다가 녹여서 쓴다.’는 직원의 말을 자막과 함께 내보낸 뒤, 냉동된 닭이 담긴 포장

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진행자가 ‘냉장보관해야 하는 닭을 냉동 보관한 것이었다. 유통기한도 열흘이나 지난 상태였다. 유통기한이 지나 뒤늦게 손질된 닭이 새로이 제조일자가 표시된 포장지에 담겨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닭 고기의 충격적인 비밀이 여기 있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노예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5) 이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라는 진행자의 말과 함께 장면을 전환하여 개 사육농장을 보여주면서, 농장 주인과의 인터뷰, 진행자의 해설 등을 통해 ‘대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은 폐기하거나 개 농장에서 혈값에 사들여 사료용으로 쓴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 6) 다음으로는 다른 닭 가공업체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얼음물로 씻는 모습, 냉동된 닭을 해동하기 위해 닭가 놓은 물에 핏물과 닭기를 덩어리가 들어 있는 장면을 보여 주고, ‘닭을 물에 넣어서 해동할 경우 계속 같은 물에 여러 닭이 담기게 되는 결과 어느 한 닭이 식중독균에 오염되어 있을 경우 다른 닭들도 다 균에 감염되므로, 이러한 2차 오염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닭 가공업체 네 곳에서 닭 해동에 사용한 물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그 중 두 곳에서는 치명적인 식중독균까지 검출되었음을 알린 뒤, 부산에 있는 한 닭 가공업체의 작업장 안에서 직원이 소변을 보는 모습, 소변을 청소한 빗자루로 닭 작업대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 7) 마지막으로 기자가 서울 중랑경찰서를 찾아가 닭 가공업체에서 취재한 화면을 보여 주며 이를 제보한 뒤, 경찰관들이 기자와 함께 앞서 등장한 닭 가공업체 중 한 곳을 찾아가 냉동된 닭을 해동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닭을 냉동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는 영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 ‘냉장보관해야 하는 닭을 임의로 냉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할 경우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어 정해진 보관법에 따라야 하는데 허가 없이 임의로 냉동시켜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다. 이미 폐기됐어야 할 닭고기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 다. 이 사건 방송 이후, 프로그램 초반에 등장한 칼국수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0000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닭과 비위생적으로 가공된 닭을 원고가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다수 게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27, 2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0000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어야 하는 닭이나 냉동되었다가 해동된 닭을 납품받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방송은 0000이 그러한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3, 4, 5,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방송에서는 제보자가 기자에게 칼국수 고명의 닭고기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서 제보자가 촬영하였다는 칼국수의 고명 사진을 화면 가득 확대하여 보여 주었다. ② 뒤이어 제보된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는 부분에서 0동 거리의 모습과 함께 0000 음식점의 입구 부분을 보여 주었고, 입구에서 기자가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직원이 입고 있는 앞치마 및 그 앞치마에 찍혀 있는 0000의 상표그림이 화면에 노출되었다. ③ 기자가 칼국수를 주문하여 먹는 장면에서 다시금 고명을 포함한 칼국수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화면에 등장하였다. ④ 위와 같이 화면에 드러난 0000의 상표그림은 원고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것이고, 고명의 모양을 포함한 칼국수의 전체적 생김새 또한 원고가 디자인 등록한 것이다. ⑤ 이 사건 방송 이후 여러 시청자들은 방송 초반에 등장한 칼국수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0000임을 알아 보고 그에 관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비록 ‘0000’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을 접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에 등장하는 칼국수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0000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은 ‘닭 가공업체는 냉동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보관하던 닭을 해동한 뒤 0000에 납품하였고, 그러한 닭고기가 0000의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허위성 인정 여부

갑 제1 내지 4, 7, 8, 9, 11 내지 18,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방송에서 0000의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포장지를 통하여 특정해 낸 닭 가공업체는 ‘00푸드’라는 업체이고, 원고는 실제로 00푸드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이를 0000에서 사용하였다. ② 00푸드의 직원들이 이 사건 방송 이후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00푸드는 매일 냉장 노계를 공급받아 냉장 상태 그대로

0000에 납품하였다. 냉동하여 보관하였다가 해동한 노계는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 0000은 00푸드로부터 냉동된 닭이 아니라 냉장 상태의 닭을 매일 오전 공급받는다. 0000은 이에 대해 냉동닭이 아닌 냉장닭의 시세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급받을 당시 0000의 직원이 직접 닭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거친다. ④ 00푸드는 굳이 냉동보관을 통해 닭을 저장해 두지 않더라도 냉장 상태 그대로 0000에 납품하기에 충분한 양의 냉장닭을 매일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2, 3, 갑 제23호증의 2, 3, 을 제1 내지 5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피디(PD)인 구00이 가명으로 00푸드에 취직하여 몰래카메라로 작업 현장 및 직원들과의 대화를 촬영하였다. ② 구00이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는 00푸드의 직원들이 전날 저녁부터 노란색 통 속의 물에 담긴 채 해동된 노계를 오전에 건져 부위별로 해체 작업을 한 뒤 포장지(이 사건 방송 중 0000의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빨간색 포장지이다)에 담은 모습, 냉장보관용 닭이 유통기한이 지나서까지 냉동된 상태로 보관되었다가 해동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③ 사흘에 걸친 구00의 00푸드 촬영기간 동안 00푸드의 직원들이 ‘0000에 납품되는 노계와 다른 곳에 납품되는 노계를 서로 구분하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거나, ‘0000에는 냉동된 바 없는 냉장 상태 그대로의 노계를 납품하고 다른 곳에는 냉동된 노계를 납품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은 없다. 오히려 구00의 촬영 영상에 등장하는 00푸드의 직원들은 신입 직원 행세를 하는 구00에게 작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관하여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노계를 냉동하였다가 해동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노계는 00칼국수(000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납품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냉동되었다가 해동한 노계를 가공한 뒤 포장지에 담는 과정에서는 해당 닭고기를 직접 지칭하여 0000에 납품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방송 말미에 등장한 경찰의 단속 장면은 바로 00푸드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방송에 등장한 바와 같이 단속 당시에도 구00이 직접 내부를 촬영한 때와 마찬가지로 노란색 통에서 닭을 해동하여 작업하는 사실과 냉장보관해야 할 닭을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냉동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0000에서는 00푸드로부터 냉동된 닭이 아닌 냉장상태의 닭만을 공급받고 그에 대해 검수를 거친다는 점이나 00푸드의 직원들이 이 사건 방송 이후 위 각 진술서 내용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는 점, 00푸드는 0000에 납품하기에 충분한 양의 닭을 공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닭 가공 업체는 냉동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보관하던 닭을 해동한 뒤 0000에 납품하였고, 그러한 닭고기가 0000의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방송 내용은 진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① 00푸드는 냉동된 상태의 닭을 0000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냉동하여 보관하던 닭을 해동한 뒤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포장지에 담아 냉장 상태로 0000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납품받은 닭을 검수한 0000의 직원들이 이처럼 해동된 뒤 부위별로 해체된 상태에서 납품된 닭을 보고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냉동되었던 것인지 냉장 상태 그대로 납품된 것인지 분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원고도 00푸드에서 냉동하였다가 해동한 닭을 납품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② 00푸드에서 충분한 양의 닭을 매일 공급받는다 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받은 닭을 그때 그때 바로 납품하지 않고, 미리 냉동하여 보관하고 있던 닭부터 가공하여 납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③ 00푸드의 직원들이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는 00푸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사용한다는 점이 알려지고 경찰에 적발까지 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구00의 촬영 영상에 담긴 00푸드의 작업 행태나 직원들의 진술은 구00이 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동료 직원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크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방송보도에 대하여 '0000은 폐기용 닭 또는 냉동되었다가 해동된 닭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비위생적으로 닭을 가공하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바(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00푸드가 냉장 상태의 닭을 냉동하여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해동한 뒤 가공하여 0000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은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닭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은 비위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만을 청구하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방송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소송계속 중에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 상호간에만 변경이 허용되고,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등’이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가리킨다. 그러나 위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문언상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변경이 허용된다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다른 청구를 추가하는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소의 경우처럼 당초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심리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청구를 그 소송계속 중 병합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 1)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은 0000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닭을 납품받는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0000의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하는 ‘노계’란 단순히 생후 450일에서 2년 사이의 닭을 말하는 것일 뿐인데도 이를 곧바로 폐기해야 할 닭으로 표현하면서 노계를 사용하는 원고의 재료선택과 조리법을 비방왜곡하였고, 이 사건 방송에 등장한 개 농장이나 00푸드를 제외한 다른 닭 가공업체는 0000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들을 0000의 칼국수 영상과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보여 주는 등 이 사건 방송에 등장하는 모든 닭 가공업체의 문제점이 0000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어떤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언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언론보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언론보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등 참조).

- 3)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제보자로 등장한 사람과 0000을 직접 찾아간 피고의 기자 등의 말을 통하여 ‘칼국수의 닭고기 고명이 약간 질기다’, ‘잘게 간 고명의 모양이 일반적인 닭고기 고명과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과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여 도축된 늙은 닭인 노계가 닭고기 고명의 재료이다’라는 내용이 방영된 사실, 이 사건 방송은 개 농장과 다른 닭 가공업체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보도한 뒤 00푸드의 단속을 준비하는 경찰관이 ‘칼국수 고명’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행자가 ‘일부 닭 가공업체들의 양심불량으로 인해서 언제 우리도 모르게 폐기용 닭을 먹게 될지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닭튀김을 먹는 사람의 모습, 닭고기 사료를 먹는 개의 모습과 함께 0000의 칼국수 화면을 다시금 보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알 수 있다. ① 비록 이 사건 방송에서 0000 칼국수 고명의 식감이 다소 질기고 그 모양도 다른 일반적인 고명과 다르다는 점이나 노계가 0000 고명의 재료라는 점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고명의 식감이나 모양 또는 그 재료로 노계가 사용된 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② 이 사건 방송은 00푸드에 대한 취재영상 말미에 0000의 칼국수를 보여 주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은 닭고기의 비밀이 여기 있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노계였던 것이다.’라는 진행자의 말을 내보낸 후, 진행자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라고 말하여 화제를 전환하면서 개 농장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였고, 방송 말미에 0000 칼국수를 다시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일부 닭 가공업체들의 양심불량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취지로 닭 가공업체들을 비판하는 진행자의 말을 삽입하였을 뿐 그들로부터 공급받은 닭을 사용하는 음식점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재료선택과 조리법을 비방하거나 왜곡하였다고 할 수 없고, 00푸드뿐만 아니라 다른 닭 가공업체와 개 농장까지도 0000과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은 ‘닭 가공업체에서 냉동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보관하던 닭을 해동한 뒤 0000에 납품하였고, 그러한 닭고기가 0000의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0000을 운영하는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은 일부 닭 가공업체의 비위생적 작업실태를 알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의 위생상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삼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언론보도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적시 사실은 진실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4)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3〉 방송내용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2009002 정정청구 2015나2009019(병합) 정정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합4564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후 10일 이내에 방송하는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 나.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약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27, 2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울 중구 0동에서 '0000'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로서 '먹거리 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7. 4.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에서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약 30분간 방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이 사건 방송은 진행자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돼야 할 닭고기, 식중독균 범벅이고 개 사료로 쓰이는 닭이 둔갑해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른다면 어떻게겠습니까? 충격적인 닭 가공 실태, 저희 먹거리 X파일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라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유명한 칼국수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칼국수 위에 올라온 다져진 형태의 닭고기 고명이 좀 질기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라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하였다.
- ▶ 이어서 기자들이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주문한 칼국수의 고명을 먹어본 뒤 '모양도 잘게 부서져 있고 먹었을 때도 조금 질긴 돼지고기 같은 맛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그 음식점에서 내놓은 쓰레기더미에서 빨간색 닭고기 포장지를 찾아내는 장면을 방송하였다.
- ▶ 그런 다음 해당 포장지에 적힌 닭고기 가공업체를 찾아가는 장면과 해당 업체 내부의 작업 장면을 방송하였는데, 작업장 한쪽에 있는 노란색 수조에서 가득한 물에 담겨 해동되고 있는 냉동된 닭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업체 직원들이 그렇게 해동되는 닭에 관하여 '그건 연한 닭인 영계가 아니라 질긴 닭인 노계이다', '유명한 ○○칼국수 집에 나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내보냈다. 그리고 진행자가 '얼려 있다가 녹은 노계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가운데 닭의 겉가죽 부분이 푸르스름한 모습, 닭에서 붉은 핏물이 흘러나오는 모습, 냉동닭을 해동하기 위해 닭은 물에 죽은 파리 1마리가 떠다니는 모습과 살아 있는 파리 1마리가 해동되는 닭 위를 기어 다니는 모습을 차례로 보여 주었다.
- ▶ 뒤이어 '원래 얼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는데 후레쉬로 계속 놔두면 냄새가 난다. 오래 써야 하니까 얼렸다가 녹여서 쓴다.'는 직원의 말을 자막과 함께 내보낸 뒤, 진행자는 '도계장에서 많은 닭이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하루 작업량 외의 닭들은 얼려두었다가 손질한다는 직원. 작업장 곳곳에선 언제 들어온지 모를 냉동닭이 해동되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 ▶ 이어 냉동된 닭이 담긴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진행자가 '냉장보관해야 하는 닭을 냉동 보관한 것이었다. 유통기한도 열흘이나 지난 상태였다. 유통기한이 지나 뒤늦게 손질된 닭이 새로이 제조일자가 표시된 포장지에 담겨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닭고기의 충격적인 비밀이 여기 있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노계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무려 19일이나 유통기한이 늘어난 닭'이라 자막을

방송하였다.

- ▶ 이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라는 진행자의 말과 함께 장면을 전환하여 개 사육농장을 보여주면서, 농장 주인과의 인터뷰, 진행자의 해설 등을 통해 ‘대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은 폐기하거나 개 농장에서 혈값에 사들여 사료용으로 쓴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 ▶ 다음으로는 다른 닭 가공업체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얼음물로 씻는 모습, 냉동된 닭을 해동하기 위해 닭가 놓은 물에 핏물과 닭기름 덩어리가 들어 있는 장면을 보여 주고, ‘닭을 물에 넣어서 해동할 경우 계속 같은 물에 여러 닭이 담기게 되는 결과 어느 한 닭이 식중독균에 오염되어 있을 경우 다른 닭들도 다 균에 감염되므로, 이러한 2차 오염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닭 가공업체 네 곳에서 닭 해동에 사용한 물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그 중 두 곳에서 치명적인 식중독균까지 검출되었음을 알린 뒤, 부산에 있는 한 닭 가공업체의 작업장 안에서 직원이 소변을 보는 모습, 소변을 청소한 빗자루로 닭 작업대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 ▶ 이어서 기자가 서울 중랑경찰서를 찾아가 닭 가공업체에서 취재한 화면을 보여 주며 이를 제보한 뒤, 경찰관들이 기자와 함께 앞서 등장한 닭 가공업체 중 한 곳을 찾아가 냉동된 닭을 해동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닭을 냉동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는 영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닭을 임의로 냉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할 경우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어 정해진 보관법에 따라야 하는데 허가 없이 임의로 냉동시켜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다. 이미 3개월 전에 폐기됐어야 할 닭고기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이날 이 유통업체에서 발견된 유통기간이 지난 닭은 무려 1,400여 마리이다.’라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 ▶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일부 닭 가공업체들의 양심불량으로 인해서 언제 우리도 모르게 폐기용 닭을 먹게 될지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닭튀김을 먹는 사람의 모습, 닭고기 사료를 먹는 개의 모습과 함께 0000의 칼국수 고명 모습을 겹쳐지게 방송하였다.

[3]

- 이 사건 방송 이후, 프로그램 초반에 등장한 칼국수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0000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닭과 비위생적으로 가공된 닭을 원고가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다수 게시되었다.
- 피고는 2014. 7. 4. ‘나라안에서 소문난 서울 0동의 한 유명 칼국수 집, 그런데 맛있게 소문난 이 식당의 닭고기 고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란 말을 시작으로 먹거리X파일의 닭고기 고명을 언급하고 유통기간이 10일이나 지난 것을 가공하여 유통기한이 또 늘어났다는 뉴스를 방송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0000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어야 하는 닭이나 냉동되었다가 해동된 닭을 납품받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방송은 0000이 이를 납품받아 사용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간접강제,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냉장 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유통기한 10일이 지나도록 냉동하여 보관하다 해동한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고 이는 유통기간을 경과하여 폐기할 닭이므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진실이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의 위생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공익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1, 3, 4, 5, 제2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방송은 제보자가 기자에게 칼국수 고명의 닭고기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서 제보자가 촬영하였다는 칼국수의 고명 사진을 화면 가득 확대하여 보여 주었다.
 - 뒤이어 제보된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는 부분에서 0동 거리의 모습과 함께 0000 음식점의 입구 부분을 보여 주었고, 입구에서 기자가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직원이 입고 있는 치마 및 그 앞치마에 찍혀 있는 0000의 상표그림이 화면에 노출되었다.
 - 기자가 칼국수를 주문하여 먹는 장면에서 다시금 고명을 포함한 칼국수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화면에 등장하였다.
 - 위와 같이 화면에 드러난 0000의 상표그림은 원고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것이고, 고명의 모양을 포함한 칼국수의 전체적 생김새 또한 원고가 디자인 등록한 것이다.
 - 이 사건 방송 이후 여러 시청자들은 방송 초반에 등장한 칼국수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0000임을 알아보고 그에 관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비록 '0000'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을 접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에 등장하는 칼국수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0000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실의 적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은 '0000은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간 10일이 경과한 폐기용 닭을 납품 받아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실의 허위성

갑 제1 내지 4, 7, 8, 9, 11 내지 18, 2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이 사건 방송에서 0000의 쓰레기터미에서 발견한 포장지를 통하여 특정해 낸 닭 가공업체는 '00푸드'라는 업체이고, 0000은 실제로 00푸드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이를 고명으로 사용하였다.
- 0000은 00푸드로부터 냉장 상태의 닭을 매일 오전에 공급받는다. 00푸드가 냉장상태의 닭을 납품하는 거래처는 0000이 유일하다.
- 0000은 이에 대해 냉장 닭의 시세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급받을 당시 0000의 직원이 직접 닭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거친다.

[2]

- 이 사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피디(PD)인 구00이 가명으로 00푸드에 취직하여 몰래카메라로 별지 4 몰래카메라 음성 및 영상과 같이 작업 현장 및 직원들과의 대화를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 이 사건 영상에 00푸드의 직원들이 전날 저녁부터 노란색 수조 속의 물에 담긴 채 해동된 노계를 오전에 건져 부위별로 해체 작업을 한 뒤 포장지(이 사건 방송 중 0000의 쓰레기터미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빨간색 포장지이다)에 담는 모습, 냉장보관용 닭이 유통기한이 지나서까지 냉동된 상태로 보관되다가 해동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 이 사건 영상에 나타난 구00과 00푸드의 직원인 노00, 강00, 사장 아들의 주요 대화내용 및 장면은 다음과 같다.

구00 : 오늘 잡아서 바로 갖고 오는 거?

노00 : 저녁에 도계한 것을 아침에 갖고 와요. 10시쯤이나 새벽에 갖고 와요.

...

구00 : 그럼 영계보다는 조금 상태는 안 좋겠다. 노계가 아무래도.

노00 : 그렇다고 해야죠. 아무래도 냉동으로 후레쉬로 나가지만 냉동 쓰니까 우리가.

...

구00 : 냉동을 해동시켜서 후레쉬로 나가는 거예요?

노00 : 네.

구00 : 몰라요? 몰라? 그렇게 나가도?

노00 : 그래도 금방 급냉을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 바로바로 쓰는 거니까.

...

구00 : (냉동닭을 녹이는 용도로 쓰이는 노란색 수조통에 있는 닭을 가리키며) 이 닭은 무슨 닭이에요?

사장 아들 : 노계. 이건 노계고, (차에 실린 닭을 가리키며) 지금 들어 온 건 육계인데, 이건 우리가 다른 데 작업해서 주는 거고, 우리 건 00 알아? 00칼국수라고.

구00 : 00칼국수

...

(직원 네 명이 화면 좌측 작업대에서 노계 해체작업을 하고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초록색 상자에 해체된 정육(지방이나 뼈 따위를 발라낸 살코기)을 담는다. 구00은 해체된 정육(이후 강00의 진술에 비추어 가슴살로 보인다)을 강00의 지시에 따라 초록색 바구니에 모아서 맞은편 모퉁이에 있는 포장 작업대로 가져온다. 포장대에는 초록색 바구니 4개에 정육이 일부 담겨져 있었고(냉장 닭인지 냉동 닭인지를 알 수 있는 화면이 없다), 강00은 구00이 방금 노계 작업대에서 가져온 정육을 섞으면서 “00 꺼는 가슴을 조금씩 섞어줘야 돼, 이게 00칼국수에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다. 좌측 화면에 네 명이 작업한 것은 부위별로 해체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

강00 : (초록색 통에 있는 정육을 다른 초록색 통에 있는 정육에 넣어 섞으며) 00 꺼는 가슴을 조금씩 섞어줘야 돼.

구00 : 이게 어디 나간다고요?

강00 : 00칼국수.

...

구00 : 정육이 좀 부족한데.

강00 : 그건 저쪽에서 가져오면 돼.

구00 : 갖고 올까요? (좌측 화면 작업대에서 직원 4명이 해동된 냉동노계를 해체하고 있고, 구00이 해체된 냉동 노계 정육을 한 움큼 집어 가지고 와서 노란색 통 붉은 포장지에 넣는다.)

강00 : 넣어. 넣어. 다 넣어.

...

구00 : 왜 얼리는 거예요. 보관 때문에?

강00 : 응. 보관 때문에. 후레쉬로 보관해야 돼 오래되면 냄새가 나니까. 고기 사오는 데서 많이 올 때는 얼려 가지고 사용하고 조금 올 때는 그 냥 다 사용하고 일주일 동안은 보관이 가능하거든. 냉장고에서도.

구00 : 조금 올 때는 그때그때 바로 작업하고 많이 올 때는 냉동해서 손질해 나가는구나.

강00 : 쟁여 놔야해 닭이 없을 때가 많아서.

...

노00 : 후레쉬로 갖고 오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관을 오래 못하니까. 여름에는 상하잖아. 겨울에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여름에는 상하니까 냉동을 시키는 거야.

구00 : 아, 냉동을.

노00 : 후레쉬로 쓰는 거냐. 그냥

구00 : 들어올 때는 후레쉬로 들어왔다가 냉동 한 다음에 오래 보관하려고 나중에 녹여가지고 해체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노00은 고개를 계속하여 끄덕인다.)

노00 : 노계는 어쩔 수가 없어. 오래가니까. 많이 작업을 안 하니까. 여름이라 금방 상해.

구00 : 00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냉동된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노00 : 상관없어. 그거는 후레쉬만 나가면 되니까 얼지 않고 나가니까, 개네는 바로 갈아서 자기 네가 볶아서 쓰는 거니까 상관없어.

...

사장 아들 : 응, 일단 닭이 없어서, 요새 닭 값이 비싸가지고, 닭이 없어가지고.

구00 : 저건 냉동 닭이에요?

사장 아들 : 응, 냉동닭.

구00 : 들어올 땐 냉동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생으로 들어와요?

사장 아들 : 원래 생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닭이 냄새 날까봐 얼려놔다가 녹여서 쓰는 거지.

...

구00 : (냉동닭의 유통기간을 확인하며) 2014. 5. 14.까지 냉장보관.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늘은 6월 2일인데, 이것은 2014. 5. 14.

...

사장 아들 : 들어온 지 별로 안 됐어 닭이 없으니까, 일단 다 닭이 들어왔으면 저장해 놔다가 우리가 녹여 쓰고 그래.

...

사장 아들 : 파계 닭이어서, 닭이 좀 크잖아. 그렇지? 상태가 안 좋은 건 냄새 나는 게 아니고 닭이 파계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닭이 좋은 닭이 있지만 안 좋은 닭도 있고. 그런 건 상관없이 00 거 나가는 거 그거엔 지장 없으니까 ... 신선한 거 얼지 않은 거로 들어오는데, 왜 닭을 얼리냐면 냄새가 나지 않게. 왜냐하면 후레쉬에서 계속 놔두면 냄새가 비린내가 나고 그게 상태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얼리는 거라고. 얼려서 오래 써야 하니까 신선한 상태에서 오래 써야 하니까 얼려서 우리가 녹여서 쓰는 거지. 그대로 놔두면 냄새가 나서 못 써.

구00 : 그대로 놔두면 냄새 나서.

사장 아들 : 버리지도 못하고 난리가 나. 왜 냄새 나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진단 말이야. 물건 안 받는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

[3]

○이 사건 방송 말미에 등장한 경찰의 단속 장면은 00푸드에 대한 것인데, 단속 당시에 이 사건 영상과 같이 노란색 수조에서 닭을 해동하여 작업하는 사실과 냉장 보관해야 할 닭을 유통기한

10일이 지나도록 냉동 보관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 2013. 6. 23. 경찰 단속 결과 00푸드에서 2014. 3. 13.과 2014. 6. 3.에 각 제조된 다수의 노계가 냉동상태로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2014. 3. 13. 제조된 것이 가장 오래된 노계로 보인다.

[4]

○ 00푸드는 2014. 5. 29. 1,300마리, 2014. 6. 1. 1,100마리를 납품받는 등 3~7일 간격으로 1,000마리 이상의 냉장 닭을 공급받고 있다.

○ 냉장 닭의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일이고 냉동 닭의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고 이 사건 영상에 나타난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다.

○ 축산물의 경우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면 당국에 보고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²⁸⁾

○ 위 경찰단속으로 인하여 00푸드는 2014. 7. 24. 포천시청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3조, 별표 11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방송은 △닭고기 유통 실태 문제제기 186초, 0000 칼국수 고명 제보 217초, 0000 납품업체인 00푸드 몰래카메라 275초 0000 칼국수 고명 6초, 개 농장 106초, 다른 닭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가공실태 593초, 00푸드 경찰단속 현장 359초, 사람이 치킨 먹는 모습, 개 사료, 칼국수 고명 영상 11초로 구성되는데, △이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폐기용 닭 유통(0000 고명, 00푸드, 개 농장) 부분과 비위생적인 가공실태(다른 닭가공업체 593초)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00푸드는 3~7일 간격으로 저녁에 도제한 닭을 냉장상태로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납품받고 있다. 이 사건 영상 촬영 시점이 2014. 5.말 2014. 6.초경으로 늦은 봄 내지 초 여름경으로 축산물이 쉽게 상하는 시기이고 00푸드 직원들은 일관되게 냉장으로 납품 받은 닭은 냉동으로 보관하다가 녹여서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00푸드는 3~7일 간격으로 냉장 닭을 공급받는데 매일 냉장상태의 닭을 0000에 납품하고 있는 점에 '도계장에서 많은 닭이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하루 작업량 외의 닭들은 얼려두었다가 손질한다'는 방송진행자의 발언을 더하면, 적어도 냉장 닭을 공급받지 못하는 날은 냉동 닭을 해동하여 가공 후 냉장상태로 0000에 납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상에 냉동 노계가 해동되어 가공된 가슴살이 0000에 납품하기 위해 포장되는 장면도 나타나 있다.
- 00푸드 직원들 진술서와 당심 증인 노00, 강00의 증언은 00푸드에서 냉장 닭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닭을 사용한다는 점이 알려지고 경찰에 적발까지 된 이후의 것이고 원고와 경제적

28)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4. 8. 20. 총리령 제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별표 12 4의 바].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영상에 담긴 00푸드의 작업 행태나 직원들의 진술은 000이 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동료 직원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00푸드는 전날 도계한 노계를 새벽이나 아침에 납품받아 급랭하여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가공하여 냉장상태로 0000에 납품하고 있고 0000이 냉장 상태로 납품하는 유일한 거래처로 납품에 필요한 양만 해동하여 가공하고 있으므로 노계 보관 기간 중 냉동보관 기간을 제외한 냉장보관 기간은 총 1~2일 정도이고 냉동과 해동은 각 1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냉장 닭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하였는데 판매하지 못한 닭을 냉동하여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냉장 닭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 10일을 회피한다는 주장은 00푸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00푸드는 위 경찰단속 결과 포천시로부터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을 뿐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이 적발되었다는 사유로 폐기처분을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00푸드는 이 사건 영상 촬영 당시 도계하여 냉장상태로 납품 받은 노계를 바로 냉동시켜 보관하다가 이를 해동한 후 가공을 하여 냉장 상태로 0000에 납품하는 것으로 보이고 총 냉장보관 기간은 1~2일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도계한 다음날 납품받은 노계를 바로 냉동상태로 보관하므로 노계의 유통기간은 냉장 닭 유통기간 10일과 냉동 닭 유통기간 12개월을 병행하고 여기에 냉동과 해동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냉동 및 해동을 각 1회 하고 냉장보관기간이 총 1~2일인 점에 비추어 0000이 납품받은 닭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고 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 중 0000이 ‘냉동되었다가 해동된 닭은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고 ‘유통기간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사용하였다’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은 유통기간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과 비위생적 닭가공 실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0000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주요사실이고 유통기간 경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냉장 닭을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하다가 해동 후 냉장 닭으로 납품하였다는 부수적 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즉 0000이 냉동 닭을 냉장 닭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방송의 주요사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중 ‘0000이 유통기한 10일이 경과한 폐기용 닭을 사용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방송보도에 대하여 ‘0000은 냉동되었다가 해동된 닭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비위생적으로 닭을 가공하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00푸드가 냉장 닭을 냉동하여 보관하였다가 해동한 뒤 가공하여 0000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는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비위생적 닭 가공업체 영상 부분은 개 농장 영상 이후 “또 다른 닭 가공업체를 찾았습니다. 작업장 입구에 HACCP 마크가 보입니다” “부산의 한 닭 가공업체”를 언급하며 00푸드와 다른 가공업체임을 명시하여 방송하였고 이들과 0000의 연관성을 암시할 만한 화면이 방송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만을 청구하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방송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소송계속 중에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 상호간에만 변경이 허용되고,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등’이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가리킨다. 그러나 위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문언상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변경이 허용된다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다른 청구를 추가하는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소의 경우처럼 당초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심리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청구를 그 소송계속 중 병합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0000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냉장 닭을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용 닭과 비위생적인 닭가공 실태로 구성되어 있고 0000은 전자에 한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고명 조리법을 비방왜곡하였다거나, 00푸드 외의 비위생적인 다른 닭가공업체도 0000과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은 공익성,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등 참조).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방송 중 00푸드가 임의로 냉동한 후 해동하여 가공한 후 냉장 닭으로 납품한 부분은 위법한 닭고기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일응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도 임의 냉동 및 해동으로 인한 유통기간 경과 및 감염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식용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00푸드는 냉동하여 보관하던 닭을 해동한 뒤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포장지에 담아 냉장 상태로 0000에 납품하였다. 사장 아들이 “버리지도 못하고 난리가 나. 왜 냄새 나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진단 말이야. 물건 안 받는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가공을 한 후 냄새가 나는 등 검수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닭은 납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절차에 냉동과 해동이 1회되고 총 1~2일 냉장상태로 보관된 점을 종합하면, 0000 검수 직원이 유통기한 10일이 경과하였는지, 냉동된 닭이었는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냉장 닭 값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도 00푸드에서 냉동하였다가 해동한 닭을 납품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0000은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하다가 해동한 닭을 납품받은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0000에 대한 보도가 닭고기 유통의 문제점을 보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닭갈비, 삼계탕, 닭찜, 치킨 등 닭요리 전문점도 아닌 한 숟가락 정도의 고명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칼국수 전문점이 닭고기 유통의 문제제기에 적당한 음식점인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이 0000은 피해자 지위에 있고 닭고기 전문 요리점도 아닌 점에 비추어 0000 방송 부분은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방송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발언과 포장지에 나타난 유통기한(냉장 닭 10일, 냉동 닭 12개월)에 비추어 방송제작자는 냉장 닭 유통기간과 냉동 닭 유통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경찰관의 ‘불법이지요’란 발언은 품목제조보고 등 유통절차에 관한 단속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

진행자 : 그렇다면 냉장보관 해야 할 닭을 임의로 냉동시켜 유통시키는 거는 합법일까?

기자 : 냉장으로 들어와서 냉동으로 급랭시키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형사 : 안 되지요. 염지 없이 그냥 물로 해동해서 가공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품목 제조보고서가 안 돼 있으면 불법이지요.

잡입 취재한 구00은 냉장 보관된 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노계가 입고되면 냉동시켜 보관하다가 해동하여 가공한다는 말을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들어서 도계된 노계가 입고된 즉시 냉동하여 보관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냉장상태로 납품된 닭을 바로 냉동하여 최장 3개월가량 보관하다가 해동하여 납품한 닭이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고 ‘0000은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 대상인 닭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여 방송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00푸드가 냉장 닭을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하다가 해동하여 냉장 닭으로 유통하는 영상 부분은 공익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에 불과한 0000 영상 부분은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0000이 유통기간을 경과하여 폐기대상인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하다가 해동한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나 주요사실인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 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0000 업주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 대상인 닭고기를 고명으로 사용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원고의 영업인 0000의 매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점, △유통기간이 경과한 폐기용 닭이라며 0000, 00푸드, 개 농장을 차례로 방송한 후 마지막에 닭고기 사료를 먹는 개의 모습과 함께 0000의 칼국수 고명 모습을 겹쳐지게 방송하여 마치 개 사료로 쓰여야 되는 닭고기가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점, △이 사건 방송에서 0000은 피해자에 불과한데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을 유통하는데 일조하여 공범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점, △이 사건 방송 이후, 프로그램 초반에 등장한 칼국수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0000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닭과 비위생적으로 가공된 닭을 원고가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다수 게시된 점,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용 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2014. 7. 4. '나라안에서 소문난 서울 0동의 한 유명 칼국수 집'이라며 유통기한이 10일이나 지난 것을 가공하여 유통기한이 또 늘어났다는 뉴스까지 방송한 점, △0000은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매일 2,000명가량의 손님이 이용하는 음식점이고, 0000 상표와 고명의 모양을 포함한 칼국수의 전체적 생김새를 디자인 등록하였고, 피고가 '나라안에서 소문난 서울 0동의 한 유명 칼국수 집'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명성이 있는 점, △피고가 그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방송의 전파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정정보도, 간접강제 및 돈 지급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목 : 0000의 칼국수는 폐기용 닭과는 무관
2.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2014. 7. 4.자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제보자가 제시한 0동 소재 유명 칼국수집의 닭고기 고명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으나, 0000이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어야 할 닭을 사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4〉 몰래카메라 음성 및 영상 생략

〈별지 5〉 방송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가단50310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나12795 판결(확정)

집단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얻은 수익의 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기재된 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니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 원고(피항소인) : A
- 피고(항소인) : B

[사실관계]

2011년 4월 19일 <머니투데이>는 「집단소송의 승자는 변호사?」 제하의 기사 등에서 변호사인 원고가 고객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을 맡아 큰 돈을 번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기사에서 원고가 올린 수익금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기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가 올린 수익금이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된 것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피고의 항소로 개시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이후 양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수익금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집단소송의 피해자들은 손해를 본 반면 변호사들은 이익을 챙긴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얻은 수익의 액수가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여 9,000만 원 또는 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은 진실이 아니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단503101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9.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하 ‘엘지텔레콤’이라 한다)의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을 대리하였던 변호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 웹사이트(<http://www.mt.co.kr>,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머니투데이(이하 ‘머니투데이’라 한다)의 소속 기자였던 사람이다.
- 나. 원고는 다음 카페 사이트(<http://cafe.daum.net/0000000000>)를 통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의뢰인들을 모집하면서, 의뢰인 1인당 예상 인지대 약 1만 원 등을 포함하여 착수금 3만 원을 지급받았고,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엘지텔레콤 고객들인 의뢰인 278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5268

호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6. ‘엘지텔레콤은 위 278명에게 각 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런데 머니투데이 소속 기자이던 김00은 2009. 11. 6. 이 사건 웹사이트에 ‘변호사만 돈 번 집단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2009. 11. 7.자 머니투데이에 ‘변호사만 배불린 집단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의뢰인들이 착수금 외에 별도로 인지대 등으로 1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원고의 실명을 공개한 채 각 작성·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04호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위 허위사실을 바로 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2010. 5. 3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4. 19.자 머니투데이에 ‘집단소송의 승자는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신문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고, 2011. 4. 19. 05:57경 이 사건 웹사이트에 ‘농협·현대캐피탈 집단소송의 승자는?...변호사’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문기사 및 인터넷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정정보도문을 요구하자, 2011. 4. 19. 이 사건 인터넷 기사 중 ‘결국 변론을 맡은 변호인만 9,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번 셈이다’는 부분을 ‘결국 변론을 맡은 변호인만 9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번 셈이다’로 수정하였고, 2011. 4. 20.자 머니투데이 및 이 사건 웹사이트에 ‘본지는 2011년 4월 19일자 인터넷신문 및 종이신문에서 〈집단소송의 승자는?...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엘지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집단 소송에서 변호인이 9,000만 원의 수익을 벌었다고 보도했으나, 계산 착오로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900만 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원문도 수정했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3279호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1. 24. 원고와 머니투데이 사이에 ‘머니투데이는 일간지 머니투데이 22면에 별지3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 초기 화면의 기사 제목들을 나열한 란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위 반론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위 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위 반론보도문이 함께 나타나도록 게재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 후 머니투데이 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우선,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떠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고,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그 표현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지칭대상은 당해 표현의 내용과 취지, 그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2009년 엘지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들 소송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가 위 사건에서 대리한 피해자들의 숫자 및 수임 내용, 위 사건의 진행경과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과거 머니투데이가 게재한 위 사건 관련 기사에 원고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 관련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언급된 위 사건의 변호사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대리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의뢰인이 273명이고 수임료는 1인당 3만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가 9,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얻은 수익을 '9,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정정하였으나, 원고가 받은 수임료 1인당 3만 원에는 이미 인지대 등 약 1만 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9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를 집단소송을 통하여 이익만 챙기는 변호사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여 9,000만 원 또는 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은 진실이 아니고, 이 사건 각 기사가 집단소송의 피해자들은 손해를 본 반면 변호사들은 이익을 챙긴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얻은 수익의 액수가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머니투데이의 선배 기자인 김00이 과거에 작성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관련 기사와 이에 대해 원고가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사건 및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 등을 통하여 원고가 받은 1인당 수임료 3만 원에는 인지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으로 얻은 수익이 '9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명예훼손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 전체적인 내용 및 그 중 진실이 아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경위, 보도의 시기, 이 사건 조정의 내용 및 그 이행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처음으로 게재된 2011.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하여 머니투데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는 머니투데이의 기자로서 사용자인 머니투데이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당시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와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이 사건 조정 절차에 관여하여 이 사건 조정을 수용한 점, 머니투데이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어느 정도 위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조정 후 20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포기한 권리는 머니투데이에 대한 나머지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대상기사 생략

〈별지 3〉 타 사건 조정 결과 반론보도문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1279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5. 8.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9.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보도시점, 기사에서 진실이 아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직업 및 머니투데이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① 피고와 머니투데이는 원고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인터넷 기사를 게재 당일 수정하고, 그 다음 날 신문 지면과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점, ② 이 사건 조정에서 머니투데이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하고 원고도 그 이상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머니투데이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피고가 침해한 원고의 법익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4.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629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12972 판결

당사자 특정 여부는 당사자의 주변 사람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강남신문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5월 12일 인터넷신문 <강남신문>에 「뻔뻔한 의사와 변호사…두번 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성형 외과 의사인 원고²⁹⁾에게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합병증을 앓았고,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가 보도의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 특정과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2015다66298).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이 내려졌으나(2014서울조정4543·4544)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 제기 된 바 있다.

[판결요지]

□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이모양은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에서 담당의사 B씨에게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합병증까지 앓아야 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00이 2011. 11. 24. 이모양의 의료사고 소송을 수임받았고, 담당의사 B씨가 진료기록부를 임의 조작하는 등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일관하여 이모양의 아버지 이모씨가 B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씨”라고 지칭하였으며, 법무법인 00은 그 명칭 그대로 지칭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의 대표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씨”라고 지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9) 이 사건 원고는 이비인후과 의사다. 기사에서는 ‘성형외과’ 의사로 표시되었는데 1심 법원은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원고를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의료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명칭이 그대로 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사자 특정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이 사건 기사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원고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관계자거나 이 00이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 00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 씨”라고 한 것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합62928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강남신문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인터넷 강남신문 홈페이지(<http://www.gangnamnews.net>)의 뉴스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이를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피고가 위 홈페이지에 2014. 5. 12. 게재한 별지 2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0000로 0000, 0층(00동)에서 '000이비인후과'라는 상호의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여 온 의사이다. 피고는 인터넷 강남신문 홈페이지(<http://www.gangnamnews.net>)를 통해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2. 별지 2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 등장하는 'B'라는 인물은 피고가 원고를 익명으로 표시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사 중 'B'는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기사는 '이모양이 원고로부터 코 수술을 받고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자, 원고가 불성실하게 대처하였고 진료기록부까지 임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 기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는 'B'가 '성형외과' 의사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이 사건 기사와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

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 또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 1) 별지 2 기재의 이 사건 기사에는 'B'에 대하여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의사 B'라는 설명 이외에는 그의 성명, 직업, 주거, 모습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별다른 기재내용이 없다. 그런데 위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의사 B'라는 설명은 원고의 실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문 익명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직업 및 근무병원도 원고와 다르다.
- 2)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자신에 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의료사고 및 진료부 임의 조작 부분에 관하여 '이모양이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담당의사 B씨에게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합병증까지 앓아야 했다', 'B씨가 초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불성실한 대처와 후속조치, 진료기록부를 임의 조작하는 등 의료법위반 등으로 일관하자, 이모씨는 B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은 주로 이모양 등이 변호사에게 의료소송을 의뢰하였으나 수임받은 변호사가 소송절차 진행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관한 설명으로, 'B'의 정체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다.

다. 판단

비록 이 사건 기사에 등장하는 'B'라는 인물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익명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 중 'B'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설명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의사'라는 표현이 원고의 실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 중 이 사건 기사의 'B'라는 인물이 위와 같이 실체와 다른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정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로서는 'B'라는 인물이 원고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기사의 'B'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기사만으로는 원고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항 기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12972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강남신문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6292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5.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강남신문 홈페이지(<http://www.gangnamnews.net>)의 뉴스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이를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 2]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1) 피고는 인터넷 강남신문 홈페이지(<http://www.gangnamnews.net>)의 뉴스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이를 클릭하면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피고가 위 홈페이지에 2014. 5. 12. 게재한 [별지 2]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의사로서 2004. 1. 1.부터 서울 강남구 0000로 0000, 0층 (00동)에서 '000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10. 3.경 이00(1988년생 여성)의 코뼈 골절을 치료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코뼈 위에 '서지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도 함께 시행하였다.
- 위 수술 이후 이00이 발열과 설사 증상이 계속되면서 '루푸스'로 진단되었다.

[2]

- 이00이 2011. 11.경 위 수술에 관련하여 원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무법인 00에 위임하였다.
- 한편으로 이00이 위 수술에 관련하여 원고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문서손괴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2012. 2. 29.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이00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 기각되었다. 그 기각 이유는, 루푸스는 젊은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발병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그 정

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이를 확진할 만한 검사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00의 주장과 같이 수술 후 발생한 염증이 루푸스 발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행한 수술과 이00이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00의 고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00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었다.

[3]

○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강남신문’(<http://www.gangnamnews.net>)을 발행하는 회사로서, 2014. 5.

12. 위 강남신문 홈페이지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00에 대한 수술, 이00의 소송위임 등에 관해 취재한 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이00을 “이모양”이라고 지칭하고, 원고를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담당의 사 B씨”라고 지칭하였으며, 법무법인 00은 그 명칭 그대로 지칭하였다.

○ 이00이 2014. 10. 15. 위 수술에 관련하여 원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무법인 △△에 위임하여 제기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강남신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해자

- 1)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2015. 3. 현재 강남구에 200여 개의 성형외과가 성업 중인데, 이 사건 기사에서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씨”라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 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한편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 3) 이 사건 기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이모양은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에서 담당의사 B씨에게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합병증까지 앓아야 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00이 2011. 11. 24. 이모양의 의료사고 소송을 수임받았고, 담당의사 B씨가 진료기록부를 임의 조작하는 등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일관하여 이모양의 아버지 이모씨가 B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였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00에 대한 수술, 이00의 소송위임 등에 관하여 취재한 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 사건 기사에서 이00을 “이모양”이라고 지칭하고, 원고를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씨”라고 지칭하였으며, 법무법인 00은 그 명칭 그대로 지칭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씨”라고 지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4)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원고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관계자들이나 이00이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 00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씨”라고 한 것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사실 적시

-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에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정정보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한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가리키는 것이나,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 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써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한편으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 2)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원고의 의료사고, 진료차트 조작 등 이00 측에서 원고를 고소한 모든 혐의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혐의 없음을 이유로 이00 측의 고소를 종국적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 △원고가 최선을 다하여 이00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수술비용 환불과 대학병원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 △ 이00 측의 대리인 법무법인 00의 담당변호사와 원고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 3) 이 사건 기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책임한 태도와 진료기록까지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하고, “이모양은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에서 담당의사 B씨에게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합병증까지 앓아야 했다”고 하고, “B씨가 초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불성실한 대처와 후속조치, 진료기록부를 임의 조작하는 등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일관하자 이모씨는 B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B씨”로 지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이00이 원고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합병증을 앓았고,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위료법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00이 원고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문서손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2. 29.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00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 기각되었으며, 그 기각 이유는, 루푸스는 젊은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발병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이를 확진할 만한 검사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00의 주장과 같이 수술 후 발생한 염증이 루푸스 발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행한 수술과 이00이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00의 고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이00이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위 재항고 기각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2014. 5. 12. 게재된 이 사건 기사에서 <이00이 원고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합병증을 앓았고,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한편으로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이모양의 아버지) 이모씨는 수천만원 상당 진료비와 진료책임 등을 의료사고를 낸 담당의사 B씨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B씨가 초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불성실한 대처와 후속조치, 진료기록부를 임의 조작하는 등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일관하자 이모씨는 B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고, “(이모양의 아버지) 이모씨 가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변호사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이 “B씨가 초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불성실한 대처와 후속조치”를 하였다고 한 것은, 그러한 “약속”이나 “대처”, “후속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약속이행이나 대처 및 후속조치가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아 성의가 없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표현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이 “이모씨 가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변호사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고 한 것은, 이00의 가족들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 자체도 원고와 법무법인 00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기

사에서 원고와 법무법인 00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선을 다하여 이00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수술비용 환불과 대학병원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 법무법인 00과 원고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것인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거나 사실적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 및 위자료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이00이 원고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합병증을 앓았고,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위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의 분량과 게재 위치,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할 정정보도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주문 1.의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으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게재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가 원고의 인적사항을 다르게 기재하여 기사내용 자체만으로는 기사의 대상이 원고임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 ‘뽀뽀한 의사와 변호사...두 번 운 아버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용 : 본 신문은 2014. 5. 12.자 뉴스 사회면에 ‘뽀뽀한 의사와 변호사...두 번 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이모양’에게 코 성형수술을 했던 의사는 의료사고를 내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환자 이모양 측은 해당 병원 의사를 의료사고 및 진료기록 조작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의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2> 대상기사 생략

<별지 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더라도 오래 전 입수한 녹음파일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 원고 : 성남시 외 1명
- 피고 :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3년 6월부터 12월 사이 인터넷신문 <성남일보>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에 관한 4건의 비판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같은 해 12월 30일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제하의 기사에서는 원고 이재명의 도덕성을 비판하며 그가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본문 중간에 게재하고 해당 파일을 활용한 동영상파일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했다.

원고 이재명은 임시조치를 통하여 위 녹음파일 및 동영상파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도하는 한편, 피고 신문사를 상대로 위 파일들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 341). 이후 원고들은 4건의 비판 기사 및 녹음파일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부정했지만, 피고가 녹음파일을 게시한 동기를 원고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고 녹음파일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인정하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 이재명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6년 1월 15일 이를 기각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764) 이후 피고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5월 26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2016다206925).

한편, 원고들은 소송 제기애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불성립된 바 있다(2013경기조정175·176).

[판결요지]

□ 녹음파일 게재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존재 여부

2013. 12. 30.자 기사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게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녹음파일상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내용이 전적으로 원고 가족 내부의 사적인 것인 점, 원고의 입장에 대한 취재 없이 녹음파일이 게시된 위 기사를 게시한 점, 피고 신문사는 녹음파일 입수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나 지나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녹음파일을 게재한 점, 녹음파일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 A는 동영상파일을 새로 제작하여 이를 유튜브에 다시 게시함으로써 녹음파일 및 동영상파일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어서 원고의 인격 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녹음파일 게시의 동기는 원고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명목상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게재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등
원	고	1. 성남시 2. 이재명
피	고	1.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 2. A
변론종결		2015. 3. 2.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재명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성남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재명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성남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성남시가, 원고 이재명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이재명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2주 내에 일반주간신문 성남일보를 발행하여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성남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4면 기사 게재부분 우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대제목을 글자크기 성남일보 서체 포인트 22의 크기로, 그 아래에 별지 1 정정보도문 기재 제목과 같은 내용의 중제목을 글자크기 성남일보 서체 포인트 12의 크기로 각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 정정보도문 기재 본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글자크기 성남일보 서체포인트 9.7의 크기

로 1회 게재하라.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2주 내에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는 원고들에게 위 2주가 경과한 날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신문 성남일보(<http://www.snillbo.co.kr>)의 홈페이지 뉴스 중 정치면의 초기화면 기사 목록 제일 앞부분에 별지 2 정정보도문 기재 제목을 II안에 표시하여 48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2 정정보도문 기재 본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2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가 위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는 원고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성남시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이재명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 성남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이재명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후 위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성남일보(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성남일보를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자 일반주간신문 성남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신문사의 대표자인 피고 A는 위 각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겸 기자이다.

나. 피고 신문사의 2013. 6. 30.자 인터넷신문 기사

피고 신문사는 2013. 6. 30.자 인터넷신문 성남일보의 웹사이트(<http://www.snillbo.co.kr>, 이하 같다)에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시의회와 갈등, 모라토리엄, LH와 전쟁 선포」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2013. 6. 30.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선 5기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들어 성남시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 중 ‘시의회와의 갈등’(1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민선 5기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17.4%)과 ‘본시가지 재개발’(16.1%), 최근 분당구 백현동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선언한 ‘LH와의 전쟁선포’(13.2%)가 뒤를 이었다.

(표 생략)

이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상생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배치되는 ‘부정적 리더십’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절반이 넘는 수가 민선 5기 성남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떠올렸다는 원인은 인권변호사였다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얻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이재명 시장의 ‘튀는 행보’나 다름없는 ‘오버액션(overaction)’으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략)

다. 피고 신문사의 2013. 8. 26.자 일반주간신문 기사

피고 신문사는 2013. 8. 26.자 일반주간신문 성남일보 제4면에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시의회와 갈등, 모라토리엄, LH와 전쟁선포」라는 제목으로 2013. 6. 30.자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2013. 8. 26.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피고 신문사의 2013. 10. 15.자 인터넷신문 기사

피고 신문사는 2013. 10. 15.자 인터넷신문 성남일보의 웹사이트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2013. 10. 15.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의회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시의회 의정연수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21년산 발렌타인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성남시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 네티즌 ‘발렌타인’은 지난 14일 성남일보 기사 댓글에 ‘성남시의회, 발렌타인 21년산 21병 ‘폭탄주 파티’라는 댓글을 통해 지난달 30일 강릉에서 열린 시의회 의정연수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이니까. 21병을 선물했습니다”라며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

(댓글 인용 부분 생략)

이 댓글에서 ‘발렌타인’은 “시의원 의정연수회에 무엇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그렇게 했을까요? 의문입니다. 어림잡아 발렌타인 21년산이면 1병당 15만 원씩만 잡아도 3,150,000원이네요. 판공비로 산 것인지, 국장들이 건어서 산 것인지, 스폰을 받은 것인지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들은 꿈에도 마실 수 없는 발렌타인을 21병이나 하루밤에 폭탄주로 마셔버렸다니”라고 비판.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재명 시장과 관련 실국장들이 시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참석한 것은 사실이며 이재명 시장이 그러한 건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렌타인도 21병이 아니고 13병으로 실국장들이 개별로 가져왔다”고 해명.

마. 피고 신문사의 2013. 12. 30.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mp3 녹음파일

- 1) 피고 신문사는 2013. 12. 30.자 인터넷신문 성남일보의 웹사이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 기사(이하 '2013. 12. 30.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면서 위 기사 중간에 「이재명 시장 막말」 mp3 파일 듣기」라는 제목의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함께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의 행간읽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본보에 대한 편견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성남일보는 지난해 9월 3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형 이□□ 회계사와의 직격 인터뷰를 3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 회계사와의 갈등이 단순히 형제간의 관계를 넘었을뿐만 아니라 공인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태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특히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한 욕설발언 파일이 사회적 통념을 넘는 발언이라고 판단해 인터뷰를 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이재명 시장 막말' mp3 파일 듣기

성남일보의 인터뷰는 이□□ 회계사의 전문성과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볼 때 이□□ 회계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으며 언론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했다고 본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략)

- 2) 2013. 12. 30.자 기사에 함께 게재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2012. 7. 6. 원고 이재명과 그 형수인 박○○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다.
- 3) 2013. 12. 30.자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A는 2014. 1. 9. 이 사건 녹음파일을 동영상으로 편집(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라 한다)하여 이를 유튜브 웹사이트(<http://www.youtube.com>)에 게시하였고, 이를 다시 2013. 12. 30.자 기사와 연결하여 일반 독자들이 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4) 원고 이재명은 피고 신문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341호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동영상파일에 관한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4. 2. 5. '피고 신문사는 피고 신문사가 관리하는 성남일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사건 녹음파일 또는 동영상파일이나 그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0, 19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① 2013. 6. 30.자 기사 및 2013. 8. 26.자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전제가 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 응답자에게 ‘성남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을 뿐이고, 응답사항인 성남시의 특정 행정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이 아니며, 응답사항들이 긍정적 이미지인지 부정적 이미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신문사가 스스로 ‘시의회와 갈등, 모라토리엄, LH와 전쟁선포’가 부정적 이미지라고 단정짓고 원고들을 비난하는 보도를 게재한 것은 허위의 보도이다.
- ② 2013. 10. 15.자 기사와 관련하여, 매년 9월 내지 10월경 성남시 의회 의정연수회가 개최되어 왔으며, 만찬을 겸한 화합의 밤 행사에는 관례적으로 성남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위문을 가서 시의원들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왔다. 이에 원고 이재명과 성남시 소속 구청장, 국장, 사업소장 11명은 2013. 9. 30. 18:30부터 개최된 2013년 성남시 의회 의정연수회 화합의 밤 만찬행사장에 참석하였고, 전례에 따라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온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4병을 소관 위원회별로 배분하여 시의원들과 함께 나누어 마셨는데, 원고 이재명은 21년산 발렌타인을 제공하거나 ‘발렌타인 21년산이니까 21병을 선물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건배제를 한 사실이 없고, 해당 양주는 성남시의 각 실·국장들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므로 댓글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전문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했더라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으므로 2013. 10. 15.자 기사는 허위의 보도이다.
- ③ 2013. 12. 30.자 기사 및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위 기사 보도는 언론의 정상적인 비판 감시의 역할을 벗어나 원고 이재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익을 가장하여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원고 이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6조(2013. 8. 26.자 기사 및 2013. 10. 15.자 기사) 또는 민법 제764조(2013. 6. 30.자 기사)에 기하여 별지 1, 2 각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언론중재법 제30조 또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신문사와 피고 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겸 기자인 피고 A는 각자 원고 성남시에게 50,000,000원, 원고 이재명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2013. 6. 30.자 기사 및 2013. 8. 26.자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각 기사의 보도일 무렵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3. 6. 30.자 기사 및 2013. 8. 26.자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먼저 2013. 6. 30.자 기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

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3. 6. 30.자 기사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3. 8. 26.자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사의 보도일이 2013. 8. 26.이라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기사가 게재된 당일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위 기사의 내용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4.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나. 2013. 6. 30.자 기사 및 2013. 8. 26.자 기사 부분에 관한 판단

2013. 6. 30.자 기사 및 2013. 8. 26.자 기사의 요지는, 민선 5기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그 답변 항목인 ‘모라토리엄 선언, 시의회와의 갈등, LH와의 전쟁선포, 재개발, 호화청사 매각, 자주재원 확충, 기타’ 중 시의회와의 갈등이 19.7%,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이 17.4%, 본시가지 재개발이 16.1%, LH와의

전쟁선포가 13.2%의 비율로 나타났고, 그 중 합계 50% 이상을 차지한 '시의회와의 갈등, 모라토리엄, LH와의 전쟁선포'가 부정적 이미지임을 전제로 절반 이상의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피고 신문사가 '모라토리엄 선언, 시의회와의 갈등, LH와의 전쟁선포'를 부정적 이미지라고 보도한 것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문사 등 성남지역 4개 신문사는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민선 5기 성남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여론조사 문항이 있었던 사실, 그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는 '① 모라토리엄 선언 ② 시의회와의 갈등 ③ LH와의 전쟁선포 ④ 재개발 ⑤ 호화청사 매각 ⑥ 자주재원 확충 ⑦ 기타'가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라토리엄 선언 17.4%, 시의회와의 갈등 19.7%, LH와의 전쟁선포 13.2%, 재개발 16.1%, 호화 청사 매각 12.1%, 자주재원 확충 5.4%, 기타 16.1%로 나타난 사실, 피고 신문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 중 '시의회와의 갈등'(1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민선 5기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17.4%)과 '본시가지 재개발'(16.1%), 최근 분당구 백현동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선언한 'LH와의 전쟁선포'(13.2%)가 뒤를 이었다'고 적시하였고, 위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만들어 게재하기도 하는 등 위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신문사는 위 각 기사를 통해 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그 중 상위를 차지한 '모라토리엄 선언, 시의회와의 갈등, LH와의 전쟁선포'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기사를 작성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성남시의 특정한 행정 정책적 행위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가치 판단 내지 평가의 문제일 뿐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각 기사에 나타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성남시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 문구만을 따로 떼어 위 여론조사에서 '성남시의 이미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를 직접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있어서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2013. 10. 15.자 기사 부분에 관한 판단

2013. 10. 15.자 기사의 요지는 성남시 시의회 의정연수회에 참석한 원고 이재명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남시 시장인 원고 이

재명이 시의회 의정연수회에 참석하였으며, 전례에 따라 발렌타인 21년산 양주를 소관 위원회별로 배분하여 시의원들과 나누어 마셨다는 것인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날 마신 양주가 21병이 아닌 14병이라거나 원고 이재명은 술을 준비하거나 건배사를 한 적이 없고,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이 술을 준비한 것이라는 사실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중요한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신문사는 2013. 10. 15.자 기사 하단에 ‘성남시 관계자는 “이재명 시장과 관련 실국장들이 시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참석한 것은 사실이며 이재명 시장이 그러한 건배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렌타인도 21병이 아니고 13병으로 실국장들이 개별로 가져왔다”고 해명’하였다는 내용의 원고들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3. 10. 15.자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2013. 10. 15.자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원고들의 입장을 기사 내용에 포함시켜 보도한 이상 위 기사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3. 6. 30.자 기사, 2013. 8. 26.자 기사 및 2013. 10. 15.자 기사 부분에 관한 판단
2013. 6. 30.자 기사 및 2013. 8. 26.자 기사 내용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거나 2013. 10. 15.자 기사가 허위의 보도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2013. 6. 30.자 기사, 2013. 8. 26.자 기사 및 2013. 10. 15.자 기사의 각 내용만으로는 위 각 기사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3. 12. 30.자 기사 및 이 사건 녹음파일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

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2, 11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 이재명의 형제자매는 모두 5남 2녀이며, 원고 이재명은 넷째 아들인데, 원고 이재명의 셋째 형인 이□□은 원고 이재명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어오다가 원고 이재명의 비서인 백00과 다툰 후 2012. 5. 28.경 성남시 중원구 00동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어머니 구00의 집에서 구00에게 ‘원고 이재명에게 전화하여 원고 이재명의 비서인 백00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집 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구00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8.경 원고 이재명의 부인에게 ‘구00을 칼로 썰어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썰어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구00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이재명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 이재명과 말다툼을 한 사실
- ② 한편 위와 같은 이□□과 원고 이재명의 다툼에 대하여, 이□□ 및 원고 이재명의 동생인 이00은 2012. 6. 23.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ljm3687>)에 ‘이□□의 정신적인 문제와 폭언으로 인하여 이□□과 원고 이재명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원고 이재명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및 원고 이재명의 형인 이△△은 2012. 6. 29.경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eppo5486>) 등에 ‘이00의 위 글이 모두 사실이며, 이□□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이 이□□의 정신과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 ③ 원고 이재명은 이□□의 위 ①항과 같은 패륜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2. 7. 6. 이□□의 집으로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이□□의 부인인 박00은 원고 이재명의 동의 없이 원고 이재명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만들었는데, 당시 박00은 이□□과의 통화를 원하는 원고 이재명에게 ‘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고 이재명의 언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철학적 사상이 있지만 원고 이재명은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

니 원고 이재명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이□□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우 화가 난 원고 이재명이 박00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언사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진 사실

- ④ 또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위와 같은 원고 이재명의 욕설뿐만 아니라, 원고 이재명 부인의 사생활과 원고 이재명의 이□□에 대한 태도를 비난하는 박00의 언행, 원고 이재명 및 원고 이재명의 가족관계, 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사적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실
- ⑤ 피고 신문사는 2012. 7. 25.경 박00의 남편인 이□□을 통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비롯하여 이□□이 원고 이재명과의 대화 또는 전화통화 등을 녹음한 파일 등을 입수한 사실
- ⑥ 한편 위와 같이 원고 이재명과 관계가 좋지 않던 이□□이 성남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원고 이재명의 동의 없이 원고 이재명과의 대화 등을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게재하는 등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자, 원고 이재명은 2012. 7. 27. 이□□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478호로 위 대화 등의 공개 및 유포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8. 22.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 ⑦ 피고 A는 원고 이재명과 이□□의 다툼과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한 것 등을 계기로 이□□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은 원고 이재명이 정신적으로 문제없는 이□□을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는 등의 원고 이재명을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피고 신문사는 이□□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원고 이재명이나 그 형제 등 가족들의 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2. 9. 3., 2012. 9. 10. 및 2012. 10. 8. 세 차례에 걸쳐 성남일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사실
- ⑧ 피고 신문사는 이미 위와 같이 2012. 7. 25.경 이□□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과의 인터뷰과정에서 위 가처분결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2013. 12. 30. 성남일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2013. 12. 30.자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 이재명의 2012. 7. 6.자 박00에 대한 욕설이 피고 신문사가 이□□과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라고 기재하고, 그와 함께 이 사건 녹음파일을 게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녹음파일상의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원고 이재명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2. 30.자 기사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00, 이△△ 등 원고 이재명의 가족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
- ⑨ 당시 성남일보의 웹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던 주식회사 00미디어정보는 원고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2014. 1.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기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의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이에 피고 A는 2014. 1. 9. 이 사건 동영상파일을 유튜브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다시 2013. 12. 30.자 기사와 연결하여 일반 독자들이 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유튜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원고 이재명

의 요청에 따라 2014. 1. 16.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임시차단조치를 취하자, 피고 A는 2014. 1. 21. 자신이 유튜브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실

- ⑩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 이재명이 2014. 1. 7. 피고 신문사의 대표자인 피고 A를 고소함에 따라 2014. 1. 15. 피고 A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치고 이 사건 녹음파일을 비롯한 피고 A의 원고 이재명에 대한 기사 등의 제반 자료를 검토한 후 2014. 1. 1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 A의 이 사건 녹음파일 게재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기하여 피고 신문사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
- ⑪ 인터넷신문 성남일보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피고 신문사는 전임시장들이 재직할 당시에는 그들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별도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없으나, 원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후에 원고 이재명의 이름을 딴 ‘이재명’이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고 2010. 7. 9.경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개 이상 원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온 사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신문사와 위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A는 2013. 12. 30.자 기사를 통해 원고 이재명과 형수인 박00 사이의 대화로서 심한 욕설 및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원고 이재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한편 피고들은, 원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업무집행과 업무처리방식은 물론 그 성품과 사람됨됨이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문제로서, 선출직 공직자인 원고 이재명이 막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공직담당적격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이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임무이고, 2013. 12. 30.자 기사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013. 12. 30.자 기사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게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녹음파일상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내용이 전적으로 원고 이재명 가족 내부의 사적인 것인 점, 원고 이재명의 형과 동생인 이△△, 이00이 이□□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고 이재명의 입장에 대한 취재 없이 이 사건 녹음파일이 게시된 위 기사를 게시한 점, 피고 신문사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입수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나 지나

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녹음파일을 게재한 점, 이 사건 사이트의 기사 게시 현황, 이 사건 녹음파일의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 A는 이 사건 동영상파일을 새로 제작하여 이를 유튜브에 다시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동영상파일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이재명이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어서 원고 이재명의 인격 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 게시의 동기는 원고 이재명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명목상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3. 12. 30.자 기사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게재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재명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신문사와 2013. 12. 30.자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A는 원고 이재명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2013. 12. 30.자 기사의 작성 및 보도 경위, 그 형식과 내용, 원고 이재명의 사회적 지위, 나이, 경력,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 이재명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재명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2013. 12. 30.자 기사의 작성일인 2013. 12.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재명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재명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성남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6〉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59391 판결(확정)

상해치사를 살인으로 잘못 보도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헤럴드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발생한 전화방 도우미 사망 사건과 초등생 실종 및 사망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전화방 도우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혐의와 초등생들에 대한 강제추행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원고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협박과 강요, 허위 의견서 작성 등의 행위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소했다.

피고는 2012년 9월 21일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에 원고의 위 패소 소식을 전하며 원고가 2007년에 초등생들과 2004년에 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2004년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인정되었다며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가 상해치사와 살인을 구별하지 않고 살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 통념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36534). 이에 원고가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피고의 기사가 원고가 2004년 정씨를 살해한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은 인상을 준다는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3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에 대하여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해치사죄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살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는 위와 같은 부분에 관한 설명 없이 “……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돼 ……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라고만 기재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에 비하여 그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실 및 대법원에서 원고를 사형에 처하기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위 두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 위 두 사실이 별다른 추가적인 설명 없이 잇따라 기재됨으로써 원고가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4나59391 손해배상 (명예훼손)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헤럴드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가소336534 판결
변론종결		2015. 3. 23.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고,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변론을 열어 원고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제1심 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하는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인바(같은 법 제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만 원으로서 소액사건에 해당함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피고가 이를 다투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제1심이 변론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났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는 2004. 7. 16. 발생한 전화방 도우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를 부인하여 위 사건의 수사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2007. 12. 25. 발생한 초등학교 이00, 우00 실종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전화방 도우미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토막 내 은닉한 범행을 자백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2008고합239(병합)호로 이00, 우0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전화방 도우미에 대한 살인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 2) 위 법원은 2008. 6. 18. 이00, 우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사체은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전화방 도우미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와 사체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고에 대하

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호), 위 법원은 2008. 10. 17. 살인 공소사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이00, 우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사체은닉죄와 전화방 도우미에 대한 상해치사죄, 사체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8도9867호), 대법원은 2009. 2. 26.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4)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최00의 협박과 강요, 허위 의견서 작성 등의 행위로 인하여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최00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11. 11. 3. 선고 2010가소5275476호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 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55282 판결),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 5) 피고는 기자 조00이 2012. 9. 21. 08:55 입력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다음부터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그 무렵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인 “헤럴드경제”의 인터넷판에 게재하였다.

2007년 안양 초등학교 납치 살해범 A(43)이 “수사과정에서 협박을 당해 누명을 썼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이 사건에 대한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00(당시 11세)·우00(당시 9세) 양을,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협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허위의견서를 작성해 누명을 씌웠으며 최모 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최 경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최근에 교도관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나. 판단

1) 법리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도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 79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정씨 살해’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해치사죄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살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는 위와 같은 부분에 관한 설명 없이 “……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라고만 기재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에 비하여 그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형사피고인이었던 원고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희소성에 비추어 정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존재하고, 원고의 범죄행위는 모든 언론 매체가 집중 보도하였을 만큼 널리 알려지고 전 국민적 충격을 준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것으로 당해 피고인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공공에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문은 일정한 경우 대중의 접근 및 열람이 보장되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마치 원고가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부분은 오래 전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된 사건에 관하여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여 기재한 부분에 불과하여 그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공의 이해가 결려 있다거나 위 부분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실 및 대법원에서 원고를 사형에 처하기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위 두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 위 두 사실이 별다른 추가적인 설명 없이 잇따라 기재됨으로써 원고가 정씨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과수 부검감정서 성추행 흔적’ 부분

원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다음부터 “국과수”라고 한다)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2심도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라는 기재 부분이 담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강제추행 부분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은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2심 판결문의 사실인정 일부를 그대로 이기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 부분은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판결에 기재된 원고 패소의 이유를 적시한 것일 뿐 원고가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은 원고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공무원 최00이 허위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재된 부분인 점,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그 이유 부분에서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우00의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우00의 질부 3시 방향에 점막손상, 8시 방향에 점막 출혈이 보이는 등 미세하기는 하나

질내에 외상성 손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피고 최00은 위와 같은 부검감정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우00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를 조사한 사실"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여기에서 '질내에 외상성 손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국과수의 의견은 성추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가 위 항소심 판결의 실시 내용을 축약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놓고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죄의 유죄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상태로 있는 이상 원고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 중 위 2)의 가)항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법,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형식, 헤럴드경제가 일간신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300,000원이 적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합586479 판결(확정)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 : 성남시 외 1명
- 피고 : 주식회사 채널에이 외 1명

[사실관계]

2014년 10월 20일 생방송으로 방영된 채널A의 프로그램 <뉴스특급>에서는 사회자와 출연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같은 달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원고 이재명 시장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방송 출연자인 피고가 원고 이재명에게 손해배상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 성남시는 명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사건 방송이 생방송으로서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다. 이후 양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의 일종인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성남시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주민, 자치권으로 구성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2) 생방송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방송사도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보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 채널에이는 피고 차명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피고 차명진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할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방송보도는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행사를 성남시가 주최하였거나 후원하였는지 여부와 위 사고에 성남시가 도의적 또는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재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피고 채널에이가 이 사건

방송 전에 피고 차명진이 원고 이재명에 대하여 중복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수익계약으로 주거나,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86479 손해배상(기)
원 고	1. 성남시 2. 이재명
피 고	1. 주식회사 채널에이 2. 차명진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 차명진은 원고 이재명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성남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이재명의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 원고 이재명의 피고 차명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성남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성남시가 부담하고, 원고 이재명과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재명이 부담하며, 원고 이재명과 피고 차명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 이재명이, 나머지는 피고 차명진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성남시에게 100,000,000원, 원고 이재명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성남시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이재명은 원고 성남시의 시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케이블 TV 방송 '채널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차명진은 전(前) 국회의원이다.

나. 이 사건 방송 보도

- 1) 피고 채널에이는 2014. 10. 20. 13:30경 방송된 채널A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김광현, 대담자 피고 차명진과 전원책 변호사가 2014. 10. 17.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성남시의 행사주최 여부와 책임 유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 보도'라 한다).
- 2) 이 사건 방송 보도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가) 피고 차명진 : 이번에도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에) 5백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5백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 달라. 그것은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 이건 사실상의 주최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주최한다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5백만 원 후원하고 포스터에 후원 붙인 게 이미 그것은 공동주최이고(이하 '제1 보도'라 한다).
 - 나) 전원책 변호사 : 이번에도 왜 거기에 테크노밸리 광장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공연을 매 주 하고 있는 겁니까?(이하 '제2 보도'라 한다)
 - 다) 피고 차명진 : (원고 이재명은) 시장이 되시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중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거나(이하 '제3 보도'라 한다)
 - 라) 피고 차명진 : (원고 이재명은)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자기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이하 '제4 보도'라 한다).
 - 마) 피고 차명진 : (원고 이재명은) 침소봉대를 많이 해요.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판교에 있는 땅을 잠시 성남시가 팔아가지고 빚을 진 거를 모라토리엄 선언 해가지고 성남시가 망할 것처럼 언론에 한번 짝 나고,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크게 선거 전에 광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진행은 아직 안 끝났지만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기하고(이하 '제5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영상이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 내지 5보도는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발언자인 피고 차명진과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제작자이자 진행자 김광현의 사용자인 피고 채널에이는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 성남시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존부

- 1) 원고 성남시는 자연인 이외의 법인 기타 단체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성남시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명예의 보호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기본권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성남시가 인격권의 일종인 명예의 보호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3) 우선 사법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사법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사법상)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참조)”고 해석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민법상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고 보아 사법상 법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 4)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고 보아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서울대학교³⁰⁾와 공법인에 해당하는 세무대학³¹⁾,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³²⁾와 같이 헌법에 따라 기본권(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부여된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21조에서 부여된 언론의 자유)을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만 공권력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

- 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의 일종인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성남시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주민, 자치권으로 구성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이 한 행위로 인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명예가 훼손될 수 없음과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주체성 인정 필요 여부

-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14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참조)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허위사실의 보도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는 반면, 여기에서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 수행을 감시하는 자유로운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이 크다. 이는 설령 문제된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언론 또는 개인은 여전히 소송을 당하는 절차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

30)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1)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2)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다.

- 3) 따라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성남시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이재명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차명진에 대한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제1 내지 5보도가 허위 사실로서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제1보도

- (1) 원고 이재명은,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에 500만 원을 지원하거나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성남시장인 원고 이재명이 이 사건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5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 (2) 우선, 성남시의 자금지원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 포스터상 주최자에 성남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관사인 이데일리 역시 성남시와 협의하여 주최기관으로 명시하였다고 밝힌 사실,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에 경비를 직접 또는 광고비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비록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에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이재명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다음으로, 성남시의 행사 주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피고 차명진의 발언은 ‘법적으로 계약서에 주최한다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런 건 좀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5백만 원 후원하고 포스터에 후원 붙인 게 이미 그것은 공동주최이고’로, 이 사건 행사에 성남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포스터에 주최로 표시된 사실을 기초로 ‘성남시가 주최한 것’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 (4)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후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차명진이 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약한 언론사들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행사를 주최하면서 시나 도로부터 후원을 받아 공신력을 높이고, 시나 도의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에게 얼굴도 비치고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축제들이 열리는데, 그와 같은 축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 없이 대중가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러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성남시장인 원고 이재명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남시가 이 사건 행사에 직접 또는 광고비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원고 이재명이 이 사건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원고 이재명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보도

(1) 원고 이재명은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공연은 ‘사랑방 정오 콘서트(성남시 후원)’로 ‘매달’ 개최되고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연이므로, 판교테크노밸리 광장에서 ‘매주’ ‘쓸데없는’ 공연을 한다는 제2보도 허위사실로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단 제2보도는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 부분으로 피고 차명진이 말한 내용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 이재명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교테크노밸리 광장에서 정기적인 공연이 ‘매달’ 열린다는 것이고(비정기적인 공연의 빈도는 알 수 없다),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주’ 열린다는 표현은 자주 열린다는 의미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공연이 ‘쓸데없다’고 표현한 부분은 평가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제2보도가 피고 차명진이 발언한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이재명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보도

(1) 원고 이재명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제3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종북 논란이 있는)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성남시 민간 위탁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의혹이 2012. 5.경 제기되었던 사실, ② 이후 원고 이재명이 그와 같은 의혹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그와 같은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고, 보도 내용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의혹 제기 부분은 의견표명에 가깝다는 이유로 2013. 7. 17. 원고 이재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6420호)이 선고되었고, 2014. 10. 31.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018804호)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명진이 ‘원고 이재명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제3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나아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과거 원고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존재하였으나 이후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이 원고 이재명이 계속하여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송보도의 취지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책임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으로 과거 원고 이재명의 특혜의혹과 무관한 점, 제3보도 부분은 매우 단정적으로 표현되었고 그 취지 역시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의도보다는 원고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난의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명진이 제3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3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4) 따라서 제3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차명진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제4보도

- (1) 원고 이재명은 자신의 형 이□□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고, 이□□은 정신질환으로 처와 자녀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제4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재명의 형인 이□□이 성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고 이재명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사화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부곡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형 이□□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없는 조증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방송보도 후인 2014. 11. 21.부터 2014. 12. 29.까지 처와 자녀에 의해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재명이 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이□□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제4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재명이 이□□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이□□과 그의 처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으며, 이□□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 차명진이 제4보도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제4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4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4) 따라서 제4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차명진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제5보도

- (1) 원고 이재명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국정원 사찰 사실 등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

하거나 지명도 내지 인기를 얻기 위해 침소봉대하여 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5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원고 이재명이 문제삼는 ‘침소봉대’라는 표현은 피고 차명진의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이재명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액수

피고 차명진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제3, 4보도를 하여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이재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제3, 4보도의 내용, 발언의 취지와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 이재명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원고 이재명과 피고 차명진의 지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차명진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7,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차명진은 원고 이재명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0. 20.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 부분

- 1) 원고 이재명은 피고 채널에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제작한 책임과 진행자 김광현의 사용자로서 김광현이 피고 차명진의 발언에 동조하는 등 부적절하게 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채널에이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제작하고 김광현이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고 이재명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방송보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 채널에이는 피고 차명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피고 차명진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할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이 사건 방송보도는 이 사건 행사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행사를 성남시가 주최하였거나 후원하였는지 여부와 위 사고에 성남시가 도의적 또는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반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하여 성남시와 성남시장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언한 원고 이재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 ③ 그러한 맥락에서 피고 채널에이가 이 사건 방송 전에 피고 차명진이 원고 이재명에 대하여 중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자기하고 사이

가 안 좋아졌다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진행자 김광현은 피고 차명진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은 아니고.’라고 말하면서 발언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차명진이 ‘아니 언론 보도에 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 변호사님 문제 없죠’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발언한 것이다.

- ⑤ 피고 차명진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은 자막 등을 통해 표현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 이재명의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재명의 피고 차명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재명의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성남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방송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1231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2945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827 판결(확정)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소환 여부는 지엽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 지만원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4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4년 4월 23일 <경향신문> 「[속보]경찰, 세월호 사고 관련 “시체장사” 발언한 지만원씨 내사 착수」 제하의 기사 및 같은 해 5월 7일 <뉴스1> 「경찰, ‘시체장사’ 지만원 내사…소환 여부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인터넷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세월호 사건 관련 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며 원고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조사에서 경찰은 원고를 소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세월호 사건 관련 글을 쓴 원고의 형사처벌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1, 2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요지]

(1)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공적 관심사인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글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의 감정을 해칠 소지가 큰 ‘시체장사’라는 선동적,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세월호 참사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기재함으로써 그 문맥상으로는 세월호 참사에 비통해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기초해 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의 표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공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사 게재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원고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언급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밖에 수사기관이

원고를 소환할 방침이라거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 부분은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과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단123123 손해배상(기)
원	고	지만원
피	고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3. A 4. 주식회사 뉴스1 5. B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이하 ‘피고 경향신문’이라고 한다), 피고 A는 공동하여 1,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하 ‘피고 뉴스1’이라고 한다), 피고 B는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저서 출판, 언론 기고 및 칼럼 발표, 방송 및 각종 토론회 참석 등의 활동을 통해 성명과 초상 및 그 정치적 견해 등이 널리 일반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www.systemclub.co.kr)’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경향신문은 1990. 6. 22. 설립되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매일 기사를 보도하는 뉴스발행회사이고, 주식회사 뉴스1은 2011. 4. 7. 설립되어 매일 기사를 보도하는 뉴스발행회사이며, 피고 A는 피고 경향신문의 소속기자이고, 피고 B는 피고 뉴스1의 소속기자이다.
- 나. 2014. 4. 16.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등 탑승자 29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다. 원고는 2014. 4. 22.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 홈페이지 등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하였다.
- 라. 피고 A는 2014. 4. 23. [속보, 경찰, 세월호 사고 관련 “시체장사” 발언한 지만원씨 내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피고 경향신문에 송고하였고, 위 기사는 같은 날 피고 경향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 피고 B는 2014. 5. 7. [경찰, ‘시체장사’ 지만원 내사...소환 여부 검토]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피고 뉴스1에 송고하였고, 위 기사는 같은 날 피고 뉴스1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 마. 한편, 원고는 2014. 6. 9.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으로부터 ‘세월호 유족 모욕사건(2014-005397)’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여부, 시체장사의 행위주체 의미, 시체의 의미, 유가족을 모욕할 의도 유무 등의 질문’이 기재된 이메일 진술조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같은 날 17:48경 원고가 작성한 진술조서 파일을 위 경찰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였으며, 2014. 7. 1. 위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 4호증, 갑6, 7호증, 갑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가) 형법 및 경찰 내사 처리 규칙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아니되고, 내사 혐의 및 내사관

제인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

- 나) 그럼에도 경찰은 원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해석하고 원고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가) 피고 A는 피고 경향신문의 기자로서, 피고 B는 피고 뉴스1의 기자로서 각 피의사실을 보도 하기에 앞서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원고의 글을 왜곡하여 마치 원고가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 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A,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 경향신문, 피고 뉴스1은 각 소속 기자인 피고 A, 피고 B가 송고한 기사의 위법성을 감독해야 함에도 위법성이 분명해 보이는 허위 기사를 해당 매체들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피고 A,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경향신문 은 피고 A와 공동하여, 피고 뉴스1은 피고 B와 공동하여 각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리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 29379 참조). 또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2)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지속적인 정치, 이념적 의견표명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장기에 걸쳐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사람으로서 다른 일반인에 비해 그 의견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인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시점에 대하여 살펴건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모든 tv, 뉴스 등 보도매체가 거의 하루종일 세월호 침몰 사고만을 보도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사소한 이슈도 모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유언비어들이 속출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되었다.

이 사건 게시글은 설령 게시자인 원고의 의도가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의 감정을 해칠 소지가 큰 「시체장사」라는 선동적,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세월호 참사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기재함으로써 그 문맥상으로는 세월호 참사에 비통해하는 국민들에게 또다른 상처가 되는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기초해 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의 표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공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8 내지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사 기관인 경찰이 원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언론기관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어도 수사기관인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수사기관인 경찰이 언론기관 등에 피의사실을 알려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반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한 경위는 밝혀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고, 다만 기록상 원고가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되자 언론기관에서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경찰에 취재를 하였고, 그 취재과정에서 범죄성립여부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측되고, 이를 언론기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도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 수사기관이 언론에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알린 형식과 내용,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과 원고의 공적 인물성을 감안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이 설령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문제가 된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함으로써 일반인이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을 모두 읽어볼 수 있어 무엇이 문제되는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인 각자 판단할 수 있었던 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된 원고의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형량할 때 알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의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 A, 피고 B가 작성한 별지 기재의 각 기사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 A, 피고 B가 작성한 기사는 원고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점, 일반인이 보기에 원고의 의도와 달리 읽힐 수 있는 시체장 사나 세월호 참사가 불쏘시개라는 원고의 표현의 사법적 처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 A, 피고 B가 작성한 기사가 어느 정도 원고가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로 인하여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각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위 피고들의 기사게재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 경향신문, 피고 뉴스1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2945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지만원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3. A 4. 주식회사 뉴스1 5.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123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경향신문’이라 한다), 피고 A는 공동하여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하 ‘피고 뉴스1’이라 한다), 피고 B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의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먼저 피고 A, B가 각 작성한 별지 기재 각 기사에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보도하는 부분 외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욕죄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명성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글은 당시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직접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시체장사’, ‘불쏘시개’, ‘빨갱이’ 등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 작성자인 원고가 평소 저서 출판,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을 여과 없이 표현하면서 오래 전부터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과 맞물려, 별지 기재 각 기사가 게시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 등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보도, 전파될 정도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원고의 형사책임 여부나 수사 여부 등은 이미 주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실제로 별지 기재 각 기사 게재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기재 각 기사에서 수사기관이 원고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언급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밖에 수사기관이 원고를 소환할 방침이라거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 부분은 그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취지 등에 비추어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과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는 점(한편 원고는 별지 기재 각 기사 내용 중 원고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부분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기사 내용의 문언,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취지와 함께 위 각 기사에서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부분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기재 각 기사에서 수사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게시글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유가족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하거나 이를 암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이 별지 기재 각 기사는 이미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보도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관의 원고에 대한 내사 착수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진행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거나 원고의 형사책임을 예단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내용도 함께 보도하였고 그 글의 전문이 이미 원고 본인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다가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전파된 상황이어서 일반 독자가 이 사건 게시글의 취지와 가치를 평가하는데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별지 기재 각 기사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판결문

사	건	2015다23582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지만원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3. A
		4. 주식회사 뉴스1
		5. 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294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 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100325 판결(확정)

피고 신문사의 질의에 적절한 회신을 하였음에도 제3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의혹을 단정적으로 반복 보도했다면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

- 원고 : 최대호
- 피고 : A

[사실관계]

안양시는 2013년 3월 재활용선별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 유찰되었고, 두 차례 재공고에도 단독응찰로 유찰되자 법령에 의거하여 최초 입찰에 참가한 1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뉴스> 및 그 홈페이지에 「[긴급취재]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 등으로 당시 안양시장인 원고가 자격미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후에도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한 원고에 불리하거나 경쟁 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자사 신문을 안양시 일원에 배부 및 살포했고,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2014년 6월 실시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에게 득표율 0.3%차로 뒤져 낙선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피고의 단정적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고, 피고가 안양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아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5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전인 2013. 6. 7. 안양시에 전자입찰 3개 업체 참여 자격미달로 입찰 무산되면 재입찰해야 함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이유? 등을 질의한 사실, 안양시는 ‘재공고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하여 00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관련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회신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안양시에 위 질의를 한 외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박00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안양시가 외부압력이나 공무원의 유착으로 자격미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보도한 사

실 00산업은 이 사건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4. 6. 4. 기초단체장 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 각 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앞서 허위로 보도한 각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보도는 피고가 안양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아래 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100325 손해배상(기)
원 고	최대호
피 고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경기뉴스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3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종합일간지 경기뉴스(<http://www.ggnews.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제4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제4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라. 또한 48시간 이상 게재 후에는 별지 제4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4. 만약 피고가 제2항 및 제3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시사주간지 경기뉴스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는 인터넷 종합일간지 경기뉴스(<http://www.ggnews.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제2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제2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라. 또한 48시간 이상 게재 후에는 별지 제2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4. 만약 피고가 제2항 및 제3항 기재 기간 안에 제2항 및 제3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안양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14. 6. 4. 지방선거에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는 시사주간지인 경기뉴스 및 인터넷 종합일간지 경기뉴스(<http://www.ggnews.co.kr>, 이하 ‘인터넷 경기뉴스’라고 한다)의 발행인이다.

나. 안양시의 재활용선별장 운영대행용역계약 체결

안양시는 2013. 3. 22.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51-7 소재 재활용선별장(시설용량 50톤/일, 시설면적 260㎡) 운영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3. 4. 17.부터 2014. 12. 31.까지, 기초금액 4,620,866,470원으로 정한 전자입찰공고(긴급)를 하였는데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1순위 업체인 화성시 소재 00산업 주식회사(이하 ‘00산업’이라고 한다)가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 유찰되었고, 이에 2013. 4. 2. 및 2013. 4. 12. 다시 같은 내용의 전자입찰재공고(긴급)를 하였으나 각각 00기업 주식회사(이하 ‘00기업’이라고 한다)의 단독응찰로 유찰되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13. 5. 15. 00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뉴스 보도

- 1) 피고는 ① 2013. 6. 29.자 인터넷 경기뉴스에 “[긴급취재]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과 “‘비리백화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검찰 수사해야 ...”라는 부제하에 ‘안양시가 재

활용선별장 최종 선정과정에서 자신이 비호하고 있는,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자격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청렴한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시한 시장은 과연 올바른 판단을 했는가? 원고가 시민의 자긍심을 진정으로 세워주고 싶다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고, ② 2013. 7. 14.자 인터넷 경기뉴스에 “[긴급취재]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제2보”라는 제목과 “편법, 특혜 의혹… ‘비리백화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검찰수사 촉구”라는 부제하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③ 2013. 7. 8. 경기뉴스 2013. 7. 8. ~ 2013. 7. 15.자 제11면(긴급취재)에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과 “비리백화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편법…검찰수사 촉구”라는 부제하에 위 ①의 기사와 동일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④ 2013. 7. 20.자 인터넷 경기뉴스에 “안양시, ‘유착비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제2보”라는 제목과 “비리 의혹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이라는 부제하에 ‘원고가 커다란 공권력으로 당 언론사를 탄압하고 나섰다. 안양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위 각 보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격미달로 선정대상에서 탈락한 S업체³³⁾와 수의계약 왜?

2회, 3회 입찰에 참가한 부천시 소재 A업체³⁴⁾ 관계자는 자격기준 미달로 1차 공고에서 선정대상에서 탈락한 화성시 소재 S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외부압력이나 공무원의 유착 등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청렴한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시한 시장은 과연 올바른 판단을 했는가?

나) 2011년부터 S업체와 대행계약, 정정유착 의혹 강하게 풍겨

안양시는 2011년부터 S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그간의 유착의혹을 더 강하게 제기시키게 해주고 있다. 더더욱 2011년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4,480,638,000원으로 전액 시가 지불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이 S업체의 몫으로 되어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다) 애초부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많았다.

안양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명시됐듯 즉시 수의계약 절차에 의거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28일간 미뤄오다 ‘윗분의 지침’이라며 문제의 화성시 소재 S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절차에 따라 2차, 3차 공고에 단독 응찰한 부천시 소재 A업체의 계약 의사를 물어보아야 했다. 계약부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입찰공고 후 공정하게 낙찰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우왕좌왕하며 윗분의 방침을 28일간 기다리다가 사업부서인 청소행정과로 다시 이관했다.

33) 00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00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특혜의혹, 왜 안양시가 기초금액을 하향했을까?

2011년 4월 공개경쟁입찰에 안양시는 기초금액을 5,108,050,110원, 4개 업체가 응찰하여 화성시 소재 S업체가 4,480,380,000원 기초대비(%) 87.717로 낙찰됐다. 2013년 4월 공개경쟁입찰에 안양시는 기초금액 4,620,866,470원, 3개 업체가 응찰하여 문제의 S업체 4,620,866,470원 기초대비(%) 100%, 2차 공고, 3차 공고 단독응찰한 부천시 소재 A업체가 4,053,747,530원 기초대비(%) 87.727% 기초금액을 2011년도 기준으로 맞췄다면 부천시 소재 A업체가 기초대비(%) 87.727%로 1차 응찰에서 낙찰될 수도 있었다.

마) 불법행위 자행하고 운영능력 없는 업체를 왜 선정했나?

안양시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50t/일). 화성시 소재 S업체는 장비 및 인력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선별인원 38명과 현 장비 운영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38명 인원 25t/일 처리능력).

바)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부도덕한 업체에 왜?

시민 제보에 의하면 문제의 화성시 소재 S업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재활용품 계근 중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윗분의 지침’이라는 미명하에 비리업체, 업무수행능력 없는 업체, 자격 없는 특정 업체와 편법 수의계약하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사) 편법, 업체와 유착,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원고가 커다란 공권력으로 당 언론사를 탄압하고 나섰다. 원고가 당 언론사를 탄압하고 오보, 왜곡보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당 언론사는 원고가 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당 언론사 취재기자, 편집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당 언론사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 2) 피고는 또 2013. 12. 8.자 인터넷 경기뉴스에 “[긴급취재]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과 “‘비리백화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특혜비리’ ... 검찰 수사해야...”라는 부제하에 기왕의 보도내용을 반복하면서 ‘원고는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것만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62만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공직자의 자세이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라. 피고의 공직선거법위반

- 1) 피고는 2014. 4. 15.경 “시장 집에 금품전달, 안양하수처리장 비리 드러나..., 비리로 얼룩진 안양시, 시민들 최시장 불출마하나?”라는 제목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4. 15.자 경기뉴스를, 5,000부 가량은 조선일보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안양시

- 일원에 배부하고, 5,000부 가량은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42에 있는 인덕원삼성아파트의 각 동 출입구를 비롯한 안양시 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 2) 피고는 2014. 5. 7.경 “이필운, ‘진심토크’로 조용한 선거운동 재개”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경쟁자로서 새누리당 후보자인 이필운의 안전 관련 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1면에, “최대 호 시장 직무유기, 업무상배임으로 고발”이라는 제목과 “시민혈세 평평..., ‘비리업체’와 수의 계약 왜?”라는 부제목으로 경기뉴스가 ‘안양박달동 재활용선별장 대행업체 선정비리의혹’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후보자인 원고가 안양시장으로서의 공권력으로 언론(경기뉴스)을 탄압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기사를 4면에, “안양시장 측근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라는 기사를 5면에 각각 게재하는 등 후보자 이필운에게 유리하고 후보자 원고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8.자 경기뉴스를, 13,000부 가량은 동아일보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안양시 일원에 배부하고, 5,000부 가량은 위 인덕원삼성아파트를 비롯한 안양시 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출입구에 놓아두거나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36, 3층에 있는 후보자 이필운의 선거사무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 3) 피고는 2014. 5. 26.경부터 28일경까지, “또 터진 시장 측근비리, 안양시장, 측근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부패한 지방권력, 도려내고 심판해야”라는 제목으로 후보자인 원고의 금권선거와 관권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사를 2면에 게재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22.자 경기뉴스를, 3,000부 가량은 후보자 이필운의 위 선거사무소에, 10,000부 가량은 위 인덕원삼성아파트 각 동 출입구(145부 가량)와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98에 있는 한양셋별아파트 각 동 출입구(99부 가량)를 비롯한 안양시 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출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 4) 피고는 2014. 5. 29.경 “또 터진 시장 측근비리, 안양시장, 측근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의 후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29.자 경기뉴스 합계 8,000부 가량을, 안양시 동안구 안양로 329번길에 있는 상가 출입구 주변(65부 가량)을 비롯한 안양시 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출입구에 놓아두거나 후보자 이필운의 위 선거사무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 5) 피고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등으로 이 법원 2014고합125호로 기소되어 2014. 9. 5.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14. 11. 2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784호)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안양시장 선거 낙선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138,908표를 득표하여 139,840표를 득표한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에게 932표(득표율 차 0.3%)로 뒤져 낙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을 제2,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전 안양시장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철저한 조사와 취재 등을 통한 보도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허위보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자격미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보도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양시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재활용선별장을 1년 이상(시설용량 50톤/일, 공고일 기준)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사실, 00산업은 2012. 11. 7. 화성시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50톤/일의 재활용품처리능력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11. 7. 1.부터 2013. 2. 28.까지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산업이 재활용선별장 운영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피고의 위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대형계약상 운영수익금 전액이 00산업 몫이 된다는 보도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상 용역업체는 안양시 관내에서 발생하여 반입된 재활용품의 반입·반출량을 계근한 후 품목별, 성상별로 분리·선별·압축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매월 5일까지 재활용품 판매실적 및 판매현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판매수입금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 00산업은 2013년 4월분 52,401,810원, 2013년 5월 1차분 29,414,090원 및 2차분 33,115,870원, 2013년 6월분 61,525,860원의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금을 각 안양시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활용선별장 운영대행업체가 운영수익금 전액을 취득하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피고의 위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수의계약 과정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많았다는 보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기업의 대표자 박00은 2013. 5. 21. 경기도에 ‘안양 재활용선별장 운영대행용역 관련 수차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 체결이 부당하니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안양시는 위 민원을 이송받아 2013. 6. 27. 박00에게, ‘계약부서에서는 이 건 관련 3차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부서 의견 청취와 계약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안양시가 00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미루었다는 주장은 박00의 개인적인

의혹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그의 주장을 만연히 인용하여 수의계약이 '윗분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피고의 위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기초가격인하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00산업이 재활용품 계근 중량을 속였다는 보도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양시의 2013년도 감사결과 '재활용선별장 운영대행업체(00산업)가 계근량 대비 20~60%를 감량해 판매하고, 압축판매하는 플라스틱류는 일괄적으로 10%를 감량 판매함으로써 시세입(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감소됨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대행업체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보도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전인 2013. 6. 7. 안양시에 '용역전자입찰 재공고(긴급)한 배경은? 안양시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특정업체를 선정해왔다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에 대하여? 전자입찰 3개 업체 참여 자격미달로 입찰 무산되면 재입찰해야 함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이유?' 등을 질의한 사실, ② 안양시는 00기업 대표자 박00의 2013. 5. 21.자 민원에 대하여 2013. 6. 27. 박00에게, '3번의 입찰공고를 시행한 것은 2013. 3. 22. 입찰공고를 하고 2013. 3. 28. ○○산업(00산업)이 1순위로 개찰까지 완료하였으나 ○○산업이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공고기간만 변경하여 2013. 4. 2. 재공고입찰을 진행하였음에도 귀 업체 단독입찰로 유찰됨에 따라 2013. 4. 12. 3차 입찰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3번의 입찰공고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위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하여 ○○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관련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회신을 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안양시에 위 질의를 한 외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박00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안양시가 외부압력이나 공무원의 유착으로 자격미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④ 00산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6. 4. 기초단체장 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 각 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앞서 허위로 보도한 각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보도는 피고가 안양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아래 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허위보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액수

위 각 허위보도의 내용, 2014. 6. 4.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위 각 허위보도를 한 취지와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지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수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제2,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정보도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정정보도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할 때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을 고려하여 원고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대상 보도의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가 받은 형사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 각 활자 크기와 게재 방법 및 이행강제금의 지급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별지 3〉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13년 7월 8일 ~ 7월 15일자 시사주간지 경기뉴스 긴급취재 11면에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비리백화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편법 - 검찰수사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최대호(전 안양시장)가 재활용선별장 선정과정에서 자신이 비호하고 있는,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자격 없는 업

체와 수익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대호(전 안양시장)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업체와 수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시사주간지 경기뉴스가 근거 없는 사실을 보도하여 최대호(전 안양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므로 잘못된 기사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4〉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기사 2013년 6월 29일자 인터넷 종합일간지 경기뉴스 긴급취재에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비리백화점 특정업체와 수익계약 편법 - 검찰수사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최대호(전 안양시장)가 재활용선별장 선정과정에서 자신이 비호하고 있는,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자격 없는 업체와 수익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대호(전 안양시장)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업체와 수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터넷 종합일간지 경기뉴스가 근거 없는 사실을 보도하여 최대호(전 안양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므로 잘못된 기사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가단5118768 판결

범죄혐의 보도 시 언론사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단정적 표현을 피하여야 한다

- 원고 : A
- 피고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 외 1명

[사실관계]

2009년 2월 26일 <한국일보> 「광우병 의심 LA갈비 ‘시간차 판매’」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2003년경 광우병 파동 당시 폐기 대상이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빼돌렸다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호주산으로 속여서 되팔고, 그 과정에서 결제대금 2억 8천여만 원을 착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수사 중인 사안을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허위로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의 진실성 및 상당성을 부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이를 기각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2102) 이후 양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1) 상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 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판결문

사 건	2014가단5118768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 2. C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3.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주식회사 한국000(이하 '한국000'라고 한다) 본사 0000과 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5. 30. 퇴사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이하 '한국일보'라고 한다. 한국일보는 현재 회생 절차 중이고, 관리인으로 B가 선임되었다)는 일간신문을 발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한국일보에 재직 중인 기자이다.

나. 원고의 구속 경위

- 1) 한국000에 돈육 제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000가공(이하 '000가공'이라고 한다)의 이사 한00은 2009. 1.경 “원고가 2003. 12.경 미국 내 광우병 감염 의심 소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000이 매장 내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일체의 폐기를 지시받았고 이를 000가공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2005년경 정상적인 쇠고기인 것처럼 유통시켰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 2) 원고는 별지1 기재(다만, 범죄일람표는 생략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2009. 2. 13. 구속수감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기사의 게재

피고 C는 2009. 2. 26. “광우병 의심 LA갈비 ‘시간차 판매’”라는 굵은 활자로 된 제목 아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의 게재)를 한국일보의 신문지면 및 한국일보의 홈페이지(www.hankooki.com)에 게재하였다.

라.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후인 2009. 4. 13. 원고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의 주요 취지는 “원고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측으로부터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지시가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12.7톤을 몰래 빼돌렸고, 유통기간을 바꿔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형마트에 돈육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매달 매출액의 2%씩 2년 동안 7억 5,800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마.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 1) 원고는 200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229호(재배당 전 2009고단1032) 사건으로 ‘광우병 의심 우려가 있고, 일부 유통기한의 경과로 변질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 사기, 배임수재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2. 10. 위 사건에 대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등 유해물질 포함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유통기한이 도과한 쇠고기라는 점에 대하여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황00로부터의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사기의 점이고, 한00로부터의 배임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2노803)에서는 2013. 8. 30. 제1심에서 유죄로 선고하였던 ‘한00로부터의 배임수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사건 기사와 관련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검사는 모두 상고하여 위 형사사건은 상고심 계류중이다(대법원 2013도11233호).

3) 원고는 위 형사사건 제1심, 제2심에서 위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수사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였는데, 2014. 2. 3.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 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C는 자신이 구속영장을 입수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위 수사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5, 8,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가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따라서 한국일보와 피고 C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최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한국일보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기사는 국민들의 관심사인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사이며, 구속영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설령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000(현 0000) 본사 0000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 12.”이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기사가 2003. 12. 당시 한국000 본사 0000부장을 역임하였던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훼손 여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이 기사를 접한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2003년경 광우병 파동 당시 폐기 대상이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빼돌렸다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호주산으로 속여서 되팔고, 되파는 과정에서 결제대금 2억 8천여만 원을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광우병 파동 당시 폐기 대상이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금원을 착복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등 참조).

2) 공익성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하여 그 진위가 국민적 관심사로 제기되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데다가 유통기한이 도과된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빼돌려서 유통기한 도과 후 호주산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3) 보도의 진실성

이 사건 기사가 기사 본문의 첫 문장에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 (중략) …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번째 문장에서 “검찰에 따르면 … 보관했다”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본문의 활자보다 크고 굵은 글씨로 “광우병 의심 LA갈비 ‘시간차 판매’”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있고, 기사 첫머리에도 “2003년 폐기 않고 2년 뒤 호주산으로 속여”라고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는 점, 네 번째 문장부터는 “광우병 파동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A씨는 2005년 9월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 중이던 35톤의 고기 중 ‘엘에이(LA) 갈비’ 19톤을 처남인 B씨(구속)가 근무하던 육류수입업체를 통해 호주에서 정식 수입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회사에 재납품시키는 방법으로 결제대금 2억 8,000여만 원을 착복했다.”라고 기재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광우병 파동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A씨는…’이라고 기재하여 주관적 판단을 가미한 점,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보도 자체가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전체적인 기사의 구조, 문장의 형식과 배열, 내용 및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고 원고가 단순히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그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폐기 대상이던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서 팔았거나 유통기한을 넘겨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오히려 이 사건 기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의 보관 및 판매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제1심, 제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당성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

도 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이후 검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고, 구속영장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기한을 넘겨 몰래 보관하다가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후 결제대금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이지만,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몰래 보관하다가 유통기한을 속여서 판매하고, 대형마트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원고가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달하는 내용의 보도를 넘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보태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후 검찰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다는 점이나 구속영장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원고에게 혐의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속 상태로 있어 확인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원고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입장도 함께 보도하여 독자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임을 알 수 있도록 하거나 보도에 있어 단정적인 판단이 들어간 표현을 피하였어야 했다)
- 피고 C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000가공, 00000푸드, 한국000(2008. 5. 14.부터 상호가 ‘0000000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함)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피고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000가공의 이사 한00(고소인)은 통화 회피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00000푸드로부터도 취재를 거부당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며, 0000000 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의 확인을 하지 못한 점
- 피고들은, 피고 C가 수사기관 이외에도 원고가 근무하였던 0000부 00팀으로부터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000가공으로부터는 구속영장 기재 사실과 일치하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이름과 0000 본사 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범행을 시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내용[“시인(범행)하나”], 이 사건 기사의 파장에 대한 예상(“파장이 있을 법 한데”) 등이 기재된 피고 C의 취재수첩(을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첩 메모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람과 회사의 이름, 일부 연락처와

피고 C의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과 의문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무슨 사실을 취재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게다가 000가공은 이 사건 기소의 단서가 된 고소를 한 한00이 이사로서 있는 회사로서 000가공의 입장은 고소인 측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들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그 주의의무가 상당히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 하나, 이 사건 기사 내용으로 보아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가 2005년 추석 무렵과 이듬해 구정 때 이미 판매가 되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 기사 게재일인 2009. 2. 26.에 와서 시급하게 위 쇠고기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기사 작성에 있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경감될 정도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피고들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구속이나 기소로 인한 것이고, 또한, ②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09. 4. 13.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 이상 이 사건 기사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속이나 기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와 별도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이상, 피고들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와 이 사건 기사가 동일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하여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 대해, 혐의가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가미하여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이상, 보도자료가 추후 배포되어 공개되었다는 것과는 별론으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과 이 사건 기사와의 인과관계는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들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2009. 9. 17.경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가 조작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다”면서 피고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그 시점에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9. 17.경 피고 C에게 전화한 결과 “검찰로부터 직접 구속영장을 취득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건 기사에도 검찰이 원고의 피의사실을 밝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사재판에서 제1, 2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2014. 2. 6. 위 고소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를 보고서야 피고 C가 수사 검사들의 피의사실공표에 따라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속영장을 취득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기사 게재가 위법한 보도임을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2014. 2. 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형사사건 제1심, 제2심에서 모두 미국산 쇠고기의 보관, 유통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 수사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였던 사실, 이 사건 기사 두 번째 문단에 ‘검찰에 따르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 수사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위 피의사실공표 혐의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수사 검사들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받은 바 없고 스스로 구속영장을 취득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2014. 2. 6. 수사 검사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나자, 원고가 2014.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시점은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2014. 2. 6.이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액의 산정

나아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보도 시점, 피고 C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원고의 직업, 나이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금액은 6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사의 게재일 다음날인 2009. 2. 27.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범죄사실 생략

〈별지 2〉 대상기사 생략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296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나15780 판결(확정)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회사는 비판 기사에 스스로 반박할 수 있어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솔본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사실 증권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 4월 7일과 8일 <매일경제> 및 그 홈페이지에 「솔본, 자칫하면 상장폐지 될라」라는 제목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규정 신설 소식을 전하며 원고 회사가 2000년부터 9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2006년에 10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고, 피고가 2008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등 잘못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 등을 침해했다며 정정보도³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의 공익성 및 진실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927)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과장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9078). 이후 피고들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기사의 공익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환송 후 원심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1) 기사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2006년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06년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9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을 비교적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표현 중에 마치 원고가 이미 상장폐지대상이 되었다거나 장차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내용이 허위라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회계변경이 과거연도에도 소급 적용되어 원고가 2006년도에는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원고가 2000년도부터 9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35) 여기서의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것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였다.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06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계속 공시되어 있고, 담당기자가 폭넓게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권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원고의 지위에 관한 판단

비록 원고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포커스신문사 등의 언론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었고, 실제로 위 계열언론사들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직후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사를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적절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책임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3심 판결문

사 건	2012다29618 손해배상(기)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솔본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2. 주식회사 매경닷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3907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

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행위자가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기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설정은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당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공적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공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을 수인(受忍)하는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이하 ‘포커스신문사’라 한다)는 2003. 6.경 피고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이하 ‘피고 매일경제’라 한다)와 사이에 포커스신문사가 발행하는 무료신문인 ‘더 데일리 포커스’의 인쇄계약(이하 ‘이 사건 인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경까지 6년 동안 인쇄비로 약 300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포커스신문사는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로부터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인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9. 3. 30. 피고 매일경제에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인쇄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09. 4. 7. ‘매경닷컴’에, 피고 매일경제는 2009. 4. 8. ‘매일경제’에 각 “솔본, 자칫하면 상장폐지 될라”라는 큰 제목으로 원심 별지 4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08. 9. 12.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

근 4사업년도에 각각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제28조 제1항 3의2호),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도록(제38조 제1항 4의3호) 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은, 이를 소급적용하면 과거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상장폐지요건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대비기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2008 사업연도 실적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은 2008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한다. 다음, “2008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했을 때 지난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업체들을 분석한 결과 무려 103개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연속 적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기업도 78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 기준이 소급 적용됐다면 이들 기업은 퇴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는 이번 결산 감사보고서 마감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도 있다. 인터넷전화업체 새롬기술에서 출발해 투자회사로 변신한 솔본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2000년부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17억 원까지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66억 7776만 원으로 또다시 급증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영업실적이 6년 연속 적자인 회사로 JS를,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으로 이노블루, 세지, 큐로컴, 텍스 등(이하 이 사건 기사에 이름이 언급된 회사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JS 등’이라 한다)을 꼽았다.

마. 그런데 위 103개 기업 중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해당연도 영업 손실액 최다 업체는 코어세스, 무한투자, 터보테크, 온세텔레콤, 오피스 등이었고 원고나 JS 등의 영업 손실 규모는 이들에 미치지 못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1999년 ‘다이얼패드’ 사업으로 한때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이 재계 서열 7위에 해당하는 2조 8,200억 원에까지 달하였는데, 2000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던 중, 2008년 회계연도부터 전기까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해오던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계변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작성된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석 제20항에는 ‘위 변경사항이 과거 연도까지 소급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는 2005년과 2007년에 여전히 영업 손실을 입은 것이 되지만 2006년도에는 10억 3,649,000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06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에도 31억 8,3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감사보고서는 변경되지 아니한 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공시되고 있다.

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매일경제 소속 기자는 증권정보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앤가이드(이하 ‘에프앤가이드’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원고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프앤가이드는 기업실적정보 등 증권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매일경제 등 경제신문사에는 정기적으로,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에는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오고 있는 등 나름대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 한편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무렵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경제투데이는 2009. 4. 14. '경제투데이'에 『매일경제 솔본 비판 기사, “언론권력의 난동”』, 2009. 4. 15. 『불법 복제·악의 기사 매정 왜 이러나』라는 큰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포커스신문사는 2009. 4. 14. '더 데일리 포커스'에 『프리첼, ‘악의적 보도’ 매일경제 고소』라는 작은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가.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매년 영업 손실이 반복되는 코스닥 상장회사는 상장 폐지에 이를 위험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다수의 코스닥시장 투자자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내지는 공중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이 코스닥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즉 그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폐지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관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취지에서 종전부터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요건에 폐지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의 수나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사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 나. 그리고 비록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수년간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던 회사 중에 원고에 비해 영업 손실 규모가 월등히 큰 회사들도 여럿 있었으나, 원고가 한때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이 재계 7위에 이르렀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이 사건 기사에 함께 언급된 JS 등도 영업 손실 규모가 현저히 큰 업체들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동기가 원고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부수적이거나 명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인쇄계약의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피고들이 그에 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사적 동기가 일부 있었음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다. 나아가 원고가 2006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2006년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06년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9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이 사건 상

장폐지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을 비교적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그 세부적인 표현 중에 마치 원고가 이미 상장폐지대상이 되었다거나 장차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내용이 허위라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설령 이 사건 회계변경이 과거연도에도 소급 적용되어 원고가 2006년도에는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원고가 2000년도부터 9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06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계속 공시되어 있고, 담당기자가 폭넓게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권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그뿐 아니라 비록 원고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포커스신문사 등의 언론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었고, 실제로 위 계열언론사들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직후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사를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적절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책임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보도라고는 보지 아니하면서도 과장보도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인쇄계약의 해지통고에 대한 피고 매일경제의 유감 표명과 뒤이어 8회에 걸쳐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경위 등의 판시 사정들만을 들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언론매체의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송후심 판결문

사	건	2015나15780 손해배상(기)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솔본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2. 주식회사 매경닷컴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4. 선고 2010가합8392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3907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29618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9. 4. 2.부터, 3억 원에 대하여는 2009. 4. 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이하 ‘피고 매일경제’라 한다)는,
 - 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지 ‘매일경제’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4. 2.자 “불법복제야동 천국 프리챌 대표 기소”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 나. 위 가항의 이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지 ‘매일경제’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4. 8.자 “솔본, 자칫하면 상장폐지 될라”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이하 ‘피고 매경닷컴’이라 한다)은,
 - 가. 이 판결 확정 후 위 2의 가항과 동시에 인터넷신문 ‘매경닷컴’(www.mk.co.kr)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4. 1. 17:48:05 “불법복제야동 천국 프리챌 대표 기소”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나. 이 판결 확정 후 위 2의 나항과 동시에 인터넷신문 ‘매경닷컴’(www.mk.co.kr)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4. 7. 17:48:36 “술본, 자칫하면 상장폐지 될라”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라.

4. 만일 피고들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각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3,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와 항소취지가 동일하나, 별지 1, 2 기재 정정보도문의 마지막 문단은 청구취지와 항소취지가 서로 다르다. 즉,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경우 청구취지는 “본사는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술본과 (주)프리챌에게 각각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본지의 기사내용을 정정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이고, 항소취지는 “본사는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2011년 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술본에게 금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본지의 기사내용을 정정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이며,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의 경우 청구취지는 “본사는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술본에게 금 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본지의 기사내용을 정정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이고, 항소취지는 “본사는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2011년 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술본에게 금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본지의 기사내용을 정정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 소유를 통한 타 법인의 경영참여 및 지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프리챌’(www.freechal.com) 및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프리챌(이하 ‘프리챌’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중 82.1%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매일경제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간지 ‘매일경제’를 발행하고 있고, 피고 매경닷컴은 인터넷, 피씨(PC)통신 등 데이터통신망 및 전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매경닷컴’(www.mk.co.kr)을 운영하며 피고 매일경제로부터 기사를 받아 ‘매경닷컴’에 게재하고 있다.

나. 피고 매경닷컴은 2009. 4. 1. 17:48:05경 ‘매경닷컴’에, 피고 매일경제는 2009. 4. 2. ‘매일경제’ A2면 상단에 “불법복제야동 천국 프리챌대표 기소”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별지 3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다. 또한 피고 매경닷컴은 2009. 4. 7. 17:48:36경 ‘매경닷컴’에, 피고 매일경제는 2009. 4. 8. ‘매일경

제' A24면에 “술본, 자칫하면 상장폐지 될라”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매일경제’ 및 ‘매경닷컴’에 원고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별지 3 기사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사와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로 인한 각각의 손해배상 및 별지 1,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 중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이하 ‘포커스신문사’라 한다)는 2003. 6.경 피고 매일경제와 포커스가 발행하는 무료신문인 ‘더 데일리 포커스’의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2009. 5.경까지 매년 50억 원씩 합계 30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8. 4.경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로부터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인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9. 3. 30. 피고 매일경제에 인쇄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8. 9. 12.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영업손실이 5회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을 2008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포커스신문사와 피고 매일경제 사이의 신문 인쇄계약이 해지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기사에서, ① 원고의 2008년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에 10억 3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를 두고 “이 회사는 2000년부터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17억 원까지 영업손실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66억 7,776만 원으로 또다시 급증했다.”고 보도하였고, ② “술본, 자칫하면 상장폐지 될라”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폐지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등 허위·왜곡과장된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행위자가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기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설정은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당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공적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공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을 수인하는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37,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문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의 계열사인 포커스신문사는 2003. 6.경 피고 매일경제와 포커스신문사가 발행하는 무료신문인 ‘더 데일리 포커스’의 인쇄계약(이하 ‘이 사건 인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경까지 6년 동안 인쇄비로 약 300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포커스신문사는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로부터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인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9. 3. 30. 피고 매일경제에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인쇄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 ② 피고 매경닷컴은 2009. 4. 7. ‘매경닷컴’에, 피고 매일경제는 2009. 4. 8. ‘매일경제’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③ 한편 한국거래소는 2008. 9. 12.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4사업년도에 각각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제28조 제1항 3의2호),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도록(제38조 제1항 4의3호) 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은 이를 소급적용하면 과거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대비기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2008 사업연도 실적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다.
-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은 2008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2008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했을 때 지난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업체들을 분석한 결과 무려 103개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연속 적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기업도 78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 기준이 소급 적용됐다면 이들 기업은 퇴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는 이번 결산 감사보고서 마감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도 있다. 인터넷전화업체 새롬기술에서 출발해 투자회사로 변신한 솔본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2000년부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17억 원까지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66억 7776만 원으로 또다시 급증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영업실적이 6년 연속 적자인 회사로 JS를,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으로 이노블루, 세지, 큐로컴, 텍스 등(이하 이 사건 기사에 이름이 언급된 회사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JS 등’이라 한다)을 꼽았다.
- ⑤ 그런데 위 103개 기업 중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해당연도 영업 손실액 최다 업체는 코어세스, 무한투자, 터보테크, 온세텔레콤, 오피스 등이었고 원고나 JS 등의 영업 손실 규모는 이들에 미치지 못하였다.
- ⑥ 한편 원고는 1999년 ‘다이얼패드’ 사업으로 한때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이 재계 서열 7위에 해당하는 2조 8,200억 원에까지 달하였는데, 2000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던 중, 2008년 회계연도부터 전기까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해오던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계변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작성된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식 제20항에는 ‘위 변경사항이 과거 연도까지 소급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는 2005년과 2007년에 여전히 영업 손실을 입은 것이 되지만 2006년도에는 10억 3,649,000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06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도에 31억 8,3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감사보고서는 변경되지 아니한 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공시되고 있다.

⑦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매일경제 소속 기자는 증권정보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앤가이드(이하 ‘에프앤가이드’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원고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프앤가이드는 기업실적정보 등 증권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매일경제 등 경제신문사에는 정기적으로,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에는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오고 있는 등 나름대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⑧ 한편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무렵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경제투데이는 2009. 4. 14. ‘경제투데이’에 『매일경제 솔본 비판 기사, “언론권력의 난동”』, 2009. 4. 15. 『불법 복제악의기사 매경 왜 이러나』라는 큰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포커스신문사는 2009. 4. 14. ‘더 데일리 포커스’에 『프리첼, ‘악의적 보도’ 매일경제 고소』라는 작은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매년 영업 손실이 반복되는 코스닥 상장회사는 상장폐지에 이를 위험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다수의 코스닥시장 투자자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내지는 공중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실제로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이 코스닥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즉 그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폐지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관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취지에서 종전부터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요건에 폐지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의 수나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사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수년간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던 회사 중에 원고에 비해 영업 손실 규모가 월등히 큰 회사들도 여럿 있었으나, 원고가 한때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이 재계 7위에 이르렀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이 사건 기사에 함께 언급된 JS 등도 영업 손실 규모가 현저히 큰 업체들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동기가 원고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부수적이거나 명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인쇄계약의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피고들이 그에 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사적 동기가 일부 있었음

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2006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2006년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06년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9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이 사건 상장폐지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을 비교적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그 세부적인 표현 중에 마치 원고가 이미 상장폐지대상이 되었다거나 장차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설령 이 사건 회계변경이 과거연도에도 소급 적용되어 원고가 2006년도에는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원고가 2000년부터 9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06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계속 공시되어 있고, 담당기자가 폭넓게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권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그뿐 아니라 비록 원고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포커스신문사 등의 언론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었고, 실제로 위 계열언론사들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직후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사를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적절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책임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허위보도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4〉 대상기사 생략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그와 상반된 내용의 기사를 동시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

- 원고 : A
- 피고 : B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2013년 5월 6일 <하동저널>에 「줄줄 새는 세금 도둑 판처…」라는 제목으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불법으로 타 현장의 관급물품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같은 해 12월 30일 관련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후보도 청구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소송 제기 등의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2014경남조정13·14). 피고 언론사는 2014년 2월 14일 위 조정에 따라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원고가 그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담당 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위 기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5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 언론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6년 2월 3일 이를 기각했고(창원지방법원 2015나5822) 이후 피고 언론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

① 피고 하동저널이 원고와 사이의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서 ‘하동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여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하동저널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하동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② 달리 하동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였다거나 피고 하동저널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한편, 피고 하동저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음에도 피고 하동저널이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동시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하동저널은 원고에게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4가소113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하동저널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동저널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동저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하동저널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하동저널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동저널’이라 한다) 사이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하동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여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 하동저널의 편집국장 임00이 작성하여 게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게재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하동저널에 대한 청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하동저널이 원고와 사이의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서 ‘하동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여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하동저널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하동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② 달리 하동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였다거나 피고 하동저널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한편, 피고 하동저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음에도 피고 하동저널이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동시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하동저널은 원고에게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 게재 경위 등에 비추어 위자료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하동저널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접적 표현이 없더라도 구체적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였다면 의견 표명을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명

[사실관계]

2015년 1월 10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는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루며 대한항공 관계자가 국토부 조사 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원고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음을 지었다는 사실을 빌미로 원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승무원들이 사 측의 회유로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인터뷰 등을 방송하고 이를 자사 사이트에 다시보기로 게재했다.

해당 방송 직후 원고는 ‘악마의 미소’로 지칭되며, 원고를 비난하는 인터넷 글이 쇄도했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도 다수 보도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 측으로부터 교수직 제안 등 회유를 받은 바 없고, 국토부나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들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들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0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나2050086)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 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정정보도)이 내려졌으나(2015서울조정1476·1477, 1478·1479)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 된 바 있다.

[판결요지]

(1) 정정보도청구 관련 내용 보도 여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원고가 웃는 모습과 함께 ‘뜻하지 않게, 검찰조사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이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언급한 후, 원고가 조사 후 대한항공 관계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사건현장의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인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러 나타났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라고 낭독하였다. 위 장면 보도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조사 시 입을 맞추라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지시가 녹음된 파일이, 이후로는 ‘땅콩 회항’ 사건을 목격한 여승무원 모두가 조현아의 폭언,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주장과 대한항공 측의 회유를 받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인터뷰가 보도되었다.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웃는 모습과 관련한 보도가 단순히 웃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방영하였다거나, 의견 표명, 의문 제기 불과하

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이 전후에 보도된 대한항공 측의 거짓 진술 지시, 회유, 교수직 제언 등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7.부터 13.까지 국외에 체류하여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바 없는 사실, 원고가 12. 15. 검찰 1차 참고인 조사 당시 조현아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면서 문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1등석 갤리에서 매뉴얼을 찾느라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조현아가 갤리 인포를 들고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박창진 사무장의 검찰 진술 중 원고가 목격한 부분은 원고의 기억과 동일하다고도 진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오해될 만한 보도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검찰 조사 당시 조현아의 폭언, 폭행을 감추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될 만한 보도 부분도 진실하지 아니하다.

(3) 상당성 인정 여부

제작진 측에서 박창진 사무장 등 다른 승무원에 대한 자료 외에 원고에 대한 회유나 원고의 거짓 진술 관련 부분에 관하여까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원고가 검찰 조사 전 국내에 체류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원고 관련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2295	정정, 손해배상
	2015가합2301(병합)	정정,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피고가 방송하는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자의 육성으로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위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그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화면에 내보내고, 그 배경화면에는 위 프로그램 제969회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편에서 방송된 원고가 웃고 있는 장면 영상을 방송하라.
나. 만약 위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피고가 운영하는 SBS 홈페이지(www.sbs.co.kr) 내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초기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붉은 색상으로 표시하여 1주일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위 프로그램 다시보기 중 제969회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편의 소개화면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붉은 색상으로 표시하여 위 다시보기 서비스가 계속되는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라.
나. 만약 위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³⁶⁾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6) 단, 정정보도 시기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정보도문 내용 중 첫 문단 마지막 부분을 ‘국토교통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였습니다.’로 하여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2014. 12. 5. 00:50경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대한항공 운항 여객기 KE086 기내에서 당시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 부사장이던 조현아는 1등석 객실 승무원 ○○○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당해 승무원과 기내 사무장 박창진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이들에게 여객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면서 이미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여객기를 다시 공항으로 회항하도록 하였다. 위 사건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리며,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나. 원고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박창진 사무장, ○○○ 승무원과 함께 이 사건 여객기 1등석의 서비스를 담당했던 승무원이다. 그러나 조현아가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은 후 기내 매뉴얼에서 관련 부분을 찾아오라고 고성을 지르며 박창진 사무장과 ○○○ 승무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고 갤럭시 인포(인쇄된 매뉴얼이 편철된 종이 파일)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는 동안, 원고는 조현아의 행동에 당황하여 1등석 갤럭시³⁷⁾에서 태블릿 컴퓨터의 매뉴얼 파일 중 관련 부분을 정신없이 찾고 있었고, 1등석 객실에서 고성에 들리자 잠시 객실 쪽으로 나가 일부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 조현아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당사자는 아니었다.
- 다. 원고는 2014. 12. 6. 인천 공항에 내려 대한항공에 경위서를 작성, 제출한 후 다음 날인 12. 7.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2014. 12. 13. 귀국하였다.
- 라. ‘땅콩 회항’ 사건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는 원고가 귀국하기 전인 2014. 12. 12.경 이루어져 원고는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바 없다.
- 마. 한편, 원고가 귀국하였을 무렵인 2014. 12. 13.에는 대한항공 측에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 승무원들에게 조현아가 폭언,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 바. 원고는 2014. 12. 15.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서 조현아에 관한 피의 사건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당시 원고는, 사건 직후에 경위서를 작성한 이후 예정된 휴가를 다녀오느라 조사 당일 오전에야 대한항공에 출근하였는데, 대한항공 법무팀으로부터 ‘이미 검찰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건 당일 갤럭시에서 태블릿 컴퓨터로 매뉴얼을 찾던 중 조현아의 고성을 듣고 깜짝 놀라 1등석 객실을 살폈을 때 박창진 사무장과 다른 승무원이 무릎을 꿇어앉은 상태였고, 조현아가 소리를 지르며 승무원이 들고 있던 갤럭시 인포를 빼앗아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은 갤럭시 안에서 태블릿 컴퓨터로 정신없이 매뉴얼을 찾느라 객실 내 상황을 모두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박창진 사무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조현아가 비행기에서 내리라면서 고함을 지르며 샷대질을 하였고 L1 도어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37) 항공기의 조리실(주방)을 의미한다.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5. 1. 2. 같은 검찰청에서 2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에스비에스’라 한다)는 2015. 1. 10.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룬 제 969회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다. 위 프로그램 중 원고와 관련된 보도 내용은 별지 2. 보도 내용 기재와 같다.

아.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직후부터 인터넷에는 프로그램 중 원고가 1차 참고인 조사 당시 검찰청에 출석하여 웃는 입 부분을 포착한 방송 장면과 함께 1등석에 탑승한 ○○○ 승무원과 원고의 실명, 사진을 공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위 승무원들이 교수직 제의 등 대한항공 측의 회유를 받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박창진 사무장을 배신하였다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을 인용하여 원고가 웃는 모습을 ‘악마의 미소’로 지칭한 언론 기사(「돌변한 대한항공 승무원 악마의 미소」,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여승무원 웃는 모습에…“교수 제안 받았더라”」, 「그것이 알고싶다’ 여승무원 ‘악마의 미소’,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와 ‘오버랩」, 「악마의 미소?... 박창진 사무장 배신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의 미소 ‘소름’」)도 다수 보도되었다.

자. 에스비에스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직후부터 위 홈페이지에서 위 프로그램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원고가 검찰 출석 당시 웃는 얼굴을 방영하면서 원고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 제안 등 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검찰 조사 당시 조현아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 2) 그러나 원고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 제안 등 회유를 받은 바 없고,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목격한 대로 진술하여 조현아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원고는 회유를 받아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명예 훼손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에 관한 허위 사실 보도 부분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정보도를 구한다.
- 3) 또한 피고들의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인터넷상의 신상 공개, 악성 댓글, 악의적인 소문, 명예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 1)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 받고 국토교통부 및 검찰

조사 당시 조현아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도한 바 없다.

-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 원고와 직접 관련된 것은 원고가 검찰 조사에 앞서 웃고 있는 모습을 방영한 부분뿐이고, 그마저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고 웃고 있는 입 부분만을 방영하였으므로, 프로그램 자체에서 당사자가 원고로 특정되지 않았다.
 - 나) 또한 원고가 웃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웃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거나 ‘시청자들이 승무원들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맞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의문제기에 불과하다. 원고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적시한 바 없다.
 - 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땅콩 서비스의 장본인인 여승무원에게는 대한항공 측이 대학교수 자리까지 제안하였다’고 명확히 특정하여 보도하였으므로, 보도 내용상 땅콩 서비스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고 오해할 여지도 없다.
- 2) 설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 가) 대한항공 관계자 및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을 인용하여 ‘현장에 있었던 여승무원들 모두(국토교통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현아의 폭언,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대한항공과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 보도가 아니다.
 - 나) 원고는 검찰에서 조현아의 폭언이나 폭행 여부는 목격하지 못하여 알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현아의 강압적인 지시 사실을 진술한 바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보도도 허위 사실 보도가 아니다.
- 3) 설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을 비판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없다.
- 4)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전 원고에게 연락하여 사실 확인, 반론 청취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원고가 진술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 보도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 관련 내용 보도 여부

1) 관련법리

-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나)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 관련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건발생 10일째 되던 날,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중 한 여승무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질문공세에도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묘합니다. (웃는 승무원 얼굴 방송)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검찰조사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이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여승무원은, 취재진을 피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를 실은 승용차에 앉아 있는 일행들, 그들은 다른 아님, 대한항공 관계자들이었습니다.
- (2) 사건현장의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인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러 나타났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걸까요. (...) 검찰 수사를 통해, 그녀의 여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향후 그녀의 거취는, 사건을 목격했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진술에,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일만 잘 수습되면 잊지 않겠다'며 거짓진술을 지시하는 이 USB 속 남자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승무원들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연찮은 기회로, 회사 오너의 범법행위를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은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두 번째 파일은, 놀랍게도, 대한항공 사건에 관해 조사를 벌였던, 국토교통부 조사실 안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실 녹취파일 방송) (...) 그렇다면 과연, 이 순간, 조사를 받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 (3) 처음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언이나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 대한항공 측의 입장은 어떨까.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승무원을 비하하거나 욕설한 것은 없었고요. 이것은 해당 승무원들의 진술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 전원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조사 당시 녹취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창진 사무장 조사 녹취파일 방송)

- (4) (박창진 사무장에게 질문) ‘국토부 조사받을 때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셨던데, 진실이 됩니까?’(...) (박창진 사무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고 나가서 너는 답변을 하면 된다.’ (...) 회사 측에서 짠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하면, 뒷일은 자신들이 무마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던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여승무원들의 경우는 어떨까. (원고의 웃는 모습이 녹화된 화면을 박창진 사무장이 가리키며) ‘저 웃고 있는 여승무원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여승무원이에요. 여승무원들이 다... (한숨)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욕설도 듣고 그런 파일로 맞긴 했지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회사에서) 이 일이 잠잠해지고, 끝나고 나면 저희 모기업이 주주로 돼 있는 대학교에 교수 자리로 이동 시켜 주겠다.’(여승무원 대역 2인이 귓속말로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재연 장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여승무원들 모두가,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 서비스의 장본인인 여승무원에게는, 회사 측이 대학교수 자리까지 제안을 했었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원고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국토교통부 조사, 검찰 조사에서 조현아의 폭언, 폭행 등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한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원고가 웃는 모습과 함께 ‘뜻하지 않게, 검찰조사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이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언급한 후, 원고가 조사 후 대한항공 관계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사건현장의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인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러 나타났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걸까요.’라고 낭독하였다. 위 장면 보도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조사시 입을 맞추라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지시가 녹음된 파일이, 이후로는 ‘땅콩 회항’ 사건을 목격한 여승무원 모두가 조현아의 폭언,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주장과 대한항공 측의 회유를 받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인터뷰가 보도되었다.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웃는 모습과 관련한 보도가 단순히 웃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방영하였다거나, 의견 표명, 의문 제기 등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이 전후에 보도된 대한항공 측의 거짓 진술 지시, 회유, 교수직 제안 등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 전원이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대한항공 관계자와 박창진 사무장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전체의 취지와 흐름, 객관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 측의 회유를 받고 국토교통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함께 방영되었고, 그 당사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힌 박창진 사무장이 원고가 웃는 모습을 직접 가리키며 ‘여승무원들이 다...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욕설도 듣고 그런 파일로 맞긴 했지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회사에서) 이 일이 잠잠해지고, 끝나고 나면 저희 모기업이 주주로 돼 있는 대학교에 교수 자리로 이동 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한숨을 쉬는 모습이 방영된 이상, 보통의 주의로 방송을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라면 위와 같은 녹취자료나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승무원들 전원이 교수직 제안 등 대한항공 측의 회유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특히 검찰에 출석했을 때 미소 짓는 모습까지 방송된 원고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 (3)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검찰 출석 모습이 방송된 후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승무원들과 같은 입장, 즉, 회사 오너의 범법행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회사 측이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질문하고, ‘만일 이처럼 부당함에 맞서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5년에도, 여러분의 그 정의로운 선택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대사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보도 내용,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보도는 원고를 포함한 승무원들이 정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거짓 진술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4) 실제로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직후 언론 기사 및 인터넷 게시글은 원고를 비롯한 사건 관련 승무원들이 대한항공 측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원고가 교수직을 제안 받은 당사자인 것으로 오인한 시청자들도 적지 않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가 대한항공 측의 회유를 받았다는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땅콩 회항’ 사건 직후인 2014. 12. 7.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4. 12. 13. 귀국하였고, 2014. 12. 15. 처음으로 검찰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점, 그러나 원고가 첫 조사를 받기 전인 2014. 12. 13. 이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당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으나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숨기도록 거짓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점, 같은 날 당시 상황을 목격한 1등석 승객 역시 검찰 조사에서 조현아가 내리라고 소리치며 서류철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또한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점, 원고는 2014. 12. 15. 검찰 진술 당시 대한항공 법무팀으로부터 ‘이미 검찰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회유 녹취 자료를 방송한 외에, 대한항공 측이 원고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수궁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 없이 위 부분이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

원고가 2014. 12. 7.부터 2014. 12. 13.까지 국외에 체류하여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바 없는 사실, 원고가 2014. 12. 15. 검찰 1차 참고인 조사 당시 조현아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면서 문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1등석 갤리에서 매뉴얼을 찾느라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조현아가 갤리 인포를 들고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박창진 사무장의 검찰 진술 중 원고가 목격한 부분은 원고의 기억과 동일하다고도 진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오해될 만한 보도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검찰 조사 당시 조현아의 폭언, 폭행을 감추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될 만한 보도 부분도 진실하지 아니하다.

4) 소결

가)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 관련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하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명예 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보도 내용은 대한항공이 원고를 포함한 승무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대한항공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일 뿐 원고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피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대한항공의 회유를 받아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러한 보도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과 분량, 그 표현 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 내용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보도하도록 하고, 그 보도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항변

가) 피고들은,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가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것이거나, 원문보도를 왜곡 해석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전 원고에게 사실 확인 및 반론 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진술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위법성이 없다는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비록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권의 입법 취지, 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 거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이 위 규정에서 가리키는 특별한 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민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 에스비에스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비록 원고의 실명을 명시한 바 없고, 원고의 얼굴 중 입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영하였으나, 보도 당시 원고를 ‘땅콩 회항’ 사건 현장의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인 여승무원, 1등석 갤리에 있던 여승무원으로 특정하였고, 사건 당시 1등석에 탑승했던 여승무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단 둘 뿐이었던 점, 특히 원고가 재직 중인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면 누구든지 사내 망을 통해 비행기 편명을 입력, 검색하는 것만으로 당해 여객기에 탑승한 1등석 승무원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실제로 방송 직후 시청자들이 원고의 신원을 파악하여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할 정도로 원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접한 사람 중 적어도 대한항공 승무원 등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위 프로그램에서 말한 1등석 승무원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 가)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명예 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 에스비에스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탐사 보도 프로그램으로서 시청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점, 원고의 지위, 경력, 연령, 피해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일인 2015. 1.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가 진실하며, 설사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 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가능한 모든 취재원을 접촉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와도 수차례 연락하여 사실 확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 관련 보도 부분이 허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측이 원고에 대한 회유 시도나 원고의 거짓 진술 여부에 관하여 충실한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전 제작진 측에서 박창진 사무장 등 다른 승무원에 대한 자료 외에 원고에 대한 회유나 원고의 거짓 진술 관련 부분에 관하여까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원고가 검찰 조사 전 국내에 체류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검찰 출석 모습을 방영하면서 원고가 회유를 받아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승무원들을 모두 뭉뚱그려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을 방송하였던 점,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원고는 인터넷에서 신상 공개, 욕설, 비난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직장에서도 휴직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원고 관련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 제969회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편 관련 정정보도문

내용 : SBS는 2015년 1월 10일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969회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편에서,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15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여승무원이 웃고 있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그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관계자들로부터 사실은폐의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았고, 국토교통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여승무원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며, 국토교통부 조사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며 매뉴얼을 던지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한 대로 진술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별지 2〉 방송내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45626 판결

생방송이라 하더라도 게스트의 발언이 프로그램 진행자에 의하여 더 구체화되고 반복적으로 방송되었다면 방송사도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5월 5일과 7일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에서 전 구원파 신도였던 이0을 게스트로 초대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형식의 보도를 진행했다. 위 보도에서 이0은 ‘구원파 신도로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자신을 불법 사찰 및 미행하고,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6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는데 2심 법원에서 2016년 5월 31일 조정이 성립됐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5466).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00만 원)이 내려졌으나(2014서울조정1118·1119)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된 바 있다.

[판결요지]

□ 생방송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이0을 섭외하고 이 사건 보도 전에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이0이 출연하여 발언할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위 내용을 만연히 방송한 점, 더욱이 이0이 이 사건 보도 전에 피고에게 제공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불법 사찰·미행, 수색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가 이0의 발언 내용 전부를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2014. 5. 5.자 보도가 생방송 중 이0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0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현직 경찰관 개인에 관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심각한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발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실명이 나간 후에도 프로그램 진행자에 의하여 더 구체화되고 반복되었으며, 2014. 5. 7. 재차 방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45626	정정.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방송하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아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한다.
나.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8.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의 오프닝멘트에 이어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자의 육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 및 내용을 시청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8,481,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이하 ‘구원파’라고 한다) 소속 신도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보도 당시 서울 00경찰서 00과 000000(00)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다. 피고는 종합 편성채널 ‘TV조선’을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위 채널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도

피고는 2014. 5. 5.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에서 구원파 교주로 알려진 유병언과 구원파의 실체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전(前) 구원파 신도로서 유병언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이0을 게스트로 초대하여 진행자 장성민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보도하였는데, 그 방송 도중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고, 같은 달 7.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0을 초대하여 같은 형식으로 진행·보도하면서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다(이하 별지3, 4 기재 각 내용이 포함된 보도 부분을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이 사건 보도에서 방송된 원고 관련 내용의 요지는 ‘구원파 신도로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이0을 불법 사찰 및 미행하고,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라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 1) 원고는 이 사건 보도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2014. 6. 9. 서울 00경찰서 00과 0000팀으로, 같은 해 7. 10. 다시 같은 경찰서 0000과 00파출소로 인사조치되었다.
- 2) 원고는 ‘원고가 2010. 2. 21.경 이0의 아들인 이00를 찾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박00의 집을 무단으로 수색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원고는 구원파 신도로부터 역시 구원파 신도인 이00가 존속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재판에 불출석할까 염려된다는 말을 듣고 이00를 찾기 위해 그가 거주하던 박00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박00 등과 잠시 언쟁을 하다가 돌아왔을 뿐 그곳에 강제로 들어가거나 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5. 2. 13.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0을 불법 사찰·미행하거나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이 사건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2014. 9. 5.부터 2015. 1. 31.까지 질병 휴직 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 8,481,730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58,481,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 1)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 ‘구원과 신도로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이0을 불법 사찰 및 미행하고,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라는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원고가 2010. 2. 21.경 이00가 거주하고 있던 박00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박00 등과 잠시 언쟁을 하다가 돌아왔을 뿐 그곳을 침입·수색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2015. 2. 13.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그 외에 원고가 이0을 불법 사찰·미행하였다거나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는 사실의 허위성 여부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바, 피고가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0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0을 불법 사찰·미행하고,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수궁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중 ‘구원과 신도로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이0을 불법 사찰 및 미행하고,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라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구원과 신도로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이0을 불법 사찰 및 미행하고,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보도를 방송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2) 나아가 피고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나 분량, 표현방법, 방송 횟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방송하도록 하고,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또한,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피고가 위 의무 불이행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유무

갑 제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는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일가

량 경과된 시점에서 방송된 것으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운수의 운영의 배후로 지목되던 유병언의 구원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사실, 실제로 원고는 구원파 신도로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직 경찰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하는 원고가 종교 단체(구원파)를 위하여 불법사찰·미행, 수색 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상당성 유무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이0을 섭외하고 이 사건 보도 전에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이0이 출연하여 발언할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위 내용을 만연히 방송한 점, 더욱이 이0이 이 사건 보도 전에 피고에게 제공한 녹취록(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불법 사찰·미행, 수색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가 이0의 발언 내용 전부를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2014. 5. 5.자 보도가 생방송 중 이0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0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현직 경찰관 개인에 관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심각한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발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실명이 나간 후에도 프로그램 진행자에 의하여 더 구체화되고 반복되었으며, 2014. 5. 7. 재차 방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4. 9. 5.부터 2015. 1. 31. 까지 질병 휴직 함으로써 8,481,73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질병 휴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써 위와 같은 급여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신적 손해

- (1) 원고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보도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인사조치 되었으며, 관련 혐의사실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도 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당사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5.자 보도 이후 원고

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음에도, 다시 같은 달 7.자 보도를 한 점, ③ 이 사건 보도에 원고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되었던 점, ④ 다만 원고는 구원파 신도로서 다른 구원파 신도인 이00 관련 사안으로 실제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 이00가 거주하는 박00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00로부터 의심을 받게된 점, ⑤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장성민의 시사토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원고의 실명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중간에 출연자인 이00이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후 다시보기에서 원고의 실명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 전(前) 구원파 경찰 A모씨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본 프로그램은 2014년 5월 5일자 및 같은 달 7일자 방송에서 구원파 전(前) 신도인 게스트 이0씨가 “현직 경찰 A모씨가 자신을 불법 사찰 및 미행하고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는 발언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경찰 A모씨는 위 발언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해당 방송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4〉 방송내용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가합102966 판결(확정)

병원 상호 및 간판 일부,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명 등이 노출됨으로써 당사자가 특정되었다

- 원고 : A
- 피고 :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사실관계]

2013년 11월 20일과 21일 <뉴스7>을 비롯한 몇 번의 KBS 뉴스에서는 한의사인 원고가 운영하던 한방병원의 상호와 간판 일부, 입구 및 내부 모습을 내보내 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것처럼 보도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한방병원을 개업하기 직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다른 한방병원을 운영했던 한의사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보도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보도에 등장한 병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원고가 당사자로 특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방송사가 이미 정정보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고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방송이 원고를 당사자로 특정했는지에 대한 판단

배경 화면에 이 사건 병원 상호 중 ‘00’이 노출된 사실, 이 사건 병원 입구를 뿌옇게 처리한 영상이 방영되었던 사실, 또한 이 사건 병원 간판 중 ‘한방병원’ 부분과 병원 유리문에 적힌 ‘양방재활의학과’ 부분이 그대로 방영되었던 사실, 후속보도 중에도 병원 유리문에 적힌 ‘양방재활의학과’ 부분은 계속 방송되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보도에 사건 담당 경찰관이 ‘광주 광산경찰서’라고 커다랗게 기재된 배경 앞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 영상이 나타내는 병원이 이 사건 병원으로, 그 병원의 원장이 원고로 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위 각 보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였으나, 위 각 보도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원장을 ‘43세 김 모씨’라고 보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10296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2. B 3. C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내에 한국방송 제1텔레비전 <뉴스 9>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서두에 텔레비전 오른쪽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별지 1. 및 2. 기재 각 보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당시 광주 광산구 00로 00 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0000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한의사이다.
-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방송공사로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방송사이다.
- 3) 피고 B, C는 피고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로 이 사건 각 보도의 취재기자이다.

나.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실

-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김00은 위 건물에서 종전에 ‘△△한방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김00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고, 상호를 ‘0000병원’으로 변경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 2) 광주광산경찰서는 2013. 11. 20. △△한방병원 김00 원장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내용을 기재하는 등 병원비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3) 피고 C는 2013. 11. 20. 오후 김00의 보험사기 관련 취재를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찾았다. 위 피고는 방문 당시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한방병원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병원 출입구, 로비, 간판 등을 촬영하였다.

다. 2013. 11. 20. 제1보도

-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3. 11. 20. 오후 7시 전국에 방송되는 한국방송 제1텔레비전 <뉴스 7> 프로그램에서 피고 B의 취재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도(이하 ‘제1보도’라 한다)하였다.
- 2) 위 보도 당시 뉴스 앵커가 내용을 소개하는 동안 앵커 오른쪽 위 정지 화면에 당일 피고 C가 촬영한 이 사건 병원의 입구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벽 부분에 적힌 병원 상호 중 ‘00’ 부분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또한 보도 중 배경으로 이 사건 병원 입구를 뿌옇게 처리한 화면이 방송되었고, 병원 간판의 ‘한방병원’ 부분과 병원 유리문에 적힌 ‘입원실’, ‘양방 재활의학과, 정형외’ 부분은 화면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라. 2013. 11. 20. 및 21. 제2보도

1) 2013. 11. 20. 광주 지역 보도

- 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광주방송총국은 2013. 11. 20. 오후 9시 광주 및 인근지역에만 방송된 제1텔레비전 <뉴스9> 프로그램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도(이하 ‘제2보도’라 한다)하였다.

다만, 제1보도 직후 원고의 항의를 받게 되자, 제2보도시에는 ‘00’이 노출되었던 앵커 배경 화면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병원 입구 모습, 병원 간판 중 ‘한방병원’ 부분 또한 삭제하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 유리문에 적힌 ‘입원실’, ‘양방재활의학과’ 부분은 방송되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관련 화면을 일부 삭제하여 방송한 직후, 앵커는 다음과 같이 낭독하여 정정보도를 하였다.

“방금 전 뉴스에 나간 병원 화면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이 폐업한 뒤 새로운 한의사가 인수한 병원으로 보험사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3. 11. 21. 후속 보도

2013. 11. 21. 한국방송 제1텔레비전의 아침 〈뉴스광장〉 프로그램, 오전 〈930 뉴스〉 프로그램, 정오 〈뉴스12〉 프로그램에서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도 후 경과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각 보도 직후 한국방송 홈페이지에서 위 각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2013. 11. 21. 원고 측 요청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단지 이전 병원 원장으로부터 병원 영업을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보도에 등장하는 보험사기와 무관하고, 취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시 ‘이 병원 원장 김 모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병원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병원 모습과 위 병원에 ‘양방재활의학과’라고 써붙인 장면을 방송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원고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보도하였다. 특히 제1보도시에는 이 사건 병원 상호 중 ‘00’자가 노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영하여 이 사건 병원의 공신력과 원고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며, 정정보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일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로 볼 경우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각 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명백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민법 제764조 또는 언론중재법 제31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 1) 텔레비전 뉴스 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관련 영상이 필요한데 ‘△△한방병원’이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보험사기 피의자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보도 당시 병원 건물과 내부시설, 일부 직원들이 동일한 이 사건 병원 영상을 사용하였다. 다만, 제1보도에는 촉박하게 뉴스를 제작하다 보니 병원 상호 일부인 ‘00’이 노출되었으나, 그 직후인 오후 9시 광주 <뉴스9> 프로그램에서 병원 관련 영상을 편집하여 제2보도를 하였고, 원장을 ‘43살 김 모씨’로 지칭하였으므로 위 각 보도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특정되지 않는다.
- 2) 또한 제2보도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이 보험사기와 무관하다는 정정보도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 2) 제1보도 중 앵커 배경 화면에 이 사건 병원 상호 중 ‘00’이 노출된 사실, 이 사건 병원 입구를 뿌옇게 처리한 영상이 방영되었던 사실, 또한 이 사건 병원 간판 중 ‘한방병원’ 부분과 병원 유리문에 적힌 ‘양방재활의학과’ 부분이 그대로 방영되었던 사실, 제2보도 중에도 병원 유리문에 적힌 ‘양방재활의학과’ 부분은 계속 방송되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보도에 사건 담당 경찰관이 ‘광주 광산경찰서’라고 커다랗게 기재된 배경 앞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 혹은 그 지인들이 이 사건 각 보도에 방영된 병원 전경을 보고 바로 이 사건 병원임을 알아차렸던 점,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에 양방재활의학과를 운영하는 한방병원이 드물어 인근 지역 주민이라면 이 사건 각 보도에 등장한 병원이 이 사건 병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 영상이 나타내는 병원이 이 사건 병원으로, 그 병원의 원장이 원고로 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위 각 보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였으나, 위 각 보도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원장을 ‘43세 김 모씨’라고 보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보도 관련 보험사기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보도를 통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과 그 원장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이 사건 병원 모습을 촬영하여 배경화면으로 방영하였고, 특히 화면 처리 미비로 인하여 병원 상호 중 일부가 그대로 방영되도록 하였으며, 제1보도 직후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여전히 이 사건 병원을 특정할 만한 영상이 일부 포함된 제2보도를 계속 방송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병원 원장이라는 오해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도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5. 7.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민, 형사상 명예훼손 책임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명예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 수 급감에는 이 사건 각 보도의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원고의 피해 정도, 지위, 경력, 연령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에 진실성,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도가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 공익 목적 보도라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보험사기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 진실한 보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명예회복이라는 기능에 비추어 이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될 때 이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제1보도 직후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병원 관련 영상을 편집하여 제2보도를 하였고, 비록 원보도와 균형을 이루는 충분한 정정보도라고 보기는 부족하지만 제2보도 직후 광주 지역 뉴스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각 보도 직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위 각 보도를 다시 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점,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위자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현재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간접강제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방송내용 생략

〈별지 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방송에 방송 노출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 원고 : 심재환 외 1명
- 피고 : 이봉규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3년 2월 6일 방영된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패도난마〉에서 ‘5대 종북 부부’를 주제로 대담 방송을 진행했다. 시사평론가인 피고 이봉규는 원고들을 3위 종북 부부로 소개하며 ① 원고들이 종북 인사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② 원고 심재환은 KAL기 폭파사건이 정부의 날조라고 주장하며, ③ 원고 이정희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미리 준비한 차트로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노출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심재환은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방송 내용 중 ①, ③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원고 심재환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양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나2069240).

[판결요지]

(1) 원고 심재환에 대한 초상권 침해 여부

피고 채널에이는 원고 심재환이 공인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얼굴 사진의 노출 정도, 사전에 원고 심재환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던 긴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 심재환이 정치, 방송 등 대중 노출을 전제로 한 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자신의 초상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심재환의 얼굴 사진이 노출됨으로써 침해되는 원고 심재환의 사익이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 심재환의 얼굴 사진 무단사용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생방송 중 발생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 유무

피고 채널에이는, 생방송의 특성상 피고 채널에이가 피고 이봉규의 발언을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채널에이는 방송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방송의 주제는 애당초 “5대 종북 부부”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인사

들의 사진과 성명이 담긴 차트 역시 이미 피고 채널에이에 의하여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채널에이는 피고 이봉규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송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86127 손해배상(기)
원	고	1. 심재환 2. 이정희
피	고	1. 이봉규 2. 주식회사 채널에이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심재환에게 1,000만 원, 원고 이정희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5. 3.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들과 원고 심재환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심재환이, 1/5은 피고들이, 피고들과 원고 이정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 이정희가, 1/10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 심재환은 변호사이고, 원고 이정희는 정당해산절차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당대표를 역임하고 제18대 대선에서 위 통합진보당의 대선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한 적이 있는 정치인으로, 원고들은 부부이다.
- 나. 피고 이봉규는 시사평론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채널에이'라 한다)는 케이블 TV 방송 '채널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 다. 피고 채널에이가 운영하는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2013. 2. 6. 진행자 박종진과 피고 이봉규가 '5대 중북 부부'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는 내용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되었다.
- 라. 이 사건 방송에서 오간 대화는 피고 이봉규가 이른바 '5대 중북 부부'를 순서를 매겨 꼽으면서(1위: 윤00, 황0 부부 2위: 한00, 이00 부부, 3위: 원고들 부부, 4위: 최00, 김00 부부, 5위: 박00, 한00 부부), 5위부터 역순으로 대상 인물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중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 녹취내용 기재와 같다(그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주로 언급된 부분은 "*對話 3.*" 부분이다).
- 마. 한편 이 사건 방송 중에는 피고 이봉규가 순위별로 '중북 부부'를 소개하는 첫 부분마다, 진행자 박종진이 자신의 옆에 놓인 '5대 중북 부부'라는 제목의 차트(피고 이봉규가 '중북 부부'로 지목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성명이 순위별로 기재되고, 그 내용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음) 중 해당 순위의 '중북 부부'에 대한 가림막을 제거하고, 그 내용이 화면에서 클로즈업되었으며, 그 외에도 방송 도중 가끔씩 위 차트의 모습이 화면에 비추졌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의 얼굴 사진도 방송 화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방송 대부분의 화면에는 "5대 중북 부부"라는 문구가 포함된 자막이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원고들에 대한 주된 설명 부분에서는 "<5대 중북 부부> 3위: 심재환, 이정희"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들과 피고 채널에이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행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2)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자료 중의 다른 기재내용이나 구두설명 등을 전체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적시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 3)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한편,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나. 적시사실 및 허위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방송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표현

이 사건 방송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 전체에 대한 표현

① 이 사건 방송 중 “5대 종북 부부”라는 제목 및 원고들을 ‘3위’에 해당하는 ‘종북 부부’라고 소개하는 부분, ② 피고 이봉규가 한 “종북이라는 것은요. 국가를,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적국에, 그러니까 북한에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기를, 국기라든가 애국가 제창을 안 하고, 저쪽을 찬양하는 그게 종북이죠”, “종북 인사한테 당신 종북이야?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죠. 열이면 열명. 종북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더러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라고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북의 활동을 하는게 문제죠” 발언 부분

나) 원고 심재환에 관한 표현

피고 이봉규가 원고 심재환에 대하여 한, ① “이 양반이 거물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스승이예요”, ②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에 관하여) “그런데 이거 ‘한국정부에서 일부러 날조를 한 사건이다’ 이게 종북이 아니고 뭐니까?”, ③ “그리고 북한체제를 계속 칭송하고”, ④ “이분이 아주 종북 중에서도 상종북이죠” 발언 부분

다) 원고 이정희에 관한 표현

피고 이봉규가 원고 이정희에 대하여 한, ① “그래 놓고서는 슬쩍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 오고, 또 27억 먹고 튀고”, ② “왜 이정희 대표가 종북이냐면요” ③ (라디오 방송 중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질문에)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답변하겠다. 답변을 안 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그러면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침이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남침이라고 얘기하기는 싫다는 거야” ④ “그러니까 애국가도 안 부르고. 종북의 아주 전형적인 예죠” 발언 부분

2) 적시사실

가) 위 1) 다) ① 부분 표현에 관하여 본다. 원고 이정희는 위 표현을 통하여 ‘원고 이정희가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가지고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을나 제1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원고 이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비용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하였다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였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벌어져 ‘27억 먹튀 논란’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맥락 및 이 사건 방송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에서 위 표현을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원고 이정희가 주장하는 적시사실과 같은 인상을 가지기보다는, ‘원고 이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사용하고, 이후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한 사실’을 피고 이봉규가 ‘먹고 튀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먹고 튀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선거보조금 사용 및 대통령 사퇴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로서 그 자체로 원고 이정희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으로 원고 이정희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이정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 다) ③ 부분 표현에 관하여 본다. 원고 이정희는 위 표현을 통하여 ‘원고 이정희가 6·25 전쟁이 북침으로 인하여 발발하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표현은 ‘원고 이정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6·25 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한 것인지 북침으로 발발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에 비추어 ‘원고 이정희가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피고 이봉규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위 전제사실만으로는 원고 이정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이봉규의 위와 같은 해석 부분은 순수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으로 원고 이정희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이정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위 1)항 기재 표현들 중 위 1) 다) ①, ③ 부분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을 위가.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표현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① 원고들이 이른바 중북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적국인 북한을 찬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적시사실 ①’이라 한다), ② 원고 심재환은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이 정부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이하 ‘적시사실 ②’라 한다), ③ 원고 이정희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다(이하 ‘적시사실 ③’이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모두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3) 적시사실의 허위성

- 가) 적시사실 ②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 심재환은 자신이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이 “정부의 날조”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심재환이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위 KAL기 폭파사건의 기록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건 남한 사람이건 상관 없다. 중요한 것은 KAL858기는 폭파되지 않았고, 김현희 역시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발언하거나,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한다. 이걸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북한 공무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다”고 하는 등 위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이 김현희가 아니고, 그 사건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의혹제기의 내용은 결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 KAL기 폭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거나, 조작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 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심재환이 위 KAL기 폭파사건에 대하여 “정부의 날조”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 표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나) 적시사실 ①, ③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가. 2)항 기재 법리에 피고 채널에이가 위 적시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원고들이 이석기를 변호하였다는 등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일 뿐, 원고들의 ‘종북 활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특히 적시사실 ③ 부분의 경우 원고 이정희가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설명한 언론기사들인 갑 제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기재 등에 비추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시사실 ①, ③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4) 위법성 조각 여부

- 가) 적시사실 ② 부분에 관하여, 원고 심재환이 진위를 불문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로 나아가 판단하건대, 위 3) 가)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적시사실은 허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표현이라 할 것이고, 이는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이라는 사회적 관심사안에 관한 주장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공익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 3)항 기재 법리에 따라 위 적시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 나) 적시사실 ①, ③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앞서 3)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들 및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는 위 적시사실들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적시사실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당대표 및 대통령 후보를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원고 이정희에 대하여 위 가. 3)항 기재 법리에 따라 상당성 판단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심재환은 위 2. 나. 1) 나) ④ 부분의 '상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과 별도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하나, 위 표현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인정되는 명예훼손의 범위를 넘어 인격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심재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이정희는 위 2. 나. 1) 다) ① 부분의 "27억 먹고 튀고" 부분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하나, 위 표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이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후보를 사퇴하는 과정에서 선거비용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사용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인 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표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표현이 모멸적인 표현으로서 원고 이정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이정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 심재환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 심재환의 동의 없이 위 1.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 심재환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심재환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 채널에이는 원고 심재환이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이며 유명 정치인인 원고 이정희의 남편으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 심재환에게 피고들이 자신의 초상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방송의 내용(원고 심재환을 '종북'으로 지칭하면서 반사회세력으로 비판하는 내용),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심재환 얼굴 사진의 노출 정도(원고들 부부를 소개할 당시 클로즈업을 통해 원고 심재환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 심재환의 사진이 화면에 비춰졌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설명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출됨), 원고 심재환의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 심재환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던 긴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 심재환이 정치, 방송 등 대중 노출을 전제로 한 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자신의 초상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심재환의 얼굴 사진이 노출됨으로써 침해되는 원고 심재환의 사익이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 심재환의 얼굴 사진 무단사용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한편, 이 사건 방송에서 앞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피고들이 함께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피고 채널에이는, 생방송의 특성상 피고 채널에이가 피고 이봉규의 발언을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채널에이는 방송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방송의 주제는 애당초 “5대 종북 부부”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사진과 성명이 담긴 차트 역시 이미 피고 채널에이에 의하여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채널에이는 피고 이봉규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송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심재환에게 적시사실 ① 부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원고 이정희에게 적시사실 ①, ③ 부분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손해배상의 범위

- 1) 이 사건 방송의 파급력, 원고들의 각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 및 원고 심재환의 초상권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 심재환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 피고 이정희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심재환에게 1,000만 원, 원고 이정희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일인 2013.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3.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방송내용 생략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 반복보도, 악의적 편집 등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매일방송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9월 22일 <뉴스8>을 비롯한 몇 개의 MBN 프로그램에서 경찰관인 원고가 서울 소재 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진행 중인 수술실에 병원장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수술이 중단되어 환자가 방치되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이에 원고는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수술이 중단되거나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바 없음에도 악의적인 편집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보고 손해배상 7,000만 원 및 정정보도를 명했다. 이 소송은 양 측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6나2000002).

[판결요지]

(1) 인용 형식의 보도 내용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위자료 액수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열흘 내의 기간에 7차례 이상 앞서 본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점, 피고는 피해자 및 전문가 인터뷰, 배경 화면 등의 편집에 의한 암시를 통하여 수술실 압수·수색 전후 과정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한편으로는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 보도하면서 경찰과 보험사 직원과의 유착이 있는 듯 한 인상까지 준 점, 피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이후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4. 27. 재차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총망라하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보도를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은 7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5가합9115	정정.반론.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매일방송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MBN-TV ‘뉴스8’ 프로그램의 말미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정정대상 기사의 화면으로 한다.
나.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1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MBN-TV ‘뉴스8’ 프로그램의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판결 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원고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00경찰서 00과 0000 00팀에서 근무하면서 2014. 8. 13.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000 이비인후과(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관이고, 피고는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인 ‘MBN-TV’를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원고의 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보도를 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원고는 소외 병원에 대하여 보험금 내지 보험급여 편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4. 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같은 달 13. 10:10경부터 소외 병원의 3층 진료실을 시작으로 2층 원장실, 회복실, 수술실 등에 대하여 위 영장을 집행하였고, 당시 00경찰서 소속 장00 경위,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하00, 000화재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김00 등이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도

피고는, (i) 2014. 9. 22. MBN-TV ‘뉴스8’ 프로그램에서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³⁸⁾와 같은 보도를, (ii) 같은 달 24. 같은 프로그램에서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위험한 압수·수색’ 공방」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4 기재와 같은 보도를, (iii) 같은 달 25. 같은 방송 ‘굿모닝 MBN’ 프로그램에서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의료계도 반발」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5 기재³⁹⁾와 같은 보도를, (iv)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경찰 “병원이 동의” 병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제목 아래 별지6 기재⁴⁰⁾와 같은 보도를, (v) 같은 달 26. 위 ‘뉴스8’ 프로그램에서 「경찰, 보험사 동행 위해 영장 허위 작성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7 기재⁴¹⁾와 같은 보도를, (vi) 같은 달 29. 같은 프로그램에서 「경찰 사칭’ 보험사 직원 알고 보니 전직 경찰」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8 기재와 같은 보도를, (vii) 같은 해 10. 1. 같은 프로그램에서

38)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걸까요. 수술 중인 의사에게까지 무리하게 취조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술이 중단되면서 당시 마취를 한 환자가 자칫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고, 기자의 멘트 중 ‘당시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전신’ 부분이 삭제된 채 ‘당시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한 상황’이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다.

39)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경찰의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방치됐다는 내용을 최근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라는 부분은 ‘마취 상태에서’ 부분이 삭제된 채 기재되어 있다.

40)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하지만 병원은 수술실 진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당시 의료사고가 우려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라는 부분은 ‘아주’ 부분이 삭제된 채 기재되어 있다.

41)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MBN에서 지난번에 보험사 직원을 데리고 가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무리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 직원을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렇게 경찰이 썼습니다. 금감원 조사팀이다. 신원을 속인 것부터가 불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의 거짓말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저희 MBN에서 보험사 직원을 대동한 경찰의 무리한 병원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다.

「의사들 뿔났다. 경찰·보험사 직원 고발」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9 기재⁴²⁾와 같은 보도를, (viii) 2015. 4. 27. 같은 프로그램에서 「수술실 난입 압수·수색」 검찰 수사서 사실로 드러나」라는 제목 아래 별지10 기재와 같은 보도를 각 소외 병원 현장 화면, 자료화면 등의 영상과 함께 방송하였다(이하 위 각 보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고 하고, 각 보도는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에 대한 고발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2014. 10. 1. 원고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교사죄, 의료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협박죄로, 김00, 하00 등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 내지 17호중(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 4호중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수술실에 난입하는 등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수술 중인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여 영장 집행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송하였으므로, 허위 부분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⁴³⁾.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위와 같은 허위 부분을 비롯하여 그 전반에 걸쳐 악의적인 편집 등을 통하여 원고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보도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마취 상태에 관하여 ‘전신 마취’라는 내용을 ‘수면 마취’라고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의 실익이 없고, 인터뷰 대상에 관한 부분은 비록 인터뷰 대상자(이하 인터뷰이(interviewee))라고 한다가 직접 압수·수색당한 수술실의 환자는 아니지만, 당시 소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로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병원의 수술실 영상을 내보내거나 영화의 영상 등을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화면일 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바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보도는 모두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도 아니한다.

42)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의 멘트 중 ‘영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술실까지 들어가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의 행태를 최근 MBN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라는 부분은 ‘최근 저희 MBN에서 보험사 직원을 대동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라고 변경 기재되어 있다.

43) 원고는 청구취지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별지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상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 2)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적시된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멘트를 통하여 직접 적시하거나, 인터뷰 내용, 자막, 영상 등의 편집·방영을 통하여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이를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만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 주장의 사실 적시 부분, 즉 '경찰과 보험사 간에 유착 의혹이 있다', '원고가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시민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운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사실로서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원고에 관한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i) 보도

- 경찰의 압수·수색이 수술 중인 의사에 대하여 무리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고, 환자가 큰 위험에 빠질 뻔했다⁴⁴⁾.
- 당시 그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한 상황이었는데, 압수·수색으로 방치되었다.
- 당시 경찰이 의사에게 의료기구의 소독 여부, 금고에 보관 중인 물건 등에 관하여 묻고, 심지어 스테이플러, 클립 등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계속하여 수술이 중단되었다.

(ii) 보도

-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방치되었다.
- 당시 그 환자는 마취를 한 상황에서(다만 '전신 마취'가 아닌 '수면 마취'를 한 상황이라고

44) 소외 병원의 병원장은 '보통 환자들이 방치된 채 2분 30초에서 3분이 넘어가면 뇌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정정보도하고, 자막으로는 ‘마취’라고만 표시하였다) 수술이 중단되고 코를 절개한 채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8분 동안 혼자 방치되다시피 했다⁴⁵⁾.

- 당해 환자인 인터뷰이는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을 몰랐고, 당시를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하였다.
- 경찰은 소외 병원장의 동의 하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으나, 병원 측은 동의한 바 없다(경찰이 수술실 진입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 의료기구의 소독 여부, 금고에 보관 중인 물건 등 급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경찰의 질문으로 수술이 중단되었다.

(iii) 보도(위 (ii)보도의 앞부분 내용과 동일하다)

-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방치되었다.
- 당시 그 환자는 마취를 한 상황에서 수술이 중단되고 코를 절개한 채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8분 동안 혼자 방치되다시피 했다.
- 당해 환자인 인터뷰이는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을 몰랐고, 당시를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하였다.

(iv) 보도(위 (ii)보도의 뒷부분 내용과 동일하다)

- 경찰은 소외 병원장의 동의 하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으나, 병원 측은 동의한 바 없다(경찰이 수술실 진입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 의료기구의 소독 여부, 금고에 보관 중인 물건 등 급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경찰의 질문으로 수술이 중단되었다.

(v) 보도

-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TF팀이 없음에도 그 소속 직원이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있다.

(vi) 보도

- 당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해 병원 압수·수색에 동행하였다.

(vii) 보도

-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술 중인 의사를 무리하게 조사하여 의료사고로 이어질 뻔했다⁴⁶⁾.
-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

45) 그 위험성과 관련하여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나00이 ‘수면 마취를 잘못하면 환자가 뇌에 문제나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서 위중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도하였다.

46)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나00이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돌보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도하였다.

(viii) 보도

- 경찰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허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하고, 보험사 직원을 경찰로 속여 압수·수색하게 하였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단으로 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는 수술실에 들어갔다.
- 전국의사총연합이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1) 수술실에 대한 이 사건 영장 집행 상황 및 수술 환자 관련 사실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소외 병원의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그로써 당시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었으며, 그 환자가 코를 절개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7,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병원의 병원장인 안00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2층 수술실에 들어간 사실(안00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수술방을 봐도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영장 집행 중에 안00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원고 등이 여러 차례 안00에게 소외 병원 사무장 등 다른 사람의 입회하에 진행을 해도 되니 수술을 들어가라고 하였음에도 안00은 수술하러 가지 아니한 채 약 한 시간가량 계속 영장 집행에 참관하여 설명하면서, 원고가 없는 자리에서는 다른 곳에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자격 없는 사람이 빠지고 심부름만 한 것으로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이 사건 영장 집행 중 원고와 영장 집행에 동행한 하00이 안00에서 스테이플러, 클립 등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다시 원고 등이 안00에서 수술하러 가도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안00은 수술하러 가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2층 수술실에 들어간 시점에는 김△△ 환자(이 사건 각 보도에 등장하는 인터뷰이가 아니다)가 수술실에 있었는데, 위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던 도중에 경찰이 수술실에 무단 진입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진행 중인 수술이 중단된 사실은 없고, 당시 위 환자의 코가 절개된 채 방치된 사실도 없으며, 위 환자 옆에는 다른 의사와 보조자가 있었던 사실, 원고와 장00은 이 사건 영장 집행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그와 같은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었으며, 수술 중인 환자가 코가 절개된 채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i) 보도 중 당시 수술 중인 환자가 수면 마취 상태였음에도 ‘전신 마취’ 상태였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 등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ii) 보도 등에

서 이를 바로 잡는 보도를 한 바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수면 마취인지 전신 마취인지는 이 사건 (i) 보도 중 주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인터뷰이의 인터뷰 및 그 보도 과정에서 사용된 배경화면 등에 의하여 암시된 사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에 인터뷰이로 등장하는 여성은 그 무렵 소외 병원 2층 수술실(원고 등이 안00의 동의 하에 들어간 수술실이다)에서 수술을 받은 김△△ 환자가 아닌 사실(피고는 그 인터뷰이가 당시 다른 층의 수술실에 있던 명00 환자라고 주장한다), 인터뷰이의 인터뷰가 방영되는 전후로 소외 병원과 무관한 수술실과 수술 장면이 ‘자료 화면’이라는 자막 없이 위 각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되고, 코가 절개된 채 8분 동안 방치되었다는 그래픽 화면이 방송된 사실, 인터뷰이를 ‘압수·수색 당시 수술 환자’라는 자막과 함께 변조된 음성을 내보내며 그 인터뷰 내용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 식으로 방치됐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수술하는 도중에 들어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여 위 인터뷰이를 당시 직접 압수·수색을 당한 수술실의 환자로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 집행으로 수술이 중단된 바 없는 점, 위와 같은 보도의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터뷰이는 압수·수색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그를 압수·수색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던 중인 환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가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당시 위 인터뷰이 외 다른 환자가 이 사건 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영장 집행 동행자 관련 사실

가) 먼저 금융감독원 수도권지역 조사TF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위 TF팀 직원과 동행한다고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장 청구서의 ‘참여자’란에 ‘금감원 주관 수도권지역 조사TF팀’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 무렵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험사 직원들과의 협조하에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하였고, 다수의 보험사 직원들이 위와 같은 회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당시 금융감독원 산하에 ‘수도권지역 조사TF팀’이라는 조직이 실재하고 이 사건 영장 집행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이 그 소속인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중 ‘참여자’ 부분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과연 위 기재로 인하여 형사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나아가 위 기재 내용상 원고가 이 사건 영장의 발부 및 집행에 영향을 줄 의사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보험사 직원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한 TF팀이 존재하고 이 사건 영장 집행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이 그 소속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영장 참여자란에 ‘금감원 주관 수도권지역 조사TF팀’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영장 청구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평가적 판단을 한 이 부분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불법의 시작이다’, 위와 같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의 말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이 사건 (v) 보도 중 앵커의 멘트는 의견 내지 평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였다거나, 사실상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한편 어떤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이러한 사정들은 허위성의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바,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인 원고와 장00은 이 사건 영장 집행을 시작하면서 그 영장 및 경찰 신분증을 직접 소외 병원의 병원장인 안00에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인 김00 등을 경찰이라고 소개하거나 김00 등이 직접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언급하였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영장 집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원고가 주도하면서 하00과 김00 등이 보조를 하는 형태였을 뿐, 보험사 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참여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였다거나, 원고가 보험사 직원을 경찰로 속여 압수·수색하게 하였다거나, 사실상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검찰 수사 경과 관련 사실

끝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고발 내용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전국 의사총연합이 원고 등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법원의 00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고발 이후 검찰이 일부 피의자를 기소하였거나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 등 위 혐의에 관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바 없는 사실, 원고가 위 혐의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그 보도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보도 역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보도 횟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는 별지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별지1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보도한 이 사건 각 보도의 특성상 허위 보도의 내용별로 구분, 정리한다),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또한,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 불이행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송한 언론사로서 위 각 보도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⁴⁷⁾.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2014. 9. 22.부터 2014. 10. 1.까지 열흘 내의 기간에 7차례 이상 앞서 본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점(피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의혹 또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방식으로 표현을 완화하고 경찰 측의 반론 내용을 함께 보도하였으나,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다는

47)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 항변을 한 바 없다.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였고, 이 사건 각 보도는 현재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피고는 피해자 및 전문가 인터뷰, 배경 화면 등의 편집에 의한 암시를 통하여 수술실 압수·수색 전후 과정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한편으로는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 보도하면서 경찰과 보험사 직원과의 유착이 있는 듯한 인상까지 준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이후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4. 27. 재차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총망라하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이 사건 (viii) 보도를 한 점, 이 사건 각 보도 중 첫 보도는 이 사건 영장이 집행된 이후 40일 이상 경과한 뒤 보도된 것으로서, 그 보도에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사실 확인을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보도 중에는 소외 병원의 CCTV 촬영 영상 일부 및 경찰관 등이 한 말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였다고 보임에도, 소외 병원 측에 편향된 허위 보도를 한 점(피고는 피고가 확보하고 있는 소외 병원 CCTV 영상 자료 및 병원장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인지도나 신뢰도 및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방송사로서 이 사건 각 보도는 뉴스 프로그램 중에 방송되어 이를 시청한 다수의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그 내용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보도는 그 멘트 내용 외에도 자막, 자료 화면, 배경 화면 등에 의한 메시지 전달 효과가 커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vii) 보도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발장 중 원고의 성명과 직위를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관련 수사에서 배제된 뒤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되고, 상급 부서의 조사로 고통받았으며, 전국의사총연합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보도의 취재 경위,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허위 부분 대상 기사가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 배상금은 대상 기사 중 허위로 인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보도를 모두 합하여 7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준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 ‘경찰의 병원 압수·수색’ 관련 정정보도문

내용 : 본 방송은 2014. 9. 22. ‘뉴스8’ 프로그램에서 ‘마취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보도, 같은 달 24. 같은 프로그램에서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위험한 압수·수색’ 공방」이라는 제목의 보도, 같은 달 25. 같은 방송 ‘굿모닝 MBN’ 프로그램에서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의료계도 반발」이라는 제목의 보도,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경찰 “병원이 동의” 병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 같은 해 10. 1. 같은 프로그램에서 「의사들 뿔났다. 경찰·보험사 직원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 2015. 4. 27. 같은 프로그램에서 「수술실 난입 압수·수색’ 검찰 수사서 사실로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경찰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의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그와 같은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었다거나, 위와 같이 마취 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어 그 환자가 코가 절개된 채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고, 위 2014. 9. 24.자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위험한 압수·수색’ 공방」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위 2014. 9. 25.자 「경찰 “병원이 동의” 병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위와 같은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방치된 환자의 인터뷰인 것처럼 한 여성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경찰은 해당 병원장의 동의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로 인하여 마취 상태로 진행되던 수술이 중단되거나 수술 중인 환자의 코가 절개된 채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없었으며, 보도에 나온 인터뷰 대상자는 경찰이 들어간 수술실의 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2014. 9. 29. 위 ‘뉴스8’ 프로그램에서 「경찰 사칭’ 보험사 직원 알고 보니 전직 경찰」이라는 제목의 보도, 위 2014. 10. 1.자 「의사들 뿔났다. 경찰·보험사 직원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 및 위 2015. 4. 27.자 「수술실 난입 압수·수색’ 검찰 수사서 사실로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였다거나, 마찬가지로 경찰이 보험사 직원을 경찰로 속여 위 압수·수색을 하게 하였다거나, 보험사 직원이 위 압수·수색을 주도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거나 압수·수색을 주도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위 2015. 4. 27.자 「수술실 난입 압수·수색’ 검찰 수사서 사실로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위와 같은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뿐, 그 의혹의 진위 여부가 가려진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3~10〉 방송내용 생략

초상권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합51744 판결

공인이 아닌 원고의 체포·압송 장면을 생방송으로 장시간 보도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사실관계]

2014년 6월 검찰과 경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유병언과 그의 도피 조력자 혐의를 받는 구원 파 신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금수원을 수색했다. 피고는 위 과정을 <뉴스9>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보도했는데 당시 수사 방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원고가 수갑을 찬 정면모습, 수갑을 찬 채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뒷모습, 경찰차 등에 호송되는 모습 등을 모자이크, BLUR 처리 없이 선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약 12분간 방송했다. 이에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초상 노출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을 부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6년 4월 29일 이를 기각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2542) 이후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손해배상 300만 원)이 내려졌으나(2014서울조정1226) 피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 된 바 있다.

[판결요지]

□ 위법성 조각 여부

당시 생방송 중이어서 원고 얼굴 등에 바로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피고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색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장면 내지 원고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장면을 방송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 원고가 위 수색 현장에서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애초 유병언의 도피조력자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도 특별히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원고 관련 장면을 내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이 사건 방송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급박한 수색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금수원 수색과정에서 체포된 상태에 있는 원고의 초상을 노출한 것은, 그 침해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침해방법 및 정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1744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이하 구원파라고 한다) 소속 신도이다. 피고는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을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위 채널에서 ‘TV조선 뉴스9’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세월호 사건 및 금수원 수색

- 1) 2014. 4. 15.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그 다음날인 2014. 4. 16.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되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세월호 사건’이라 한다)
- 2)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세모 그룹의 회장 유병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유병언은 이를 피하여 잠적하였고, 검찰의 계속된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 3) 검찰 및 경찰은 2014. 6. 11. 유병언과 유병언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원파 신도인 소위 김엄마, 신엄마 등을 체포하기 위하여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 안성시 소재 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일명 금수원, 이하 금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제 수색을 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방송의 보도

피고는 2014. 6. 11. 검찰 및 경찰의 위 수색과정을 ‘TV조선 뉴스9’ 프로그램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생방송으로 보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수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 피고는 위 생방송 도중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금수원 건물 밖으로 나오는 정면모습,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찬 채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뒷모습, 경찰차 등으로 호송되어 가는 모습 등의 장면을 모자이크, BLUR⁴⁸⁾ 등의 처리 등을 하지 않은 채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약 12분간 방송하였고, 신도 이모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의 자막이나 아나운서들의 설명도 함께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원고의 얼굴 및 원고가 체포당하여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공개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초상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8) 흐릿하게 보이도록 함

나. 피고

피고의 이 사건 방송은 검찰의 허가 하에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상황을 생방송으로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었고,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초상권 침해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 및 원고가 체포되어 연행되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은 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정면으로 내보내고, 연이어 수갑을 차고 있는 원고의 뒷모습을 계속하여 노출시킴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이 사건 방송은 당시 세월호 사고의 배후 책임자로 거론되는 유병언과 유병언의 도피를 돕는 조력자들의 체포를 위한 검찰 등의 수색 상황을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방송은 유병언 및 유병언의 도피조력자들의 체포 등을 위한 금수원 수색 상황에 대한 보도인바, 당시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 혐의사실 내지 원고가 유병언 등의 도피조력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얼굴을 정면으로 클로즈업하여 방송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중 원고가 유병언의 도피조력자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원고가 수갑을 찬 채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뒷모습, 경찰차 등으로 호송되어 가는 모습 등을 방송하였다. ③ 당시 생방송 중이어서 원고 얼굴 등에 바로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피고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색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장면 내지 원고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장면을 방송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 ④ 원고가 위 수색 현장에서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애초 유병언의 도피조력자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도 특별히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원고 관련 장면을 내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의 얼굴이 정면으로 뚜렷하게 약 20초 가량 드러났고, 그 이후에도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차고 있는 원고의 뒷모습이 약 1분 30초간, 원고의 일부 뒷모습 등이 약 10분간(수갑을 차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장면에서도 진행자 등은 화면상의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체포된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방영됨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원고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⑥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모습을 본 원고 주변사람들로서는 금수원 수색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 원고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이 사건 방송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급박한 수색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금수원 수색과정에서 체포된 상태에 있는 원고의 초상을 노출한 것은, 그 침해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침해방법 및 정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의 얼굴 및 체포된 모습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더욱이 당시 유병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극도로 증대된 상태에서 유병언 및 도피조력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과정에서 원고가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원고가 사회생활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vchosun.com>)에 이 사건 방송을 게재하여 원고의 모습이 그 이후에도 계속 노출된 점, 체포된 상태의 원고의 얼굴이 정면

으로 클로즈업되어 방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갑을 찬 뒷모습 등이 상당시간 계속 방영된 점, 다만 이 사건 방송은 유병언 및 도피조력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검찰 등의 금수원 수색과정을 보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공적 관심이 매우 컸던 데다가 급박한 수색 현장 상황을 생방송으로 보도하는 중이어서, 피고로서는 사생활 침해여부에 관하여 세심하게 고려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얼굴 등에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미 보도되고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는 범인의 출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이 인정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사실관계]

피고는 〈맥시코리아〉 2014년 6월호 「역사상 가장 대담한 탈출」 제하의 기사에서 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탈주한 원고에 대한 사건을 보도했다. 피고는 해당 보도에서 원고를 ‘잔머리 좋은 죄수’ ‘인간문어’ 등으로 표현했고 기사 밑에 QR코드를 달아 독자들이 해당 코드를 스캔하면 과거 JTBC에서 방송한 원고 관련 뉴스영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4089 관련 영상)으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설정했다. 이 사건 보도 후 원고는 잡지의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QR코드에 의한 뉴스링크 삭제를 명했다(2014가합155).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사가 자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모욕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미 보도되고 확정된 범죄사실을 재차 보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며 뉴스영상 링크행위가 원본 영상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원고 측 항소로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2016나477).

[판결요지]

(1) 보도되고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이미 보도되고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언론매체가 이를 재차 인용, 편집하였다면 피고가 출소하여 사회로 환원하였다는 등 피고의 사생활을 더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사건을 일으킨 사인이 스스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놓고 정작 자신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은둔할 것이니 그 실명 또는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상응한 불이익은 상당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

(2) 동영상 링크가 원본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는 별개로 초상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링크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6월호 기사에 JTBC 뉴스영상을 첨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자신이 저작자가 되어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JTBC 뉴스영상 자체의 초상권 침해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링크행위 자체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5가단568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책과 인터넷으로 출간하는 잡지인 맥심코리아의 발행인으로 맥심코리아 2014년 6월호 중 140쪽에 ‘역사상 가장 대담한 탈출’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2012. 9. 17.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옥한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6월호 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었다. 위 기사 밑에는 큐알(QR)코드⁴⁹⁾가 인쇄되어 있는데 큐알(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과거에 JTBC

방송에서 원고가 유치장을 탈옥한 범죄행위를 보도하였던 뉴스영상으로 이동하도록 링크설정(이하 ‘이 사건 링크행위’라 한다)이 되어 있다.

-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55호로 잡지출판 및 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7. ‘피고가 발행한 맥심코리아 2014년 6월호 인터넷판 중 140쪽의 쿼알(QR)코드와 JTBC 뉴스영상을 연결하는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2.까지 위 결정에 따라 위 링크를 삭제하였다.

잔머리 좋은 죄수 A는 달심 뺑치는 요가실력을 동원해 탈출을 시도했다. 165cm의 작은 체구인 그는 피부 연고를 윤활제처럼 몸과 철장에 바른 뒤, 감방에 있는 가로 45cm, 세로 15.2cm의 배식구를 미끄러지듯 나갔다. 그러고는 잠든 3명의 간수를 손쉽게 지나쳐 탈출에 성공했다. 수사관은 A가 ‘적어도 1분 내로, 문어처럼 유연하게’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 인간문어는 미디어에서 이슈가 되면서 탈출 6일 후 다시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그에게는 ‘한국의 요기 다니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 정도 요가실력이면 범죄 말고 요가학원을 차리지 그래.

-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6월호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항의편지를 보내어 2014. 5. 29. 위 항의편지가 도달하였는데, 피고는 맥심코리아 2014년 7월호 중 제20쪽에 위 항의편지를 스캔하여 소개하고 그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별지와 같이 게재(이하 ‘이 사건 7월호 기사’라 하고, 이 사건 6월호 기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7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사건이 소송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된 소제기로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송이 2015. 6. 16. 제기되었고 2015. 11. 10. 변론종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1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24776호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11. 10. 취하간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前訴)의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10.에 전소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24776호 사건의 소송

49)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로서 스마트폰으로 쿼알코드를 스캔하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계속이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유치장에서 도주한 사실에 기초하여 ‘인간문어’, ‘요가학원을 차리라’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공격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링크행위를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계속하여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6월호 기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2) 판단

가)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6월호 기사가 원고의 도주사실, 도주방법 등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음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

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나아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다)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6월호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1) 피고는 맥심코리아 6월호 제138쪽에서 제140쪽에 걸쳐 ‘역사상 가장 대담한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주사례를 다루는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이 사건 6월호 기사는 위 기획 기사 중 일부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2. 9. 17.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배식구를 통해 도주한 범죄사실로 여러 방송사를 통해 위 범죄사실이 보도되었고, 그로 인한 형벌을 받고 현재 수형 중인바, 이 사건 6월호 기사는 공적 관심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 (2) 이 사건 6월호 기사를 포함하여 위 기획 기사는 도주인물, 도주시기, 도주방법, 도주 후 상황 등을 사실관계 위주로 기술하였는바, 독자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의 성격이 강하므로 부수적으로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재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3) 이미 보도되고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언론매체가 이를 재차 인용, 편집하였다면 피고가 출소하여 사회로 환원하였다는 등 피고의 사생활을 더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사건을 일으킨 사인이, 스스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놓고 정작 자신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은둔할 것이니 그 실명 또는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상응한 불이익은 상당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 (4) 이 사건 6월호 기사 중 ‘잔머리 좋은 죄수’, ‘인간문어’, ‘달심 뺨치는 요가실력’, ‘그 정도 요가실력이면 범죄 말고 요가학원을 차리지 그래’ 등의 표현은 원고의 도주방법에 대한 수사적 표현 내지는 도주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원고가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도 있다.

다. 이 사건 7월호 기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 1)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7월호 기사는 전체적인 취지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6월호 기사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사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항의서한을 요약한 것으로 위 항의서한과 대조하여 볼 때 원고가 표현한 감정 및 원고가 바로잡기를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었는바, 원고를 조롱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기사는 도입부에 이 사건 6월호 기사를 간략히 소개한 뒤 항의서한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방식의 기사형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항의서한을 통해 원고가 밝히기 원하는 내용이 게재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7월호 기사가 원고가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각 기사의 인격권 침해 여부

-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2)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6월호 기사로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저하되었다고 보이나 이것만으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참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6월호 기사에 사용된 표현은 원고의 도주방법에 대한 수사적 표현 내지는 도주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이 사건 7월호 기사는 대부분 내용이 원고의 항의서한을 인용한 것으로 그 편집방식, 사용어휘 등에 조롱하거나 비난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는 객관적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링크행위의 초상권 침해 여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08.19. 선고 2015도 578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링크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6월호 기사에 JTBC 뉴스영상을 첨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자신이 저작자가 되어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JTBC 뉴스영상 자체의 초상권 침해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링크행위 자체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사생활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가단50590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7939 판결

공적 존재로 보기 어려운 ‘법공노’ 실무 직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 과거 전력을 밝힌 보도는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피항소인) : A 외 3명
-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외 1명

[사실관계]

모 국회의원은 2013년 10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노조 사무실현황 및 상주근무자’ 자료 분석 결과, 원고들이 통진당원이라는 등의 국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피고들은 위 자료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통진당원이라는 내용 등을 같은 달 14일 <문화일보> 홈페이지에 보도했다. 원고 A 외 2명은 위 보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공적 존재가 아닌 원고들의 정당 가입 여부 및 한총련 활동 전력이 공익성이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기타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까지 인정하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에 대하여는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액 중 800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피고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6다201647).

[판결요지]

□ 원고들의 정당 가입 사실에 대한 실명 보도행위의 위법 여부

원고 A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위원장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고 사무총장 및 국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원고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이나 독립적인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여 원고 A 등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서 형성되는 가치관이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4가단5059074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일보 2. D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전국 법원의 모든 공무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원고 조합의 규약 및 사무처 운영규칙 등에 따르면 원고 조합은 그 기구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산하기구인 지역본부, 지부, 지회 외에도, 실무처리기구인 사무총국 등을 두고, 사무총국에는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총무국장, 재정국장, 조직국장, 쟁의

국장, 교육선전국장 등 각 부서장 등을 두며, 그밖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본부에 상근직원으로 교감부장인 원고 A, 정책부장인 원고 B, 조직부장 3인을 두고, 그 밖에 광주지부 사무차장이었던 원고 C를 포함하여 4개 지부의 사무차장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A, B, C(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라고만 한다)의 당원으로서, 원고 A는 2012년 통진당 중앙당 은평구지역위원회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바 있고, 원고 B는 트위터에 자신을 통진당 당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원고 C는 2012년에 통진당 광주시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바 있다.

한편, 원고 C는 2013. 3. 18. 원고 조합을 퇴직하였다.

- 나. 국회의원 정갑윤은 2013. 10. 13. 원고 조합은 사무실의 사무 운영 등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주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노조 사무실현황 및 상주근무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부 교육부장인 원고 A는 통진당 중앙당 은평구지역위원회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였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 출범식에 적극 참여하여 폭력시위 및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를 받은바 있으며, 본부 상주근무자인 원고 B는 트위터에 통진당 당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광주지부 사무차장인 원고 C는 통진당 광주시당 광산구을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한총련 활동으로 수배된바 있는 등 법원 청사 내에 이적단체 출신 통진당 당원이 상주근무하여 대한민국 법원마저 중북세력이 접수하였고,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는 ‘천안함 북풍조작이유’라는 글, 김정은의 “조국통일 미룰 수 없다”는 발언이 담긴 ‘우리민족끼리’의 성명서 등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다.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이하 ‘피고 문화일보’라고만 한다) 소속 기자로서, 원고 조합에 그 신분을 밝히고 상근직원 중 통진당 당원이 있는지, 그에 대한 원고 조합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원고 조합으로부터 상근직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고 그에 관한 원고 조합의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정갑윤의 위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원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피고 문화일보는 위 기사를 2013. 10. 14. 11:48 무렵 문화일보 홈페이지의 정치면에 게시하였다.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교육부장 등 요직 포진 ‘親北’ 글 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중북(從北)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인사 3명이 법원 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 노조 홈페이지(<http://bubwon.ksu.org/>)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선전글 등 대한민국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법원노조 사무실 및 상주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법원 노조 내에 한총련 출신과 통진당 당원 등이 노조 교육부장,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노조는 사무실의 사무 운영 등을 위해 법원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주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법원노조 본부 소속 A 씨는 2012년에 통진당 은평구지역위원회 중앙당 대의원 후보로 나섰다. 당시 대의원 후보 포스터에는 홍 씨가 법원공무원노조 조직국장·총무국장을 거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부장을 거친 것으로 약력이 기재돼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홍 씨는 광운대 재학시절 총학생회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한총련 출범식 폭력시위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본부 상주근무자인 B 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1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는 통합진보당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법원노조 광주지법지부의 사무차장인 C 씨도 2012년 6월 통진당 광주시당 광산구을 부위원장에 후보로 나섰다.

또 법원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우리민족끼리’의 “김정은 ‘조국통일 미룰 수 없다’”는 선전글이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게시돼 있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도 해명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자유 수호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에서마저 좌파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법원행정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 이후 피고 D는 이 사건 제1기사를 본 원고들이 실명 거론 등을 이유로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의 아래와 같은 기사를 재차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기사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피고 문화일보는 위 기사를 같은 날 14:00 무렵 문화일보 홈페이지의 사회면에 게시하였다.

“천안함 조작” “이석기 수사 뺑뚱기” 글 난무

■ 통진당원 근무 법원노조

법원 노조에 통합진보당 출신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들이 법원 노조에서 활동할 공간을 확보한 것은 법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상 의외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법원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북한 선전사이트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선전글이 그대로 게시되기도 했다.

이번에 드러난 법원 노조의 문제 인사는 통진당 당원과 대법원에서 이적(利敵)단체 판결을 받았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이다.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에 가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거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법원 노조 내에 통진당원이거나 과거 한총련 활동 전력이 있는 인사는 모두 3명이었다. 법원 노조 본부에서 조직국장·총무국장·교육부장 등 간부급 주요 직책을 거친 A 씨는 2012년 통진당 은평구지역위원회 중앙당 대의원 후보로 나설 만큼 통진당 내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홍 씨는 광운대 재학시절인 지난 1997년 한총련 출범식에서 총학생회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 노조 광주지법지부의 사무차장인 C 씨는 2012년 6월 통진당 광주시당 광산구를 부위원장 후보로 나선 경력이 있다. 법원본부 상주근무자인 B 씨도 트위터를 통해 본인 스스로 통진당원임을 밝히고 있다.

법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좌파 글이 넘쳐났다. 9월 11일 아이디 ‘독립군’이 올린 ‘천안함 북풍조작 이유와 부정선거로 헌정질서 파괴한 진짜 내란범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부정선거 공범정권들이 양심인들 탄압하며’라고 현 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어 ‘군사독재가 써먹던 공안조작 수법으로 통진당과 이석기를 뺄뛰기하며… 내란범으로 몰며 몰타기하는데 진짜 내란범은… 부정선거 공범들’이라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두둔했다.

또 아이디 ‘코리아’는 8월 12일 자유게시판에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김정은 “조국통일 미룰 수 없다”’는 글을 그대로 게재하며 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염원이고 유훈”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마. 피고들은 이후에도 원고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같은 날 14:30 무렵 이 사건 제1기사에서는 원고 A 등을 익명처리하고 제목 또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한총련 출신 인사도 포함’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제2기사는 이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이전에 이미 누리꾼들에 의하여 복사되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인 아고라,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개인 블로그 등에 그대로 게재되거나 또는 인터넷 신문인 ‘올인코리아’ 등에 원고 A 등의 실명 부분이 포함된 채로 인용되었다.

바. 피고들 외에도 연합뉴스, 케이비에스 등 다수의 언론기관이 위 정갑윤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나, 기사의 제목에 원고 A 등이 ‘상주 근무자’, ‘사무직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본문에서 원고 A 등이 법원 공무원이 아니라 원고 조합이 채용한 사람들이라는 법원행정처의 해명을 함께 보도하였으며,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가 법외 노조인 원고 조합을 사실상 방치하여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좌익공산주의 자료가 게시되는 등 하고 있다는 정갑윤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하였다.

사. 한편, 원고 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글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순 욕설, 상업성이 짙은 글이나 종교 전도 글, 반복적인 게시글 등은 바로 삭제하며,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 당사자 요청시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판 첫머리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물론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적 비난 글 등도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제1, 2, 3호증, 강제4호증의 1, 2, 강제5호증의 1에서 6, 강제6호증의 1에서 5, 강제7호증, 강제8호증의 1, 2, 강제9, 11, 12, 1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한 피고들의 보도행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A 등의 정당 가입 사실에 대한 실명 보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A 등은, 피고들이 원고 A 등이 통진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 A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 등이 통진당 당원이라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원고 A 등이 적극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밝혀왔으며, 피고들은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고 조합에서 활동하도록 방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의 발표를 인용 보도한 것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내부 논의를 거쳐 익명 처리하였으며, 원고 조합에 사실 확인 및 입장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통진당 가입 및 활동 사실에 관하여 실명으로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또한, 종래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24조가 규정한 선거권,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과 그 밖에 헌법 제72조, 제130조가 규정한 국민투표권 등 이른바 ‘참정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자유권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치적 자유를 정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 역시 민법의 일반규정 등을 통하여 원고 A 등과 피고들 간의 관계와 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 A 등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 더욱이 정당 가입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고 A 등의 정신적 자유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언론의 자유에 신문의 자유와 같은 언론매체의 자유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언론매체의 자유에는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취재 및 보도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룬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일반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수하게 되므로, 언론매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언론매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민법상의 일반규정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사인과 언론기관 간의 법률관계에 간접 적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정보주체인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등 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법적 이익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당의 가입과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해당 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해당 정보 보도의 목적·절차·형태의 상당성, 해당 정보 보도의 필요성, 해당 정보 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보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보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함으로써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위원장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고 사무총장 및 국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원고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이나 독립적인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여 원고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 A 등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 A 등의 실명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당시는 통진당 소속의 이석기 국회의원 등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법무부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적어도 사회의 일각에서는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꾀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념적 공세와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피고들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대중언론매체에 원고 A 등의 통진당 가입 및 활동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형태를 취하였던 점,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서 형성되는 가치관이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비록 통진당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하여 해산되었으나 이는 장래효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 A 등의 통진당 가입 및 활동 자체가 별도의 실정법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또한 여타 다른 정당에의 가입 및 활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A의 전과 사실에 대한 실명 보도

(1) 당사자들의 주장

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위 원고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이미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로 공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으로서 별도의 법익침해가 없으며, 구체적인 전과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위 피고가 이적단체인 한총련 소속으로 정치운동을 한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가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에 이적 논란이 있는 정당의 당원이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위 원고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 출범식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실명으로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를 보도한 것은 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한편,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위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원고는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원고가 원고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전과가 위 원고의 현재의 업무나 활동 내용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이상, 이를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원고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원고의 전과에 관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위 원고의 정신적 자유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과에 관한 개인정보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되므로, 역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보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보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함으로써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기관이 실명으로 전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를 알게 되는 사람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이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른 법익 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지므로, 전과 사실을 실명 보도하기 위해서는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실명 보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공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원고가 원고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전과가 위 원고의 현재의 업무나 활동 내용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원고의 전과 사실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전과를

보도함에 있어서 굳이 위 원고의 실명까지 특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전과 사실은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드러내는 정보이므로 그 공개에 있어서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점, 피고들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대중언론매체에 위 원고의 전과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C의 원고 조합 재직 사실에 대한 보도

위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위 원고가 현재도 원고 조합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으로 다룬다.

피고들이 위 원고가 보도 당시 원고 조합을 퇴직하였음에도, 원고 조합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들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한 것으로서, 원고 조합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피고들에게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기사의 제목에 의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은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교육부장 등 요직 포진 ‘親北 글’ 써”라는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으로 마치 원고 조합의 간부인 원고 A 등이 친북 글을 써온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기사 제목은 그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본문과 함께 읽을 경우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시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상당수 게시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 내에서 교감부장, 정책부장 등 간부의 직함을 가지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온 이상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사실 확인 및 입장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조합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룬다.

(2) 판단

신문기사의 제목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으나, 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

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이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교육부장 등 요직 포진 ‘친북 글’ 써”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기사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진당 당원인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은 사무실의 사무 운영 등을 위해 법원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김정은 “조국통일 미룰 수 없다”는 선전글 등 다수의 대한민국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기사의 제목은 그 자체로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진당 당원인 위 원고들이 원고 조합의 간부로서 요직을 담당하면서 직접 친북 글을 썼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고, 이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친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조합의 간부인 원고 A 등이 친북 글을 썼다는 것은 마치 원고 조합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인 원고 A 등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하여 왔다는 인상을 주므로, 이는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리고 이 경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

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등이 친북 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제1기사의 본문의 내용 또한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친북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기사 작성의 근거가 된 정갑윤의 보도자료에도 원고 A 등이 직접 친북 글을 작성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사 제목을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간부’라 함은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구성원이 아니고 다만 실무 처리를 위하여 채용한 상근직원에 불과함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원고 A 등을 원고 조합의 간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사 작성의 근거가 된 정갑윤의 보도자료에도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은 점, 다수의 언론기관이 정갑윤의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였으나, 그들은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목 등에 원고 A 등이 상근직원이라고 밝히고 본문에서 원고 A 등이 법원 공무원이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 채용한 사람들이라는 법원행정처의 해명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 조합의 결사권, 단결권 침해 및 명예훼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기사를 통하여 원고 조합이 통진당 당원인 원고 A 등을 채용하는 것이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 조합의 자주적 결사권, 활동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로서 원고 조합이 통진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 조합이 통진당 당원인 원고 A 등을 채용함으로써 인하여 친북 글이 작성·게시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글의 작성·게시가 마치 원고 조합의 관리 및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원 공무원 단체 내에 이적성 논란이 있는 통진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상주근무자로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원고 조합이 관리, 운영하는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명백히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일 뿐이며,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원고 조합의 결사권과 활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룬다.

(2) 판단

(가) 원고 조합의 결사권과 활동권 침해 여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이에겐 적극적으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즉,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562, 2012헌마28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조합은 그것이 실정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고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채용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제2기사를 통하여 원고 조합이 통진당 당원을 상근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상당한 충격이라거나, 또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들이 원고 조합에서 활동할 공간을 확보한 것은 법원의 특성상 의외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으로 그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이와 같은 보도행위가 원고 조합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는 언론기관인 피고들이 원고 조합이 통진당 당원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조합의 직원 채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조합은 법원 공무원들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로서 공무의 담당자로서의 공무원의 신분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공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조합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까지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 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통진당 당원들이 원고 조합에서 ‘간부’로 근무한다고 보도하였고, 이 사건 제2기사를 통하여 원고 조합에 통진당 당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들이 원고 조합에서 활동하는 것은 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의외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벌써 원고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북한 선전사이트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선전글이 그대로 게시되었다는 등 통진당 당원들이 원고 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친북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는 통진당 당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의 간부로서 원고 조합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방치하여 왔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원고 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조합에 통진당 당원들이 원고 조합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통진당 당원들이 원고 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친북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또한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자유게시판은 로그인 없이 글쓰기가 가능하여 원고 조합의 입장과는 무관한 글들이 게시되고 있는 사정을 금세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의 근거가 된 정갑윤의 보도자료는 통진당 당원들이 원고 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친북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이나, 위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다른 언론기관들은 ‘정 의원이 법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좌파·진보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등 정갑윤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태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그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한 보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한 점 등 보도의 경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몇 시간 만에 수정하거나 삭제한 점, 원고 A 등이 이전에 통진당의 당원인 사실을 당직 출마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대외적으로 밝혀온 점, 원고 조합은 전국의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직자 단체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넓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한편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 조합을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하여는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5나793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문화일보 2. D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가단5059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1.
판 결 선 고	2015.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원고 A,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한 피고들 보도행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A 등의 정당 가입 사실에 대한 실명 보도, 원고 A의 전과 사실에 대한 실명 보도 및 원고 C의 원고 조합 재직 사실에 대한 보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4행 및 제14쪽 제13행의 각 “정신적 자유라는”을 각 삭제하고, 제12쪽 제3행의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피고들은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이상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지거나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나, 공무수탁사인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예컨대, 기업자 또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수용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상선의 선장이 경찰사무 및 호적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등)을 말하므로 원고 A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A 등이 공적 존재인 원고 조합에 소속되어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들을 공적 존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A 등이 공적 존재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사 제목만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 1) 원고들은, 피고들이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교육부장 등 요직 포진 ‘親北’ 글 써”라는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으로 마치 원고 조합의 간부인 원고 A 등이 친북 글을 써온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 2)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 3) 앞의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기사 중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주제목과 “교육부장 등 요직포진 ‘親北’ 글 써”라는 부제목은 그 전체적인 연결 의미가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고, 교육부장 등 요직에 포진되어 있는데 친북 글을 썼다”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주제목과 부제목이 별개 제목으로 편집되어 있고,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제1기사의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기사의 본문은 그 첫머리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중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통진당원과 한총련 출신 인사 3명이 법원 노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선전글 등 대한민국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어 있다”는 사실을 병렬적으로 적시한 다음, 둘째 문단에서 정갑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노조 내에 한총련 출신과 통진당 당원 등이 노조 교육부장,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과 법원노조는 사무실의 사무운영 등을 위해 법원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주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 원고 A 등의 법원노조 직책과 정당가입 이력 등을 적시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법원 노조 홈페이지에 ‘우리민족끼리’의 “김정은 조국통일 미룰 수 없다”는 선전글이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에 대한 법원노조 관계자의 입장(= “해당 사실에 대

해서는 우리가 확인도 해명도 할 사안이 아니다”)과 정갑윤 의원의 의견표명(= “대한민국의 민주자유 수호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에서마저 좌파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법원행정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제1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제1기사의 주된 보도내용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적인 존재인 법원노조에 통진당원 3명이 상주근무자로 채용되어 교육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원노조 게시판에 종북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정갑윤 의원이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제목과 본문을 통하여 “원고 등이 원고 조합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원고 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종북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와 달리 두 사실 사이에 연결관계 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A 등이 통진당원으로 법원노조의 간부이기 때문에 (원고 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종북 글을 썼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조합의 결사권, 활동권 침해 및 명예훼손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원고 조합의 결사권, 활동권 침해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20쪽 첫줄부터 제21쪽 끝에서 세 번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제1기사의 전체적인 의미, 내용 및 문맥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2기사는 그 본문 첫머리에서 “원고 조합에 통진당 당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들이 원고 조합에서 활동하는 것은 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의외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면서 벌써 원고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북한 선전사이트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선전글이 그대로 게시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둘째 문단에서 문제된 법원 노조 인사가 통진당원과 한총련 출신인데,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거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는 원고 A 등의 통진당원 등 이력사항을, 다섯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는 법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온 좌파 글들의 구체적 내용을 각각 적시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의미, 내용 및 문맥은 “원고 등이 원고 조합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원고 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종북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위 둘간의 연관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간부로서 원고 조합이 통진

당의 영향력 아래 있다거나, 원고 조합이 통진당 당원인 원고 A 등을 채용함으로 인하여 친북 글이 작성·게시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글의 작성·게시가 마치 원고 조합의 관리 및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 조합의 주장처럼 일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조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공적인 존재’인 점, ② 당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한 위와 같은 사실의 전달 및 비판적 의견 표명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③ 피고 D는 이 사건 제1기사의 게시 전에 원고 조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표현이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원고 조합이 공적 존재인 이상 공적 관심사인 원고 조합에 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원고 조합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넓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그 범위

위 인정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한 보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A 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경위, 표현의 방법, 원고 A 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에 대하여는 4,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B,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조합에 대한 부분과 원고 A, B, C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 A,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577116 판결

종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을 공개한 보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언론사가 증명해야 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8월 28일 <뉴스쇼 판>을 비롯한 몇 개의 TV조선 프로그램에서 구원파 신도이자 국립대 교수인 원고가 유병언의 장례식 장례위원장을 맡았다고 보도하며 원고의 실명, 직장, 직위,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은 장례위원장을 맡은 바 없다며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해당 보도사실이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3,000만 원 및 기사삭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나2046025).

[판결요지]

(1)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져야 하는바,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보도가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종교생활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이를 공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보도에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되어 공표되었으므로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7711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7.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TV조선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기사를 각 삭제하라.
나. 피고가 2. 가.항 기재 기간 내에 2.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기사 1건당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 특보” 및 “뉴스 7”, “뉴스쇼 판”, “뉴스 4”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래의 뉴스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라.
나. 피고가 3. 가.항 기재 기간 내에 3.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TV조선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기사를 각 삭제하라.
- 나. 피고가 2. 가.항 기재 기간 내에 2.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기사 1건당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 특보” 및 “뉴스 7”, “뉴스쇼 판”, “뉴스 4” 프로그램의 첫머리와 말미에,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원래의 뉴스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라.
- 나. 피고가 3. 가.항 기재 기간 내에 3.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권신찬 목사가 창시하고 그 사위인 유병언이 지도하였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신도이면서 00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운영하는 방송사이다.
- 나. 피고는 2014. 8. 28.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2014. 8. 29. “뉴스 4”, “TV조선 특보”, “뉴스 7”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tvchosun.com)에 “장례 놓고 혈연과 대 비혈연과 기싸움...신도 제명까지”라는 제목으로 위 방송과 동일한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사(방송영상 포함)를 각 게재하였다(이하 위 방송과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

[앵커]

유병언씨의 장례식을 앞두고 유씨 혈연과와 비혈연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연파는 자신들의 대규모 장례식 방침과 현금 운영 방식을 비판한 신도 3명을 공개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00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 장례 준비는 여동생 00씨와 처남댁 윤00씨,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 등 ‘혈연파 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 유씨 생전에 만들어진 혈연파 중심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비혈연파 세력은 유씨가 “죽으면 아무 구덩이에 파묻으라”고 유언했다며 소규모 가족장을 하라며 반발해왔다고 구원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장례위원장 선정에서도 양측 불협화음은 계속됐습니다.

장례위원장은 애초에 ‘혈연파’와 가까운 인물 세 명과 ‘비혈연파’ 인물 두 명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비혈연파 김△△씨가 “구색 맞추주는 게 싫다”며 고사해, 그 자리를 ‘혈연파’로 알려진 A 00대 교수(원고)가 대신했습니다.

비혈연파가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지난 주말엔 혈연파 지도부의 전횡과 불투명한 현금 사용을 비판하던 비혈연파 신도 3명이 공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한 구원파 관계자는 혈연파가 “제명된 사람과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명한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유씨의 장례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00 / 구원파 대변인]

“회장님 장례식을 누가 맡느냐 따라 특별히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유씨의 장례식은 이번 주말 금수원에서 이틀에 걸쳐 치러집니다.

TV조선 김00입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의 실명, 직장, 직위,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위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실명, 직장, 직위, 사진을 공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써 별지1 목록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며,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 혈연파와 비혈연파 등 세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유병언 장례준비과정에서 장례위원장 자리를 두고 세력간 다툼도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② 원고는 유병언 장례식의 장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없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① 주장 부분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이끌던 유병언이 사망한 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 유병언과 그의 친족들을 중심으로 종교와 사업의 병행을 주장하는 세력과 전도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사업의 분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하였고 이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사실, ② 김00 기자가 이 사건 보도를 취재할 당시 취재원은 ‘강경파’, ‘온건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김00 기자가 이를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혈연파’, ‘비혈연파’로 칭한 사실, ③ 김00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유병언 장례의 장례위원장 자리와 관련하여 비혈연파의 불만이 존재한다는 등의 정보를 들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중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 대립세력이 존재하고 이들 세력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보도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② 주장 부분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병언 장례식의 장례위원장은 변00, 이△△, 김□□, 지00, 구00 5인이었고, 원고는 장례위원장이 아닌 장례식 사회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유병언 장례식의 장례위원장이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유병언 장례식의 장례위원장을 맡았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나아가 당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한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자 집단자살사건인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이단 종교단체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장례위원장은 사망한 유병언을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이끌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지위를 나타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은 주문 3. 가.항과 같이 정한다.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정보도를 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는 등 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주문 3. 나.항과 같이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나.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의 보장과 그 한계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를 가짐은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언론기관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의 사적 사항을 보도하는 때에는 외형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져야 하는바,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의 침해 여부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종교생활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이를 공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되어 공표되었으므로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큰 종교단체이고 그 지도자인 유병언이 일명 ‘세월호 사태’라는 국가적 비극과 관련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원고의 직업인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인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에 속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실명, 직장, 직위, 사진을 보도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한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자 집단자살사건인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이단 종교단체로 여겨지는 등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병언을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이끌 유력한 실세로 보도되는 경우 그 개인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는 자신의 강의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고, 직장동료와 학생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입은 피해는 큰 반면, 이 사건 보도는 당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국민적 관심에 편승하는 것 외에 원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실명, 직장, 직위와 사진을 공개한 것은 그와 같은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에 비하여 피해법익의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명, 직장, 직위,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사를 삭제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2. 가.항과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기사를 주문 2. 가.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삭제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는 등 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주문 2. 나.항과 같이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삭제대상 기사목록 생략

〈별지 2〉 정정보도문

제목 : 구원파 유병언 전 회장 장례 관련 정정보도문

내용 : 본 방송국은 2014. 8. 28. “뉴스쇼판”, 2014. 8. 29. “뉴스 4”, “TV조선 특보”, “뉴스 7” 프로그램

에서 “유병언 장례 놓고 ‘혈연파’ 대 ‘비혈연파’ 갈등 - 신도제명까지”라는 제목으로 “유병언 장례식의 장례위원장은 애초에 ‘혈연파’와 가까운 인물 세 명과 ‘비혈연파’ 인물 두 명이 선정 되었는데, 이 가운데 비혈연파 김△△씨가 “구색 맞춰주는 게 싫다”며 고사해, 그 자리를 ‘혈연파’로 알려진 A 00대 교수가 대신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00대 교수는 유병언 장례식의 장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재산권 침해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기사형 광고를 낸 언론사는 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조사 및 확인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항소인) : A 외 35명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한경닷컴 외 3명

[사실관계]

2011년 12월 5일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 사이트 <한경닷컴>에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 ... 해결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 형태의 광고(기사형 광고)가, 같은 달 20일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플러스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 사이트 <와이티엔>에 「신뢰가 바탕이 된 ISO 인증획득 소셜커머스, 000쿠폰」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 글들의 주된 내용은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 '000쿠폰'이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구매대금을 선납입한 구매자들에게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했고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000쿠폰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재산상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다. 원고들은 000쿠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피고 언론사들 또한 일조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상품권 구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의 경우, 000쿠폰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별다른 사실 확인조차 없이 '중소기업 브랜드대상'을 수여했고, 000쿠폰은 이러한 사실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542086).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에 한해 귀책 사유와 배상책임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다210231).

[판결요지]

□ 기사형 광고 게재 시 언론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판단

기사형 광고의 특징은 광고가 기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기사가 가진 신뢰도를 광고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기사와 광고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독자가 순수한 기사까지 신뢰하지 않아 신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① 신문 사업자 · 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문 ·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하고, 광고가 기사와 유사할수록 기사의 조사·확인 의무에 가까워지는 주의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이 사건 기사(한경닷컴)의 중간이나 주변에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기사의 목적과 내용이 보도나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 한경닷컴은 앞서 본 일반 광고에 있어 광고매체가 부담하는 책임보다 더 강화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4나200060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외 35명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한경닷컴 2.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3. 주식회사 와이티엔 4. 주식회사 와이티엔플러스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2가합54208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한경닷컴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나.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 주식회사 와이티엔플러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이 부담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 주식회사 와이티엔플러스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1] '제1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원고들은 항소장에서 2012. 1. 31.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과 각자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제1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중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원고들은 항소장에서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플러스는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과 각자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제1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중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7부터 48호증, 갑 제49부터 54호증, 갑 제58, 72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박00 서면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박00의 사기범행

- 박00은 2011년 10월경 김00, 최00 등과, 상품권을 25% 할인하여 3개월에서 6개월로 나누어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첫 번째만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 박00은 2011년 11월 초순경 의류·잡화의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소셜커머스 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사업자등록증에는 2011. 4. 1.이 사업자등록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00이 2011. 4. 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는 의류도소매업을 하는 “0000”라는 업체이고, 공모한 사기범행을 위하여 2011년 11월경 “소셜커머스 00”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 박00은 2011년 11월경 홈페이지 제작회사에 인터넷사이트 개설비용을 지불하고 ‘000쿠폰’ 사이트를 만든 다음 2011. 12. 1.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www.000coupon.com”(이하 ‘000쿠폰 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 박00은 2011. 11. 27.경부터 000쿠폰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할인판매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년 1월 초순경까지 000쿠폰 사이트에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판매 합니다.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상품권 대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일부만 배송해 주거나 전혀 배송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을 편취하였다.
- 원고들은 2011. 12. 5.부터 2012. 1. 9.까지 000쿠폰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박00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받거나 이를 전혀 배송받지 못하여 그 입금액과 상품권 수령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들의 상품권 대금 입금일과 입금액, 상품권 수령액, 피해금액의 내역은 1별지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박00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937호 등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3노3178호 사건 등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0. 상고심인 대법원 2014도5251호 사건에서 박00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다.

[2] 000쿠폰에 대한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여

-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이하 ‘피고 한경닷컴’이라 한다)은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인 “www.hankyung.com”(이하 ‘한경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그 직원이 2011년 11월 말경 박00에게 전화하여 240만 원을 주면 000쿠폰에 관한 기사와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 박00은 2011. 12. 2. 피고 한경닷컴에게 000쿠폰을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파트너 요청서’를 보냈다.
- 피고 한경닷컴은 2011. 12. 5. 000쿠폰을 피고 한경닷컴의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여 이를 관련 사이트(<http://ebp.hankyung.com>)에 공표하였다.

- 이후 박00은 000쿠폰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위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 사실을 홍보하는 팝업창이 표시되게 하고, 같은 사이트의 회사소개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
- 박00은 또 000쿠폰 사이트에 ISO인증기업이고, 중소기업대상브랜드를 받았으니 믿고 주문하라는 내용으로 답글을 달았다.

[3] 000쿠폰에 관한 기사의 게재

- 피고 한경닷컴은 000쿠폰의 직원 박△△가 작성하여 제공한 [별지 5] 기재 기사 초안을 토대로, 2011. 12. 5. 한경사이트에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 ... 해결책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박00은 이 사건 제1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 한경닷컴에게 약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한경사이트는, 일간지 한국경제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이하 ‘피고 한국경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 한편 인터넷뉴스 사이트인 “www.ytn.co.kr”(이하 ‘와이티엔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플러스(이하 ‘피고 와이티엔플러스’이라 한다)는 2011. 12. 20. 와이티엔사이트의 비즈니스정보란에 “신뢰가 바탕이 된 ISO 인증획득 소셜커머스, 000쿠폰”이란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된 와이티엔사이트는, 보도전문 방송매체인 YTN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피고 와이티엔’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2. 피고 한경닷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나. 광고매체 및 기사형 광고

1) 광고의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광고주이고, 광고매체는 광고주가 작성한 광고를 자신의 매체에 게재할 뿐이므로, 광고매체가 위법한 광고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행위는 광고주의 제작행위 이외에 광고매체의 게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전달수단을 갖지 못한 정보는 정보라고 할 수 없는바, 광고매체는 광고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이 광고매체인 경우에는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정보수집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도기사에 대한 믿음 등에서 비롯된 신뢰가 부여되고, 이러한 신뢰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주들도 신뢰가 높은 언론기관일수록 더 큰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므로, 광고매체 중 특히 신뢰성이 높은 언론기관으로서의 광고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확인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광고매체의 경제적 존립 기초가 되는 광고에 대하여 보도와 같은 정도의 진실성 조사확인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고, 광고에 나타난 상품과 용역의 성능, 형상 등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의 존재가 피해자의 신뢰형성에 중요한 기망수단으로 작용하고 광고매체가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진실성을 조사확인하여 허위나 위법·부당한 광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법률적 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독자의 보호 의무와 직무상 안전의무 등이다.

2) 광고 기법이 다양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기사 형식을 차용한 광고, 즉 기사형 광고가 드물지 않게 채택되고 있다. 기사형 광고의 특징은 광고가 기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기사가 가진 신뢰도를 광고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큰 단점을 가지는데, 기사와 광고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독자가 순수한 기사까지 신뢰하지 않아 신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① 신문 사업자·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이전에 시행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역시, “①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여 편집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하고, 광고가 기사와 유사할수록 기사의 조사확인 의무에 가까워지는 주의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 3)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한경닷컴은 박00의 자기법행이 알려진 후 이 사건 제1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목적과 내용이 보도나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므로,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한 피고 한경닷컴은 앞서 본 일반 광고에 있어 광고매체가 부담하는 책임보다 더 강화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주의의무

- 1)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의 법규범, 계약에 기초한 계약규범, 판례에 나타난 판례규범, 기타 사회규범을 들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 한경닷컴은 독자의 보호 의무와 기사, 광고의 구분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규범상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능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직무상 안전의무)도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룬다.
- 피고 한경닷컴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여행위는 기사 보도와는 다르고, 피고 한경닷컴의 재량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한 기준에 의해 수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 한경닷컴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전문 보도매체인 피고 한경닷컴이 수여하는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은 그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해당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신뢰할 만한 업체에 수여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 업체가 이를 이용하여 수상사실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 이 사건 제1기사는 000쿠팡 직원인 박△△가 박00의 지시를 받고 000쿠팡을 홍보하는 기사를 써서 피고 한경닷컴의 이00 대리에게 전달한 것을 피고 한경닷컴의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듬은 후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주가 작성한 광고 문안을 그대로 신는 다른 광고의 경우와 달리, 광고매체인 피고 한경닷컴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작성주체이다.
- 더구나 피고 한경닷컴은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고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일반적 거래의 경우보다 크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인터넷 상거래는 위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상품의 가격 못지않게 거래상대방의 신뢰도가 크게 고려된다. 거래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업체가 아닌 이상 그 물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를 인터넷에 게재된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런 상황에서 개업일자, 거래실적 등을 속이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게 사실과 다른 신뢰도를 부여한다면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광고매체에게 물건의 성능, 형상 등까지 확인하거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개설 연도, 거래실적 등에 관하여 거짓을 내세우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실적 서류를 받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이나 부담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인터넷 상거래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확인이 위험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의 게재는 광고매체인 피고 한정닷컴이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의 존재가 피해자의 신뢰형성에 중요한 기망수단으로 작용하고 광고매체가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 한정닷컴은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박00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 주의의무 위반

- 1)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갑 제61부터 6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ICR인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피고 한정닷컴은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어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였는지, 그 심사 과정에서 000쿠폰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배점을 얻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받게 된 것인지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 ISO9001 인증은 해당 기업의 생산, 공급 시스템이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다는 의미일 뿐,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생산,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 한정닷컴이 게재한 이 사건 제1기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명회사 등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로 인하여 이들을 피하려는 방법론마저 포털에 떠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ISO9001 인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소셜 업계에서도 ISO9001 인증을 받는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소셜커머스 00의 000쿠폰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인 바, 일반인으로서의 소셜커머스 00의 000쿠폰이 ISO9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아님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더구나 ISO9001 인증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셜커머스 00이 ISO9001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수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 이 사건 제1기사는 박00이 운영하는 업체가 ISO9001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서 나아가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부작용이 많고 유명회사도 있는데 000쿠폰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박00이 피고 한경닷컴에게 보낸 ‘파트너 요청서’에조차 “신생기업이기에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피고 한경닷컴은 000쿠폰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 [별지 5] 기재 기사 초안을 작성한 박△는 이 사건 제1기사 게재 과정에서 피고 한경닷컴으로부터 문의를 받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 한경닷컴은 박00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면서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 박△는, “000쿠폰이라는 소셜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는 소셜커머스 00로 되어 있고, 소셜커머스 00라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은 2011. 4. 1.로 되어 있으나 2011. 12. 1. 이전에 소셜커머스 00라는 이름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고, 2011년 11월 중순경 포토샵을 전공한 직원을 채용하여 000쿠폰 사이트를 만든 뒤 2011. 12. 1. 000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상품권 할인판매 관련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 한경닷컴이 000쿠폰을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한 시점이 2011. 12. 5.인데, 000쿠폰은 그 불과 4일 전인 2011. 12. 1. 오픈하였다. 또 000쿠폰은 그 당시에는 상품권을 한 차례도 배송하지 않은 상태였다.
- 박00이 원고들이 구매한 상품권 중 극히 일부만 배송한 채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피고 한경닷컴은 한경닷컴 브랜드대상 수상업체 목록에서 000쿠폰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제1기사도 삭제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한경닷컴은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박00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상당인과관계

1)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박00은 000쿠폰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 사실을 홍보하는 팝업창이 표시되게 하고, 같은 사이트의 회사소개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 박00은 또 000쿠폰

폰 사이트에 ISO인증기업이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받았으니 믿고 주문하라는 내용으로 답글을 달았다.

- 박00이 키워드 검색광고(인터넷 검색서비스 이용자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미리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맺고 그 검색어와 관련한 웹페이지를 등록한 광고주의 광고 내용이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검색결과에 표시되게 하는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검색을 통하여 박00과 거래하였음은 피고 한경닷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키워드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서비스 검색결과 표시된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박00의 업체가 신뢰할 만한 지를 확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브랜드대상 수상사실은 000쿠폰 사이트에 홍보되고 있었다).
- 박00이 피고 한경닷컴에게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신청하고 기사 게재를 부탁한 것은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기획하면서 이를 본 소비자들에게 000쿠폰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000쿠폰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2011. 12. 5. 이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2011. 12. 5.부터 2011. 12. 20.까지는 약 10억 원으로 치솟았다.
- 피고 한경닷컴 스스로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 목록에서 000쿠폰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제1기사도 삭제하였다.

- 2)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피고 한경닷컴의 주의의무 내용 및 그 위반 정도, 박00의 사기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한경닷컴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박00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 한경닷컴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박00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바. 손해배상책임

- 1) 피고 한경닷컴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갑 제7부터 48, 5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각 [별지 2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 한경닷컴은, 상품권 중 일부가 배송되고 피고 와이티엔플러스가 이 사건 제2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들이 그러한 배송과 기사 등을 신뢰하여 추가로 상품권 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추가 송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한경닷컴의 이 사건 제1기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박00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과정에서 피고 한경닷컴의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 한경닷컴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피고 한경닷컴의 불법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인정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한경닷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다만 △원고들도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을 다른 업체에 비하여 과도하게 싸게 팔 이유가 없음

에도 이를 그대로 믿고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지나치게 많은 상품권을 구입한 점, △박00이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피고 한경닷컴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점(단 피고 한경닷컴의 손해배상액은 박00과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고려한다)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한경닷컴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3) 따라서 피고 한경닷컴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품권 대금을 송금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3.부터 피고 한경닷컴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와이티엔플러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와이티엔플러스는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제2기사를 와이티엔 사이트에 게재하여 박00의 불법행위 중 이 사건 제2기사 게재일 이후 이루어진 부분의 실행을 용이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박00과 각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위 나머지 원고들은 편의상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2기사의 게재 이후 원고들이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별지 1]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피고 와이티엔플러스가 박00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이 사건 제2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중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된 2011. 12. 20. 전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2기사를 믿고 박00과 거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제2기사와 위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이점에서 이유 없다.

- 2) 광고매체는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의 존재가 피해자의 신뢰형성에 중요한 기망수단으로 작용하고 광고매체가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 내용의 조사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의무를 위반하여 기사형 광고를 작성한다면 그 주의의무가 강화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와이티엔플러스는 이 사건 제2기사 맨 아래 부분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2기사가 실린 곳이 “비즈니스정보”란인데

다가, 이 사건 제2기사의 작성자가 따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신문기사임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의 독자로서는 이 사건 제2기사가 피고 와이티엔플러스가 신문보도에 필요한 주의와 조사의무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의무를 위반하여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피고 한경닷컴과는 달리, 피고 와이티엔플러스가 이 사건 제2기사를 게재할 당시 그 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어야 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광고매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기사 게재 당시 피고 한경닷컴의 사이트에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되었고, 2011. 12. 20.경에는 상품권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 와이티엔플러스가 이 사건 제2기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와이티엔플러스는 브랜드대상을 수여하지 아니하였고, 박00에게 기사 게재를 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사 게재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한경닷컴과는 달리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와이티엔플러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한국경제신문, 와이티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한국경제신문은 자신의 상호인 “한국경제”라는 로고를 달고 피고 한경닷컴이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한국경제신문은 이와 같은 명의사용 허락행위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상법」 제24조) 내지 피고 한경닷컴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을 부담한다.

피고 와이티엔도 피고 와이티엔플러스에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박00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 와이티엔플러스의 방조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다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 55621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 한국경제신문, 와이티엔과 거래행위를 하였거나, 위 피고들의 거래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 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법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한경닷컴, 와이티엔플러스의 이 사건 제1, 제2기사가 불법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 한국경제신문, 와이티엔이 이 사건 제1, 제2기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한국경제신문, 와이티엔이 방조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한경닷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경닷컴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한경닷컴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한경닷컴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생략

〈별지 2〉 상품권 대금 피해내역 생략

〈별지 3, 4〉 대상기사 생략

〈별지 5〉 기사초안 생략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8. 선고 2015카합50147 결정(확정)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사라도 방해배제 청구권에 따른 금지 가처분을 저지할 수는 없다

- 채권자 : 한국석유공사
- 채무자 : 주식회사 코리아타임스

[사실관계]

채권자는 2007년 11월경 쿠르드자치정부(이하 ‘쿠르드’라 한다)와 바지안 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쿠르드가 지정한 런던 HSBC 계좌에 3,0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입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2015년 1월경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과정에서 채권자의 직원들이 쿠르드 인사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채권자가 쿠르드에 지급한 서명보너스가 쿠르드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증명서가 없어, 이 돈이 사업추진 대가로 고위관료에게 건네진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채무자는 <코리아타임스> 사이트에 위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채권자가 보너스 명목으로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에게 지급한 3,140만 달러는 해당 장관 및 쿠르드 고위관료들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일반인이 채권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며 명예훼손행위의 금지를 위한 기사삭제 및 게재, 배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허위 기사로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채무자가 항고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반론보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취하한 바 있다(2015서울조정2511, 2512).

[결정요지]

(1)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위 런던 HSBC 은행계좌에 송금된 3,140만 달러가 뇌물로 의심된다는 근거로, 위 돈이 위 은행계좌에 송금된 후 쿠르드자치정부에 입금된 증명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런던 HSBC 은행계좌는 쿠르드자치정부 또는 쿠르드자치정부 천연자원부 명의의 은행계좌로서 결국 쿠르드자치정부의 최종 수취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쿠르드자치정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위 돈이 정상적으로 수취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채무자가 위와 같이 제기한 의혹이 해명된다.

그 외에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보너스 지급이 뇌물이라거나 그 돈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상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전순옥의 의혹제기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나름의 합리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을 게재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가 절대적·배타적 권리인 인격권에 기초하여 명예훼손행위 자체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채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결정문

사 건	2015카합50147 기사게재 등 금지 가처분
채 권 자	한국석유공사
채 무 자	주식회사 코리아타임스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www.koreatimes.co.kr에서 삭제하라.
2. 채무자들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담보제공 조건을 제외한 주문 제1, 2⁵⁰⁾항. 간접강제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 관계

- 1) 채권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 2) 채무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업자로서, ‘코리아 타임스’라는 영자일간신문을 발간하고, www.koreatimes.co.kr(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일간신문의 기사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나. 채권자의 쿠르드 석유개발사업

- 1) 채권자는 SK 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아이에너지(이하 ‘유아이에너지’라 한다) 등과 ‘KNOC 바지안 리미티드’라는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2007. 11. 10.경 쿠르드자치정부와 사이에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 지역에 있는 바지안 광구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이하 ‘2007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사업권의 38% 지분을 확보하였다. 2007년 계약 중 보너스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2조 - 보너스

32.1 사업자는 발효일로부터 30일 내에 1,000만 달러의 서명보너스를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32.2 사업자는 발효일로부터 30일 내에 2,000만 달러의 사회기반시설 건설보너스를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 2) 2007년 계약 제4.8조는 쿠르드자치정부가 바지안 광구 사업권 중 20% 이내의 지분을 유보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08. 11. 17.경 쿠르드자치정부와 사이에 위 20% 지분을 채권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계약(이하 ‘2008년 계약’이라 하고, 2007년 계약과 2008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8년 계약 중 보너스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0) 채권자는 신청취지 제2항에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유사한 취지’와 같이 다소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신청이유 및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기재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

8. 양수인(채권자)은 2008. 12. 19.까지 2,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보너스를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다. 채권자의 보너스 지급

- 1) 쿠르드자치정부는 이 사건 계약상 보너스의 입금을 안내하면서, 2008. 1. 10. 및 2008. 12. 10. 채권자에게 ‘쿠르드자치정부’ 또는 ‘쿠르드자치정부의 천연자원부’ 명의로 개설된 런던 HSBC 은행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하였고, 2011. 8. 7. 채권자에게 중개은행으로 독일 코메르츠 뱅크 은행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하였다.
- 2) 채권자는 2008. 1. 16.경 2007년 계약상 보너스 합계 3,000만 달러(= 채권자의 부담부분(38% 지분)인 1,140만 달러(= 3,000만 달러 × 38%) + 나머지 컨소시엄 업체들의 부담부분(62%)인 1,860만 달러(= 3,000만 달러 × 62%))를, 쿠르드자치정부가 지정한 위 런던 HSBC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 3) 또 채권자는 2008. 12. 19.경 2008년 계약상 보너스 2,000만 달러를 쿠르드자치정부가 지정한 위 런던 HSBC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채무자의 별지 1. 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게재 경위

- 1)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인 전순옥 의원은 2015. 1. 19.경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채권자의 직원들이 쿠르드자치정부 인사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채권자가 쿠르드자치정부에 지급한 서명보너스가 쿠르드자치정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증명서가 없어, 이 돈이 사업추진의 대가로 고위관료에게 건네진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위 내용은 신문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 2) 이후 채권자는 취재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이트에, 전순옥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채권자가 바지안 광구개발을 위한 서명보너스 명목으로 쿠르드자치정부의 천연자원부 장관 아슈티 하우라미에게 지급한 3,140만 달러는 아슈티 하우라미 및 쿠르드자치정부 고위관료들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한 이 사건 기사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채권자가 쿠르드자치정부의 고위관료들에게 뇌물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든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명예훼손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기사를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삭제하고 향후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지 아니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또는 게시물 1건당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を負担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보전권리

가)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채권자가 바지안 광구개발을 위한 서명보너스 명목으로 쿠르드자치정부의 천연자원부 장관 아슈티 하우라미에게 지급한 3,140만 달러는 아슈티 하우라미 및 쿠르드자치정부 고위관료들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비록 위와 같은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비리의혹을 제기한 전순옥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론에 있어서도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기사의 제목이나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획기사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 내용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채권자가 쿠르드자치정부에 지급한 3,140만 달러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① 채권자가 쿠르드자치정부에 지급한 보너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 근거가 분명하다(채무자도 위 보너스의 지급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채권자는 2008. 1. 16.경 2007년 계약에 따라 런던 HSBC 은행계좌에 3,000만 달러, 2008. 12. 19.경 2008년 계약에 따라 위 은행계좌에 2,000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채무자는 2007년 계약에 따른 3,000만 달러 중 1,140만 달러와 2008년 계약에 따른 2,000만 달러의 합계 3,140만 달러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 1. 16.경 송금된 3,000만 달러에는 2007년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부담 부분(1,140만 달러) 외에 다른 업체들의 부담 부분도 포함되어 함께 송금되었는데, 그중에서 유독 채권자의 부담 부분만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③ 이 사건 기사는 위 런던 HSBC 은행계좌에 송금된 3,140만 달러가 뇌물로 의심된다는 근거로, 위 돈이 위 은행계좌에 송금된 후 쿠르드자치정부에 입금된 증명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런던 HSBC 은행계좌는 쿠르드자치정부 또는 쿠르드자치정부 천연자원부 명의의 은행계좌로서 결국 쿠르드자치정부의 최종 수취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쿠르드자치정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위 돈이 정상적으로 수취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채무자가 위와 같이 제기한 의혹이 해명된다.
- ④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쿠르드자치정부로부터 일부 사례금(1,320만 원)이 채권자의 직원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쿠르드자치정부가 최00이 대표로 있는 유엔아이의 사업참여를 요구하였고 이후 유엔아이에 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채권자가 쿠르드자치정부에 지급한 돈이 뇌물이라거나, 그 돈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분배되었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이유는 없다.
- ⑤ 그 외에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보너스 지급이 뇌물이라거나 그 돈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삭제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 배포하지 아니할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영향력, 인터넷의 파급력, 쿠르드자치정부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 채권자의 투자금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기사삭제의 범위

이 사건 기사 중에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로 소명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기사의 제목 및 주된 내용, 표현 방식, 게시물의 형식 등에 비추어,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구분·분리하여 삭제를 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 전체에 대하여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4) 간접강제 부분

채무자의 소송수행 태도, 채무자의 언론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무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전순옥의 의혹제기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나름의 합리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을 게재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의혹제기에 기초하여 채권자, 쿠르드자치정부 및 런던 HSBC 은행 등을 상대로 취재활동을 하였고, ‘채권자가 쿠르드자치정부에 지급한 보너스가 쿠르드 내 은행이 아니라 런던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된 점, 쿠르드자치정부가 채권자의 직원 및 유엔아이에 돈을 지급한 점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나름의 추론을 통해, ‘쿠르드자치정부가 채권자의 직원이나 유엔아이에 지급한 돈이 채권자가 쿠르드자치정부에 지급한 보너스로부터 나왔고, 결국 그 보너스는 부당한 대가와 관련된 돈,

즉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향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가 절대적·배타적 권리인 인격권에 기초하여 명예훼손행위 자체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채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삭제대상 기사목록 생략

〈별지 2〉 게재금지 대상 기사 생략

범죄자의 유치장 탈주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12월 28일 JTBC <JTBC 뉴스> 프로그램에서 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탈주한 원고에 대한 사건을 보도했다. 피고는 해당 보도에서 원고가 탈주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및 원고의 얼굴이 나온 현장검증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원고는 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의 CCTV 화면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원고의 얼굴과 범죄사실이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2016년 5월 11일 이를 기각했다(대구고등법원 2015나2066). 현재 이 사건은 원고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사건번호 미정).

[판결요지]

(1) 탈주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공개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유치장 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탈주방법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증폭된 가운데 피고가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뉴스를 방영한 것이므로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뉴스를 방영하면서 피고에게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동안 판매하여야 한다는 상업주의적 목적이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었다 라도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뉴스에서 방영된 영상이 실제 CCTV 영상이 아닌 캡처된 CCTV 화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준 것일지라도 이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CCTV 및 현장검증 영상 공개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뉴스는 원고의 실명과 함께 원고의 모습이 드러나는 유치장 탈출 영상 외에 현장검증 영상까지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뉴스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뉴스 방영 이전에 이미 현상수배되어 있다가 검거되어 원고의 얼굴과 범죄사실이 모두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보다 이 사건 뉴스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뉴스로 인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4089 동영상회수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jtbc.join.com>)에 게재된 별지 기재 뉴스 동영상을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방송사로서 'jtbc 뉴스'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뉴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http://jtbc.join.com>)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 나. 원고는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구금되어 있다가 2012. 9. 17. 새벽 연고를 온몸과 가로 45cm, 세로 15cm인 배식구에 발라 미끄럽게 한 다음 먼저 머리를 배식구에 집어넣어 뺀 후 상체까지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유치장 밖으로 나온 후 2m 높이의 환기창을 통해 탈출하였는데 6일 만에 다시 검거되었다.
- 원고가 탈출한 당일 유치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여 가로 45cm, 세로 15cm인 배식구를 통해 탈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위와 같은 크기의 배식구를 통한 탈출이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경찰은 원고의 인권과 모방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CCTV 영상 전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촬영을

전제로 일부 CCTV 캡처 화면만 언론기관에 공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8. 21:46경 'jtb news' 프로그램에서 「[단독] CCTV에 잡힌 A '배식구 탈출' 화면 입수」라는 제목 아래 [배식구를 통해 유치장에서 탈출한 A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탈주 당시 화면을 JT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 몸통과 배식구에 연고를 발랐고,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을 정리한 뒤 머리가 빠져 나갈 수 있는지 다양한 자세로 머리를 들이킵니다. 머리가 빠져나오자 상체와 엉덩이를 통과시키고 기는 자세로 경찰관 눈을 피하고 외부로 통하는 벽의 창살을 통과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기재 뉴스(이하 '이 사건 뉴스'라 한다)를 방영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나온 현장검증 영상과 유치장 탈출 영상 등을 내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뉴스를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아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뉴스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뉴스를 통하여 원고가 어떤 방법으로 유치장을 탈출하였는지를 적시하였고, 이러한 적시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것으로 이 사건 뉴스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뉴스는 원고가 유치장을 탈출하는 장면 자체를 방영함으로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뉴스의 내용과 이를 보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17.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유치장 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탈주방법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증폭된 가운데 피고가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뉴스를 방영한 것이므로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뉴스를 방영하면서 피고에게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동안 판매하여야 한다는 상업주의적 목적이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었더라도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뉴스에서 방영된 영상이 실제 CCTV 영상이 아닌 캡처된 CCTV 화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준 것일지라도 이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유치장 탈출 영상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의 입수 경위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상당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뉴스를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인격권 침해 여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뉴스는 원고의 유치장 탈출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그 객관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초상권 침해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뉴스는 원고의 실명과 함께 원고의 모습이 드러나는 유치장 탈출 영상 외에 현장검증 영상까지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뉴스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초상권 등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그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뉴스 방영 이전에 이미 현상수배되어 있다가 검거되어 얼굴과 범죄사실이 모두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보다 이 사건 뉴스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뉴스로 인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보도한 이 사건 뉴스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 사건 뉴스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방송내용 생략

대학 교수가 사회적 이슈에 관해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한 발언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사실관계]

모 대학 법대 교수인 원고는 2013년 11월 25일 특정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호와 자유 통일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부역한 탈북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피고는 같은 달 27일과 28일 <뉴스쇼 판> 프로그램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원고가 한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SNS 대화방에서 한 발언 중 일부만을 보도하거나 자의로 해석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원고의 신분에 관한 정보 및 성명과 초상을 그대로 보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6년 1월 22일 이를 기각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519)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반론보도 및 기사삭제)이 내려졌으나(2014서울조정549, 550) 원고 측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 된 바 있다.

[판결요지]

(1)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법과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로서 원고의 탈북자 문제 등의 이념적인 논제에 대한 발언 내용에 일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원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언론이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다.

(2) 원고의 발언이 사생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대북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탈북자와 관련한 원고의 발언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원고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발언 내용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원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의 사진과 재직 대학, 재직 대학의 홈페이지 사진까지 함께 보도되었으나, 이는 이미 선행되었던 보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공

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이후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 역시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37038 정정청구 2014가합37045(병합) 정정청구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내지 8 삭제대상보도 및 대담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구글, 줌, 빙 등 인터넷 포털사의 뉴스서비스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인터넷 포털사에게 삭제를 의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발언

원고는 2013. 11. 25. '00 00'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아래의 각 항과 같은 발언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 발언하였다.

- 1) 10:19 “친일민족배신세력에 의해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친일 민족배신세력에 붙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탈북자 놈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솔직히 이 탈북자 놈들이 친일민족배신집단보다 더 밉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에 부역한 탈북자 놈들은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사형시킨 프랑스처럼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 2) 10:38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참지 못하고 종북으로, 빨갱이로 모는 자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적대세력입니다. 독일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적대집단이나 정당을 위헌단체,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고, 개인도 기본권을 실효시키는 기본권실효제도를 두어 엄히 처벌하고 있고, 그런 위헌정당, 위헌집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도 엄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과 정당을 해산시키고, 그런 위헌 정당, 집단을 옹호하거나 독재자를 변호하는 언행을 하는 자들도 엄히 처벌하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10:54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에 부역한 언론인들과 개인들을 사형까지도 처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집단이나 개인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대한민국 자체인)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4) 11:12 “친일민족배신집단에 붙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에 부역하는 탈북자 놈들은 듣거라 : 제발 타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능 모자라는 도배짓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 5) 11:58 “김일성대 학생들이 북체제를 비판했다니 놀랍군요. 얼어붙은 북에도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희망의 봄이 찾아오나 봅니다. 드디어 그렇게 쫘쫘 얼어붙은 북이 무너져 통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북의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극좌독재집단을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이 무너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로 통일이 되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일은 어떤 통일이든 통일인 것이 아닙니다. 북에 의한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아래로 흡수 통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통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흡수통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한번 잃은 자유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지금처럼 북한의 극좌독재를 이용하여 남한의 친일 민족배신 친독재 극우집단들이 탈북자들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지긋지긋한 광란의 상황도 종식되고 말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정치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 피고의 보도(이하 아래의 각 항과 같은 보도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 1) 피고는 2013. 11. 27.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500명이 모여 토론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탈북자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원고가 종북세력을 비판하는 탈북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친일집단에 붙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나치에 동조했던 프랑스인들처럼 탈북자들도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빨갱이었다’는 내용도 썼다.”, “피고는 원고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보도’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탈북자들을 사형시키란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나치에 동조했던 프랑스인처럼 탈북자도 전원 사형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빨갱이었다’ 등의 글이 대학교수 글로 믿겨지지 않는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보도’라고 한다).
- 3) 피고는 2011. 11. 27. ‘시사토크 판’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탈북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에 관한 근거가 없고, 탈북자들을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아무런 근거나 합리적인 근거 혹은 논리적인 체계성 없이 비교를 한다.”라는 내용의 패널의 발언을 포함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보도’라고 한다).
- 4) 피고는 2013. 11. 28. ‘뉴스7’ 프로그램에서, 위 가.항 기재 이 사건 제1 보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보도’라고 한다).
- 5) 피고는 2013. 11. 28. ‘토요뉴스 9’ 프로그램에서, “탈북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탈북자들을 전원 죽이겠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정말 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종북세력에 편승해서 이 사람도 뭔가 좀 튀어보려고 이런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의 수위가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패널의 발언을 포함하여 별지5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 보도’라고 한다).
- 6) 피고는 2013. 11. 28. ‘뉴스특보’ 프로그램에서, 위 가.항 기재 이 사건 제1 보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6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 보도’라고 한다).
- 7) 피고는 2013. 11. 28.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에서, 위 가.항 기재 이 사건 제1 보도와 같은 내용 및 “가치 논평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다.”, “나라 안에서는 법을 가르친다는 분이 탈북자들을 공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무식하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거다.”라는 내용의 기자의 발언을 포함하여 별지7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7 보도’라고 한다).
- 8) 피고는 2013. 11. 28. ‘김광일의 신통방통’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탈북자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다.”, “원고는 ‘대신 부정 지적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모는 행태에 경고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현직 대학교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친일집단에 의해서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면 탈북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였다.”, “2만 6천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대학교, 더군다나 법학 교수가 했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의 발언을 포함하여 별지8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8 보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도는 ‘00 00’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원고가 한 발언 중 일부만을 보도하거나 자의로 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가 대한민국 전체 탈북자를 비하하고 탈북자에 대하여 집단 학살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원고가 중북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될 수 있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비공개나 마찬가지로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고, 원고가 00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라는 원고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였으며, 원고의 성명과 초상도 그대로 보도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의 뉴스서비스에서 위 부분이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 의뢰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도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2)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위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3)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먼저 각 보도별로 적시된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사실의 적시라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보도의 공통된 적시 내용(원고의 발언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의 발언을 적시한 부분의 내용은 모두 원고가 그 대화방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서 그 자체로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대화방 내 발언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발언 내용이 왜곡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발언과 다르게 보도된 것인지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 데다가, 앞서 본 원고의 대화방 내 발언 중 보도되지 않은 내용 및 원고가 위 대화방 내 일부 이용자의 폭언 등에 대응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각 보도별 특유한 적시 내용

(1) 이 사건 제1, 4, 6 보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전후하여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실제로 원고의 대학교 사무실 등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도 중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 보도

갑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이 “법학과 교수라고??”라는 등의 댓글을 남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도 중 ‘대학교수 글로 믿겨지지 않는다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3, 5, 7, 8 보도

(가) 위 각 보도에는 패널리나 기자의 발언을 통하여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그 내용 중 ‘탈북자들을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사건 제3 보도), ‘정말 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종북세력에 편승해서 뭔가 좀 튀어 보려고 이런 발언을 했지만 그런 발언에도 수위가 있는 것이다’(이 사건 제5 보도), ‘과히 논평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다’, ‘말도 안되는 주장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이 사건 제7 보도), ‘현직 대학교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탈북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법과 대학 교수가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이 사건 제8 보도)라는 등의 취지를 담은 의견을 표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나, 피고와 위와 같이 의견을 적시함에 있어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원고를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발언 내용, 원고는 법과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로서 원고의 탈북자 문제 등의 이념적인 논제에 대한 발언 내용에 일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원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언론이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그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보면,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무렵 박00 신부가 시국미사를 집전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이념문제, 탈북자 문제, 통일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보도로 말미암아 현재 원고의 명예 등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거나 원고의 발언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 3) 개인은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있으며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탈북자들이 친일집단에 붙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나치에 동조했던 프랑스인들처럼 탈북자들도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빨갱이었다’는 원고의 발언 내용과 아울러 ‘아무런 근거 없이 비교를 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중복세력에 편승하여 뭔가 좀 튀어 보려고 한다’, ‘논평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다’, ‘동탄을 금할 수 없다’는 등으로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원고가 00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라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일응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성명권, 초상권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2) 그러나 이 사건 보도는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내용과 방법 등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스스로 앞서 본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놓았고, 이를 통해 위 대화방에 참여한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원고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다른 언론사인 뉴시스에서 이 사건 보도가 있기 하루 전인 2013. 11. 26. 이미 원고의 발언 내용과 함께 원고의 성명, 사진, 직업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까지 보도하였던 점, 원고의 직업은 그 자체로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닌 점,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박00 신부의 발언으로 대북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탈북자와 관련한 원고의 발언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원고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발언 내용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원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의 사진과 재직 대학, 재직 대학의 홈페이지 사진까지 함께 보도되었으나, 이는 이미 선행되었던 보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이후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 역시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8〉 대상기사 생략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3110
FAX : 02) 397-3089

지역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6층
전화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5층
전화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B동 5층
전화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5층
전화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8층
전화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8층
전화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404호
전화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303호
전화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5, 601호
전화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4층
전화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6년 6월 25일 인쇄

2016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용상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교육콘텐츠팀

전화 02) 397-3061~5

팩스 02) 397-306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